

이 보고서는 2011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이용 활성화 및 진흥 법제 체계화 연구

The Study on Promotion of Internet Utilization and  
Systematization of Legislation for Internet Promotion.

2011. 12.

연구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인터넷 이용 활성화 및 진흥 법제 체계화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12월

연구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총괄책임자 : 권 현 준 팀장(한국인터넷진흥원 법제분석팀)

참여연구원 :

홍대식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권창범 변호사(법무법인 인)

김진우 교수(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송진섭 대표(지텍스 컨설팅그룹)

안정민 교수(한림대 사회과학대 법정학부) 이호용 교수(단국대 법대)

이효경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임덕기 박사(서강대 법학연구소)

정필운 팀장(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지성우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최경진 교수(가천대 법대) 황인표 책임(한국인터넷진흥원)

황창근 교수(홍익대 법대)

(참여연구원 가나다순)

# 목 차

<b>요약문</b> .....	i ~ xi
------------------	--------

<b>제 1장 서론</b> .....	1
----------------------	---

제 1 절 연구 목적 .....	1
-------------------	---

1. 인터넷 이용활성화의 필요성 .....	1
-------------------------	---

2. 인터넷 진흥 법제 체계화의 필요성 .....	2
-----------------------------	---

3. 인터넷 이용촉진 및 진흥을 위한 법안의 제정 필요성 .....	3
---------------------------------------	---

제 2 절 연구 방법 .....	4
-------------------	---

1. 국내 인터넷 기반 서비스 분류체계 .....	5
-----------------------------	---

2. 국내 주요 부처별 인터넷 진흥정책 비교·분석 및 현행 법제도 분석 .....	5
---	---

3. 해외 주요국의 인터넷이용촉진 및 진흥관련 법제도 조사·분석 .....	6
---	---

4. 인터넷 이용촉진 및 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준 제시 .....	8
--------------------------------------	---

<b>제 2장 국내 인터넷 진흥 정책과 법제도 분석</b> .....	9
--	---

제 1 절 국내 인터넷 서비스 이용 현황과 분류체계 .....	9
------------------------------------	---

1. 인터넷 이용 현황 .....	9
--------------------	---

2. 인터넷 서비스의 의의 .....	14
----------------------	----

3. 인터넷 서비스의 분류 .....	17
----------------------	----

4. 인터넷 서비스의 기능적 분류와 규율원칙 .....	37
--------------------------------	----

제 2 절 현행 인터넷 서비스 분류체계의 한계와 문제점 .....	41
--------------------------------------	----

제 3 절 인터넷 진흥을 위한 부처별 정책 추진의 개선 방향 .....	42
---	----

1. 인터넷 진흥을 위한 부처별 정책 추진 현황 .....	42
----------------------------------	----

2. 부처별 정책추진의 개선방향 .....	68
-------------------------	----

제 4 절 국내 인터넷 이용활성화 및 진흥 관련 법제도 분석 .....	70
---	----

1. 현행 인터넷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주요 내용 .....	70
-----------------------------------	----

2. 한계와 문제점 .....	94
------------------	----

<b>제 3장 주요국의 인터넷 진흥정책과 법제도 분석</b>	105
제 1 절 인터넷 서비스 시장과 진흥법제의 통합의 국제적 경향	105
제 2 절 주요국의 인터넷 진흥정책과 법제도의 내용분석	107
1. 미국	107
2. 유럽연합(EU)	123
3. 독일	128
4. 영국	136
5. 프랑스	157
6. 일본	170
<b>제 4장 인터넷 서비스 진흥법(안) 제정기준</b>	179
제 1 절 제정 방향	179
1. 통합적 진흥 정책	179
2. 서비스의 신분류 기준	179
3. 기반 환경의 조성	185
4. 콘텐츠 진흥	196
5. 공정경쟁과 상생협력	202
6. 이용자의 권익증진	207
7. 자율규제의 지원	225
8. 국제협력	235
제 2 절 제정 기준	239
1. 기본계획 수립 기준	239
2. 신분류체계 수립 기준	240
3. 기반 환경 체계 수립 기준	241
4. 콘텐츠 창출 및 활용 지원 체계 수립기준	242
5. 공정경쟁과 상생협력 수립 기준	242
6. 이용자의 권리증진 지원체계 수립 기준	246
7. 자율규제 지원체계 수립 기준	248

8. 국제협력 수립 기준	253
---------------	-----

<b>제 5장 결론</b>	254
----------------	-----

1. 일원화·집중화된 진흥정책 추진 체계 마련	254
2. 기반환경 조성	255
3. 콘텐츠 창출 및 활용 진흥	256
4. 공정경쟁과 상생협력 촉진	257
5. 이용자 권익증진	258
6. 자율규제의 촉진	259
7. 국제협력의 추진	260

<b>참고문헌</b>	262
-------------	-----

<b>인터넷 서비스 진흥법(안)</b>	268
-----------------------	-----

I. 인터넷 서비스 진흥법(안) 전문	269
II. 인터넷 서비스 진흥법(안) 조문별 해설	279

## 표 목 차

<표 2-1> 거래주체별 전자상거래 .....	13
<표 2-2> 사이버쇼핑 총 거래액 .....	14
<표 2-3>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현황 .....	17
<표 2-4> 정보서비스업 .....	19
<표 2-5> 정보통신기술(ICT)산업 특수분류 v.1 .....	21
<표 2-6> 정보통신기술(ICT)산업 특수분류 v.2 .....	24
<표 2-7>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서비스 분류 .....	27
<표 2-8> 인터넷 산업분류체계 .....	28
<표 2-9> 인터넷 서비스의 분류 .....	29
<표 2-10> 정보통신산업분류 - ISIC Rev. 4 .....	31
<표 2-11> 콘텐츠 및 미디어 부문 .....	32
<표 2-12> NAICS의 정보산업분류 .....	34
<표 2-13> 통계표준분류에 의한 특수 분류 중 인터넷산업 분류 .....	36
<표 2-14> 기능 중심의 인터넷 서비스 분류(안) .....	40
<표 2-15> 현행 인터넷 서비스 관련 법률 현황 .....	72
<표 3-1> 인터넷 정책 2.0 시기에 제정된 주요 인터넷 진흥 법제 .....	112
<표 3-2> 인터넷 정책 3.0 시기의 주요 인터넷 진흥 법안(하원발의) .....	120
<표 3-3> 인터넷 정책 3.0 시기의 주요 인터넷 진흥 법안(상원발의) .....	121
<표 3-4> 연도별 영국 가구 당 인터넷 접속 현황 .....	137
<표 3-5> 프랑스 인터넷 관련 주요 법률 및 내용 .....	160
<표 3-6> 프랑스의 인터넷 관련 주요 공적 기관 및 부처 .....	161
<표 3-7> 프랑스 인터넷 관련 자율기관 .....	162
<표 4-1> 기능 중심의 인터넷 서비스 분류(안) .....	182
<표 4-2> 국내 콘텐츠 시장규모 및 GDP 비중 .....	197
<표 4-3>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 및 상생 관련 법률 현황 .....	206

<표 4-4> 참고: 미국 인터넷 시장 공정경쟁 관련 법안	206
<표 4-5> 이용자보호분과 이슈맵	210
<표 4-6> 인터넷기반서비스 관련 조정기구의 주요 현황	223
<표 4-7> 면대면 ADR과 온라인 ADR의 특징 비교	224
<표 4-8> 법령 비교	227
<표 4-9> 국제협력 입법례	237

## 그 림 목 차

<그림 2-1> 인터넷 이용률 .....	20
<그림 2-1> 인터넷 이용률 .....	9
<그림 2-2> 인터넷 이용자수 변화 .....	10
<그림 2-3> 인터넷 이용 빈도 - 만 3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	10
<그림 2-4> 주 평균 이용시간 .....	11
<그림 2-5> 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	11
<그림 2-6> 인터넷 이용 목적 .....	12
<그림 2-7> 수직적 규제체계와 수평적 규제체계 비교 .....	38
<그림 3-1> IT 기획위원회의 임무 스펙트럼 .....	132
<그림 4-1> OSI 7 레이어 모델 .....	186
<그림 4-2> OSI 7 레이어 모델과 TCP/IP 프로토콜 .....	186

## 요 약 문

### 1. 제목

인터넷 이용 활성화 및 진흥 법제 체계화 연구

### 2. 연구목적 및 필요성

국내의 인터넷 사용 인구는 현재(2010.5 기준) 만 3세 이상 인구의 77.8%인 37,010,000명이 사용하고 있는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 82.5%는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시간도 주 평균 14.7시간, 1일 평균 2.1시간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이용자의 절반에 가까운 48.9%가 주 평균 14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2001년과 비교하여 6.92배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사이버 쇼핑거래액도 2001년과 비교하면 7.52배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이용환경은 스마트 그리드, 클라우드 컴퓨팅, u-City 등의 새로운 인터넷 관련 기술과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인터넷 이용 환경의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의 차세대 인터넷은 개인 맞춤형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실감형·지능형 서비스가 등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네트워크도 통신·방송·컴퓨팅·센서망이 융합된 초 광대역 스마트 인프라로 진화가 이루어지는 등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인터넷 시장에서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인터넷 이용 활성화 정책이 수립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인터넷 이용 활성화 정책과 법제도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고 이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와 콘텐츠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진흥정책과 지원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촉진하는 한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후발 인터넷 관련 사업자가 원활하게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인터넷의 국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터넷 관련 법률의 역외적용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국가와의 역외적용 상호인정에 대한 근거 마련하는 등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 1) 국내 인터넷 기반 서비스 분류체계

현행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분류체계와 관련하여, 국내 분류체계의 경우, 통계청의 정보통신기술산업 분류인 한국표준산업분류, 정보통신기술산업 특수분류를 검토하고,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서비스 분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인터넷산업분류체계, 2010 한국인터넷백서의 분류체계를 검토하였다. 국외 분류체계의 경우에는 UN 경제 사회자 통계국 정보통신기술 산업분류, NAICS의 정보산업분류 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하여 현행 인터넷 기반 서비스 분류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2) 국내 주요 부처별 인터넷 진흥정책 비교·분석 및 현행 법제도 분석

인터넷 관련 진흥정책 분석은 각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 진흥 계획, 인터넷 실태 및 통계조사, 재원조달 등에 관하여 검토하고, 인터넷 기반환경 조성과 관련된 정책을 검토하였다. 또한 인터넷 기반 사업자와 관련된 지원시책과 사업자간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였다. 이외에 인터넷 이용자 권리보호와 관련 정책과 자율규제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 및 인터넷 서비스 표준화와 국제협력 등에 관한 정책을 검토하였다. 인터넷 진흥 관련 공공부분의 경우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였다. 민간분야 법제도의 경우에는 정보

통신산업 진흥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현행 인터넷 진흥 정책추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 3) 해외주요국의 인터넷이용촉진 및 진흥관련 법제도 조사·분석

현행 인터넷 진흥정책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인터넷 진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 유럽연합,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주요국의 진흥정책과 법제도 추진 방향과 내용을 검토하였다. 먼저 미국의 경우에는 인터넷 상용화의 전환기(1990-2000)와 혼란기(2001-2009), 인터넷 정책 3.0(2010- 현재)으로 세분하여 진흥정책과 법제도의 흐름을 검토하였다.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유럽 디지털 아젠다”를 중심으로 아젠다의 목표, 입안배경 등과 함께 유럽연합의 인터넷 진흥 관련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경과를 살펴보았다. 독일의 경우에는 2009년 8월 1일부터 발효된 독일헌법 제91조의c 및 IT 기획위원회의 설립 및 De-Mail법과 ‘독일 디지털 2015’상의 디지털 산업 진흥의 전략 등을 검토하였다. 영국의 경우에는 정보통신 인프라 재정비 및 디지털 콘텐츠 육성 등을 통해 미래 디지털 지식경제 국가로의 전환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국가전략을 검토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정보화사회관련법 제안과 정보화사회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 창작과 인터넷 법 등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융합환경에 대비하여 2000년 중반부터 2009년 말까지 논의되었던 인터넷 진흥정책과 법체계 정비방안으로서 통신·방송 융합 법체계에 대한 논의와 당시 논의되었던 정보통신법안의 특징과 한계를 검토하였다.

### 4) 인터넷 서비스 이용촉진 및 진흥법의 기준 제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서비스를 진흥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으로서 법안의 제정 방향과

제정기준을 제시하였다. 제정기준으로서 1) 인터넷의 통합적 진흥 정책의 마련, 2) 인터넷 서비스의 신분류 기준의 제시 3) 인터넷 기반환경의 진흥, 4) 인터넷 콘텐츠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사전적·사후적 지원정책과 콘텐츠 창출 지원, 5)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공정경쟁 촉진과 상생협력의 지원, 6) 인터넷 이용자의 권익증진 지원, 7) 자율규제의 진흥과 지원, 8) 국제규범과의 협력 및 조화의 고려 등의 8가지를 제시하였다. 다만, 인터넷 서비스의 신분류 기준의 경우 현행 법적 체계로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서비스 규율체계의 정비방안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이후에 입법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결과 및 법 초안 반영에는 제외 시켰다.

####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로서는 ① 인터넷 기반 서비스 규율체계의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② 인터넷 기반 환경 진흥방안으로서, 인터넷 서비스 전문 인력의 양성방안, 인터넷 서비스 관련 기술개발의 지원방안, 인터넷 서비스의 표준화의 추진방안, 인터넷 서비스 관련 국제협력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③ 인터넷 콘텐츠 창출 및 활용방안으로는 공공 인터넷 콘텐츠의 이용 활성화방안, 인터넷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 지원방안, 인터넷 서비스 및 콘텐츠의 품질인증 방안을 제시하였다. ④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과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⑤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인터넷 광고표시의 기준에 대한 문제, 광고표시자율규제 등의 재검토, 중요사항의 설명의문제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재판외분쟁처리의 개선방안과 이용자 리터러시(literacy)의 강화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⑥ 자율규제의 진흥을 위해서는 자율규제 지원체계 수립시의 유의사항과 자율규제 지원 체계의 구성 및 인터넷 자율규제에 있어서의 각 주체별 역할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⑦ 국제 협력의 경우 국내외 인적 교류의 지원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현행 인터넷 진흥 관련 법제도의 종합적으로 분석과 검토를 기초로 하여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을 위한 입법안을 제시하고 그 제정기준과 주요내용을 제시하였다.

##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는 현행 인터넷 진흥 관련 정책과 법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물은 앞으로의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를 마련하는데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인 1) 인터넷의 통합적 진흥 정책, 2) 인터넷 기반환경의 진흥, 3) 인터넷 콘텐츠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사전적·사후적 지원정책과 콘텐츠 문화진흥, 4)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경쟁과 상생협력, 5) 인터넷 이용자의 권익증진, 6) 자율 규제의 진흥과 지원, 7) 국제협력 등은 차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에게 연구의 기초로서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터넷 시장에서의 국가경쟁력 향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인터넷 서비스 진흥 입법에 있어 본 연구는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

## 6. 기대효과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인터넷 진흥 관련 정책과 법제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중요한 비교법적 참고자료 및 정책방향 설정의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 **SUMMARY**

## **1. Title**

The Study on Promotion of Internet Utilization and Systematization of Legislation for Internet Promotion

##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Due to the appearance of new Internet technologies and services like smart grid, cloud computing and u-City, the Internet use environment is expected to change rapidly. The next-generation Internet will see the appearance of personalized consumer-oriented service, tangible and intelligent service, and rapid changes in networks are also anticipated as networks will evolve to the ultra wideband smart infrastructure in which communication, broadcasting, computing and sensor networks are converged. Accordingly, to flexibly cope with these changes in the Internet environment and to secur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Internet market,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policies that aggressively invigorate Internet use.

Future policies and legal systems for invigoration of Internet use must take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et-based services into consideration and come up with ways to provide appropriate

support.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promotion policy for enhancement of the reliability of Internet-based services and contents, and lay the foundation for development of support programs. Also, it is necessary to promote a sound Internet use culture and fair competition and win-win cooperation among Internet service providers. The entry barrier must be lowered so that new Internet-related enterprises can enter the market easily and the support system must be instituted. In consideration of the global nature of the Internet, The foundation for global cooperation in regard to extraterrestrial application of Internet-related laws must be laid down, and the grounds for cross-recognition of extraterrestrial application in related countries must be prepared. That is, efforts must be made to figure out ways to enhance the global governance competency.

###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 1) Domestic Internet-based service classification system

With regard to the classification system for current Internet-based services,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domestic and foreign Internet-based service classification systems were identified, and remedies to these problems were presented.

#### 2) Comparison of the Internet promotion policies of key government

departments in Korea and analysi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To analyze Internet promotion policies, this study reviewed the Internet promotion plans, Internet state and statistics surveys and funding status of individual government departments, and examined the policies related to building the Internet infrastructure. Also, policies regarding Internet businesses, policies related to protection of the rights of Internet users, policies in regard to promotion of self-regulation and policies about standardization of Internet servic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were reviewed. The legal systems related to promotion of the Internet were analyzed. They were divided into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and the main contents were summarized and reviewed.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identified problems of the current Internet promotion policies, and presented remedies for them.

3)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invigoration of Internet use and the legal systems related to the promotion thereof in major foreign countries

To comparatively study the current Internet promotion policies, the Internet promotion policies of major countries like the US, the European Union, Germany, the UK, France and Japan, which actively push Internet promotion policies, and the direction and details of their legal systems were reviewed.

4) Standards for the invigoration of Internet service and the laws related to the promotion thereof

As legislative alternatives for promotion of Internet service, this study

presented 8 standards: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preparation of integrated Internet promotion policies, promotion of the Internet infrastructure, promotion of fair competition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service market, support of win-win cooperation, support of promotion of the rights of Internet users, and promotion and support of self-regulation.

#### 4. Research Results

The key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① this study presented measures to improve the Internet-based service regulatory system, ② to promote the Internet-based environment, this presented measures to train professional Internet service manpower, measure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related to Internet service, measures to standardize Internet service, and measures 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regard to Internet service. ③ To create and utilize Internet contents, this study presented measures to invigorate utilization of public Internet contents, measures to support active production of Internet contents, and measures to certify the quality of Internet services and contents. ④ This study presented measures to support fair competition and win-win cooperation in the Internet service market, ⑤ to promote the rights of Internet users, this study reviewed the problems of Internet advertising display, self-regulation of advertising display and explanation of important items. Also, this study reviewed measures to improv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or efficient resolution of disputes related to use of Internet service, and measures to reinforce user literacy. ⑥ To promote self-regulation, this study reviewed matters to be attended to

when the self-regulation support system is established, and the roles of main agents in designing the self-regulation support system and Internet self-regulation. ⑦ In regard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this study reviewed support of manpower exchange in and out of the country.

Lastly, based on comprehensive analysis and review of the current legal systems related to Internet promotion, this study proposed legislation for promotion of Internet service, and presented the standards and key contents thereof.

##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This study comprehensively analyzed the current policies and legal systems related to Internet promotion, identified problems, and presented specific measures. Accordingly, the results of this study need to be actively utilized when legal systems are established to respond to the ever changing Internet environment.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actively utilized as basic research data by researchers who are interested in this field. In particular, this study needs to be actively utilized for Internet service promotion legislation so as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new Internet environment and improv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Internet market.

## 6. Expect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raise social interest in the importance of policies and legal systems related to Internet promotion across

the board, and serve as important comparative data and as data for establishing policy directions when related policies are established in the future.

##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Comparison of the Internet promotion policies of key government departments in Korea and analysi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Chapter 3.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invigoration of Internet use and the legal systems related to the promotion thereof in major foreign countries

Chapter 4. Standards for the invigoration of Internet service and the laws related to the promotion thereof

Chapter 5. Conclusions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연구 목적

#### 1. 인터넷 이용활성화의 필요성

국내의 인터넷 사용 인구는 현재(2010.5 기준) 만 3세 이상 인구의 77.8%인 37,010,000명이 사용하고 있는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 82.5%는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시간도 주 평균 14.7시간, 1일평균 2.1시간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이용자의 절반에 가까운 48.9%가 주 평균 14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2001년과 비교하여 6.92배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사이버 쇼핑거래액도 2001년과 비교하면 7.52배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이용환경은 스마트 그리드, 클라우드 컴퓨팅, u-City 등의 새로운 인터넷 관련 기술과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인터넷 이용 환경의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의 차세대 인터넷은 개인 맞춤형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실감형·지능형 서비스가 등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네트워크도 통신·방송·컴퓨팅·센서망이 융합된 초 광대역 스마트 인프라로 진화가 이루어지는 등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인터넷 시장에서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인터넷 이용 활성화 정책이 수립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인터넷 이용 활성화 정책과 법제도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고 이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와 콘텐츠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진흥정책과 지원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 2 인터넷 이용 활성화 및 진흥 법제 체계화 연구

또한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촉진하는 한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후발 인터넷 관련 사업자가 원활하게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인터넷의 국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터넷 관련 법률의 역외적용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국가와의 역외적용 상호인정에 대한 근거 마련하는 등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인터넷 진흥 법제 체계화의 필요성

현재 인터넷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환경 변화와 새로운 인터넷 관련 기술과 서비스의 급속한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환경 변화에 맞추어 해외 주요국들은 융합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선도적 국가 경쟁력의 위치를 선점하기 위하여 인터넷 진흥을 위한 국가전략 구축과 인프라 확충 및 콘텐츠 육성을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률과 이용률 및 인프라 구축 등에 있어서 세계적인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현행 인터넷 관련 정책과 법제도는 인터넷 진흥정책의 추진체계가 분산되어 일관되고 조화로운 추진이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중첩적 규제 또는 공백의 문제가 발생되어 급변하는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기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관련 정책은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정부 부처간 기능중복 및 담당부처의 다극화로 인하여 정책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추진체계의 충돌에 따라 인터넷 지원 정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인터넷 정책의 통일성이 없고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현행 인터넷 관련 법제도의 체계는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별로 각각의 영역을 규율하고 있는 개별 법률들로 구성되어 있다. 1986년 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그 동안 30여 차례에 걸쳐 수정·보완되었고, 1983년 제정된 「전기통신사업법」도 33차례 개정되는 등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인터넷과 관련하여 새롭게 출현한 다양한 서비스를 모두 포괄하지는 못하고 필요한 규율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통일적이고 추진력 있는 인터넷 지원 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되지 못하는 현행 인터넷 진흥 관련 정책과 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원화되고 집중화된 인터넷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겠다.

### 3. 인터넷 이용촉진 및 진흥을 위한 법안의 제정 필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촉진 및 진흥 관련 법제는 부처 간 기능중복에 따른 중첩적 규율의 문제와 새롭게 등장하는 인터넷 서비스 분야에 대한 법적 공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담당 정부부처의 기능 중복과 담당부처의 다국화로 인하여 정책의 추진체계가 분산되어 인터넷 진흥 정책에 대한 혼선을 초래하고 전문성 약화의 문제 발생과 전략적인 인터넷 진흥 정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된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인터넷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곤란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집행의 비효율의 문제와 관련 사업자와 서비스의 관리·감독 체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정책추진 부처 간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효과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신속히 조정해줄 수 있는 법제도가 존재하지 않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인터넷은 플랫폼, 기기, 서비스가 융·복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현재의 분산된 규율체계로는 새로운 인터넷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인터넷 관련 법률의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자서명법」, 「저작권법」등에 각각 관련 규정들이 산재 되고 있고 인터넷 서비스별 개별 규율체계에 의존하는 수직적 규율체계를 이루고 있어서 중첩적 규율이 발생하기 쉽고, 신규 서비스에 대한 공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외에도 인터넷과 관련된 문제들로는 국내법의 역외적용상의 문제와, 자율규제의 육성과 지원 규정 미비의 문제, 인터넷 관련 주체들 간 역할분담 형평성의 문제, 인터넷 침해에 대한 국제협력에 관한 규정의 미비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율체계의 개편과 함께 일원화·집중화된 인터넷 진흥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와 인터넷 진흥정책 추진부처 상호 간 발생될 수 있는 불필요한 중복성의 제거와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또한 수직적 규율 체계에서 수평적 규율 체계로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는 인터넷 진흥 법안이 제정될 필요성이 높다.

## 제 2 절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행 인터넷 진흥 관련 법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방송통신의 융합환경과 같은 인터넷 환경변화와 새로운 인터넷 기술 및 서비스의 급속한 등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인터넷 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국내 인터넷 서비스 이용 현황과 분류체계, 주요국의 인터넷 진흥정책과 법제도 분석, 인터넷 진흥법안의 제정기준과 내용 등으로 세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 1. 국내 인터넷 기반 서비스 분류체계

인터넷 서비스 분류체계에 관해서는 급변하는 방송통신 융합 및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 분류체계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인터넷 서비스 분류체계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현행 인터넷 서비스 분류체계는 기기 및 네트워크, 네트워크 운용, 네트워크 활용의 3분류 하에 기존의 서비스를 분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류체계는 기존 정보화정책의 핵심이었던 하드웨어 인프라의 구축, 즉 하드웨어로서의 기기와 하드웨어로서의 네트워크의 구축을 중심에 두고, 이를 운용하거나 활용하는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존의 법제 체계도 하드웨어에 대한 규율 및 네트워크의 활용에 대한 규율, 개별적인 이슈나 특정 산업군을 위한 입법을 통하여 다수의 법률이 인터넷 서비스를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의 분류체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국내의 분류체계와 국외 분류체계를 살펴보고 검토하였다. 먼저 국내 분류체계의 경우, 통계청의 정보통신기술산업 분류인 한국표준산업분류, 정보통신기술산업 특수분류를 검토하고,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서비스 분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인터넷산업분류체계, 2010 한국인터넷백서의 분류체계를 검토하였다. 국외의 경우에는 UN 경제 사회처 통계국 정보통신기술 산업분류, NAICS의 정보산업분류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현행 인터넷 서비스 분류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2. 국내 주요 부처별 인터넷 진흥정책 비교 · 분석 및 현행 법제도 분석

국내 인터넷 진흥정책의 경우에는, 인터넷 진흥을 위한 부처별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본 후 주요 공공부분과 민간분야를 나누어 인터넷 진흥 관련 법률체계를 검토하였다.

공공부분의 경우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하였다. 민간분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 산업 진흥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 기본법」, 「인터넷주소지원에 관한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현행 인터넷에 진흥에 관한 부처별 정책추진 내용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내 인터넷 이용활성화 및 진흥 관련 법제도 분석의 문제에 관련하여서는, 현행 인터넷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주요 내용으로서 인터넷 진흥 계획 수립·시행 규정, 인터넷 실태 및 통계조사, 재원조달 및 확보를 검토하였다.

또한 인터넷 기반환경 조성 관련 규정은 인터넷 진흥 기반환경 등의 조성과 사회 문화적 기반환경 등의 조성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관련 기업 지원 시책,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인터넷 이용자 권리 보호와 분쟁조정 등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간 자율규제의 육성, 표준화 및 인증기관의 지정 등의 문제, 국제협력의 문제, 관계 기관간 산업발전 추진 및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 3. 해외주요국의 인터넷이용촉진 및 진흥관련 법제도 조사·분석

현재 활발하게 인터넷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유럽연합,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의 인터넷 진흥정책과 법제도 추진 방향과 내용을 살펴보기 각국의 인터넷 진흥정책과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미국의 경우에는 인터넷 상용화의 전환기(1990-2000)와 혼란기(2001-2009),

인터넷 정책 3.0(2010- 현재)으로 세분하여 동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인터넷 진흥 법안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유럽 디지털 아젠다”를 중심으로 아젠다의 목표, 입안 배경 등과 함께 유럽연합의 인터넷 진흥 관련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경과를 살펴보았다.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 국내의 인터넷 진흥 관련하여 2009년 8월 1일부터 발효된 독일헌법 제91조의c 및 IT 기획위원회의 설립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시민, 기관 및 기업 간의 법률전자문서를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De-Mail 법」과 「독일 디지털 2015」상의 디지털 산업 진흥의 전략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영국의 인터넷 진흥정책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의 융합과 관련한 브로드밴드 시장 활성화와 방송통신 인프라 구축에 관한 정책내용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영국 정부가 정보통신 인프라 재정비 및 디지털 콘텐츠 육성 등을 통해 미래 디지털 지식경제 국가로의 전환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국가전략을 검토하였다. 영국의 브로드밴드 시장활성화와 관련하여서는 유선 브로드밴드 진흥 정책, 모바일 브로드밴드 진흥 정책, 콘텐츠 진흥 정책, 이용자 보호 정책, 사회약자들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영국의 인터넷 진흥 관련 전담기구로서 기업 혁신기술부, 문화미디어스포츠부, 커뮤니케이션정부를 살펴보았으며, 주요 인터넷 관련 법제로서 「커뮤니케이션법(2003)」, 「디지털경제법(2010)」의 내용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정보화사회관련법」 제안과 「정보화사회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 「창작과 인터넷 법」 등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 방송통신융합환경에 대비하여 2000년 중반부터 2009년 말까지 논의되었던 인터넷 진흥정책과 법체계 정비방안으로서 통신·방송 융합 법체계에 대한 논의와 당시 논의 되었던 「정보통신법(안)」의 내용적 특징과 한계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 4. 인터넷 이용촉진 및 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준 제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인터넷의 이용촉진과 진흥을 위한 진흥법의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법안의 제정 방향, 제정 기준 및 주요 내용으로 세분하여 내용을 검토하였다.

인터넷 진흥법안의 제정기준과 관련하여서는 ① 신규 인터넷 서비스를 고려한 인터넷 서비스 규율체계의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② 급변하는 인터넷 서비스 환경변화를 고려한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③ 인터넷 기반 환경 체계 수립과 관련하여서는 전문 인력의 양성, 기술개발의 지원, 표준화의 추진, 국제협력 등으로 세분하여 기준을 제시하였다. ④ 인터넷 콘텐츠 지원체계에 관하여는 공공 인터넷 콘텐츠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인터넷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인터넷 콘텐츠의 품질인증을 위한 정책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⑤ 공정경쟁과 상생협력과 관련하여서는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특성에 부합한 지원체계 수립, 서비스 분류별 지원체계 등을 검토하였다. ⑥ 이용자의 권리증진과 관련하여서는 인터넷 광고표시 자율규제 등의 재검토, 자율적 등급제 실시의 문제, 중요사항의 설명의 문제 등을 문제를 검토하였다. 또한 원활한 분쟁처리해결과 관련하여서는 인터넷 특성에 부합하는 재판외분쟁처리 기준의 마련 문제, 관계자의 연계방안 등을 검토하였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리터러시(literacy)의 강화방안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⑦ 자율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자율규제 지원체계의 구성 및 각 주체별 역할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또한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의 문제, 자율 규제 기관이나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인터넷 서비스 인증마크의 도입 및 시행 지원,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 및 시행의 지원, 세계 지원, 면책 조항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⑧ 국제협력에 관해서는 해외 협력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 산업 진흥과 인터넷 관련 인적 교류, 국내외 인터넷 서비스 관련 정책 및 사례의 연구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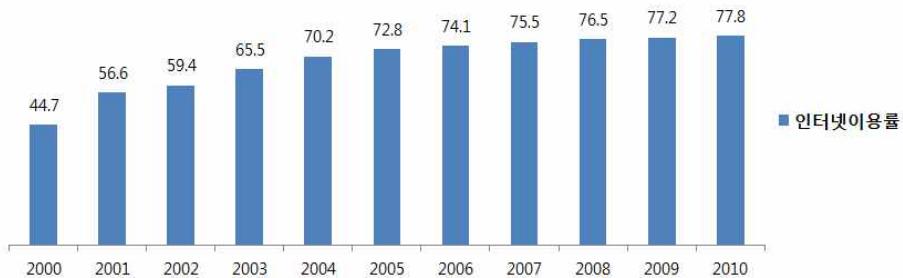
## 제 2 장 국내 인터넷 진흥 정책과 법제도 분석

### 제 1 절 국내 인터넷 서비스 이용 현황과 분류체계

#### 1. 인터넷 이용 현황

가. 국내에서 인터넷사용 인구는 2010년 5월 현재 만 3세 이상 인구의 77.8%인 37,010,000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2009년과 비교하여 볼 때 0.6%(약 430,000명)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 44.7%의 이용률과 비교하여 보면 33.1% 향상된 결과이며, 이용자수도 2000년 19,040,000명과 비교할 때, 약 1.94배인 17,970,000명이 증가된 결과이다.

<그림 2-1> 인터넷 이용률<sup>1)</sup>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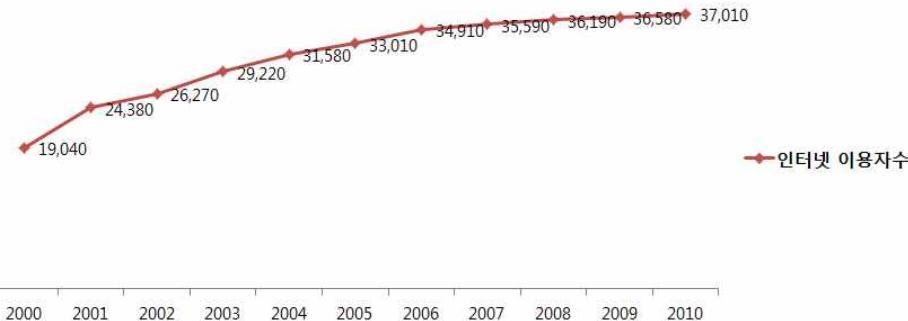


1) 2004년 조사부터 인터넷에 모바일 인터넷을 포함시켰으며, 인터넷 이용자 정의도 ‘월평균 1회 이상 인터넷이용자’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로 변경함.

2) 2006년 조사부터 조사대상을 만 3세 이상 인구로 확대함. (2000년 · 2001년 : 만 7세 이상 인구, 2002년-2005년 : 만 6세 이상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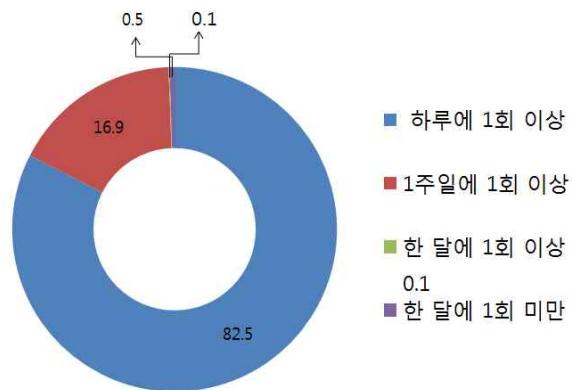
---

1)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0. 12. 23면.

<그림 2-2> 인터넷 이용자수 변화<sup>2)</sup>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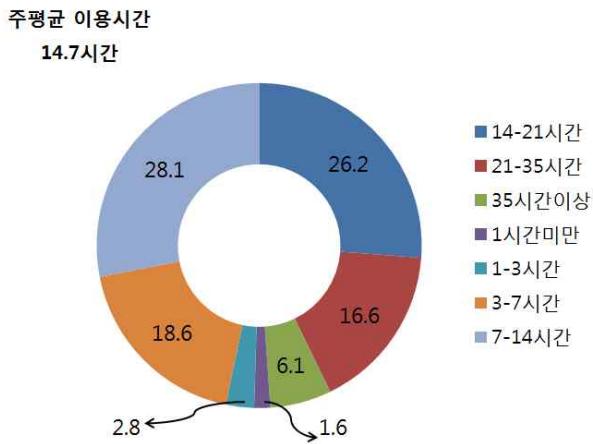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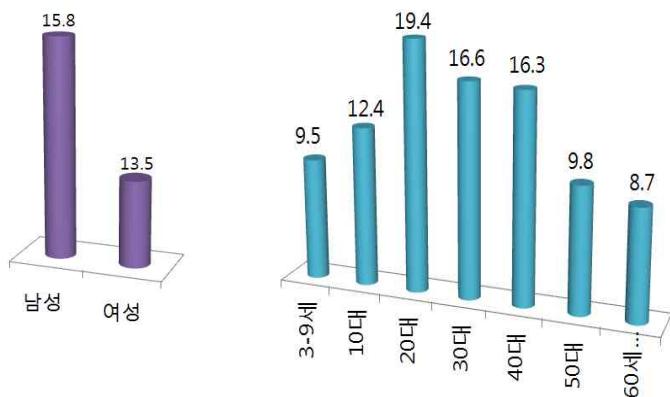
- 1) 2004년 조사부터 인터넷에 모바일 인터넷을 포함시켰으며, 인터넷 이용자 정의도 ‘월평균 1회 이상 인터넷이용자’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로 변경함.
- 2) 2006년 조사부터 조사대상을 만 3세 이상 인구로 확대함. (2000년 · 2001년 : 만 7세 이상 인구, 2002년-2005년 : 만 6세 이상 인구)

나. 인터넷 이용자의 82.5%는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시간은 주 평균 14.7시간, 1일 평균 2.1시간이며, 절반에 가까운 48.9%가 주 평균 14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그림 2-3> 인터넷 이용 빈도 - 만 3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sup>3)</sup> (단위: %)

2)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 보고서, 23면.

3)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 보고서, 34면.

<그림 2-4> 주평균 이용시간<sup>4)</sup> (단위: %)<그림 2-5> 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sup>5)</sup> (단위: 시간)

다. 인터넷 이용자의 80% 이상이 인터넷을 통하여 ‘자료 및 정보획득’(91.6%), ‘음악 · 게임 등 여가활동’(89.1%), ‘이메일, 메신저 등 커뮤니케이션’(88.4%)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밖에 ‘인터넷 구매 및 판매’(57.7%), ‘카페 · 클럽 등 커뮤니티’(47.8%),

4)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 보고서, 34면.

5)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 보고서, 35면.

‘블로그·미니홈피 등 홈페이지 운영’(45.3%)을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도 40% 이상이다.

<그림 2-6> 인터넷 이용 목적<sup>6)</sup> (단위: %)



라. 인터넷 이용자수 및 이용시간의 계속적인 증가는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다. 그 결과 전자상거래의 경우 2004년 314조 1천억 원의 시장이 2009년에는 670조 9천억 원으로 시장규모가 2.13배 확대되었다. 2001년과 비교하면 6.92배 시장규모가 확대되었다. 사이버쇼핑거래액도 2004년 7조 7천 6백 8십억 원에서 2009년 20조 6천 4백 1십억원으로 약 3배 증대되었다.<sup>7)</sup> 2001년과 비교하면 7.52배 시장규모가 확대되었다.

6)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 보고서, 37면.

7) 인터넷진흥원, 「2010 인터넷백서」, 252-253면.

<표 2-1> 거래주체별 전자상거래<sup>8)</sup>

	전자상거래 총규모		기업간거래 (B2B)		기업 · 정부간 거래(B2G)		기업 · 소비자간 거래(B2C)		기타 (C2C 등)	
	거래액	증감률	거래액	증감률	거래액	증감률	거래액	증감률	거래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2001	118,976		108,941		7,037		2,580		418	
2002	177,810	+49.5	155,707	+42.9	16,632	+236.4	5,043	+95.5	427	+ 2.2
				87.6		9.4		2.8		0.2
2003	235,025	+32.2	206,854	+32.8	21,634	+326.2	6,095	+20.9	442	+ 3.5
				88.0		9.2		2.6		0.2
2004	314,079	+33.6	279,399	+35.1	27,349	+26.4	6,443	+ 5.7	888	+200.1
				89.0		8.7		2.1		0.3
2005	358,450	+14.1	319,202	+14.2	29,036	+ 6.2	7,921	+22.9	2,292	+258.1
				89.1		8.1		2.2		0.6
2006	413,584	+15.4	366,191	+14.7	34,435	+18.6	9,132	+15.3	3,826	+166.9
				88.5		8.3		2.2		0.9
2007	516,514	+24.9	464,456	+26.8	36,801	+ 6.9	10,226	+12.0	5,032	+131.5
				89.9		7.1		2.0		1.0
2008	630,087	+22.0	560,255	+20.6	52,266	+42.0	11,359	+11.1	6,207	+123.4
				88.9		8.3		1.8		1.0
2009	672,478	+ 6.7	592,965	+ 5.8	59,455	+13.8	12,045	+ 6.0	8,012	+129.1
				88.2		8.8		1.8		1.2
2010p	823,599	+22.5	746,346	+25.9	52,772	-11.3	15,957	+32.5	8,524	+ 6.4
				90.6		6.4		1.9		1.0

8) <http://www.kosis.kr>

<표 2-2> 사이버쇼핑 총 거래액<sup>9)</sup>

범위별	(단위: 십억 원,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3,347	6,030	7,055	7,768	10,676	13,460	15,766	18,146	20,643	25,155
증감율		+80.2	+17.0	+10.1	+37.4	+26.1	+17.1	+15.1	+13.7	+21.9
종합몰	2,260	4,389	5,108	5,621	7,415	9,571	11,122	12,964	15,445	19,042
증감율		+94.2	16.4	+10.0	+31.9	+29.1	+16.2	+16.6	+19.1	+23.3
전문몰	1,087	1,641	1,947	2,147	3,261	3,889	4,644	5,181	5,198	6,113
증감율		+51.0	+18.6	+10.3	+51.9	+19.3	+19.4	+11.6	+0.3	+17.6

## 2. 인터넷 서비스의 의의

### 가. 정보통신망과 인터넷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器機)·기술·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5호).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호,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11호).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1호). 결국, 정보통신망이란 유선·

9) <http://www.kosis.kr>

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 전기통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그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 정보)을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인터넷(Internet)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터넷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TCP/IP 프로토콜(protocol)에 기반을 둔 주소체계를 갖고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범세계적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미국은 연방법률에서 ‘인터넷’을 “기기(equipment) 및 구동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유·무선으로 모든 종류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TCP/IP를 이용하는 수많은 컴퓨터 및 전기통신설비 전부”로 정의하고 있다(15 U.S.C. 6501(6)).

#### 나. 정보통신서비스와 인터넷 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2호). 미국의 연방법률은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라 함은 전기통신(telecommunication)을 이용하여 유용한 정보의 생산·수집·저장·가공·처리·검색·활용 또는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의 제공을 말한다. 다만, 전자출판은 포함하지만 전기통신시스템의 관리, 통제 또는 운용을 위한 능력의 이용 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관리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다(47 U.S.C. 153 (20)). 이와는 달리 ‘인터넷 서비스’에 대하여 현행법은 아무런 정의도 하고 있지 않다. ‘인터넷 서비스’라 함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것은 콘텐츠의 제공이나 재화의 거래 등과 같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비롯하여, 앞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새롭게 출현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포괄한다. 그렇지만 인터넷 서비스에는 전기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즉, 물리적인

통신망을 설치·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을 근간으로 하여 전기적 통신을 매개하거나 활용하는 서비스, 예를 들면 음성정보제공서비스나 고도팩스 서비스 등은 제외한다. 2009년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기본법(시안)’에 따르면 “인터넷기반서비스라 함은 명칭이나 서비스의 방식을 불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매개하는 서비스, 재화 또는 서비스를 거래하거나 거래를 매개하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원격제공 등을 통하여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와 이상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전문기술·결제·인증·정보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인터넷접속서비스는 제외한다)를 말한다(제2조 제1호).

#### 다. 정보통신망과 인터넷의 관계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호,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11호). 정보통신망에 인터넷은 포함되지만, 인터넷이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을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활용되고, 인터넷 외에도 정보의 수집 등을 하는 정보통신체제가 존재하는 점 등을 볼 때,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와 ‘인터넷’ 또는 ‘인터넷 서비스’의 개념이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라. 부가통신 서비스와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대부분은 지금까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 사업자로 신고하여 영업하고 있다. 동법은 부가통신사업에 관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하고, 부가통신역무를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로 정의하고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4항, 제2조 제12호).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 가운데 음성정보제공, 고도팩스, 카드조회 등을 제외한 나머지 90% 이상의 사업자는 인터넷 서비스에 해당한다.

<표 2-3>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현황<sup>10)</sup>

구분	음성정 보제공	정보제 공(PC 통 신)	인터넷 서비스	고도 팩스	카드 조회	컴퓨터 예약 (CRS)	전자문 서교환 (EDI)	정보 처리	기타	계
사업자수	1,417	1,545	20,838	339	114	45	55	379	1,166	25,900
점유비(%)	5.5	6.0	80.5	1.3	0.4	0.2	0.2	1.5	4.5	100.0

### 3. 인터넷 서비스의 분류

#### 가. 통계청의 정보통신 기술산업 분류

##### (1) 한국표준산업분류 (2008)

신업활동분류 또는 생산활동분류<sup>11)</sup>는 생산활동에 관련된 각종자료를 종합하여 산업구조 및 산업간 상관성 분석에 필요한 산업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 틀로서 국제표준사업분류(ISIC: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EU의 유럽산업분류(Clas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 in the European Community) 등이 있다.

UN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하여 2007년 12월 28일 개정 · 고시된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정보관련 산업의 구조 변화 및 통합화 경향에 따라 서비스 부문에서는 여러 산업에 흩어져 있는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관련 산업을 하나로 묶어 별도의 대분류로 신설하였다. 그리고 제조업부문에서는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된

10) KISDI, 「통신시장분류제도 개선방안연구」, 2008;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기반 서비스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12, 24면.

11) “생산활동”이라 함은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원하는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을 생산,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과정을 말한다(황호을, 한국표준산업분류해설, (조세통람사:2000); 김정언 외 4인,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및 IT 산업분류체계 개선방향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7), 36면 각주 7.

산업 활동, 즉, 컴퓨터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을 하나의 중분류로 통합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설 대분류로서 전 산업에 흩어져 있는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관련 서비스 산업’, 즉, 출판, 영상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배급업, 방송업,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 서비스업을 하나로 묶어 대분류를 구성하였다. 특히 출판업에는 기존 출판영역 이외 프로그래밍(주문형)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출판(패키지형)이 포함되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문화율과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여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별도로 세분하였다.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세분류에서 시스템 및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신설하고, 하위에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업과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세분하였다. 기존 출판업에서 기록매체 출판업은 제외(59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배급업에 포함)하였으며 방송업에서는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방송을 고려하여 유선 및 위성방송업에 기타 방송을 포함하여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으로 조정하였다. 통신업에서는 법률에서 사용하는 부가통신업과의 개념이 불일치하고 조사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부가통신업을 삭제하였고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업과 유선전화 및 기타 유선통신업을 ‘유선통신업’으로 통합하였다. ‘정보서비스업’에서는 급변하는 인터넷 산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을 포털 및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으로 명칭을 바꾸어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다.

&lt;표 2-4&gt; 정보서비스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정보서비스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 비스업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자료처리업 <sup>12)</sup>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sup>13)</sup>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sup>14)</sup>
	기타 정보서비스 업	뉴스 제공업	뉴스 제공업 <sup>15)</sup>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sup>16)</sup>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sup>17)</sup>

- 12) 전산자료 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자료 입력 처리, OMR 및 OCR 자료처리, 자료 전환처리 서비스, 자료 스캐닝 서비스 등이 있다.
- 13) 웹호스팅 서비스, 서브호스팅 서비스, 코로케이션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웹호스팅 서비스, 서브호스팅 서비스, IDC 센터, 코로케이션 서비스 등이 있다.
- 14) 인터넷에서 검색, 커뮤니티, 전자메일, 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통해 금융, 생활정보, 뉴스, 이용자 제작콘텐츠 및 디지털화된 다양한 정보를 매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포털서비스,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등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구축하여 정보를 판매하는 서비스(63991),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상품소매(47911), 온라인상의 증권중개서비스(66121), 온라인상의 부동산중개서비스(68221), 온라인상의 인력알선서비스(7511)는 제외한다.
- 15) 신문 또는 정기 간행물의 발행사, 방송사, 정보제공업자 등에 뉴스리포터, 뉴스 사진 등을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뉴스 공급, 뉴스사진 공급 등이 있으며,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사업체의 일상적인 활동으로 수행되는 뉴스제공(5812), 방송사의 프로그램에서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뉴스제공(60), 자유기고가, 사진작가, 가사 작성자 및 만화가의 서비스(90132)는 제외한다.
- 16)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전화, 온라인, 디스켓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신용조사, 광고대리, 주식시세작성, 여행정보작성 등의 특정 산업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된다. 영상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제작사 제외), 학습정보 온라인 서비스, 음악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출판사 제외)가 있으며,

## (2) 정보통신기술산업 특수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정된 이후 OECD의 국제기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2003년 2월 1차 개정된 정보통신기술산업 특수분류를 개정하여 2010년 2월(v.1)과 2011년 4월(v.2)에 각각 공시하였다. 특수분류를 개정함에 있어서 통계청은 첫째, 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 및 OECD의 국제기준을 최대한 반영하고, 둘째, 우리나라의 특성 및 이용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며, 관련 통계 작성 또는 개발을 위한 활용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통계청은 ‘정보통신기술산업’(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을 2010년 OECD 과학기술산업위원회(STI Committee)의 정의에 따라 “주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전송 및 표시를 포함한 정보의 처리 및 통신기능을 실현시키거나 가능하게 하는 산업”으로 정의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대분류하고 분류의 완결성을 위하여 부호화하고 있다. 2010년 2월과 2011년 4월 각각 고시된 ‘정보통신 기술(ICT)산업 특수분류 v.1, v.2’에 따르면 OECD의 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 변경에 따라 콘텐츠미디어 산업을 정보통신기술산업과 구분하여 제외하고 있다. v.1과 v.2의 차이점은 분류의 완결성을 위하여 특수분류 내의 대분류(제조업, 서비스업)를 부호화하고, OECD 기준변경으로 v.2에서는 ‘(69390)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95122) 통신장비수리업’을 ‘유선통신장비, 방송장비, 이동전화기, 기타 무선통신장비를 주로 임대하는 사업체로 한정하였다. 그 밖에 OECD기준변경<sup>18)</sup> 또는 정보통신기술산업의 포괄범위 불일치<sup>19)</sup>로 일정한 산업을 삭제하였다.

---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63120)는 제외한다.

- 17) 정보를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 활동을 말하고, 게임아바타중개, 온라인게임아이템 중개서비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
- 18) OECD기준변경으로 인하여 삭제된 산업과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lt;표 2-5&gt; 정보통신기술(ICT)산업 특수분류 v.1 (2010. 2. 5.)

그 룹	KSIC	항 목 명
제조업	제조업	제조업
1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1-1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
1-1-1	30011	컴퓨터 제조업
1-1-2	30012	컴퓨터 기억장치 제조업
1-1-3	30013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1-2		사무용 기기 제조업
1-2-1	30021	복사기 제조업

산업 분류	항목명	비고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정보통신기술산업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범용성 제품이 대부분이므로 삭제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OECD 정보통신기술분류에서는 컴퓨터를 제외한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외
58211	온라인 ·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OECD 정보통신기술분류에서는 “콘텐츠미디어” 부문으로 분류
60100	라디오 방송업	
60210	지상파 방송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0222	유선 방송업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19) 삭제된 산업과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산업 분류	항목명	비고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ICT산업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범용성 제품이 대부분이므로 삭제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OECD ICT분류에서는 컴퓨터를 제외한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외
4731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 ICT상품만을 판매하는 소매업자에 대한 통계집계가 용이하지 않아 OECD에서도 제외
47312	통신기기 소매업	

그 룹	KSIC	항 목 명
1-2-9	30029	기타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기 제조업
2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1	31301	절연 금속선 및 케이블 제조업
2-2	31302	절연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3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1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1-1	32111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3-1-2	32112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3-1-3	32191	전자관 제조업
3-1-4	32192	인쇄회로판 제조업
3-1-5	32193	전자 축전기 제조업
3-1-6	32194	전자 저항기 제조업
3-1-7	32195	전자카드 제조업
3-1-8	32196	액정표시장치 제조업
3-1-9	321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2		통신기기, 방송장비 및 영상음향기기 제조업
3-2-1	32201	유선통신기기 제조업
3-2-2	32202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3-2-3	32300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4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4-1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외)
4-1-1	33211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4-1-2	33212	도안 및 제도기구 제조업
4-1-3	33213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4-1-4	33214	물질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4-1-5	33215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4-1-6	33216	기기용 자동조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그 룹	KSIC	항 목 명
4-1-9	33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4-2		산업처리공정제어장비제조업
4-2-0		33220 산업처리공정제어장비제조업
서비스업		
1		재화관련 서비스업
1-1		도매업
1-1-1	51891	컴퓨터 및 패키지소프트웨어 도매업
1-1-2	51893	통신, 경보 및 탐지용 장비 도매업
1-2		소매업
1-2-1	52514	통신기기 소매업
1-2-2	52631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소매업
1-3		임대업
1-3-0	7122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2		무형적 성격의 서비스업
2-1		전기통신업
2-1-1	64211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업
2-1-2	64219	유선전화 및 기타 유선통신업
2-1-3	64221	무선전화업
2-1-4	64229	무선후출 및 기타 무선통신업
2-1-5	64291	별정 통신업
2-1-6	64292	부가 통신업
2-1-9	64299	그 외 기타 전기통신업
2-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2-2-1	72100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2-2-2	72201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
2-2-3	72209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2-2-4	72310	자료처리업

그 룹	KSIC	항 목 명
2-2-5	72320	컴퓨터시설 관리업
2-2-6	7240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2-2-9	72900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2-3		수리업
2-3-0	92121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

주 1) OECD에서는 소매업을 제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포함

&lt;표 2-6&gt; 정보통신기술(ICT)산업 특수분류 v.2 (2011.4.1.)

그 룹	KSIC	항 목 명
1		제조업
1-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0-1		반도체 제조업
1-0-1-1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1-0-1-9	261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1-0-2		전자부품 제조업
1-0-2-1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1-0-2-2	26219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1-0-2-3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1-0-2-4	2622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1-0-2-5	26291	전자관 제조업
1-0-2-6	26294	전자카드 제조업
1-0-2-9	26296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1-0-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1-0-3-1	26310	컴퓨터 제조업
1-0-3-2	26321	기억장치 제조업
1-0-3-3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그 룹	KSIC	항 목 명
1-0-3-4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1-0-3-9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1-0-4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1-0-4-1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1-0-4-2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1-0-4-3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1-0-4-9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1-0-5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1-0-5-1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1-0-5-2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1-0-5-3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 제조업
1-0-5-9	26529	기타음향기기제조업
1-0-6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1-0-6-0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		서비스업
2-1		재화관련 서비스업
2-1-1		도매업
2-1-1-1	46510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2-1-1-9	46522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
2-1-2		임대업
2-1-2-1	6932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2-1-2-9	69390*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2-2		무형적 성격의 서비스업
2-2-1		전기통신업
2-2-1-1	61210	유선통신업
2-2-1-2	61220	무선통신업
2-2-1-3	61230	위성통신업

그 룹	KSIC	항 목 명
2-2-1-4	61291	통신 재판매업
2-2-1-9	61299	그 외 기타 전기통신업
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2-2-1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2-2-2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2-2-3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2-2-2-4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2-2-2-5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2-2-2-9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2-2-3		정보서비스업
2-2-3-1	63111	자료 처리업
2-2-3-9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2-2-4		수리업
2-2-4-1	95121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
2-2-4-9	95122*	통신장비 수리업

주 1) 분류체계 변경(3단계->4단계)

주 2) 2-1-2-9 및 2-2-4-9는 유선통신장비, 방송장비, 이동전화기, 기타 무선통신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체로 한정

#### 나.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서비스 분류

지식경제부는 정보통신서비스를 ‘기간통신서비스, 별정통신서비스, 부가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등 4개 부문으로 구별하고 각 부문별로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lt;표 2-7&gt;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서비스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간통신서비스	유선통신서비스	전화서비스
		전용회선서비스
		초고속망서비스
		전신·전보서비스
		기타 유선통신서비스
	무선통신서비스	이동통신서비스
		무선고정통신서비스(B-WLL)
		위성통신서비스
별정통신서비스	설비보유재판매	음성재판매
		인터넷전화
		국제회선재판매
		초고속접속서비스
	설비미보유재판매	재화금서비스
		호집중서비스
		인터넷전화
		무선재판매
		초고속접속서비스
구내통신		
부가통신서비스	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접속 및 관리서비스	인터넷접속기반서비스
		호스팅 및 관리서비스
	부가통신응용서비스	신용카드검색(CCIS)서비스
		전자지불서비스
		기타 부가통신응용서비스
	콘텐츠제공서비스	콘텐츠제공서비스(인터넷모바일)
		기타 콘텐츠제공서비스
기타 부가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지상파방송서비스	
	유선방송서비스	
	위성방송서비스	
	프로그램 제작·공급	

## 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인터넷산업분류체계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는 인터넷산업을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인터넷이 창출하는 기반산업, 지원산업, 활용산업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표 2-8> 인터넷산업분류체계<sup>20)</sup>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반산업	전송기기	VoIP, 영상전화기, 페어케이블 전송시스템, 동축케이블 전송시스템, 광전송시스템, 신호변환기, 다중화장치 등
	네트워크장비	유선NIC, 라우터, 네트워크용 스위치, 허브, 액세스포인트, 무선NIC, 케이블 모뎀, 일반가입자 모뎀, xDSL모뎀, 광모뎀, 네트워크 보안장비, 홈네트워크 장비 등
지원산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통신소프트웨어, 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 정보보호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관리 · 유지 보수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ASP서비스, SW 유지보수, 교육 훈련 등
활용산업	유무선접속서비스	ISDN, 인터넷전화, 전용회선서비스, 초고속망서비스, 무선 인터넷 서비스(WAP/ME), 무선고정통신서비스(B-WILL)
	네트워크접속서비스	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접속기반서비스, 호스팅서비스(웹서버, 스토리지), 코로케이션, 보안관리서비스, 도메인 관리서비스 등
	응용서비스	고도팩스, 신용카드검색(CCIS), 컴퓨터예약(CRS), 전자 문서교환(EDI), 원격통신, 전자지불, 온라인정보처리, 인터넷전자상거래)수수료 등
	콘텐츠제공서비스	인터넷포털, 인터넷방송, 온라인게임, 온라인교육, 디지털 출판물, 인터넷광고 등

## 라. 2010 한국인터넷백서의 분류

2010년 한국인터넷백서는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비지니스, 인터넷융합 서비스,

20)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내부자료, 2009;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한국인터넷백서, 345면 재인용.

공공부문 서비스' 등 4개 부문으로 구별하고 각 부문별로 인터넷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표 2-9> 인터넷 서비스의 분류

정보검색	
인터넷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이메일, 인스턴트메신저, 인터넷전화, 웹컨퍼런스, 통합커뮤니케이션
인터넷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UCC e-러닝 음악
	e-러닝
	인터넷뉴스 인터넷광고
인터넷비즈니스	커뮤니티 카페 클럽 블로그 SNS
	e-비지니스 전자상거래 금융거래서비스 SaaS서비스
	m-비지니스 m-콘텐츠 m-커머스 m-커뮤니케이션 유무선통합서비스
	IPTV 인터넷전화 WiBRO
인터넷융합서비스	대국민서비스 대기업서비스 정부간서비스
공공부문서비스	

마. UN 경제사회처통계국(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Statistics Division) 정보통신기술(ICT) 산업분류(2008)<sup>21)</sup>

최근에 정보경제(information economy), 즉, 정보통신기술산업 및 소위 콘텐츠와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국제산업표준분류(ISIC)에 따라 만들어 지거나 그 분류의 한 요소인 정보경제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여러 국제표준 산업분류 기관에서 분류되는 동안 정보경제 및 그 경계에 속하는 분류의 해석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ICT 및 “콘텐츠”(content)부문의 정의를 표준화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여 왔다. 이전에 사용되어 왔던 개념 정의는 정보사회지표작업반(the Working Party on Indicators for the Information Society)에서 심사되어 새로운 추천 안이 제안된 바 있다. 동 추천 안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경제활동인지 여부는 후보산업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이 주로 전송 및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처리 및 통신의 기능을 실현하거나 가능하도록 하는가에 따라 판단한다.<sup>22)</sup>

콘텐츠는 대중통신매체(mass communication media) 및 관련 미디어 활동으로 출판된 인간의 의도된 조직적 메시지(organised message)를 말한다. 소비자에게 그런 산출물의 가치는 유형적 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 교육적, 문화적 또는 오락적 콘텐츠에 있다.<sup>23)</sup>

---

21)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Statistics Division,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 Revision 4, Statistical Papers Series M No. 4/Rev.4, 2008, pp.277-278.

22) See Working Party on Indicators for the Information Society, INFORMATION ECONOMY. SECTOR DEFINITIONS BASED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ISIC 4), DSTI/ICCP/IIS(2006)2 /FINAL, 2007. 3.

23) Working Party on Indicators for the Information Society, INFORMATION ECONOMY. SECTOR DEFINITIONS BASED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ISIC 4), p.16.

&lt;표 2-10&gt; 정보통신산업분류 - ISIC Rev. 4

구 분	ISIC Rev. 4		
ICT 제조	2610	전자 부품 및 전자보드 제조	
	2620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2630	통신기기 제조	
	2640	가전제품의 제조	
	2680	자기(magnetic) 및 광학 매체의 제조	
ICT 거래	4651	컴퓨터, 컴퓨터 주변기기 및 소프트웨어 도매	
	4652	전자통신장비 및 부품의 도매	
ICT 서비스	5820	소프트웨어 출판	
	61 전기통신	6110	유선전기통신활동
		6120	무선전기통신활동
		6130	위성전기통신활동
		6190	기타 전기통신활동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자문(consultancy) 및 관련활동	6201	컴퓨터프로그래밍 활동
		6202	컴퓨터 자문 및 컴퓨터 설비관리활동
		6209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서비스 활동
	631 데이터처리, 호스 팅 및 관련 활동: 웹 포털	6311	데이터 처리, 호스팅 및 관련 활동
		6312	웹 포털
	951 컴퓨터 및 통신기 기의 수리	9511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수리
		9512	통신기기의 수리

&lt;표 2-11&gt; 콘텐츠 및 미디어 부문

구분		ISIC Rev. 4	
581	서적출판, 정기간행물 및 기타 출판활동	5811	서적출판
		5812	디렉토리 및 매일링리스트 출판
		5813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출판
		5814	기타 출판활동
591	영화, 비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활동	5911	영화, 비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활동
		5912	영화, 비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후 활동
		5913	영화, 비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배급 활동
		5914	영화상영업
592	음향, 녹음 및 음악출판 활동		
60	프로그래밍 및 방송활동	601	라디오 및 방송 활동
		602	텔레비전 프로그래밍 및 방송 활동
639	기타 정보서비스 활동	6391	통신사(news agency) 활동
		6392	기타 정보서비스 활동

#### 바. NAICS(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의 정보산업분류

NAICS는 1997년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회원국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채택한 산업분류방법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하여 유사프로세스를 사용하는 생산단위를 한데 묶는 단일경제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분류시스템이다. “정보화시대” 및 “세계 정보경제”(global information economy)라는 표현에는 모든 산업은 유용한 정보 및 정보기술을 이용한다는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주로 정보를 제조, 처리, 배급하는 산업을 포함한다. 정보부문은

① 정보 및 문화상품(information and cultural products)<sup>24)</sup>을 생산하고 배급하고,

24) 문화상품은 태도, 의견, 아이디어, 가치 및 예술가적 창조성, 오락 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및 과거와 현재의 분석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대량생산상품’(mass-produced products)은 물론 시, 문학잡지,

② 데이터 또는 통신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품을 전송하거나 배급하는 수단을 제공하며, ③ 데이터를 처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이 부문의 주요 구성요소는 소프트웨어출판, 전통적 출판 및 인터넷을 통한 출판을 포함하는 출판산업, 영상 및 음향 녹음산업, 전통적 방송 및 인터넷을 통한 방송을 포함한 방송산업, 전기통신산업, 웹검색포털, 데이터처리 산업 및 정보서비스산업이다. 정보 및 문화상품의 제조·배급의 고유한 특징은 정보부문을 상품제조 및 서비스부문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신문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같은 정보 및 문화상품은 반드시 유형적 품질(tangible qualities)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정 형태의 품질과 결합하지도 않는다. 영화는 VoD 또는 비디오가게에서 테이프를 빌려서 극장 또는 텔레비전방송으로 상영될 수 있다. 둘째, 전통적 서비스와는 달리 이러한 상품의 배달은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직접 접촉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셋째,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품의 가치는 배급되는 방식이 아닌, 정보 제공적·교육적·문화적·오락적 콘텐츠에 있다. 이러한 상품의 대부분은 저작권법에 따라 불법복제로부터 보호된다. 넷째, 무체재산으로서의 정보 및 문화상품은 일반적인 상품 및 서비스와는 다른 생산 및 배급 경로가 있다. 즉, 정보 및 문화상품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다는 것은 복제, 수정, 개선, 배급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더욱이 기술은 방송 또는 온라인을 통하여 이러한 상품의 배급을 혁신시키고 있다. 다섯째, 정보 및 문화상품의 배급자들은 자신들이 배급하는 상품에 대한 가치를 쉽게 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방송사는 이를 상품에는 본래 없었던 광고를 추가한다. 이것은 전통적인 배급자와는 달리 수익을 상품판매가 아닌 상품에 정보를 부가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한 사용료로부터 얻는다. 마찬가지로 디렉토리 및 메일링 리스트 발행자는 이전에 발행된 수 천 개의 신문 및 정기간행물 기사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고, 조사 및 검색을 쉽게 하기 위하여 검색 및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정보를 체계화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부가하고, 본래 정보보다 훨씬 높은

---

클래식음악 음반과 같은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제품도 포함한다.

가치를 받는다. 정보 상품의 배급방식은 전통적인 상품제조의 필요성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종래의 제조-배급 질서를 변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신문은 온라인으로 배급되고 지방 또는 소비자가 출력할 수 있게 되었고, 소프트웨어도 포장제품이 전통적인 판매망을 통하여 판매되었지만, 이러한 방식에서 벗어나 주로 온라인을 이용한다. 기타 정보서비스산업은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저장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를 검색하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엔진을 사용하여 웹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배타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콘텐츠를 출판하거나 방송하는 기관을 한데 묶는다. 주요 구성산업은 뉴스신디케이트, 도서관, 기록보관소, 배타적 인터넷 출판 및 방송, 그리고 웹 검색 포털이다.

&lt;표 2-12&gt; NAICS의 정보산업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51 정보	511 출판산업 (인터넷제외)	5111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및 디렉토리 출판업	51111 신문출판업
			51112 정기간행물출판업
			51113 서적출판업
			51114 디렉토리 및 메일링 리스트 출판업
			51119 기타 출판업
		5112 소프트웨어 출판업	51121 소프트웨어 출판업
	512 영상 및 음향녹음 산업	5121 영상 및 비디오 사업	51211 영상 및 비디오 제조
			51212 영상 및 비디오 배급
			51213 영상 및 비디오 상영
			51219 편집 및 기타 영상 및 비디오 산업
		5122 음향녹음산업	51221 녹음제조
			51222 통합녹음제조배급
			51223 음악출판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51224 음향녹음스튜디오 51229 기타 음향녹음산업
515 방송 (인터넷제외)	5151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51511 라디오방송 51512 텔레비전방송
	5152 케이블 및 기타 예 약프로그래밍		51521 케이블 및 기타 예약프로그래밍
517 전기통신	5171 유선통신업 5172 무선통신업(위성 제외) 5174 위성통신업 5179 기타 전기통신		51711 유선통신업 51721 무선통신업(위성 제외) 51741 위성통신업 51791 기타 전기통신
518 데이터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	5182 데이터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		51821 데이터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
519 기타 정보 서비스	5191 기타 정보서비스		51911 뉴스신디케이트(News Syndicates) 51912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 51913 인터넷출판 · 방송 · 웹검색포털 51919 기타 모든 정보서비스

#### 사. 통계표준분류 중 인터넷산업 분류

인터넷 서비스는 광의적으로 보면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서비스에서부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 진다. 즉,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한 인프라 서비스,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 인터넷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망라하는 의미로 이해된다. 통계청에서는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를 산업별로 구분하여 활용산업, 기반산업, 지원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활용사업이란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서비스로서 응용서비스, 콘텐츠 제공업, 인터넷 거래업, 기타 활용업으로 세분류하고 있다. 응용서비스에는

응용프로그램 임대업, 포털서비스, 인터넷통신서비스 등이 포함되면 콘텐츠 제공업에는 종합정보 제공업, 엔터테인먼트 제공업, 전문정보 제공업 등이 해당된다. 인터넷 거래업에는 B2C·C2C 상거래업, B2B 상거래업, B2G 상거래업 등이 포함된다. 인터넷 기반 산업으로 인터넷장비 제조업,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네트워크설비 임대·운영 대행업으로 세부 분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터넷 장비 제조업에는 단말기 장비 제조업, 네트워크장비 제조업 등이 포함되며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은 개발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이 해당 된다 보고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 설비 임대·운영 대행업에는 인터넷백본 임대업, 가입자 접속망 임대업, 설비대여 및 운영·대행업을 포함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지원 산업으로 시스템 구축업, 보안 솔루션 제공업 등 시스템 구축 및 솔루션 제공업과 컨설팅, 마케팅, 거래지원 서비스 등 컨설팅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2-13> 통계표준분류에 의한 특수 분류 중 인터넷산업 분류<sup>25)</sup>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반산업	인터넷장비 제조업	단말기 장비 제조업 네트워크장비 제조업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개발용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네트워크설비 임대·운영 대행업	인터넷백본 임대업 가입자접속망 임대업 설비대여 및 운영·대행업
	기타 기반업	기타 기반업
		시스템구축업
지원산업	시스템구축 및 솔루션 제공업	보안솔루션 제공업

25) [http://www.nso.go.kr/std2006/k07a\\_000/k07agi0000/k07agi0000.html](http://www.nso.go.kr/std2006/k07a_000/k07agi0000/k07agi0000.html).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활용산업	컨설팅 및 사업서비스업	상거래솔루션 제공업
		컨설팅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거래지원 서비스
	기타 지원업	기타 지원업
	응용 서비스	응용프로그램 임대업
		포털 서비스
		인터넷통신 서비스
	콘텐츠 제공업	종합정보 제공업
		엔터테인먼트 제공업
		전문정보 제공업
	인터넷 거래업	B2C · C2C 상거래업
		B2B 상거래업
		B2G 상거래업
		금융거래업
	기타 활용업	기타 활용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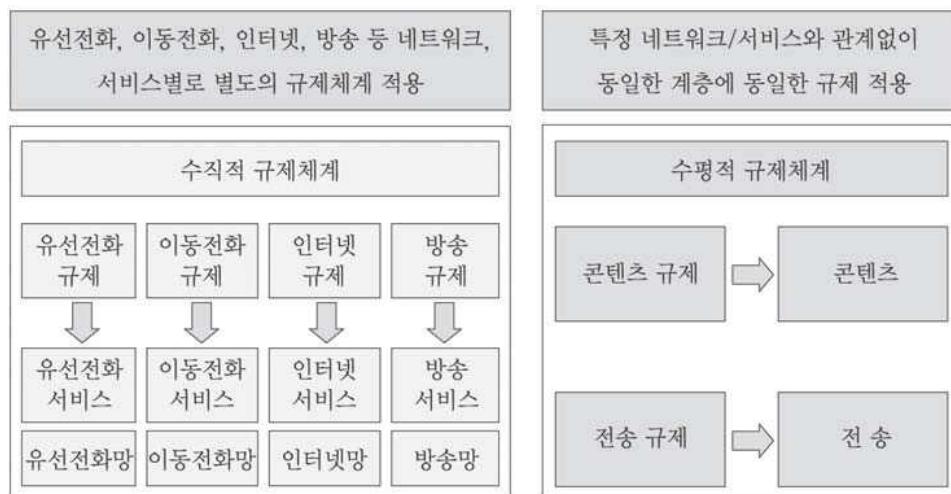
#### 4. 인터넷 서비스의 기능적 분류와 규율원칙

##### 가. 수직적 규제체계와 수평적 규제체계

방송·통신이 융합하면서 방송·통신의 각 사업영역별로 각각 규제를 받는 ‘수직적 규제체계’에서 벗어나 특정 네트워크 또는 서비스에 관계없이 동일한 계층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수직적 규제체계는 첫째, 융합 매체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규제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기존 규제기관간의 마찰이 발생하고, 둘째, 신규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새로이 정의·분류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규제를 선별하는 기간을 거쳐야 하며, 셋째, 신규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제정해야 하므로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고, 넷째, 임시적이고 반복적인 규제는 규제의 장벽을 높이고 규제의 일관성을 저해시켜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행정비용을 증대시키며, 다섯째, 융합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경쟁을 왜곡시키고 투자를 약화시키며 이용자 편익이 감소하고 규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림 2-7> 수직적 규제체계와 수평적 규제체계 비교<sup>26)</sup>



수평적 규제체계는 사업자별 규제, 즉 수직적 규제를 계층별 규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직적 규제체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하여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 융합매체에 대한 유연하고 즉각적인 규제 적용이 가능해지고, 둘째, 신규 매체의 분류를 둘러싼 규제기관별 갈등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수의 규제기관의 중복된 규제를 받는다거나 규제의 공백이 생기는 현상도 방지할 수 있으며, 셋째, 동일 콘텐츠에 대하여 서로 다른 규제를 받는 불합리성에서 벗어나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여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넷째, 이를 통하여 콘텐츠의 질적

26) 이상우 외 7인, 「통신방송 융합환경하의 수평적 규제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7.12), 36면.

향상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기회비용을 낮춤으로써 소비자복리에 기여할 수 있다.

#### 나. 인터넷 서비스의 기능적 분류안

인터넷 서비스는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그 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각 서비스별 특성에 맞는 규율체계의 정립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준에 의할 수밖에 없다. 산업분류의 목적은 통계적 목적 외에 각 산업유형별 법적 규율체계의 마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특히 법적 규율체계의 논의를 위해서는 기존의 정태적 분류 방법에서 벗어나 인터넷 서비스의 기능 또는 영향력 등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더욱이 인터넷 서비스는 방송·통신 융합 영역 이외에 실생활과 연결된 서비스, 기계와 연결된 서비스, 미디어기능과 결합한 서비스 등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넓어질 것이 명백한 현실에 비추어보면, 더욱 그러하다. 수직적 규제체계에서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현실을 토대로 인터넷 서비스를 그 기능에 따라 분류하고자 한다. 우선 인터넷 서비스를 ‘콘텐츠 서비스’와 ‘플랫폼서비스’로 대분류하고, 각 서비스의 구체적 기능과 특성에 따라 세부 분류를 하고자 한다. 세부분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서비스의 개방성·미래지향성·포괄성 등이 충분히 반영한다.

‘콘텐츠서비스’는 정보 또는 콘텐츠의 생성과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플랫폼서비스’는 정보 또는 서비스의 전달·중개 등의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콘텐츠서비스는 다시 ‘정보제공서비스와 인터넷거래서비스’로 구분하여, 전자에는 인터넷언론, 인터넷게임, 인터넷광고, 교육·오락 등 정보제공 서비스가, 후자에는 B2C, B2G, B2B 등의 서비스를 그 내용으로 한다. 플랫폼서비스는 그 기능에 따라 ‘인터넷접속 및 관리서비스, 인터넷거래지원서비스, 정보제공증개 서비스, 인터넷응용서비스’로 구분한다.

<표 2-14> 기능 중심의 인터넷 서비스 분류(안)<sup>27)</sup>

구분	서비스분류	서비스 내용	서비스 예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	인터넷언론	인터넷신문/인터넷정기간행물
		인터넷게임	MMORPG(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서비스
		종합정보	포털사이트
		전문정보	금융/경제/가정/생활/의료/법률
		오락정보	음악/영화/만화/소설
		교육정보	이러닝서비스 등
		인터넷광고	배너광고/팝광고
	인터넷거래 서비스	전자상거래(B2C)	인터넷쇼핑
		전자상거래(B2B)	기업간거래서비스
		전자상거래(B2G)	정부조달서비스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인터넷접속 및 관리 서비스	집적정보통신서비스	웹호스팅/서버호스팅/Co-location
		보안관리서비스	백신서비스/맬웨어방지서비스/SSL(Secure Sockets Layer)서버서비스
		도메인관리서비스	도메인등록관리
		홈페이지제작서비스	홈페이지제작
	인터넷거래 지원서비스	문서교환(EDI)서비스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지불서비스	전자화폐/온라인신용카드결제
		전자문서보관서비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인증서비스	전자서명 및 인증
		기타 온라인정보처리	온라인예약/정보처리
	정보제공 · 중개서비스	포털서비스	포털사이트
		전자상거래중개	오픈마켓
	인터넷기반 응용서비스	인터넷응용/융합서비스	SaaS, Open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27)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기반서비스 법제개선방안 연구」, 32면.

## 제 2 절 현행 인터넷 서비스 분류체계의 한계와 문제점

현행 인터넷 서비스 분류체계는 기기 및 네트워크, 네트워크 운용, 네트워크 활용의 3분류 하에 기존의 서비스를 분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류체계는 기존 정보화정책의 핵심이었던 하드웨어 인프라의 구축, 즉 하드웨어로서의 기기와 하드웨어로서의 네트워크의 구축을 중심에 두고, 이를 운용하거나 활용하는 산업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법제 체계도 하드웨어에 대한 규율 및 네트워크의 활용에 대한 규율, 개별적인 이슈나 특정 산업군을 위한 입법을 통하여 다수의 법률이 인터넷 서비스를 규율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시장상황은 하드웨어로서의 기기나 네트워크의 구축 자체보다는 이를 활용한 서비스 산업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다. 이에 의하면 하드웨어보다는 서비스, 특히 방송통신의 네트워크 레벨의 서비스와 이를 활용한 서비스로 대분류되고 있으며, 네트워크 레벨은 융합 및 접근성 확대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활용 서비스는 최소한의 규제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신규 서비스의 출현이 가능하게 하는 규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규제체계와 그 대상이 되는 서비스분류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가능한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의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변화에 대응하여 그 규율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분류도 그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하여 서비스분류에 따라 어떠한 규율체계의 규제를 받는지가 보다 명확해 지며,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서비스 분류체계는 신규서비스가 나오면 이를 기존의 서비스 분류체계 중에서 비슷한 분류로 포섭하거나 기타 활용업으로 구분하게 되어 실제의 서비스분류와 비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다.

### 제3절 인터넷 진흥을 위한 부처별 정책 추진의 개선 방향

#### 1. 인터넷 진흥을 위한 부처별 정책 추진 현황

##### 가. 법률체계

부처별로 인터넷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률은 인터넷 그 자체의 진흥을 위한 법률과 인터넷을 활용한 산업이나 활동 등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또한 공공분야의 인터넷 진흥을 위한 법률과 민간분야의 인터넷 진흥을 위한 법률로도 구분될 수 있다. 어떠한 구분이든 최근에는 인터넷 및 인터넷을 활용한 산업이나 활동의 진흥이 융·복합화되고 있으며, 민간과 공공 부문의 인터넷 진흥도 서로 연계되고 있다.

어떠한 구분에 의하든 인터넷의 진흥을 위해서는 그 국가적인 근간이 되는 정보화 추진이 필수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민간과 공공의 인터넷 진흥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기본적·기초적 법률로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동법은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현재 국가 사회 전반의 정보화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하에서 공공분야에서는 「전자정부법」과 「국방정보화 기반 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전자정부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민간분야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네트워크의 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 상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고 있다. 한편,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 하에서 방송통신의 규율을 위하여 「전기통신기본법」 및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규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고 있다. 사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보다 「전기통신 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이 훨씬 먼저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지만, 방송통신융합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인터넷주소자원을 적절히 규율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새로운 방송통신서비스의 규율을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제정되었다. 이외에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정보통신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監理)·유지관리·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시행되고 있고, 정보통신장치를 이용한 위치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적절히 보호하고 규율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민간분야의 또 다른 영역으로 전자거래 영역에서는 전자거래의 기반이 되는 전자문서에 관한 규정과 함께 전자거래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자거래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민간 분야의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이 제정되었다. 전자거래의 이행, 특히 금융결제의 법적 규율을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되었다. 전자무역의 촉진을 위하여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의 이용자 또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콘텐츠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디지털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한편 사법분야의 정보화를 위하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 나. 주요 법률에 따른 정책 추진 체계

##### (1) 공공부분

###### 1) 국가정보화 기본법

- o 소관부처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둔다.
-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한다.
- 임기: 2년
- 간사: 행정안전부장관
-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정보화전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 소속으로 안건 심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둈다.
- 위원회의 조정 기능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조정 요청을 받으면 이를 심의하여 그 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받은 조정 결과를 해당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위원회의 심의 기능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3. 제6조제4항에 따른 부문계획의 작성지침
4. 제8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의 조정
5.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 분석 및 점검
6.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식정보자원의 지정
7.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8. 「전자정부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9.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
10. 그 밖에 국가정보화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o 기본계획

-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1. 국가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 공공 분야의 정보화
3. 제16조에 따른 지역정보화
4.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분야별 정보보호, 국가정보화 기반의 조성 및 고도화
6.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7. 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 확립,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8. 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
9.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개선
10.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활성화
11.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2. 그 밖에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o 시행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위원회는 제출된 시행계획을 심의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o 정보화책임관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국가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

- 임무: 해당 기관의 업무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담당

1. 국가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국가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 공동 활용 방안의 수립
5.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활용
7. 정보화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 o 전문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 국가기관 등의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한다.
- 소관 사업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국가기관 등의 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의 지원
3. 국가기관 등이 보유한 주요 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표준화의 지원
4. 국가기관 등의 정보자원 관리 지원
5. 국가기관 등의 정보화사업 추진 및 평가 지원
6. 국가기관 등의 정보통신 신기술 활용 촉진과 이에 따른 전문기술의 지원
7. 정보문화의 창달과 인터넷 중독의 실태조사, 예방 및 해소 지원

8.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지원
9. 건강한 정보문화의 확립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
10. 국가정보화,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 분석, 미래예측 및 법·제도의 조사·연구
11. 국가정보화,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및 홍보
12.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13.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2) 전자정부법

### o 소관부처

- 각 중앙사무관장기관은 아래와 같다.
  -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 법원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 o 기본계획

-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1.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촉진
2. 전자적 행정관리
3.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확대 및 안전성 확보
4.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
5.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 6. 전자정부 표준화 및 공유서비스의 확대
- 7.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과 성과 관리
- 8. 그 밖에 전자정부의 국제협력 등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행정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o 소관부처

##### - 법무부

-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사소송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실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4)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 o 소관부처

##### - 법무부

-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리 신장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 시스템의 유통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및 전자화를 통한 형사사법절차의 개선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를 구성한다.

o 형사사법절차 전자화계획

1. 형사사법업무 전자화 추진의 기본방향
2. 형사사법업무 전자화 추진조직 및 체계에 관한 사항
3. 전자화 대상 문서 등의 선정·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 활용되는 형사사법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형사사법업무 전자화에 따르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전자화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정보공개, 정보보호 대책 등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의 전자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수립하는 국가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o 주무부처

- 법무부

·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의 이용·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법절차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 및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2) 민간분야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o 소관부처

- 지식경제부

### o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산업의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기술의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촉진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전문 인력(이하 “전문 인력”이라 한다) 양성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지식경제부장관은 진흥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o 시행계획

-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진흥계획에 따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기술 수준의 조사, 개발된 정보통신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다른 기술과의 결합 및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기술의 협력, 지도 및 이전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산학협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정보통신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o 전문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

1. 정보통신산업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2. 전문 인력 양성
3. 정보통신산업 육성·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사업
4. 정보통신기업의 창업·성장 등의 지원
5.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시장 활성화와 마케팅 지원
6. 정보통신산업 동향분석, 통계작성, 정보 유통, 서비스 등에 관한 사업
7. 정보통신기술의 융합·활용에 관한 사업
8.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9. 정보통신산업 관련 출판·홍보
1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소프트웨어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 나.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 및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11.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
  - 나.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에 따른 표준의 연구개발·보급사업 및 국제표준화 활동
  - 다. 「전자거래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기술개발의 지원
  - 라.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 업무에 대한 지원
  - 마.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8에 따른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업무에 대한 지원
  - 바.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9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전자문서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한 기술 등의 지원

- 사.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10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정기점검
  - 아.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15제3항에 따른 보관문서 등의 인수
  - 자. 「전자거래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1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에 따른 이러닝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연구
1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산업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산업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14. 그 밖에 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o 재원

- 정보통신진흥기금

· 기금의 조성

-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용자금
- 2. 제4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 3. 「전파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파수 할당 대가,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 및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 4.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 5. 차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소관부처

- 지식경제부장관
- 방송통신위원회

o 시책마련

-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시책에 포함될 사항

1.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
2.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3. 정보내용물 및 제11조에 따른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 활성화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
6.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처리·보관·이용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그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
7.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8.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9. 그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정보화 촉진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o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o 기본계획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복리 향상과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콘텐츠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사항)
3. 방송통신설비 및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무선 망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사항)
5.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성 확보에 관한 사항
7. 방송통신의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계획의 내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관련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o 재원

- 방송통신발전기금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한다.
  - 기금의 조성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전파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 같은 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
  4.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5.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기금의 운용: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o 전문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수탁업무

1. 법 제16조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관한 업무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업무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 활동의 지원업무
4. 법 제21조에 따른 방송통신 전문 인력 양성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4) 전기통신사업법

o 주무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5) 전기통신기본법

o 주무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전기통신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관掌한다.

o 시책의 수립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o 기본계획의 수립

-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사회의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전기통신의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사항
4.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사항
5. 전기통신기술(전기통신공사에 관한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기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6)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주무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 심의사항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기관 업무위탁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인터넷주소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5.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주요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o 기본계획

-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촉진 및 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2. 인터넷주소자원의 현황과 수급에 관한 사항
3.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인터넷주소의 사용자 보호와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5.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촉진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o 주무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방송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송의 공익성 보호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기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8)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주무부처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둔다.

• 심의사항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 행정안전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o 계획의 수립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종합·조정하여 소관분야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및 복구대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9) 정보통신공사업법

o 주무관청

- 방송통신위원회
- 정보통신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監理)·유지관리·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o 주무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위치정보심의위원회

-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공공목적의 위치정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하에 위치정보 심의위원회를 둔다.

• 심의사항

1. 위치정보의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2. 위치정보의 지원시책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3. 위치정보의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4. 공공목적의 위치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5. 위치정보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
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치정보와 관련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o 시책의 강구

-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공공목적을 위한 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 5.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에 관한 사항
- 6.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품질개선 및 품질평가 등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1) 전자거래 기본법

- o 주무부처
  - 지식경제부
  - 법무부
- o 계획의 수립
  - 정부는 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에 따라 전자거래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1. 전자거래촉진계획의 기본방향
- 2.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제규범에 관한 사항
- 3. 전자결제제도에 관한 사항
- 4.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5. 전자거래당사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6.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 7.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 8.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환경조성 및 수요창출에 관한 사항
- 9.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10.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반조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11.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전자거래촉진계획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o 전담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자거래와 관련된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수행

12) 전자서명법

o 주무부처

- 행정안전부

o 시책의 수립

- 정부는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 시책의 구체적 사항

1.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전자서명의 원활한 상호연동을 위한 정책 및 기술표준화에 관한 사항
3. 전자서명 관련 기술개발
4. 전자서명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전자서명의 이용확산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관계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전자서명 관련 단체의 지원 및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7. 인증업무와 관련된 가입자와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8. 외국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에 대한 상호인정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전자서명관련 산업육성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10. 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11. 전자서명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의 추진 및 통계·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2.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암호사용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이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13) 전자금융거래법

o 주무부처

- 금융위원회

-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4)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o 주무부처

- 지식경제부

- 국가전자무역위원회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전자무역위원회를 둔다.

· 소관사항

1. 촉진시책에 관한 사항
2. 전자무역 추진과 관련된 각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전자무역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자무역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o 시책

-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무역 촉진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촉진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전자무역기반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자무역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전자무역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전자무역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 전자무역에 관한 거래자 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 등에 관한 사항
7. 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o 주무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6) 콘텐츠산업 진흥법

o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둔다.
- 심의사항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조정
3.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
4. 콘텐츠산업의 지역별 특성화에 관한 사항
5. 콘텐츠산업에 대한 중복규제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o 기본계획

-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은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
|---|
| 1.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
| 2.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 3. 콘텐츠산업의 부문별 진흥 정책에 관한 사항              |
| 4. 콘텐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
| 5. 콘텐츠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
| 6.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
| 7. 콘텐츠 관련 산업 간 융합의 진전에 따른 콘텐츠 정책에 관한 사항 |
| 8.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
| 9.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 10. 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
| 11. 그 밖에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o 시행계획

- 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시행계획은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산업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o 재원

-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정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으로 이 법에 규정된 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o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o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 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의 의견을 들어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한국영화 진흥의 기본방향
2. 영화제작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제작기반 확충, 기술개발
3. 영화배급 및 상영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개발
4. 한국영화의 수출과 국제적 진출
5. 영화자료의 수집과 보존
6. 영화인력의 양성
7. 영화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확충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 방안
8. 영화의 국제교류 및 협력
9. 디지털시네마 진흥 기본방향, 디지털시네마 산업기반조성,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10. 영상기술 개발·표준, 디지털시네마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11. 그 밖에 영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시네마 발전을 위하여 기본계획의 기술표준, 품질인증,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영화업자 등 관련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기술표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o 전문기관

- 영화진흥위원회

-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둔다.

- 한국영상자료원

-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현·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을 둔다.

o 재원

-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을 설치한다.

- 기금은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계리하여야 한다.
- 기금의 조성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3.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 기금의 용도: 다음 사업에 사용

1.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2.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3.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4. 소형영화·단편영화의 제작 지원
5.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유지 및 개선 지원
6.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영화 관련

### 사업 지원

7. 한국예술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 영상문화의 다양성·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 8의2. 영상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지원
9. 비디오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사업 지원
10.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1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12. 그 밖에 영화산업 및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지원

## 2. 부처별 정책추진의 개선방향

### 가. 현행 정책추진의 문제점

#### (1) 법제 체계의 한계

종래 규제 체계는 물리적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전기적 신호에 바탕을 둔 서비스와 이를 활용한 서비스가 공존하여 전기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서비스가 혼동되고 있다. 기존의 기간통신, 별정통신, 부가통신의 분류는 물리적 네트워크의 접속 제공 서비스 및 전기적 신호의 활용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새로운 규제체계도 특정 서비스(예, IPTV)의 개방 혹은 폐쇄에 대한 규제가 주요 이슈가 된 반면, 현실에서는 시장 참여자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 사이의 융복합이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종래 규제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 정보통신망법이며, 정보통신망법에서 물리적 혹은 전기적 기반을 활용한 서비스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규율하고 있다 (예, 개인정보보호, 스팸, 불법정보유통규제 등). 그러나 종래 서비스분류에서는 인터넷과 관련하여 새롭게 출현한 다양한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지는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예, 플랫폼 서비스, 세컨드 라이프). 종래 규제체계에서는 물리적

네트워크에 대한 독점적 권리의 여부에 따라 규율의 정도 및 서비스 분류가 결정되어졌지만,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들은 그러한 독점성의 정도는 문제되지 않는다. 인터넷과 관련한 서비스에서는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기반으로 파생·생성된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하여 규율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 (2) 인터넷 진흥정책의 추진체계의 분산에 따른 문제점

### (가) 전문성 약화

인터넷 관련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미래 시장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국제적으로 치열한 경쟁에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데, 현재의 부처별 정책추진체계는 인터넷과 관련한 진흥정책의 추진을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시켜 놓았으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조정기능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산이 각 부처의 전문성 및 경쟁력을 바탕으로 실효성이 제고되었어야 하지만, 실제 인터넷 진흥정책의 적극적 추진이 분산되어 동력을 잃은 결과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 (나) 시장 변화에 대응에 대한 곤란

인터넷은 플랫폼, 기기, 서비스가 융복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인데, 이 각각에 대한 규율체계가 분산되어 있어서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다) 정책추진체계의 충돌

인터넷 진흥정책을 추진하는 각 부처의 경쟁을 통하여 실제 인터넷이 진흥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겠지만, 예를 들면 최근 전자거래기본법 전면개정 추진과정에서와 같이 특정 부처가 소관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요 개정 사항을 모두 누락시킨 것과 같이 인터넷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사이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효과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신속히 조정해줄 수 있는 기능이 현재에는 없는 실정이다.

#### 나. 개선방향

##### (1) 인터넷 진흥정책 추진체계의 일원화·집중화

기존의 수직적 규율 법제 체계로부터 수평적 규율 체계로의 변화가 요구·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인터넷 진흥정책도 각 규율 평면에 맞게 일원화·집중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점점 인터넷시장은 기기, 플랫폼, 서비스가 융복합되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게 각 시장영역을 적절히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인터넷 진흥을 추진할 수 있는 일원화·집중화된 추진체계로 개편되어야 한다.

##### (2) 인터넷 진흥정책 추진체계 상호 간의 불필요한 중복성 제거 및 조정기능 강화

인터넷 진흥정책 추진체계 상호 간에 동일한 사안임에도 소관별로 중복하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게 함과 동시에 부득이 각 부처별 전문성에 기하여 인터넷 진흥정책이 추진되더라도 각 부처의 권한 다툼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이고 시장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현실적인 조정이 가능한 정책추진부처가 설치되어야 한다.

### 제4절 국내 인터넷 이용활성화 및 진흥 관련 법제도 분석

#### 1. 현행 인터넷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주요 내용

##### 가. 인터넷 진흥 계획 수립 · 시행 규정

###### (1) 개설

표현의 자유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지난 수백 년 동안 사상과 의견을 표현하고 교환하는 주된 매체는 인쇄물에서 라디오·TV방송·인터넷 등으로 진화해 왔다. 이 과정에서 각국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는 표현매체의 기술적 진화에 대한 인식과 반응을 수용하여 자율과 규제를 병행하며 변화해왔다. 월드와이드웹 (WWW)이 구현한 인터넷<sup>28)</sup>은 이용의 편의성으로 인하여 모든 형태의 미디어를

웹으로 통합되도록 하였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 미디어를 자유롭게 전달함으로써 그동안 단순히 소극적인 정보의 소비자들로만 인식되던 이용자들을 적극적인 정보의 생산자로 변모시켰다. 인터넷을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들은 그 속도와 파급력 면에서 이전의 개인 간의 통신에 비해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개인 간의 순수한 통신형태는 여전히 사생활의 비밀의 영역이지만,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블로그(blog)나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발현되는 개인의 의견도 때로는 이전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버금가는 사회적 영향력을 획득하게 되었다.<sup>29)</sup> 이러한 인터넷의 중요성에 비추어 정보화와 인터넷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규정은 다양한 법률 체계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정보화관련 법률들은 다음과 같이 그 주무 부처가 변경되었다.

IT분야에서는 정보통신부의 국가정보화 기능을 행정안전부로 이관하여 전자정부와 국가정보화 추진체계를 행정안전부 위주로 개편하였다. 이는 참여정부시대 이래 전자정부와 국가정보화 추진의 주체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정보통신부가 지속적으로

28) 인터넷은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컴퓨터 네트워크의 집단을 서로 연결한 거대한 네트워크의 집합체, 즉 네트워크의 네트워크(network of network)이다. 이는 ‘다양한 형태(텍스트, 동영상 등)로 서버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서로 거미줄처럼 연결되도록 한다는 Hypertext 개념을 URL(Uniform Resource Locator)로 불리는 인터넷 정보의 주소(위치)표시방법,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로 불리는 컴퓨터언어,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로 불리는 통신규약 등의 기술들을 결합하여 구현한 것이다.

29) 한국광고주협회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2010년 미디어 리서치’결과에 따르면 Naver의 경우 영향력 부문에서 KBS와 MBC에 이은 3위를 차지하여 지상파 방송사인 SBS(4위) 및 주요 일간 신문인 조선일보(5위) 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도 부문에 있어서도 Naver(3위), Daum(6위), Nate(10위) 등의 대형 포털사이트가 SBS(4위), YTN(5위), 조선일보(7위), 중앙일보(8위), 매일경제(9위) 등 주요 방송사 및 일간 신문을 앞서고 있다. 특히 18세~29세 평가 집단에서는 Naver가 신뢰도 1위를 차지하는 등 점차 인터넷이 매스 미디어로 기능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충돌해 온 것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정보화추진체계를,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을 제정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의 전산화 문제의 주체를 행정안전부로 설정했기 때문에 양자 간에 지속적으로 관할권과 추진체계를 놓고 갈등이 계속된 바 있다.

지난 2008년 실용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국가사회 정보화와 공공정보화로 이원화된 정보화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정보화 정책추진의 초석이 놓여졌다. 2008년의 개정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시스템의 효율적도입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보격차해소법」,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의 법률들이 구 정보통신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되었다. 기타 다른 정보화 관련 법률들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되었다.

현행 인터넷 관련 법률은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별로 각각의 영역을 규율하고 있는 개별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표 2-15> 현행 인터넷 서비스 관련 법률 현황

법률	인터넷 서비스	관련 사업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정보제공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정보중개(포털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문서교환(EDI)서비스	전자문서중계자
	집적정보통신서비스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전자지불서비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	전자거래사업자
	전자문서보관서비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전자상거래중개	통신판매중개자

법률	인터넷 서비스	관련 사업자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지불서비스	결제수단발행자
	전자상거래(B2C, B2B)	전자상거래사이버몰운영자/사업자
	통신판매	통신판매업자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지불서비스	전자금융업자/전자금융보조업자/가맹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언론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사업자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인터넷 언론	인터넷신문사업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인터넷 언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인터넷게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오락정보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오락정보	디지털시네마
이러닝(전자학습)사업발전법	교육정보	이러닝사업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정보제공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사업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센서정보	위치정보사업자
	위치정보사업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인터넷광고	인터넷 광고사업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SaaS/ASP 서비스	소프트웨어사업자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문서교환(EDI)서비스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물류정책기본법	문서교환(EDI)서비스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자
전자서명법	인증서비스	공인인증기관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기기인증서비스	전파연구소장

법률	인터넷 서비스	관련 사업자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P2P 서비스	P2P 서비스 사업자
	웹하드 서비스	웹하드서비스 사업자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도메인관리서비스	인터넷주소관리기관(관리대행자)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보안관리서비스	정보보호컨설팅 전문 업체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서비스	부가통신사업자

## (2) 국가정보화기본법

먼저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화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국가정보화기본법」이다. 이 법은 정보화와 관련하여 정보화촉진 및 정보통신산업 육성과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근거법 중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 이 법은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sup>30)</sup> 이 법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개정한 것으로서 지난 2009년 5월 22일 행정안전부에 의해 전부 개정되어 2009년 8월 23일부터 「국가정보화기본법」<sup>31)</sup> 으로 명명되었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은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동조 제2항에 의하면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또한 이 법 제15조에서는 “국가기관등은 행정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 소관 업무

30) 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조 참조

31) 법률 제9705호, 2009. 5. 22. 전부개정, 시행 2009. 8. 23.

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공공영역에서의 정보화 추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에서는 “정부는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하여 기업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기반의 구축·이용 등 민간 분야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민간분야에서의 정보화 추진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 법에서는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에 걸쳐 정보이용의 건전성·보편성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인터넷 중독 예방, 웹사이트 접근성의 보장 및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실시 등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 제4조에 의하면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4조 제2항).

1.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
2.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3. 정보내용물 및 제11조에 따른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 활성화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
6.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처리·보관·이용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그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
7.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8.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9. 그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또한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4조 제3항).

#### (4)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제4조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사회의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전기통신기본법 제5조).

#### (5)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조).

이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점 분석·평가의 결과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타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계획 수립·시행과 관련된 규정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정보통신 산업진흥법	소프트 산업진흥법	콘텐츠 진흥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IP TV법	인터넷 서비스사업 기본법(안)
제5조(정보 통신 산업 진흥계획) 제6조(통계 의 작성) 제7조(정보 통신기술진 흥 시행계획)	제3조(국가 와 지방자 치 단체 의 책무) 제4조(기본 계획의 수 립 등)	제5조(기본 계획) 제6조(시행 계획)	제3조(게임 산업 진 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정보통 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제19조(콘 텐츠 사업 발전 시책 등)	제3조(정부 의 책무 등) 제33조(인تر 넷 서비스발 전 기본계획 의 수립)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온디콘법	공간정보 산업 진흥법	이러닝 (전자학습) 산업 발전법	국가정보화기 본법	지능형전력망 산업 육성 촉진 법(안)
제7조(방송통신 의 발전을 위 한 시책 수립) 제8조(방송통 신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 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 획의 수립 등)	제4조(공간정 보 산업 진 흥 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 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 획의 수립 등)	제6조(국가정 보화 기본계 획의 수립) 제7조(국가정 보화 시행계 획의 수립) 제31조(정보격 차 해소 시책 의 마련)	제4조(지능형 전력망 기본 계획의 수립) 제5조(지능형 전력망 시행 계획의 수립)

#### 나. 인터넷 실태 및 통계조사

인터넷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인터넷 서비스 관련 통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용자 피해, 기업간 분쟁 등이 나타났을 때 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기업 운영현황 등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하다. 또한 기존 서비스뿐만 아니라 신규 서비스가 시장과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통해 서비스 이용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 관련 통계와 평가자료 등을 인터넷 기업에게

제공하여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계조사나 실태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또는 서비스 관련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관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 요구권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부여하고, 해당기관의 협조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할 것이 요구된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매년 국가정보화의 동향과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제43조 2항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실태
2. 정보문화 시책의 추진 실태
3. 정보격차의 실태 및 해소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52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와 관련한 통계의 조사·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제8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별 시설현황·이용실적 및 이용자 현황과 요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통화량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통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와 별정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의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재원조달 및 확보

인터넷 서비스 산업기반의 조성과 바람직한 서비스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즉, 1) 인터넷 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 2) 인터넷 서비스 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 3) 인터넷 서비스 관련 인력의 양성, 4) 인터넷 서비스 산업의 기반조성, 5) 인터넷 서비스 사업의 창업지원, 6)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용관련 분쟁조정기구 운영, 7) 인터넷 서비스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8) 국제협력 등 인터넷 서비스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4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제6조 제3항 제11호에 의하면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바 그 중 ‘국가 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법 제36조(재원의 조달)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술협력·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정부는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에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밖에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다른 규정들에서도 인터넷관련 재원의 조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콘텐츠 진흥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 산업 진흥법	인터넷 서비스사업기본법(시안)
제36조(재원의 조달)	제8조(재원의 확보)	제11조(실태조사) 제12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제25조(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제26조(자산운용의 방법)	제40조(인터넷 서비스 통계 등의 실태조사)

또한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금출연과 활용을 위한 근거법률도 두고 있다.

정보통신 산업 진흥법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지능형전력망 산업육성 촉진 법(안)	인터넷 서비스 기본법(시안)
제41조(정보통신진흥 기금의 설치) 제42조(기금의 조성) 제43조(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제25조(기금의 조성) 제26조(기금의 용도) 제27조(기금의 관리·운용)	제9조(구축비용의 지원 등)	제50조(인터넷 서비스 발전기금의 설치)

#### 라. 인터넷 기반환경 조성관련 규정

##### (1) 인터넷 진흥 기반환경 등의 조성

먼저 「국가정보화법」 제2조에서는 이 법이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 윤리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국가정보화법 제4조 2~5항 참조). 또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6조에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 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도시에 대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조에 의하면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술협력·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는바, 정부는 이에 따라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에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정보통신망법 제6조 제1항).

이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18조에서는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의 조성 및 공급과 정보통신산업 기반시설의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인이 공동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법률들에서 다양한 인터넷 진흥관련 조항들을 발견할 수 있다.

정보통신 산업 진흥법	소프트산 업 진흥법	콘텐츠 진흥법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공간정보 산업 진흥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지능형전력 망 산업육성 촉진 법(안)
제18조(정보통신산업진흥 단지의 조성) 제19조(소프트웨어진흥 단지의 조성)	제5조(소프트웨어진흥 시설의 지원 등) 제6조(소프트웨어진흥 단지의 조성·조성)	제20조(협회의 설립)	제13조(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무선 망의 고도화) 제14조(방송통신기반시설 조성·지원)	제3장 공간정보 산업 기반조성	제16조(지역 정보화의 추진) 제17조(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제50조(광대역통합연구개발 망의	제12조(지능형전력망 실증단지) 제13조(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 제14조(행정상 특례) 제15조(조성

					구축 · 관리 등) 및 운영비의 지원) 제16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 17 조 ( 국 유 · 공유재산 의 사용 · 수 익허가 등)
--	--	--	--	--	--

## (2) 사회 문화적 기반환경 등의 조성(전문 인력의 양성, 일반인 교육 등)

## (가) 전문 인력의 양성

먼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조에서는 국가정보화법의 목적을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정보화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 향상에 있다고 보았다. 이 중 전문 인력의 양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특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1조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한 방송통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16조(전문인인력의 양성), 「소프트산업진흥법」 제10조(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양성) 등 아래와 같은 다양한 법률에서 전문 인력의 양성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 산업 진흥법	소프트 산업 진흥법	콘텐츠 진흥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 통신망법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지능형 전력망 산업육성 촉진 법(안)
제16조(전문 인력의 양성)	제10조(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의 양성)	제14조(전문 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 인력의 양성)	제1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제2항	제21조(방송통신 전문 인력의 양성 등)	제15조(공공 정보화의 추진)	제8조(연구개발의 지원)

### (3) 일반인교육

일반 국민들에 대한 교육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에 규정되어 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법 제35조 제1항).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법 제35조 제2항).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법 제35조 제3항).

### 마. 인터넷 관련 기업 지원 시책(세제지원, 산업촉진기금, 민관 정보 공동활용 체계 구축 등)

창의적인 인터넷 서비스의 지속적인 창출을 통한 산업기반의 강화를 위해 벤처 기업 등 신규 기업의 창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인터넷 서비스 산업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콘텐츠개발력과 상관관계를 맺고 있고, 대다수 사업자가 중소기업이어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 및 콘텐츠 개발에 많은 재정적·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부터 지원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창업 후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각종 지원이 필요하다. 이처럼 인터넷 서비스 사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창업에 필요한 법률·경영·기술 등에 관한 정보, 자금 및 인력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간접적 지원으로서 세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안이 효율적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서비스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기타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조세 감면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 요구된다. 인터넷과 관련하여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주로 세제지원, 산업촉진기금에 의한 지원, 민관정보 공동활용 체계 구축 등의 방법에 의한다. 현행 법률 중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7조(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제18조(지식·정보의 공유·유통), 제1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등에서는 정부가 민간분야의 정보화에 대한 지원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법률에서도 유사한 지원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 산업 진흥법	소프트산업 진흥법	콘텐츠 진흥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인터넷 서비스 기본법(시안)
제23조(기술지도)	제9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19조(중소콘텐츠사업자에 대한 특별지원)	제7조(협동개발 및 연구)	제12조(정보의 공동활용 체계 구축)	제41조(창업의 지원)
제22조(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18조(세제지원 등)		제13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제42조(세제지원 등)
제24조(각종 정보의 제공)					
제25조(정보통신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제18조(세제지원 등)					

전기통신 사업법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공간정보 산업 진흥법	이러닝 (전자학습) 산업 발전법	국가정보화기 본법	지능형전력망 산업육성 촉진 법(안)
제42조(정보의 제공)	제12조(방송통신 콘텐츠의 제작·유통 등 지원) 제14조(방송통신 기반시설 조성·지원)	제9조(융·복 합 공간정보 산업 지원) 제11조(재정 지원 등) 제20조(진흥시 설에 대한 지 방자치단체의 지원) 제22조(중소공 간정보사업자 의 사업참여 지원) 제23조(공간정 보산업진흥지 원기관의 지 정)	제19조(세재자 원 등)	제17조(민간 분야 정보화 의 지원) 제18조(지식· 정보의 공유· 유통) 제19조(민간기 관 등과의 협 력)	제9조(구축비 용의 지원 등) 제11조(세재자 원 등) 제14조(행정상 특례) 제15조(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 제16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17조(국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 가 등) 제24조(지능형 전력망 정보 의 제공 및 활용 등)

#### 바.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우리 현법상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경제질서, 즉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119조). 그런데 이러한 시장 경제질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자들간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헌법원칙에 따라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 거래법”) 제1조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과도한 경제력 집중의 방지를 방지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아래와 같이 다양한 법률에서 인터넷 분야의 공정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 (1)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IPTV법	인터넷 서비스 기본법(시안)
제32조(불법게임물 등 의 유통금지 등) 제33조(표시의무) 제34조(광고·선전의 제한)	제11조(공정한 경 쟁환경 조성)	제12조(공정경쟁의 촉진) 제13조(시장점유율 제한 등) 제14조(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제20조(콘텐츠 동등접근)	제34조(공정경쟁의 촉진) 제37조(전기통신설비 의 제공거부 등 금지)

### (2) 상생협력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

정보통신 산업 진흥법	소프트 산업 진흥법	콘텐츠 진흥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 사업법	국가정 보화기 본법	지능형전력 망 산업육성 촉진 법(안)
제 1 9 조 ( 유통구 조의 개 선 및 보 급 촉진)	제15조 (소프트 웨어 유통 활성화)	제21조(콘텐츠 거래사 실 인증사업의 추진) 제22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제23조(콘텐츠 식별체 계) 제24조(공정한 유통 환 경 조성 등) 제25조(표준계약서)	제9조(유 통질서의 확립)	제36조(가 입자선로의 공동활용) 제37조(무 선통신시설 의 공동이 용)	제 1 8 조 (지식 · 정보의 공유 · 유통)	제24조(지능 형전력망 정 보의 제공 및 활용 등) 제26조(지능 형전력망의 상호운용 성 보장)제2항- 사업자에게 상호 협력을 권고

### 사.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보호

#### (1) 인터넷 이용자 권리보호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와 이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 1) 이용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2)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여 혐오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이용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4) 다른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법률은 대표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4장과 제5장(제30조 내지 제44조의 10)에서 이용자의 권리와 아울러 정부의 이용자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법률에서도 이용자 보호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콘텐츠 진흥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IP TV법	전기통신 사업법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이러닝 (전자학습) 산업 발전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지능형 전력망 산업육성 촉진법(안)
제26조(이용자 보호시책 등) 제27조(청약 철회 등) 제28조(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14조(이용자의 권리보호) 제15조(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제32조(손해배상)	제3절(이용자의 권리) 제16조 (이용자 보호) 제32조 (이용자 보호)	제 16 조 (이용자 보호)	제 3 2 조 (이 용 자 보 호)	제4조(시청자와 이용자의 권리 보호)	제25조(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 등) 제26조(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제41조 (이용자 권리보호 등)	제25조 (지능형 전력망 정보의 보호 등)

## (2) 분쟁조정

국가 통신 산업 개방 과정에서 자주 일어나는 분쟁은 주로 경제적인 이익이 상충하는 당사자들과 관련되어 있다. 규제당국이 통신 시장에 견전한 경쟁을 증진 하려고 하는 것은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가져오려는 목적에서도 발생하지만 WTO, GATS 같은 국제 무역 의무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사회생활에 있어 갈등과 분쟁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간에 언제든지 발생하는 현대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성숙한 사회는 폭력이나 집단적 실력행사보다는 적정하고 효율적인 재판시스템 또는 재판외 분쟁해결 시스템에 의하여 갈등을 조절·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유형에 따라 크게 사전적 분쟁해결 방식과 사후적분쟁해결방식, 비소송적 분쟁해결 방식과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분쟁과 갈등은 당사자 간의 단순한 협상이나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양자의 중간영역에 속하는 조정 등 재판에 의하지 않는 방식을 통하여 해결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당사자 간의 분쟁을 재판이라는 일도양단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전문적인 일반 민간인이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가는 '한정된 법발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운용할 수 있고, 당사자들은 소송에 따른 시간과 재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재판에 의하지 않는 '대안식 분쟁해결'은 통상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의 약자로서 '재판외 분쟁해결',<sup>32)</sup> '판결이외의 분쟁해결',<sup>33)</sup> '대체적 분쟁해결'<sup>34)</sup> 등으로 번역

32) 김유환, 법원에서의 행정사건에 대한 재판외분쟁해결제도, 현대 공법학의 과제 (청담 최송화교수 화갑기념논문집), 2001, 738면 이하 참조.

33) 사법연수원, ADR(판결 이외의 분쟁해결제도), 서울: 사법연수원, 2004 참조.

34) 행정학자들 중에는 ADR을 '대체적 분쟁해결'로 번역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김준한, 행정부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한국행정학보 제30권 제4호, 1996, 37면 이하; 오세덕, 행정부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행정논총 제12권 제1호, 1999, 1면 이하, 하지만 김용섭 교수는 법원 판결 이외의 분쟁해결제도가 대부분 보충적인 역할을 할 뿐이므로 사법부의 판결을 '대체'한다고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의문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김용섭, 행정법상 분쟁해결수단으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재판외 분쟁해결제도’라고 번역하기로 하되 AD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ADR은 첫째, 법원의 혼잡과 소송에 따른 비용부담 및 소송지연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 둘째, 분쟁해결과정에서 공동체의 개입을 증가시킴으로써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선례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이에 의하여 분쟁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당해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일반인이 중간 매개인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사회정의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sup>35)</sup>

현행 인터넷 서비스를 둘러싼 분쟁해결제도 역시 재판에 의한 것과 대안식 해결방법이 있는 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법률의 규정을 통해 이해관계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콘텐츠 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이용자 보호시책 등)	제14조(이용자의 권리보호)	제46조(분쟁의 알선)
제27조(청약철회 등)		
제28조(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 아. 민간 자율규제의 육성

인터넷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사업자 중심의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시장진입규제를 완화하고, 법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서비스제공을 보장하며,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제반 설비를 정비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사업자에 대한 책임의

---

로서의 ADR, 저스티스 제81호, 9면 참조.

35) S. Goldberg et al. Dispute Resolution, Boston: Little Brown, 1985, pp. 5; J. Liebermann/J. Henry, Lesson from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ovement,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Vol. 53, 1986, pp. 425-426.

경감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시장질서를 해치지 않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업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 산업을 육성·발전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율적인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터넷 서비스사업법 시안 제5장(자율규제의 촉진)에는 인터넷사업에 있어서의 자율적인 발전과 정부와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 자. 표준화 및 인증기관의 지정 등

표준화는 기술공유를 통한 효율성 증대 및 기술통합을 통한 개발과 경쟁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급격히 발전하는 인터넷 관련 기술을 표준화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표준화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하고 호환성을 보장하여 융합적 인터넷 서비스의 제공도 증대될 수 있다. 이처럼 인터넷 서비스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제품 등의 표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서비스 관련 표준을 제정·채택한 경우에는 고시하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준수를 권고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과의 중복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KS 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표준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소요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터넷 서비스의 안정성, 이용자의 권익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운영이 우수한 인터넷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인증제도를 통하여 우수한 인터넷 서비스의 개발을 장려하고 사업자의 이미지 개선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간접지원하며, 이용자에게는 이러한 우수 서비스를 널리 알려 이용자 편의를 증대시킴으로써 인터넷 서비스 시장을 전반적으로 활성화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인증을 위한 평가는 우수 인터넷 서비스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고, 효율적인 인증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우수 인터넷 서비스의 인증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운영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인증제도 운영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수 인터넷 서비스로 인증 받은 사업자에게는 단순한 상징적 의미의 간접혜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인센티브로는 1) 우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인증내용 표시와 홍보의 인정, 2) 우수인터넷 서비스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지원 및 우수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현행법상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한 여러 법률에서 우수한 ‘사업자’ 또는 품질 등에 대한 인증제도를 두고 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전자거래기본법은 우수 사업자에 대한 인증을, 온디콘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이더링산업발전법은 품질에 대한 인증을, 그리고 산업표준화법은 서비스 인증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인증제도의 중복으로 인한 이용자의 혼란과 사업자의 다수 인증획득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인증의 상호인정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에서 표준화 및 인증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 산업 진흥법	소프트 산업 진흥법	콘텐츠 진흥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망법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이더링 (전자 학습) 산업 발전법	국가정보 화기본법	지능형 전력망 산업육성 촉진 법(안)	인터넷 서비스 사업 기본법 (시안)
제 1 2 조 ( 정보 통신 표준화 의 촉진) 제 1 3 조 ( 정보 통 웨어 표	제 1 3 조 ( 품질 인 증) 제 1 2 조 ( 소프트 웨어 표	제 1 6 조 ( 표준화 의 추진)	제8조(표 준화 의 추진)	제8조(정 보통신망 의 표준 화 및 인 증) 제9조(인 증)	제 1 0 조 ( 방송 통신 망 의 표준 화 및 인 증) 제 2 8 조	제 1 1 조 ( 표준 화 신 지 의 추진) 제 2 8 조 ( 품질 인증)	제 2 1 조 ( 표준화 의 추진) 제 1 2 조 ( 이더링 인터넷 인증)	제 2 6 조 ( 표준화 의 추진) 제 2 6 조 ( 지식 정보 보장) 제 1 항 제 1	제 3 8 조 ( 인터넷 서비스의 표준화) 제 3 9 조 ( 우수 인

신표준의 제정 및 인증) 제 14 조 (정보통신 기술등 의 인증 지원) 제 15 조 (정보통신 표준의 국제표준 화 촉진)	준화의 추진)		증기관의 지정 등)	(기술기 준) 제 33 조 (표준화 의 추진)	등)	표준화)	호, 제2호- 지능형전 력망 기 술표준의 제정 및 시행	터넷 서 비스의 인증)
---	------------	--	---------------	---------------------------------------	----	------	---	--------------------

### 카. 국제협력

인터넷은 프로토콜 규약과 웹브라우저만 일치하면 전 세계 어떠한 컴퓨터와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간적 폐쇄성은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인터넷 관련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국제협력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논의되어질 수 있다. 첫째, 국제협력을 위한 조직 또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국제기준 또는 표준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법제는 규제의 범위, 정도, 수단 등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상호주의의 원칙을 벗어나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국제적 마찰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발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적 기준을 활용하는 것과 아울러 국제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협력이 필요하다.

현행법 중 국가간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24조(국제협력)의 규정이 있다. 이 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국가정보화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정부는 국가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국가정보화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4.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평가
5.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6. 정보문화 창달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7.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라고 규정하여 인터넷 서비스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법률에서 국제협력을 위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정보통신 산업 진흥법	소프트산 업 진흥법	콘텐츠 진흥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망법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이러닝 (전자학습) 산업 발전법	국가정보 화기본법	인터넷 서비스 기본법 (시안)
제17조(정 보통신 산 업의 국제 협력 추 진)	제16조(국 제협력 및 해외 진출 촉진)	제17조(국 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제10조(국 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제62조(국 제협력) 제63조(국 외 이전 개인 정보 의 보호)	제23조(방 송통신 국 제협력) 제24조(국 제 협 력 등)	제24조(국 제 협 력)	제43조(국 제 협력)	

#### 파. 관계기관간 산업발전 추진 및 위원회

인터넷 산업은 다양한 산업과 학문분야에 걸친 매우 복잡하고 유기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 따라서 정부부처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화기본법」 제8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8조 제1항).

기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장에서는 추진체계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동법 제5조에서는 온라인디지털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능형전력망 산업육성 촉진 법(안)」 제6조에서는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시 관련 기관간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한계와 문제점

### 가. 부처간 기능중복과 정책의 혼선의 문제

인터넷 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와 상호 융·복합화되면서 그 종류와 범위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세계화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의 핵심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sup>36)</sup> 2008년 정부는 ‘6대 분야 22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발표한 바 있다. 그 중에는 시스템, 서비스 플랫폼, 휴대용 멀티미디어 융합단말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고객에게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무선통신’, 기존의 전통신사업과 IT 산업간 융합을 통하여

36) 2004년 ‘디지털 TV/방송,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 콘텐츠/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을 포함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하여 지원을 한 바 있다. 그 결과 ‘디지털 TV/방송’ 분야에서는 지상파 DMB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신호를 송수신하는 양방향 T-DMB 송수신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양방향 서비스를 지원하는 콘텐츠 저작도구, 방송서버, 수신단말기 등이 개발되었다.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초고속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50Mbps급 와이브로 시스템이 등장했고, 통신기능과 방송기능을 동시 지원하고 이를 이용한 융합 서비스도 제공하는 통신방송 융합 홈서버가 개발됐으며, HD급의 고화질 VOD 및 IPTV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자용 통합 홈서버도 등장했다. ‘디지털 콘텐츠/소프트웨어 솔루션’ 분야에서는 크로스플랫폼 게임 기술을 적용한 캐주얼게임 엔진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했고, 디지털 영상 분야에서는 배우를 대체하는 디지털액터 기술이 주연급 배우에게도 적용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전통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IT 융합산업’, 방송통신 융합미디어는 방송통신 콘텐츠, 서비스, 네트워크, 단말기 등을 포괄하는 산업으로 인터넷 TV, 휴대방송 등 서비스 융합, 통신·방송 인프라 통합, 단말기의 융복합화 등 융합 환경 변화를 선도하는 ‘방송통신융합미디어’, 건강 유지, 질병의 예방, 경감, 치료를 위해 적용되는 과학 및 기술상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를 위한 IT 기술 개발 등을 위한 ‘헬스케어’,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산업을 육성하여 차세대 인터넷산업을 선도하고, 실감형 첨단 교육 콘텐츠 제공을 위한 u-러닝 시범사업 및 실감형·맞춤형 u-러닝 학습엔진을 개발하며, 양방향 인터액티브 콘텐츠기술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유형의 융합형 콘텐츠의 제공 등을 하는 ‘문화콘텐츠’가 포함된다.

이와 같은 신성장 동력은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상거래에 한정된 인터넷 서비스를 쌍방향·맞춤형·융복합 서비스로 진화하게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생활영역의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 그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고, 인터넷 서비스의 고도화·다양화로 플랫폼 기능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다. 이러한 미래수요에 대비하고 인터넷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가에 의한 사업자 중심의 수직적 규제체계에서 벗어나 서비스·이용자 중심의 수평적 규제체계에 부합하는 산업 진흥 및 활성화 정책의 수립·집행이 필수적이다. 현행법은 정부주도의 정책이 수립되고 있어서 규제의 폭이 확대되어 있다. 그 결과 급격히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잉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정부주도’의 정책이 아닌 시장중심의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정책 수립·집행권을 한 부처가 총괄·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고 조직이 개편되고 그에 따라 정책의 기조가 변화하였다고 추진하던 정책을 포기 내지 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은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확한 미래예측을 통하여 실현방법과 수단을 선택하여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일정기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인터넷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사업자

중심의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시장진입규제를 완화하고, 법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서비스제공을 보장하며,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제반 설비를 정비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사업자에 대한 책임의 경감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시장질서를 해치지 않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업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 산업을 육성·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담당기관에서는 급격히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미래를 예측하여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이를 산업화 할 수 있는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인터넷 서비스가 점차 국제화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관련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별 진흥시책, 인터넷 서비스 사업의 창업·성장 지원, 인터넷 서비스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활성화, 인터넷 서비스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어야 한다.

#### 나. 신규서비스에 대한 규율 공백의 문제

현재 지속적으로 일대 불특정다수의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인 방송영역에 ‘한정성을 가지는 방송’<sup>37)</sup>영역이 나타나고, 반대로 일대 일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이해되는 통신에 ‘공연성을 가지는 통신’<sup>38)</sup>영역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 유형에 대하여는 ‘방송의 자유의 제도적 보장’ 내지 ‘통신의 비밀 보장’이라는 기계적·도식적인 기본권 개념을 적용하여 규제수준을 정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외견상 정책기관 간의 관할권 다툼으로 보일 수도 있는 논쟁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교차영역에서의 규제수준을 정하는 문제이다. 급변하는 매스커뮤니케이션 사회 속에서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방송개념의 상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 매체를 한정적으로 방송이나 통신으로 일의적으로

37) 가령 지하철방송, 철도방송, 선박방송 등.

38) 가령 홈페이지의 개설, 게시판 또는 공개 채팅룸의 이용 등.

규정하지 않고 그 기술적 특징만을 규정하여,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유형의 방송 기술도 방송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디어의 개념을 개방적·역동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디어 관련법은 탈규제와 경쟁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기업간·매체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고 정보이용자가 자율적·능동적으로 정보를 선택·형성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정보자율결정권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고, 미디어간의 매체적 특성이 사라져 가는 미래의 멀티미디어 사회에서도 기본적으로 대중매체인 방송과 통신을 구별하면서도 양자에 속하지 않는 미디어서비스들을 규율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당해 서비스가 방송, 통신, 멀티미디어서비스 중 어떤 영역에 속하는지에 관하여는 공적 의견형성에 있어 가교적 역할과 당해 서비스의 사회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원래 방송이나 통신의 영역 어느 한편에 속할 수 없는 미디어적 속성을 가진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어느 한 쪽의 서비스로 인위적으로 양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국제경쟁력을 상실할 위험성이 있다. 또한 방송과 멀티미디어서비스 개념의 개방적 성격으로 인하여 개별 서비스에 대한 법 적용에 있어 구체적인 분류의 기준이 모호하여 전자정보 및 통신서비스의 발전에 따른 기술적·경제적 발전에 상응하는 법질서의 형성이 극히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미 인터넷망을 통하여 ‘방송네트워크’와 ‘통신네트워크’의 구별이 어려워지고 있고,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향후 ‘통합형 네트워크’로 단일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당해 커뮤니케이션 참가자의 서비스의 이용형태, 기능 및 사회적 여론형성력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별로 ‘방송’ 또는 ‘통신’의 영역에 속하게 되어 그 규제수준을 개별 서비스 군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여론형성력’이 인정되는 서비스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방송에 가해지는 규제를, ‘사회적 여론형성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매우 약한 서비스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통신에 가해지는 규제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개별 서비스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서비스 별로 차별화된 규제수준을 유지하면서, 당해 매체의 사회적 여론 형성력에 대한 정기적·장기적인 연구를 통하여 규제 수준을 조절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분리하는 헌법원칙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의 단행법적 규제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 다. 국내법의 역외적용상의 문제

현재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의 등장으로 인하여 국경을 초월한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이 활발해진 것에 비례하여 사회상규와 공공질서에 반하는 다양한 음란·폭력 콘텐츠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유선인터넷의 경우에도 국경을 초월한 음란·폭력물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지만 가정과 학교 등에서 계도와 일정 부분의 감시가 가능하였다. 또한 현재 이용되고 있는 무선휴대전화의 경우에는 국가 내에서만 이용될 수 있을 뿐 해외에서의 이용은 요금과 네트워크 기술상의 문제 때문에 로밍서비스를 통하여 해외의 인터넷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다. 반면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널리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국내 청소년들은 언제, 어디서나 이를 통하여 음란·폭력물에 접속하고 이를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성인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정도만 알면 성인용 콘텐츠 역시 아주 손쉽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이용증가로 인하여 향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들이 언어와 국경의 제약 없이 이용되게 될 가능성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의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내의 규제법규를 회피할 목적으로 서버를 해외에 두고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거나 국내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하는 것이 법이론적·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경우에는 현재 해외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사이트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적인 방식에 의한 차단이 가능하지만 서비스규제문제가 더욱 복잡하고 난해하여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입법적·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되는 인터넷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들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를 차단하거나 사업자를 처벌하는 결정을 하여도 이를 구체적으로 집행할 방법이 없으며, 국제적인 협조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특히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규제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규제가 구조적으로는 유사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점과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터넷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이 구조적으로 동일하고, 현재 국내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유해 정보에 대하여는 시정요구(해당정보의 삭제,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이용해지)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이 가능하다. 반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유해정보에 대하여는 시정요구(접속차단) 결정을 통하여 국내 ISP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차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방식에 의한 유해정보의 차단이나 개인정보보호 유출의 문제 역시 (이론적으로는)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라. 자율규제의 육성과 지원 규정의 미비

인터넷은 매체 속성상 규제행위가 어렵기 때문에 규제의 문제가 논의될 때마다 자율규제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물론 쌍방향성·개인성을 가지는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정책이 기존의 방송에 적용되는 전파의 희소성에 근거한 공익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우며, 바람직스럽지도 못하다. 그동안 대중매체를 대상으로 시행되어오던 타율규제로는 인터넷을 규제하기가 더욱 어렵다. 기술적인 측면과 아울러 쌍방향 매체의 특성상 규제의 주체 자체가 불명확하여 규제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반대로 현행 법규의 체계상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들은 그 사회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모두 통신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통신에 적합한 규제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 역시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의 제공행위는 물리적으로만 파악하면 인터넷방송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통신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중매체적 성격을 가진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통신만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현행법의 체계상 만일 인터넷을 통한 모든 콘텐츠의 제공행위를 통신으로 본다면, 이러한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경미한 사업을 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속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인터넷을 통한 모든 종류의 방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들이 설립 등에 있어 전혀 규제를 받지 않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자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영향력과 매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터넷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행위 중 기존의 방송규제와 유사한 규제를 받아야 하는 유형이 어떤 것인지, 반대로 통신과 유사한 규제를 받거나 통신의 일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인터넷상의 구조규제·내용규제에 대한 논의는 단시일 내에 종료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인터넷의 발전과 영향력의 증대에 비례하여 인터넷에 대해 자율규제와 타율규제를 혼합한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인터넷이 쌍방향적·개인적 성격의 매체이기는 하지만 대중 매체적 성격을 가지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개인적 정보유통의 도구로서의 성격에 기초한 규제보다도 더욱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 인터넷상의 서비스들에 대해 규제 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보다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향후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아우르고 급격한 인터넷 기술과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자율규제의 제도화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일정 자격을 가진 민간 기구에게 자율규제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 규제를 통한 산업활성화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국제적 신자유주의 조류와 현 정권의 ‘작은정부’ 기조에 부합하는 자율규제 영역을 확산함과 동시에 국제 인터넷 기술발전 및 표준 선도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증진을 기하는 방향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 마. 인터넷 관련 주체들 간 역할분담 형평성의 문제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들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행위 규제를 위해 특정한 금지행위<sup>39)</sup>를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IPTV법」 및 「공정거래법」 등의 공정경쟁을 위한 금지행위 규정을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아직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 대한 면밀한 시장조사와 자료축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엄격한 공정경쟁 입법은 자칫 규제의 양산과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경쟁상황평가’를 통하여 시장의 불공정 행위유형과 정도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적인 조사와 자료축적이 있는 이후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특성에 적합하고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규제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그리고 부당한 행위를 통하여 이용자의 권익<sup>40)</sup>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시장의 경쟁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상황평가’와 함께, ‘서비스 영향평가 보고서’ 등을 주기적으로 발간하여 시장경쟁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어려움을 피함과 동시에 예상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폐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게

39) 예컨대, 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을 위해 1) 플랫폼 서비스의 제공 거부(거래의 부당한 거절 금지), 2) 플랫폼 서비스의 거래에서 다른 콘텐츠 사업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대가나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차별금지), 3)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여 인터넷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불공정 수익배분 금지), 4) 다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한 계약 및 거래조건을 강요하거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우월적 지위남용 금지) 등의 행위유형을 생각할 수 있다.

40)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1) 이용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2)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이용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4) 다른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다.<sup>41)</sup>

공정경쟁 환경의 조성은 인터넷 서비스의 다양화와 품질고도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 불공정경쟁 환경의 지속은 시장환경을 경직시켜 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이용자의 다양한 선택권과 잠재적인 혜택을 제약할 수 있다. 최근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한 사업체의 부당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관련된 사례가 자주 제기되고 있다.

해외의 ‘Google/Double Click 사례’에서는 기업결합을 통하여 플랫폼의 지배력을 다른 곳으로 전이할 수 있는 유인과 능력을 형성하여, 구글의 검색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광고시장으로 부당 전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국내에서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대형 검색포털이 가격비교 서비스로 진출하여 기존 가격비교 부문 경쟁 사이트에 방문자가 급감하거나 사업을 중지하는 사례 등이 발생한 바 있다.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 있어서도 신규 서비스 사업자가 시장을 선점한 사업자들에 의해 불합리한 피해를 당하지 않고 유효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장상황에 적합한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가 어느 정도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후발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어 시장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인터넷 공정경쟁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양면시장 등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고 이에 부합하는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시장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한 시장의 지배력이 연관 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 바. 인터넷 침해에 대한 국제협력의 문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인터넷의 속성상 한 국가의 인터넷정책은 국경을

41) 유사사례로, 미국 통신법은 연방커뮤니케이션위원회(FCC)로 하여금 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경쟁현황 파악을 위해 매년 경쟁상황을 분석하도록 규정(변정우 외, 「주요국의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제도현황 분석」, KISDI 이슈리포트, 2006).

넘어서는 사실상의 효용력이나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인 활동의 효율적인 제어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수적이다. 이와 같이 현재 지역적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인터넷 공간의 특징에 근거하여 현재 세계적으로 공동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보급을 통해 인터넷의 이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전자상거래, 의료, 연구, 교육 등 각 방면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보호 및 정당한 정보 유통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인터넷 공간에 대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공동규범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의 자율적이고, 개방적이면서도 국경이 없는 구조에 대응하여 국제적 수준의 규제방안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의 콘텐츠들에 대한 심의의 기준을 통일하려는 국제적 노력은 매우 미약하고, 향후에도 거의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다양한 세계 각국의 심의규정을 통일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것이다. 국가간에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및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유지 등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규제의 이유가 되는 다양한 근거의 철학적·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형별법규가 아닌 일반 심의규정을 통일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다른 국가가 인터넷 서비스사업자들 콘텐츠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 단순히 표현의 자유에 그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사업의 경제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공의 제약이 없는 서비스를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를 통한 표준화, 호환성 등에 대해 어느 분야보다도 많은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의 안전하고 건전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DDoS 공격 등의 불법적인 범죄 등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공동으로 대응체계를 강구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산업의 발전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인터넷의 국제적 속성으로 인터넷 관련 법적이슈는 일국의 노력에 의해 해결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국제적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의 기반마련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인터넷 관련 법률의 역외적용 이슈에 대한 국제적 공조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국가와의 역외적용 상호인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글로벌 인터넷 이용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 글로벌 거버넌스 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제3장 주요국의 인터넷 진흥정책과 법제도 분석

### 제 1 절 인터넷 서비스 시장과 진흥 법제의 통합의 국제적 경향

미국의 경우 그간의 인터넷 정책변화와 이에 근거한 법률이나 규제의 변화과정을 인터넷의 태동기인 1990년대 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는 크게 3단계로 대별된다. 초기 1단계인 Internet Policy 1.0 단계에서는 모든 인터넷의 비약적 발전은 주로 미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이끌어 왔으며, 미국정부는 자율규제 하에서 개개인의 창의성이 발휘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 불간섭정책(leaving the Internet alone)을 취해 왔다. 그러나 제2.0시기인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인터넷은 엄청난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혁신을 이루어 내었으나, 인터넷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 시기에는 인터넷을 통해 이와 같이 노출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의 무제한적인 정보수집과 같은 정보보호도 큰 문제로 제기되었다. 개인이나 기업의 보안문제와 저작권의 침해문제에 대한 많은 입법적 논의가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급속한 기술의 발전에 맞는 적정한 대안이나 해결책은 마련되지 못했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정부로 하여금 새로운 인터넷 정책의 필요성을 시켰고, 이에 따라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그간의 인터넷정책에서 완전히 벗어난 소위 “인터넷 정책 3.0(Internet Policy 3.0)”이라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이 제시된 3.0 시기에는 사이버 보안법 및 과세금지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망중립성에 관한 법안, 정보보안 및 사이버보안, 초고속망 구축이 주요 논의대상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초고속망 인터넷과 상호 운용적 적용에 기한 디지털 역내시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경제적·사회적 유용성을 도출을 한 아젠다를 제출을 통하여 유럽이 당면하고 있는 재정적·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유럽연합이 직면하게 될

향후 수십년의 도전에 대비하고 있다. 독일은 공공부문 및 전자정부의 효율적이고 목표를 지향하는 IT 발전을 위한 요건과 구조를 마련하는 한편, 초고속망의 구축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 및 계획안정성을 창출하고 장래의 망에 있어서 차별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유럽통신지침을 독일국내법으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다.

영국의 인터넷 진흥정책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서비스 등의 시장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방송통신 융합에 있어 선도적인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방송통신 인프라 구축을 핵심적인 정책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영국 정부는 정보통신 인프라 재정비 및 디지털 콘텐츠 육성 등을 통해 미래 디지털 지식경제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보편적 서비스로써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영국 전역에 제공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 네트워크 제공을 위한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의 인터넷 진흥법이 갖는 궁극적인 목표는 자국의 주요 산업인 각종 지식자산의 보호와 육성에 두고 다양한 부속 법률들이 200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되는 과정 속에서 인터넷에서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논의 또한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다.

일본에서의 인터넷 진흥을 위한 정책과 법제도는 통신·방송의 통합법체계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일본은 통신·방송의 통합의 상황에서 종래의 8개의 법률로 통신과 방송을 분리하여 규제하는 세분화된 법체계가 일본의 정보화사회 촉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 아래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종래 통신·방송 관련 8개 법률을 4개로 통합하는 수준에서 법체계 정비를 구축하고 있다.

## 제2절 주요국의 인터넷 진흥정책과 법제도의 내용분석

### 1. 미국

#### 가. 개관

미국의 경우 인터넷 이용자의 수가 2000년 3천6백만에서 2010년 2억으로 불과 10년 사이에 5.6배 증가하였다. 웹브라우징, e-commerce, 소셜네트워크 등으로 불 붙은 모든 인터넷 혁명은 주로 미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이끌어 왔으며, 그 동안 미국 정부는 민간영역에서 이러한 성과달성을 위한 기초마련을 정책적 목표로 삼아왔다. 1990년 초 미국은 지금의 인터넷의 기반인 컴퓨터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상용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미국에서 인터넷이 상용화 되고 중요한 경제발전 수단으로 인식이 팽배해지자 수많은 법안이 제안되고 논의되어 왔다. 인터넷 진흥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과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인터넷만이 진정한 발전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두 입장이 팽팽히 양립하였으며, 양쪽 다 물리설 수 없는 논리로 무장하였다.<sup>42)</sup> 그럼에도 최근까지 미국정부는 자율규제 하에서 개개인의 창의성이 발휘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 불간섭정책(leaving the internet alone)을 취해 왔다.<sup>43)</sup> 이러한 미국정부의 일관적인 불간섭정책에 대해서 미국정부 스스로는 인터넷 태동시기에 접어들고 있는 세계 각국이 선택 가능한 롤모델로 평가해 왔다. 그러나 인터넷이 널리 상용화 된지

42) 인터넷 상용화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터넷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인터넷 검열, 사이버 테러, 불법콘텐츠의 유통 등)가 생길 때마다 제각각 발의된 법안들은 상·하원에서 합의되지 못하고 회기를 넘겨 자동폐기되고 있으며, 회기를 거듭하면서 유사한 법안이 새로운 국회에 다시 상정되고 폐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제정된 법은 그 동안 제기된 법안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43) Lawrence E. Strickling, Assistant Secretary of Commerce for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2010년 2월 24일 연설중에서.  
<http://www.ntia.doc.gov/speechtestimony/2010/remarks-assistant-secretary-strickling-media-institute>

20년이 지난 현재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그간의 인터넷정책에서 완전히 벗어나 소위 “인터넷 정책 3.0(Internet Policy 3.0)”이라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인터넷 정책 3.0(Internet Policy 3.0)은 이전과는 달리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 정책에서는 미국정부와 다른 국가 간, 또 중요 인터넷 구성원들과의 협력을 통한 정보보호, 어린이 보호, 사이버보안, 저작권과 인터넷 거버넌스와 같은 이슈들과 관련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법제나 규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인터넷 정책방향의 전환은 사이버결제, 해킹으로부터의 인터넷 보호, 망중립성 문제 등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에서는 미국에서 시행되어 왔던 그간의 인터넷 정책변화와 이에 근거한 법률이나 규제의 변화과정을 인터넷의 태동기인 1990년대 초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를 주요정책변경 시점별(인터넷 1.0에서 인터넷 3.0까지)로 구분하여, 미국의 인터넷 진흥정책의 특징과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 나. 인터넷 정책 1.0 (1990-2000) : 인터넷 상용화의 전환기

이 시기는 최초로 상용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고 그야말로 창고 방에서 월드 와이드웹(WWW)이 구상되고 만들어진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을 일컫는다. 인터넷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던 시기였으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인터넷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 당시 정부 정책도 인터넷의 무한한 성장을 위하여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는 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핸드오프(hand-off)정책이 지금의 인터넷의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낸 원동력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 (1) 클린턴 정부의 세계 전자상거래 기본원칙

당시 미국의 불간섭 인터넷 정책은 1997년 인터넷에 의한 국제 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클린턴 정부가 발표한 ‘세계 전자상거래 기본원칙(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기술에 기반을 둔 경제적

성장을 중요시 하였던 클린턴 정부가 인터넷 상거래와 관련하여 제시한 정부의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① 인터넷 구축은 민간이 선도하며;
- ② 인터넷 상거래와 관련된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며;
- ③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거래를 위한 지원을 목표로 상거래를 함에 있어 예측 가능한, 최소한, 일관된 그리고 단순한 법적 환경을 만들며;
- ④ 정부는 인터넷 고유의 특성을 인정해야 하며;
- ⑤ 인터넷 상거래는 범세계적인 기반으로 촉진되어야 한다.

요약하자면 ‘세계 전자상거래 기본원칙’은 인터넷의 상거래 활성화를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는 배제하고 인터넷의 규율은 단일 국가가 아닌 세계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으로는 인터넷과 관련된 관세와 세금, 전자지불체계(electronic payment systems), 전자상거래를 위한 미국상법(Uniform Commercial Code for Electronic Commerce), 지적재산권의 보호, 보안(security), 통신망체계 및 정보기술(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and information technology), 콘텐츠, 기술기준(technical standards)과 같은 중요한 이슈들이 설정되었다. 클린턴 정부는 이러한 이슈들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면서 인터넷 공간은 규제되지 않는 영역으로 보고자 시도하였다.

## (2) 인터넷 정책 1.0 시기에 제정된 주요 인터넷 진흥 법제

세계 전자상거래 기본원칙의 발표 이후 10년 동안 미국정부의 인터넷정책은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며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는 국가정책의 시행을 자제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불간섭 정책은 이미 미국의 초기 라디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나 컴퓨터에 대한 1966년 Computer I Inquiry<sup>44)</sup>에서

---

44) 1966년 시작된 Computer I inquiry는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에 적용되어야 할 규제권한의 본질과 범위가 무엇이고, 일반 통신사업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

볼 수 있다. 미국은 초기 발전단계의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그 매체와 기술의 발달을 도모해 왔다. 동 원칙의 시행으로 인터넷 과세 금지법 (Internet Tax Freedom Act)이 제정되었으며, 순수한 전자거래행위(electronic transactions)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을 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이버스페이스의 무관세지역(duty-free zone in cyberspace)으로 만들자는 제안에 따라 132개국의 WTO 회원국들에 의해 잠정협의가 맺어지기도 하였다.<sup>45)</sup> 1999년에 연방기관에 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민간분야에 전자서명의 도입을 촉구하는 전자서명법(The Digital Signatures Act)의 도입도 이러한 정책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처럼 1.0 시대에는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려 한 시기로 인터넷 서비스에 관한 정부의 규제 법안이 거의 없는 대신, 개인의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몇몇 법안이 제정되었다는 점이 특색이 있다. 여기에는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hild Online Protection Act), 정부문서감축법 (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 성적 포식자로부터 어린이 보호법 (Protection of Children from Sexual Predators Act), 신원절취 및 사용억제에 관한 법 (Identity Theft and Assumption Deterrence Act), 차세대인터넷연구법(Next Generation Internet Research Act) 등이 있다.

#### 다. 인터넷 정책 2.0 (2001-2009) : 혼란기

- (1) 인터넷성장에 따른 문제점 노출과 세계 인터넷자유법(Global Internet Freedom Act) 제안

---

내지는 보호장치 하에서 데이터 프로세싱을 하도록 허용할 것인 가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것으로, 이로부터 이후 1996년 통신법의 통신서비스 (telecommunications service)와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에 대한 구분이 이뤄지게 된다.

45) "Electronic Commerce: Internet Exempt From Customs Duties But Not From VAT," *European Report* No.2318, May 27, 1998.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인터넷은 엄청난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혁신을 이루어 냈다. 미국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수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 가정의 70%에 다다른 인터넷 보급률은 그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 속에서 인터넷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채 끊임없이 제시되게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시 대통령 집권 2기인 2005년부터 의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던 인터넷 자유(internet freedom)에 대한 이슈는 Yahoo가 중국 정부에게 반정부인사의 이메일을 공개한 것이 계기가 되어<sup>46)</sup> 미국 의회가 세계 인터넷 자유법안(Global Internet Freedom Act)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의회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일어났으며, 2006년 부시 행정부는 세계 인터넷 자유 태스크포스(Global Internet Freedom Task Force)를 구성하여 인터넷 검열에 대응하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sup>47)</sup> 이 시기에는 인터넷을 통해 이와 같이 노출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의 무제한적인 정보수집과 같은 정보보호도 큰 문제로 제기되었다. 개인이나 기업의 보안문제와 저작권의 침해문제에 대한 많은 입법적 논의가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급속한 기술의 발전에 맞는 적정한 대안이나 해결책은 마련되지 못했다는 정부 스스로의 평가가 향후 새로운 인터넷 정책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46) "Yahoo Chief Apologizes to Chinese Dissidents' Relatives," *The New York Times* (7 November 2007), <http://www.nytimes.com/2007/11/07/business/worldbusiness/07iht-yahoo.1.8226586.html>.

47) U.S. Department of State, *State Summary of Global Internet Freedom Task Force* (20 December 2006), <http://www.america.gov/st/democracyhrenglish/>  
이와 같은 인터넷 자유를 위한 미국의 노력은 오바마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지속적인 인터넷 정책의 일부이다. 2010년 미 국무성은 인터넷 자유 태스크포스를 "망자유(NetFreedom)" 태스크포스로 재조직화하고, 전 클린턴 미대통령에게는 인터넷 자유 촉진을 위한 팀을 구성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상의 자유를 위한 적극적인 정치적 노력을 기하고 있다.  
2006/December/20061220173640xjsnommis0.7082331.html.

## (2) 인터넷 정책 2.0 시기에 제정된 주요 인터넷 진흥 법제

인터넷 정책 2.0시기에 미국에서 인터넷과 관련되어 의회에서 논의되어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안은 아래의 표와 같다.

&lt;표 3-1&gt; 인터넷 정책 2.0 시기에 제정된 주요 인터넷 진흥 법제

	법 명
1	밀레니엄 디지털 상거래법안(Millennium Digital Commerce Act, P.L. 106-229),
2	컴퓨터 범죄집행법(Computer Crime Enforcement Act, P.L. 106-572)
3	인터넷 허위신분방지법(Internet False Identification Prevention Act, P.L. 106-578)
4	온라인 아동보호법(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P.L. 106-554)
5	사이버 무단점유방지 소비자보호법(Anticybersquatting Consumer Protection Act, P.L. 106-113)
6	인터넷 세금 비차별 법(Internet Tax Nondiscrimination Act, P.L. 107-75)
7	사이버 보안교육 강화법(Cyber Security Enhancement Act, P.L. 107-296)
8	e정부법(E-Government Act, P.L. 107-347), 스팸규제법(CAN-SPAM Act, P.L. 108-187)
9	온라인상 사기 신원표시 제재법(Fraudulent Online Identity Sanctions Act, P.L. 108-482)
10	PROTECT Act(Section 108, Misleading Domain Names on the Internet, P.L. 108-21)

이 시기에 제정된 법률과 더불어 1996년 통신법의 개정, 브로드밴드 인터넷의 접근보장과 규제, 디지털 텔레비전으로의 전환, 주파수와 무선망의 관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무선망 보안, 인터넷보안, 스파이웨어 등과 같은 이슈들도 크게 다루어졌다. 2.0 시기의 특징은 많은 논의와 법률제정 시도가 있었으나 인터넷발전과 더불어 나타났던 문제점에 대한 명백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안고 있었다.

라. 인터넷 정책 3.0 (2010- 현재) : 적극적인 정부개입을 통한 인터넷의 진흥  
 인터넷 정책 3.0 시기에 접어들면서 2000년대 초반의 인터넷 성장이 가져온 사회적 변화에 대해 이제 미국은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으로 대응할 시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책적 선회의 가장 큰 이유는 인터넷이 미국의 경제적, 사회적 혁신의 원동력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인터넷과 초고속망의 확산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여 왔다. 취임 이후에는 건강, 에너지나 교육과 같은 중요한 사회기반의 인터넷 의존성을 인식하여 의료기록의 전자문서화, 국가광대역망계획(NBP), 망중립성 정책 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미국정부의 인터넷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의지가 단순히 앞으로 인터넷을 규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하기는 아직 이르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인터넷, 특히 초고속망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를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터넷 기업들과도 협의의 형식 뿐만 규제기관인 FCC나 FTC의 권한을 내세워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인터넷 시장의 형성에 개입 할 것이라는 것이다.

#### (1) 2010 Cyberspace Policy Review

2009년 2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가 사이버공간의 보안, 안정 및 완전성(integrity)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연방정부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60일간의 검토를 지시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나 그 밖의 민사법적인 자유를 유지하면서 인터넷의 기반을 보호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sup>48)</sup> 여기에서 주로 다루어진 내용은 국민 개개인의 디지털정보의 보호 및 인터넷을 이용한 국가안보의 위협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위한 선제조치로서 2009년 2월 ‘미국 재생 및 재투자법(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sup>49)</sup>을 제정하여 인터넷 관련 예산을

---

48) Obama orders 60-day cybersecurity review, <http://www.scmagazineus.com/obama-orders-60-day-cybersecurity-review/article/127141/>

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와 같은 2010 사이버보안 정책 검토의 결과로 인터넷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안 및 보고서가 발간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성과 및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 가) 재생 및 재투자법(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미국 재생 및 재투자법은 역대 경기부양법 중 최대 규모인 총 7,870억 달러로 상무성, 국토안보부 등 각 분야에 걸쳐 연방조세나 실업수당의 확대와 같은 사회 복지에 관한 예산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에너지, 통신 분야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동법에 따라 상무부의 14개 산하기관 중의 하나로 주요 하부 집행기관들과 더불어 연방정부와 국제간의 통신과 정보기술에 관한 사항을 통괄하는 미국 통신정보관리청(NTIA: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과 미국 농무성인 USDA(US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Rural Development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기관 RUS(U.S. Department of Agriculture's Rural Utilities Service)는 미국 전역의 초고속망 보급을 촉진시킬 수 있는 7.2억 달러의 기금을 배정받기도 하였다. 이 기금은 초고속 기술 기회제공 프로그램 (Broadband Technology Opportunities Program)을 위해 사용되며, 이 프로젝트에서는 초고속망 기반구조, 서비스의 보급, 전국적으로 초고속망의 효율성과 이용 가능한 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초고속망 현황 지도 (Broadband Inventory Map)를 마련하고 있다.

#### 나) 사이버 ID 인증 시스템 정비를 위한 국가전략

지난 2011년 4월 미국 상무부는 ‘사이버 ID 인증 시스템 정비를 위한 국가전략 (the National Strategy for Trusted Identities in Cyberspace : NSTIC)’이라 불리는 ‘싱글 사인 인(Single Sign In, 이하 SSI)’ 온라인 보안시스템을 개발하였다.<sup>50)</sup>

---

49) Pub.L. 111-5

50) SSI는 한번의 로그인으로 해당 기술과 연동되는 모든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SSI는 한번의 로그인으로 해당 기술과 연동되는 모든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온라인 쇼핑이나 스마트폰·PC 등을 사용할 때 매번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 기존의 간단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이뤄진 패스워드는 해킹이 용이하여 피해가 많았으나 SSI의 활성화가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세금이나 퇴역 군인에 대한 연금 지급, 국립공원 내 캠프장 예약 등의 행정 서비스에 먼저 도입되어 실시될 예정이다.

#### 다)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전략

지난 2011년 5월에는 사이버보안에 대한 총체적인 법제정 제안과 함께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전략(an International Strategy for Cyberspace)’이 발표되었다.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전략은 7가지의 정책적 우선과제를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은 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이노베이션과 무역을 장려; ②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강화; ③ 필요한 경우 국제법규의 강화나 규제를 통해서라도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법집행; ④ 군사네트워크를 보호함과 동시에 미국의 동맹국과 같이 사이버 협박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협력; ⑤ 네트워크가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개방된 인터넷 거버넌스의 구축; ⑥ 새로운 동반국들의 디지털 기반 구축을 지원하여 이들이 사이버 협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 ⑦ 인터넷 자유이다.<sup>51)</sup> 힐러리 클린턴 국무 장관이 발표한 본 내용은 미국이

---

시스템으로, 전자 패스워드 발행장치나 IC카드, 지문해독장치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51) 미국 백악관, International Strategy for Cyberspace 내용:

- ① Economy: Promoting international standards and innovative, open market;
- ② Protecting our networks: Enhancing security, reliability, and resiliency;
- ③ Law enforcement: Extending collaboration and the rule of law;
- ④ Military: Preparing for 21st century security challenges;
- ⑤ Internet governance: Promoting effective and inclusive structure;
- ⑥ International development: Building capacity, security, and prosperity;

앞으로 인터넷 질서를 구현하는데 국제적인 협력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 라) 사이버보안법제의 제안

2010년 5월 사이버보안에 대한 종제적인 법제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 이후 미국 하원과 상원에서는 사이버에 관련된 50개 이상의 법안이 제안되었다. 하원에서도 많은 법이 제안되었고 상원에서도 많은 법안이 나오고 있으며 논의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백악관에 정부와 민간기관을 연결하는 사이버보안 담당비서를 두도록 하는 법안 (Rockefeller & Snowe 상원의원안), 2009 사이버보안법(The Cybersecurity Act of 2009)과 같이 상원에서 제안된 법은 대통령에게 민간영역의 인터넷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례 없던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동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민간 네트워크를 ‘중요기반시설 또는 네트워크 (critical infrastructure system or network)’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사이버보안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중요기반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인터넷 트래픽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의회의 시도와는 별개로 지난 2011년 5월 12일 오바마 행정부는 7개의 사이버보안 법안을 제시한바 있다. 7개의 별도의 제안을 담은 사이버보안법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국방, 통신, 에너지, 전기, 은행과 금융서비스 부분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주요 경제영역에 사이버보안의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한 법안에는 국토안보부의 권한을 확대하여 연방정부의 사이버보안을 위한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을 국토안보부 사이버보안 권한과 정보공유법(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Cybersecurity Authority

⑦ Internet Freedom: Supporting fundamental freedoms and privacy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rss\\_viewer/international\\_strategy\\_for\\_cyberspace.pdf](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rss_viewer/international_strategy_for_cyberspace.pdf)

and Information Sharing Act)<sup>52)</sup>로 개정하는 것과, 새로운 중요기반시설을 위한 사이버보안 규제체계법(Cybersecurity Regulation Framework for Covered Critical Infrastructure Act)<sup>53)</sup>의 제정이 담겨있다. 동법은 중요기반시설로 지정된 민간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새로운 사이버보안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민간사업자들이 동법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국토안보부의 제재의 대상이 되게 된다. 그 외에도 개인정보의 침해가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통일된 연방기준으로 통보하는 것(Data Breach Notification)<sup>54)</sup>과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개발을 위해 연방법이 데이터센터 장소에 대한 각 주의 제한에 우선함을 규정하는 데이터센터 장소에 대한 제한금지(Preventing Restrictions on Data Center Locations)<sup>55)</sup>도 그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이미 많은 의원들이 올해 안에 사이버보안에 대한 법제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미 의회에 대한 이러한 제안들은 사이버보안에 대한 미국 의회의 법제정 절차를 더욱 가속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2) 인터넷과세금지법에 대한 주(states)의 도전 (Internet Tax Freedom Act와 "Amazon Law")

1998년 10월 21일 미국 당시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Bill Clinton)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거래에 대한 주세금(state taxes)과 지방세금(local taxes)의 부과를 3년 동안 유예시키는 인터넷 과세 금지법(Internet Tax Freedom Act)을 제정하였다. 대표적인 인터넷 진흥법으로 손꼽히는 동법은 인터넷이 상업, 교육이나 정보제공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DSL·케이블 모뎀·무선전송 서비스 등 인터넷 서비스(bit tax, bandwidth tax, email tax 등)에 연방정부나 지방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법의 제정 이전부터 접속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던 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52) <http://democrats.senate.gov/pdfs/WH-cyber-general-authorities.pdf>

53) <http://democrats.senate.gov/pdfs/WH-cyber-critical-infrastructure-provisions.pdf>

54) <http://democrats.senate.gov/pdfs/WH-cyber-breach-notice.pdf>

55) <http://democrats.senate.gov/pdfs/WH-cyber-data-center.pdf>

동법은 제정 이후 두 번이나 연장되었으며,<sup>56)</sup> 가장 최근에는 2007년 11월 1일 Internet Tax Freedom Act Amendment Act of 2007이라는 이름으로 조지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에 의해 개정되어 2014년 11월 1일까지 시한이 4년 더 연장됐다. 실리콘밸리 인터넷 기업들의 지지를 받는 일부 의원들이 과세 금지 시한을 영구히 폐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기도 하였지만, 세금 징수를 원하는 주 정부들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한시적 연장이라는 절충안으로 타결된 셈이다.

개정안은 기존 법안처럼 주나 지방정부로 하여금 DSL·케이블 모뎀·무선전송 서비스 등 (i) 인터넷 접속에 대한 세금(taxes on internet access)을 부과를 금지하며; (ii) 전자상거래에 대한 복수의 또는 차별적인 세금(multiple or discriminatory taxes on electronic commerce)을 금지하고 있다.<sup>57)</sup> 그러나 2008년 4월, 연방 인터넷 정책에 반하여 경기후퇴의 타격을 심하게 받은 뉴욕 주는 줄어드는 세수를 대신 하기 위해 주정부로 하여금 아마존닷컴과 같은 인터넷판매자가 뉴욕 거주자에게 판매하는 물건에 대해 세금을 부과시키는 “인터넷판매세(internet sales taxes)”를 도입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이전까지 아마존닷컴이나 월마트닷컴 등 온라인 쇼핑몰은 뉴욕 주에 실질적인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뉴욕 거주자들이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고 거래를 해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아마존세금법(Amazon Tax Law) 또는 아마존세금(Amazon Tax), 아마존법(Amazon Law)이라고도 불리는 뉴욕세금법(New York Tax Law §§1131)은 인터넷판매자가 뉴욕에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관련성(nexus)을 가지는 경우<sup>58)</sup>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56) 첫 번째 개정당시 미 하원에서는 2011년 11월 1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과세 금지법 개정안’을 투표에 부쳐 405 대 2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57) Title 47 U.S. Code Chapter 5 Subchapter I §151 Sec.1101 Moratorium. 단, VoIP 서비스의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1998년 이전에 인터넷 요금에 과세를 시작한 9개 주정부에 대해서는 기존 법안처럼 과세를 허용하고 있다.

58) 아마존의 경우 물리적인 법인은 없지만, 중소쇼핑몰과 블로거들이 가입해 아마존에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연합 프로그램(affiliate program)을 운영 중이며

연방법인 인터넷 과세 금지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뉴욕 주 아마존법의 위헌성 여부는 아직 법원에서 심리되고 있고 이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연방헌법상으로 각 주간의 통상에 대해서는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하고 있다는 견해와 각 주의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인정하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연방법원이 아닌 뉴욕 주의 1심법원은 뉴욕 주의 광범위한 세금부과 권한을 인정한 상태이다.

인터넷을 통해 일어나는 거래로부터 세금을 부과하려는 뉴욕 주와 유사한 시도는 점차 확산되어 2009년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가, 2010년에는 콜로라도가 유사한 법을 도입하게 되었다.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의회도 동일한 내용의 법을 제정하였으나 각각의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산되었다. 인터넷 판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려는 아마존법의 제정시도는 미시시피나 네바다, 일리노이 등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 (3) 인터넷 정책 3.0 시기의 주요 인터넷 진흥 법안

앞서 설명한 사이버 보안법 및 과세금지법 개정안 외에도 현재 회기 중인 112회 의회에서는 주로 오바마 정부의 현안인 망중립성에 관한 법안, 정보보안 및 사이버 보안, 초고속망 구축이 주요 논의대상이 되고 있다. 하원과 상원에서 발의되어 있는 법안은 다음과 같다.

#### (가) 하원 발의 법안

---

아마존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사실상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lt;표 3-2&gt; 인터넷 정책 3.0 시기의 주요 인터넷 진흥 법안(하원발의)

	법 명
1	H.R.76 : Cybersecurity Education Enhancement Act of 2011
2	H.R.102 : Photo Identification Security Act
3	H.R.108 : Voting Opportunity and Technology Enhancement Rights Act of 2011
4	H.R.174 : Homeland Security Cyber and Phys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Act of 2011
5	H.R.220 : Identity Theft Prevention Act of 2011
6	H.R.423 : Member Address Privacy and Protection Act
7	H.R.427 : To amend the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to provide a 5-year recovery period for computer-based gambling machines.
8	H.R.484 : Personal Privacy Clarification Act
9	H.R.592 : Sunshine in Litigation Act of 2011
10	H.R.611 : Building Effective Strategies to Promote Responsibility Accountability Choice Transparency Innovation Consumer Expectations and Safeguards Act / BEST PRACTICES ACT
11	H.R.653 : Financial Information Privacy Act of 2011
12	H.R.654 : Do Not Track Me Online Act
13	H.R.685 : Checkpoint Images Protection Act of 2011
14	H.R.1136 : Executive Cyberspace Coordination Act of 2011
15	H.R.1187 : Fix HIT Act of 2011
16	H.R.1261 : Chief Technology Officer Act
17	H.R.1389 : Global Online Freedom Act of 2011
18	H.R.1509 : Medicare Identity Theft Prevention Act of 2011
19	H.R.1528 : Consumer Privacy Protection Act of 2011
20	H.R.1538 : Social Security Identity Defense Act of 2011
21	H.R.1707 : Data Accountability and Trust Act
22	H.R.1841 : Data Accountability and Trust Act (DATA) of 2011
23	H.R.1895 : Do Not Track Kids Act of 2011
24	H.R.2004 : Technology Security and Antiboycott Act
25	H.R.2096 : Cybersecurity Enhancement Act of 2011
26	H.R.2102: FCC Commissioners' Technical Resource Enhancement Act
27	H.R.2125 : Electronic Paycard Protection Act of 2011
28	H.R.2168 : Geolocation Privacy and Surveillance Act
29	H.RES.175 : Expressing the sense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at in order to continue aggressive growth in the Nation's tele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industries,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should "Get Out of the Way and Stay Out of the Way".

## (나) 상원 발의 법안

&lt;표 3-3&gt; 인터넷 정책 3.0 시기의 주요 인터넷 진흥 법안(상원발의)

	법명
1	S.1 : American Competitiveness Act
2	S.8 : Tough and Smart National Security Act
3	S.21 : Cyber Security and American Cyber Competitiveness Act of 2011
4	S.193 : USA PATRIOT Act Sunset Extension Act of 2011
5	S.224 : Stalkers Act of 2011
6	S.257 : Small Business Broadband and Emerging Information Technology Enhancement Act of 2011
7	S.290 : USA PATRIOT Act Sunset Extension Act of 2011
8	S.372 : Cybersecurity and Internet Safety Standards Act
9	S.413 : Cybersecurity and Internet Freedom Act of 2011
10	S.539 : Behavioral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Act of 2011
11	S.611 : FCC TECH Act
12	S.643 : Fix HIT Act of 2011
13	S.799 : Commercial Privacy Bill of Rights Act of 2011
14	S.801 : Information Technology Investment Management Act of 2011
15	S.813 : Cyber Security Public Awareness Act of 2011
16	S.848 : Consumer Information Enhancement Act of 2011
17	S.890 : Fighting Fraud to Protect Taxpayers Act of 2011
18	S.913 : Do-Not-Track Online Act of 2011
19	S.1011 :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Amendments Act of 2011
20	S.1075 : A bill to provide judicial review of National Security Letters.
21	S.1125 : USA PATRIOT Act Improvements Act of 2011
22	S.1151 : Personal Data Privacy and Security Act of 2011
23	S.1152 : Cybersecurity Enhancement Act of 2011
24	S.1159 : Cyberspace Warriors Act of 2011
25	S.1199 : Protecting the Privacy of Social Security Numbers Act
26	S.1207: Data Security and Breach Notification Act of 2011
27	S.1212 : Geolocation Privacy and Surveillance Act
28	S.1223 : Location Privacy Protection Act of 2011
29	S.RES.35 : A resolution expressing support for the designation of January 28, 2011 as National Data Privacy Day.

#### 마. 시사점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그간의 정부 불간섭을 근간으로 한 인터넷 정책에서 완전히 벗어나 소위 “인터넷 정책 3.0(Internet Policy 3.0)”이라는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인터넷 정책 3.0(Internet Policy 3.0)은 이전의 방임적 혹은 소극적인 정부의 역할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정책의 큰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정책에서는 미국정부와 다른 국가 간, 또 중요 인터넷 구성원들과의 협력을 통한 정보보호, 어린이 보호, 사이버보안, 저작권과 인터넷 거버넌스와 같은 이슈들과 관련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법제나 규제를 제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구체화된 미국정부의 인터넷 정책은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를 유용하게 이용하도록 하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침해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유해한 인터넷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와 같은 인터넷으로 인한 문제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 또는 규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와 인터넷기업,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보고서가 준비 중에 있다. 미국의 인터넷 정책에서는 인터넷에 대해 최소한 정부 개입이라는 입장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인터넷의 보호라는 입장선택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2000년대를 지나면서 발생되었던 인터넷의 역기능을 순화시키려는 노력과 미국을 위협하는 테러의 방법이 물리적 테러에서 국경이 없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테러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터넷 보안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점차 인터넷산업의 발전과 인터넷상의 질서유지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며, 미국의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전략은 국경을 넘나드는 인터넷의 진흥과 질서수립을 위해서는 일국의 노력 만이 아닌 국제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 인터넷정책상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입법이 마련되거나 논의 중에 있는 사항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나라는 입법이 마련되어 있거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 어느 정도 합의가 도출되어 있는 상태이다(사이버보안, 정보보안, 망에 대한 시설투자의 문제 등).

## 2. 유럽연합(EU)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은 오늘날의 산업국가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디지털망과 인터넷은 산업국가의 경제를 진전시키고 있으며, 그것이 없이는 더 이상 산업국가의 장래를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은 이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의 원동력이 되고 있고, 심지어 기후보호, 에너지 효율화 또는 전기자동차와 같은 범세계적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도 조력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 산업국가는 이러한 기술부문으로부터 사회·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동인(動因)을 얻고자 한다. ICT 분야는 유럽에서는 매년 약 6,600억 유로(Euro)의 경제규모를, 독일에서는 2009년 현재 약 1400억 유로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약 84만명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 가. “유럽 디지털 아젠다”의 목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sup>59)</sup>는 2010년 8월 26일 “유럽 디지털 아젠다”(Digitale Agenda for Europe)<sup>60)</sup>라는 것을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및 유럽지역위원회(Committee of

59) 유럽연합의 입법기구로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유럽위원회,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의 셋이 있으나, 이 가운데 법령발안권은 유럽위원회만 가진다.

60) MITTEILUNG DER KOMMISSION AN DAS EUROPÄISCHE PARLAMENT, DEN RAT, DEN EUROPÄISCHEN WIRTSCHAFTS- UND SOZIAUSSCHUSS UND DEN AUSSCHUSS DER REGIONEN Eine Digitale Agenda für Europa /\* COM/2010/0245 f/2 \*/ , KOM(2010) 245 endgültig/2,  
[http://ec.europa.eu/information\\_society/digital-agenda/index\\_en.htm](http://ec.europa.eu/information_society/digital-agenda/index_en.htm)

the Regions)에 제출하였다. 이 아젠다는 초고속망 인터넷과 상호운용적 적용에 기한 디지털 역내시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경제적·사회적 유용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늘날 유럽의 최우선 과제는 위기 속의 유럽경제를 다시 정상궤도로 진입하게 하는 것이다. 유럽경제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인구의 노령화와 세계적인 경쟁을 감안할 때, 세 가지 옵션이 있을 것이다. 즉 유럽인들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하거나, 더 오래 일하거나 또는 보다 지적으로 일하는 것이다. 어쩌면 이들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세 번째 옵션만이 유럽인의 삶의 질을 유지하거나 제고하는 유일한 방안일 수 있다. 그래서 “유럽 디지털 아젠다”는 유럽이 지적이고, 지속적이며 또 통합적인 성장을 가져오기 위한 길로 들어서기 위하여 ICT 분야에서 시급히 행하여져야 할 조치들에 관하여 제안하고 있다.

#### 나. “유럽 디지털 아젠다”의 입안 배경

유럽위원회는 유럽이 당면하고 있는 재정적·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유럽연합이 직면하게 될 향후 수십년의 도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유럽전략 2020”<sup>61)</sup>을 공표한 바 있다. 이 전략은 21세기 저탄소 경제에서의 고수준의 고용창출과 생산성 제고의 목표를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의 차원에서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거기서는 지적 성장(Smart growth, 지식과 혁신이 수반된 경제의 발전), 지속적 성장(Sustainable growth, 자원보호적, 생태적 및 경쟁력 있는 경제의 촉진), 통합적 성장(Inclusive growth, 고수준의 고용 및 뚜렷한 사회적·영토적 유대를 수반하는 경제의 촉진)이 역설되면서, 2020년까지 달성되어야 할 구체적 핵심목표 5가지(① 20~64세 연령 인구의 75%의 고용창출, ② 유럽연합의 GDP의 3%를 R&D에 투자, ③ “20/20/20” 기후·에너지 목표의 달성, ④ 학업 중단자의 비율을 10% 미만으로 낮추고, 적어도 젊은 세대의 40%가 고등교육을 마칠

---

61) Europe 2020 - A strategy for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COM(2010) 2020 final; Europa 2020 - Eine Strategie für intelligentes, nachhaltiges und integratives Wachstum, KOM(2010) 2020.

수 있도록 함, ⑤ 빈곤층의 수를 약 2,000만명으로 저감시킴)가 열거되어 있다.

“유럽 디지털 아젠다”는 “유럽전략 2020”이 열거하는 7가지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인 ICT와 관련된 것이다. 그 골자는 초고속망의 구축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역내시장의 장점을 가정과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위 아젠다에 따르면, 유럽인 30%가 아직까지 인터넷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초고속망의 보급은 유럽이 1%인데 반하여, 일본 12%, 한국은 15%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ICT 부문의 연구개발비 투자는 유럽연합이 미국의 40%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유럽연합 내에서는 IT 영역이 상호운용성을 최적화하지 못하고 있는 비효율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한다.

ICT 영역은 새로운 형태의 각종 사이버범죄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ICT 영역에서 형성되는 무수한 새로운 데이터뱅크는 유럽연합의 시민의 신상과 사생활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보호가 ICT 분야의 올바른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인데, 디지털 아젠다는 이점을 역설하고 있다. 그 밖에 디지털 아젠다는 ICT 분야에 관한 인력부족, 연구와 혁신의 결여, 투자의 부족 등을 유럽 ICT 분야의 당면 과제로 들고 있다.

#### 다. “유럽 디지털 아젠다”상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 (1) 이용자의 권리 · 의무에 관한 법규범의 체계화 및 접근 용이화

“디지털 아젠다”는 오늘날의 유럽연합법이 유럽연합의 시민에게 디지털 환경에 대하여 의미를 가지는 일련의 권리, 가령 의사표현의 자유나 정보의 자유, 신상관련 데이터의 보호, 프라이버시 · 투명성의 요구 · 전화 및 기능적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유니버설서비스의 보장 등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들이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포착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유럽연합의 시민이 그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투명하고 이해가능한 방법으로 표현되고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상의 입법적 주체의 마련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한편 종래의

입법지침의 형태를 취하는 유럽공동체법은 최소한의 조화(minimum harmonisation)의 범위 내에서 각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전환되었고, 그에 따라 동일한 소재(素材)에 대하여 각 회원국별로 그 취급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나 사업자 모두에게 법적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바, 디지털 아젠다는 이를 통일화하는 작업도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다.

## (2) 소비자의 권리 강화

소비자는 그들의 권리가 명확하며 보호를 받는다고 느끼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려고 하지 않는다. 전자거래지침<sup>62)</sup>은 정보사회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투명성의무와 정보제공의무 및 상업적 통신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에 관한 요구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정확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정거래 실무지침<sup>63)</sup>과 금융서비스통신판매지침<sup>64)</sup>은 어느 정도는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62) Richtlinie 2000/31/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8. Juni 2000 über bestimmte rechtliche Aspekte der Dienste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insbesondere des elektronischen Geschäftsverkehrs, im Binnenmarkt (Richtlinie über den elektronischen Geschäftsverkehr) =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Directive on electronic commerce").

63) Richtlinie 2005/29/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1. Mai 2005 über unlautere Geschäftspraktiken im binnenmarktinternen Geschäftsverkehr zwischen Unternehmen und Verbrauchern und zur Änderung der Richtlinie 84/450/EWG des Rates, der Richtlinien 97/7/EG, 98/27/EG und 2002/65/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sowie der Verordnung (EG) Nr. 2006/2004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Richtlinie über unlautere Geschäftspraktiken) = Directive 2005/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4/450/EEC, Directives 97/7/EC, 98/27/EC and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국경을 넘어서는 온라인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와 상인 사이의 신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포괄적인 지침의 마련이 요청된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 디지털 아젠다”는 유럽위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디지털 제품의 구매시에 소비자의 권리 강화방안의 수립, 유럽 계약법이 고수준의 소비자보호의 기초 위에 통일되게 되면 국경을 넘는 온라인거래가 간소화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인식, 선택적인 분쟁해결시스템을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전략 구상, 전자거래에 대한 온라인구제수단 및 온라인 사법(司法)에의 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강구 등이 그것이다.

- (3) 유럽연합 시민의 신뢰와 그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데이터보호에 관한 유럽연합의 법적 틀의 검토
- (4) 유럽에서의 문화적 작품의 디지털화 및 보급의 촉진을 위한 프레임워크지침의 설정
- (5) 보안인증시스템의 초국경적 승인과 상호운용성의 보장을 위한 e서명지침의 검토
- (6) 망과 정보보안을 위한 유럽기구(Europäische Agentur für Netz- und Informations-sicherheit, ENISA)의 설치 및 사이버범죄에 대비하기 위한 컴퓨터비상사태팀(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s, CERT)의 도입에 관한 법령의 도입  
“디지털 아젠다”는 Spam 메일, 컴퓨터바이러스, 아동포르노, ID 절취, 온라인 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디지털 사회의 공동의 과제인 바, 이를 예방 .

of the Council and Regulation (EC) No 200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

- 64) Richtlinie 2002/65/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3. September 2002 über den Fernabsatz von Finanzdienstleistungen an Verbraucher und zur Änderung der Richtlinie 90/619/EWG des Rates und der Richtlinien 97/7/EG und 98/27/EG = Directive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September 2002 concerning the distance marketing of consumer financial services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0/619/EEC and Directives 97/7/EC and 98/27/EC.

저지하기 위한 범죄행위 신고를 위한 유럽연합차원의 플랫폼을 설치할 것을 제안 한다. 나아가 프라이버시권과 개인 신상 관련 데이터의 보호는 유럽연합에서의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정보통신기술 영역에서도 당초부터 고려에 넣어야 할 사항임을 강조 한다.

- (7) 개인 신상 관련 데이터의 보호를 위한 유럽연합규정의 현대화의 범위 내에서 보안위반에 관한 통지조항의 확장 검토
- (8)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 대응책 마련
- (9) 유럽 및 국제수준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관할권에 관한 규정의 도입

### 3. 독일

#### 가. 독일헌법 제91조의c 및 IT 기획위원회

2009년 8월 1일부터 발효된 독일헌법 제91조의c 및 IT 기획위원회(IT-Planungsrat)의 설립은 공공부문 및 전자정부의 효율적이고 목표를 지향하는 IT 발전을 위한 요건과 구조를 마련하였다.

#### (1) 독일헌법 제91조의c

연방국가제도개혁 II(Föderalismusreform II)<sup>65)</sup>에 의하여 독일헌법(Grundgesetz) 제91조의c가 신설되었다.<sup>66)</sup> 독일헌법 제91조의c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① 연방과 주(州)는 그들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기술적 시스템의 계획,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협력할 수 있다.
- ② 연방과 주는 합의에 기하여 그들 사이의 정보기술적 시스템을 위하여

---

65) 이것은 연방과 분방 관계의 탈관료주의화와 효율화를 위한 제안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연방국가제도위원회 II(Föderalismuskommission II, BT-Drs 16/3885, BR-Drs 913/06)의 개혁프로그램이다.

66) BGBl I 2009, 2248.

필요한 표준과 안전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정할 수 있다. 제1문에 따른 협력의 기초에 관한 합의는 개별적으로 내용과 범위가 정해진 임무에 따라 상세한 규율을 합의로 정하여야 할 연방과 주의 절대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효력이 발생함을 규정할 수 있다. 합의는 연방의회 및 관계 주의 국민대표의 동의를 요한다. 이 합의의 해지를 위한 권리는 배제될 수 없다. 그 합의는 비용부담에 대하여도 규율한다.

- ③ 주(州)는 그 외에 정보 기술적 시스템의 공동운영 및 그를 위하여 정해진 기구의 설립을 합의할 수 있다.
- ④ 연방은 연방과 주의 정보 기술적 망(Netze)의 연결을 위한 연결망을 설치한다. 그 설치 및 연결망의 운영에 관한 상세는 연방참사원의 동의 아래 연방법이 규율한다.

위와 같은 독일헌법 제91조의c 제1항은 연방과 주의 IT 협력에 관한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2항은 표준화 영역 및 안전 분야에서의 연방과 주의 IT 협력에 관한 조항이다. 다음으로 제3항은 각 주 사이의 IT 협력에 관한 조항이다. 마지막으로 제4항은 망영역에서의 IT 협력을 규정한 조항이다. 독일헌법 제91조의 c의 신설은 IT가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인프라의 하나로서 헌법상 인정을 받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로써 독일은 IT 문제를 헌법으로 규정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독일헌법이 제91조의c를 신설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IT는 공공행정에 대하여도 그 의의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독일헌법에서는 금번 개정 전까지 IT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러나 독일헌법의 해석에 있어서 IT 문제가 적지 않게 대두되었다. 가령 법률이 전자적 방식으로 공포될 수 있는가<sup>67)</sup> 또는 청원도 전자적 방식으로 행하여질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sup>68)</sup> 나아가 연방헌법재판소

---

67) 이에 관하여는 Guckelberger, Übergang zur elektronischen Gesetzesverkündung?, DVBl 2007, 985 ff. 참조.

(BVerfG)는 1983년 12월 15일의 인구통계조사결정<sup>69)</sup>과 연계하여 2008년 2월 27일의 그의 온라인 수색에 관한 결정에서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IT 시스템의 신뢰성과 완전성의 보장에 관한 기본권을 도출하였다.<sup>70)</sup> IT는 공공행정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효율성의 제고를 가능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전이기도 하다. 그것은 공공행정 내에서 흔히 상이한 시스템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행정담당자 사이의 기술적 수준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IT 영역에서의 조화와 상호 운용성의 창출은 핵심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연방국가적 구조를 가진 독일의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나아가 유럽적 차원에서도 IT 영역에 관한 간접적인 조화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유럽연합서비스지침 (EU-Dienstleistungsrichtlinie)은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일원적인 대화상대자의 설치를 의무지우고 있기 때문이다.<sup>71)</sup> 한편으로는 독일헌법상의 규율의 결여와 다른 한편으로는 IT 영역의 조화의 지향은 헌법적 규율의 필요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연방과 분방 관계의 쇄신을 위하여 연방하원(Bundestag)과 연방상원 (Bundesrat)이 공동으로 구성한 위원회는 이 문제에 관하여 저명 학자들의 의견서를 받아 심의를 한 끝에 독일헌법 제91조의c를 신설하기로 의결하였다. 그에 기초하여 작성된 헌법개정안은 2009년 5월 29일에 연방하원을 통과하였고, 2009년 6월 12일 연방상원의 비준을 받았으며,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독일헌법 제91조의c에 의하여 기존의 각종 IT 관련 위원회와 의사결정구조가 간소화되고, 보다 효율적으로 의사가 형성됨으로써 신속한 기술적 진전에의 요청에 적응할 수 있게 되었다. 독일헌법 제91조의c 제4항의 시행을 위한 “연방과 주의 IT상의 망의 연결에 관한 법률”(IT-NetzG<sup>72)</sup>)은 독일헌법 제91조의c와 함께 2009년

68) 이에 관하여는 Guckelberger, Neue Erscheinungen des Petitionsrechts:

E-Petitionen und öffentliche Petitionen, DÖV 2008, 86 ff. 참조

69) BVerfG, DÖV 1984, 156 ff.

70) BVerfG, NJW 2008, 822 ff.

71) Richtlinie 2006/123/EG, ABIEU Nr. L 376 v. 27. 12. 2006, S. 36 ff., 특히 제6조.

72) Gesetz über die Verbindung der informationstechnischen Netze des Bundes und der Länder - Gesetz zur Ausführung von Artikel 91c Absatz 4 des Grundgesetzes

여름에 발효되었다.

## (2) IT 기획위원회<sup>73)</sup>

IT 기획위원회(IT-Planungsrat)는 독일헌법 제91조의c의 시행에 관한 국가협약 (IT-Staatsvertrag<sup>74)</sup>)의 발효(2010. 4. 1.)에 따라 정보기술 부문에서의 연방차원의 협력을 위하여 기존의 IT 관련 위원회<sup>75)</sup>를 해체하고 2010년 4월 22일 새롭게 구성된 중앙위원회이다. 동 위원회는 IT분야에서 중대되고 있는 도전에 직면하여 각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의 새로운 형태가 요청된다는 인식을 토대로 독일헌법 제91조의c를 기초로 연방(Bund)과 분방(Länder) 사이의 IT 협력을 조율을 기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동 위원회는 독일헌법 제91조의c 제1항, 제2항에 따른 일반적 IT 협력에 관한 새로운 중앙제어기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여기서는 연방과 주의 IT 협력의 조율, IT 상호운용성 · IT 표준에 관한 의결, 전자정부 프로젝트의 조율 및 IT 국가협약 제4조에 열거된 연결망을 위한 임무의 수행을 본연의 임무로 한다. 동 위원회에 의하여 장래에 전자적 통신을 위한 구속적이고 투명한 IT 표준의 설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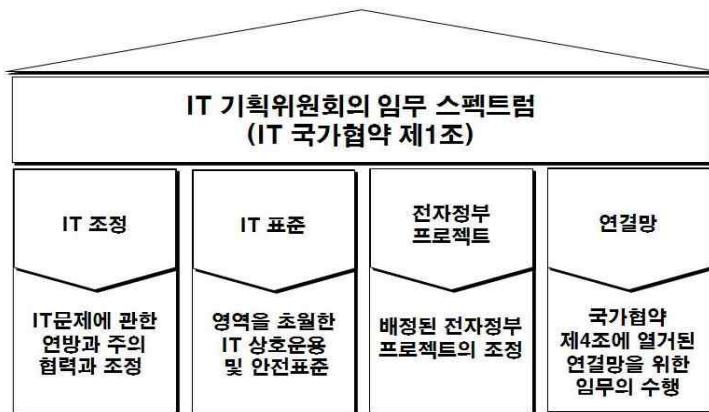
- (IT-NetzG).

73) 이하의 서술 중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는 IT 기획위원회의 홈페이지인 [http://www.it-planungsrat.de/DE/Home/home\\_node.html](http://www.it-planungsrat.de/DE/Home/home_node.html)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74) Vertrag über die Errichtung des IT-Planungsrats und über die Grundlagen der Zusammenarbeit beim Einsatz der Informationstechnologie in den Verwaltungen von Bund und Ländern”, Kom-Dr 174 v. 5. 3. 2009, S. 81 ff. 이것은 독일헌법 제91 조의c의 시행 및 IT 기획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연방과 주 사이의 협약이다.

75) 연방과 분방에서의 전자정부를 위한 국가사무국 작업팀(Arbeitskreis der Staatssekretäre für E-Government in Bund und Ländern), 자동화된 자료처리를 위한 연방과 분방의 협력위원회(Kooperationsausschuss von Bund und Ländern für automatisierte Datenverarbeitung, KoopA ADV)와 이들의 하위 위원회를 말한다.

&lt;그림 3-1&gt; IT 기획위원회의 임무 스펙트럼



IT 기획위원회의 위원은 연방정부를 대표하는 연방정부의 위탁을 받은 IT담당자(Beauftragter der Bundesregierung)와 연방내무부(BMI)의 사무차관(Staatssekretär), 각 분방의 IT대표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밖에 동 위원회의 회의에는 분방보다 소규모의 지방자치단체(Gemeinde)와 그들의 공동체(Gemeindeverbände)의 3인의 대표자와 데이터보호 및 정보자유에 관한 연방정부의 위탁을 받은 담당자(Bundesbeauftragte für den Datenschutz und die Informationsfreiheit)가 자문의 역할을 하면서 참석 한다. IT 기획위원회의 사무실은 연방내무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연방과 각 분방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IT 기획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 내에 현재 3개의 협력팀이 구성되어 있다. 즉 전략협력팀(Kooperationsgruppe Strategie), 유럽연합협력팀(Kooperationsgruppe EU) 및 정보안전기본노선협력팀(Kooperationsgruppe Leitlinie Informationssicherheit)이다. 전략협력팀은 국가전자정부의 기초 위에 적절한 조치를 수반한 실행계획 및 그 조치의 재정적 지원과 조율의 형성을 위한 제안을 작성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그에 따라 전략협력팀은 국가전자정부의 실현을 위한 계획안을 IT 기획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협력팀은 유럽위원회와 IT 분야에 관한 새로운

테마와 조치에 관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그것을 독일 전자정부로 도입하는 것을 지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정보안전기본노선협력팀은 2011년 10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이 팀은 공공행정의 IT 절차의 형성에 있어서 정보안전을 위한 기본노선의 효력범위와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 나. 통신 및 망중립성의 법적 틀

현재 독일 연방정부는 초고속망의 구축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 및 계획안정성을 창출하고 장래의 망에 있어서 차별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유럽통신지침<sup>76)</sup>을 독일 국내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2011년 3월 2일 통신법(TKG)의 개정법안이 정부안으로서 연방내각에서 통과되었다.<sup>77)</sup> 동 법안은 통신 분야에서의 경쟁을 위한 개선된 기본조건을 조성하는데 그 근본적인 취지가 있지만, 소비자보호도 강화하였다.<sup>78)</sup>

#### 다. De-Mail법

De-Mail은 인터넷을 통해 시민, 기관 및 기업 간의 법률전자문서를 교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독일 전자정부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시민포털(Bürgerportal)로 일컬어지는 이 프로젝트는 시민, 행정 및 기업의 통신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민간사업 파트너와 공동으로 독일정부에 의하여 실현된다. 이 De-Mail에 의하여 통신의 당사자간에 그들의 동일성이 의문의 여지없이 알려진 전자적 통지와 문서를 간단하고, 신뢰가능하며 또 증명가능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이것은 거래절차 및 행정절차를 위한 법적 안정성을 의미하며 또 전자적 통신에 있어서 보다 많은 데이터보호와 데이터보안을 위한 요건이다. 이를 위하여 연방정부는 De-Mail법<sup>79)</sup>을 2011년 5월

---

76) 2009/136/EG, 2009/140/EG

77) <http://gesetzgebung.beck.de/node/1012962>

78) <http://blog.beck.de/2011/03/11/tkg-novelle-wesentliche-aenderungen-des-regierungsentwurfs>

2일 공포하였다.<sup>80)</sup> 동법은 전자적 법률거래 및 업무거래를 위하여 종이에 기한 통신처럼 신뢰성을 보장하는 적합한 기본조건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립된 것이다. 이용자는 법률거래와 업무거래에 있어서 시민포털의 자유로운 판단에 기하여 이용할 수 있다.

#### 라. “독일 디지털 2015”상의 디지털 산업 진흥의 전략

독일연방정부는 2009년 말 디지털 장래를 위한 포괄적 전략을 수립할 것을 결의 하였다. 연방경제기술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 BMWi)는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새로운 전략수립을 추진하였고, 2010년 11월 연방 내각은 “독일 디지털 2015”(Deutschland Digital 2015)라는 제목 아래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전략<sup>81)</sup>을 의결하였다. 이 전략은 연방정부의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현존 최고 정책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전략은 독일의 정보통신기술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전략은 의하여 유럽연합(EU)의 “유럽 디지털 아젠다(Digital Agenda for Europe)”의 독일에서의 전환을 위한 것이다.

독일에서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정책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연방 경제기술부가 구상하는 독일의 정보통신기술 부문의 중점적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정보통신기술의 투입에 의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 장래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와 망의 구축
- 장래의 인터넷 이용자와 새로운 미디어 이용자의 보호권과 개별적 권리의 보장
- 시장성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 영역에서의

79) Gesetz zur Regelung von De-Mail-Diensten und zur Änderung weiterer Vorschriften, BGBl. 2011, Teil 1 Nr. 19, S. 666.

80) [http://gesetzgebung.beck.de/news/de-mail-gesetz-buergerportale-gesetz?search\\_hl=De-Mail-Gesetz](http://gesetzgebung.beck.de/news/de-mail-gesetz-buergerportale-gesetz?search_hl=De-Mail-Gesetz)

81) IKT-Strategie der Bundesregierung „Deutschland Digital 2015“.

### 연구·개발의 구축과 연구·개발결과의 신속한 변환

-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재)교육의 강화
  - 기후보호, 건강, 전기자동차, 시민의 삶의 질의 관리 및 개선과 같은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연방정부는 “독일 디지털 2015”의 실행에 의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사회적 효용성을 창출하고자 한다. 나아가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사회정책적 의의를 인식하고, 독일 망정책의 전망에 관한 대화와 인터넷의 형성에 있어서 국가에게 주어진 역할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면서, 그에 관한 망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세부적 추진방안은 앞서 살펴본 “유럽연합 디지털 아젠다”의 그것과 일맥상통한다.

### 마. 시사점

앞에서는 유럽연합과 독일이 인터넷의 전략적 의의에 주목하고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의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독일연방정부는 예컨대 브로드밴드네트워크의 계속적인 확충, 클라우드 컴퓨팅, 전기자동차를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투입 등과 같은 야심찬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은 그 헌법 제91조의c를 신설하여 공공부문의 IT 정책을 통일적으로 수립·집행하고자 한다. 이것은 유럽연합과 독일이 디지털 분야에서 열후적인 위치에 있다는 각성으로부터 출발하여(Google, eBay, Amazon, Facebook 등 성공적인 인터넷기업의 원류는 유럽이 아니다!)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력(생존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적절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하는 바, 그 지원작업은 기대만큼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는 필시 이용자 보호라는 요청과 정보통신기술산업의 발전이라는 이익이 상호 대립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도외시해서는 안 될 점은, 이용자보호가 궁극적으로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이다. 이용자 보호와 산업발전은 일옹 상호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용자가 이용을 꺼려하는 것이야말로 당해 산업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4. 영국

##### 가. 인터넷 이용 실태와 인터넷 진흥정책 방향

###### (1) 인터넷 이용 실태

영국의 정보통신산업(ICT) 분야는 제조업 기반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참여 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관련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영국내 가장 중요한 산업부분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경우 2003년도부터 브로드밴드 보급 확대 및 3G 모바일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고 미국 및 유럽 통신사업자들이 영국으로의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사업자간 경쟁이 격화됨으로써 서비스 가격의 인하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되어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

영국의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가입자 수는 2008년 기준으로 1,728만명으로 2002년부터 매년 평균적으로 52.8%씩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가구 당 인터넷 보급률이 77%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을 보급이 확대에 맞추어 영국 정부는 2017년까지 90%의 가구에 초고속인터넷 보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모든 영국인들이 최소 2Mbps 속도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lt;표 3-4&gt; 연도별 영국 가구 당 인터넷 접속 현황

연도	가구 수(백만)	비율
2008	16.5	65%
2009	18.3	70%
2010	19.2	73%
2011	19.0	77%

출처: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http://www.bbc.co.uk/news/technology-14731757>)

영국 브로드밴드 시장규모는 2009년에 전년대비 2.46% 감소한 45억 4,900만 파운드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브로드밴드 시장은 BT(British Telecom)<sup>82)</sup>, Virgin Media<sup>83)</sup>, British Sky Broadcasting<sup>84)</sup>, TalkTalk Telecom Group<sup>85)</sup> 등의 주요 4개의 사업자가 전체 시장의 9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상호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sup>86)</sup> 영국의 브로드밴드는 선발 주자인 BT가 전체 브로드밴드 회선의 대부분을 확보하고 후발사업자들이 가입자 선로 공동 활용제도(Local Loop

82) 영국의 통신사업자 BT(<http://www.btplc.com/>)는 영국 최대의 유선통신서비스 사업자로써 2001년 10월 23일 BT는 무선 사업분야인 mmO2를 분리하여 현재 BT Group plc 와 mmO2의 2개 사업체로 분리되어 있다.

83) Virgin Media(<http://www.virginmedia.com/>)는 NTL Incorporated와 Telewest의 합병되어 태어난 가 음성통신, 인터넷, 유료TV, 이동통신 서비스 등을 묶은 TPS(Triple Play Service)와 QPS (Quadruple Play Service) 등을 통하여 BT와 함께 영국의 유무선 인터넷 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Virgin Media는 2009년 12월 기준으로 약 380만 명의 브로드 밴드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84) British Sky Broadcasting(<http://www.sky.com/>)은 영국의 위성 tv,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85) TalkTalk Telecom Group은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2003년도에 설립된 유료 TV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86) 영국의 2010년 1분기 브로드밴드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BT가 29%로 TV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Virgin Media가 22%, TalkTalk Telecom Group 22%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British Sky Broadcasting의 경우 14%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KISA, Trend Report, 2010.11.12

Unbundling, LLU)<sup>87)</sup>와 기본료 도매상품(Wholesale Line Rental, WLR)<sup>88)</sup> 등을 통하여 BT의 회선을 임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영국 브로드밴드 시장의 대표적인 사업자인 BT는 영국의 인터넷 사업자의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BT는 2012년 런던 올림픽 통신서비스 파트너로서 광 네트워크 (Fiber to the x; FTTx) 기반의 브로드밴드 망 서비스(BT Infinity)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광 네트워크 기반의 브로드밴드를 2013년에 완료하고 서비스 커버리지를 넓히는 한편,<sup>89)</sup> 방송과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를 하나로 묶어 제공하는 TPS(Triple Play Service)를 강화하고 있는 등<sup>90)</sup> 영국의 브로드밴드 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BT의 브로드밴드 서비스 시장에서의 의욕적인 사업전략은 영국정부의 브로드밴드 활성화 전략과 결합하여 런던 올림픽을 전후로 하여 초고속 브로드밴드 보급률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브로드밴드 시장에서 BT와 경쟁하는 Virgin Media는 영국 내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Virgin Media는 100Mbps 급의 속도의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BT보다 저렴한 요금 전략을 추진하여 영국내 브로드밴드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영국내

87)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LLU)란 기간통신 사업자가 이미 개설한 시내 전화망과 같은 가입자 선로를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가 공동 활용할 것을 요청할 경우 가입자망 개방에 대한 대가를 받고 이를 허용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88) 기본료 도매상품(WLR)은 유선 음성전화 서비스 시장에 경쟁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가입자회선만을 공유하는 LLU와는 다르게 선별사업자로부터 용량 또는 회선을 도매로 저렴하게 구입하여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와 같이 기본료 도매상품(WLR)은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경쟁사업자나 재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기존 사업자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기본료 도매상품을 소비자에게 재판매함으로써 기존사업자와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김종진, “기본료 도매상품 도입의 효과평가”, 정보통신정책 제16권 21호 통권359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4.11.16.), 81면.

89) BT는 자사의 FTTx 서비스의 브랜드인 BT Infinity 구축과 전역의 40%이르는 커버리지 확충을 위해 2012년까지 15억 파운드(약 2조8500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90) <http://www.btplc.com>.

브로드밴드 시장에서의 사업자간 서비스 경쟁은 이용자들에게 편익을 증진하고 보다 빠른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촉매제로서 초고속 브로드밴드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영국 모바일 브로드밴드 이용률은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영국의 스마트폰 이용자 수는 지난 2009년 5월 이후 1년 동안 720만 명에서 약 81% 증가한 1,200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스마트폰 이용자의 증가로 인하여 모바일 네트워크를 이용한 데이터의 송·수신량이 약 240% 상승하고 있다.<sup>91)</sup> 2011년 8월 31일 영국통계청이 영국 전역의 1,8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 45%가 이동 중 휴대폰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 2010년 31% 대비 14%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가장 높은 인터넷 이용률을 보인 연령대는 10대와 20대로, 16~24세 젊은층의 71%가 인터넷 이용을 위해 휴대폰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92)</sup> 반면, 영국내 고령층 인구의 모바일 인터넷 활용률의 경우 여전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령층에 대한 영국정부의 정보격차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인터넷 접근에 대한 실태의 개선에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경우에 16~24세의 젊은 연령층의 이용자 71%가 이용하고 있는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8%만이 모바일 브로드밴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모바일 브로드밴드는 젊은 연령층이 주요 이용자로 되고 있다. 모바일 인터넷의 사용량의 증가에 따른 유선 브로드밴드의 시장에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직까지 모바일 인터넷의 속도가 유선 브로드밴드의 속도에 미치지 못한 점과 모바일 인터넷의 주요 이용자가 젊은

91) 영국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에 따르면, 영국 인터넷 이용자의 절반 가량(45%)이 휴대폰으로 인터넷 접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ttp://m.itglobal.or.kr/m\\_board/m\\_board\\_view.asp?seq=2997&root\\_code=30003&c\\_type=s&bboard\\_idx=3&](http://m.itglobal.or.kr/m_board/m_board_view.asp?seq=2997&root_code=30003&c_type=s&board_idx=3&)).

92) bbc, 'Mobile internet use nearing 50%', 31 August 2011 (<http://www.bbc.co.uk/news/technology-14731757>).

연령층이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후에는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와 더불어, 유선 인터넷 시장이 포화상태에 놓임에 따라<sup>93)</sup> 모바일 인터넷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2) 인터넷 진흥 정책

### (가) 유선 브로드밴드 진흥 정책

영국의 인터넷 진흥정책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서비스 등의 시장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방송통신 융합에 있어 선도적인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방송통신 인프라 구축을 핵심적인 정책내용으로 하고 있다.<sup>94)</sup> 이를 위하여 영국 정부는 정보통신 인프라 재정비 및 디지털 콘텐츠 육성 등을 통해 미래 디지털 지식경제 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Digital Britain 전략’을 마련하여 이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을 2008년 8월에 발표하였으며,<sup>95)</sup> 2009년 6월에 이르러 전략의 최종안을 확정하였다.<sup>96)</sup>

93) 영국 가정 내 인터넷 사용 인구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조사 시점 현재 77%의 가구가 인터넷 서비스 이용 중 그러나, 2010년 이후 보급률은 3~4% 증가율에 그치고 있어, 영국 내 가구 별 인터넷 접속 환경은 이미 포화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영국, 인터넷 이용자의 절반가량 모바일 인터넷 사용”, 글로벌 IT 트렌드(2011.9.8.). (<http://www.itglobal.or.kr/>)

94) 영국의 전파관리를 담당하던 전파통신청(Radiocommunications Agency, RA)를 오프콤(Office of Communication, Ofcom)으로 재편하였으며, 주파수 대역을 명령과 통제방식(command & control) 21.6%, 시장적 관리체계 71.5%, Licence Exempt 6.9%로 운용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 “영국 방송통신 품목보고서 - 전파관리시스템”, 방송통신해외정보시스템(2010.12.1.), 1면. (<http://conex.kisa.or.kr/jsp/product/product.jsp>).

95) 실행 계획은 1) 디지털 브리튼 구현을 위한 정부 추진 체계 구축 2) 관련 법제 (Digital Economy Bill) 정비 3) 비 법제 관련 영역에 관한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96) 최종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 국민들의 디지털 참여유도, 2) 디지털 인프라 구축, 3) 디지털 라디오 추진, 4) 디지털 방송 콘텐츠 육성, 5) 저작권 보호, 6) R&D 및 교육 투자, 7) 디지털 보안강화, 8) 전자정부 구축 등이 있다. 한국인터넷 진흥원, “국가별 방송통신 현황 2010”, (2010.12.), 355면.

이러한 영국의 디지털 전략에 따라 2010년 5월에 결성된 영국의 연립내각은 보편적 서비스로써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영국 전역에 제공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영국정부는 2012년까지 영국 전역의 전 가정에 최소 2Mbps의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으로써 ‘Universal Service Commitment’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2017년까지 90%의 가정에 유선과 무선, 통신과 방송 등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가 단일 네트워크를 통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차세대 네트워크(Next Generation Network, NGN)’를 제공하기 위한 Next Generation Final Third Project’를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sup>97)</sup> NGN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의 확보를 위해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sup>98)</sup> 또한 인터넷을 통한 불법 다운로드나 불법파일 공유 등의 저작권 침해의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서 인터넷 서비스사업자에게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기술 투자를 의무화 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영국정부는 디지털 전환을 정책에 맞추어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행정관리를 개선하고 공공 콘텐츠의 접근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공 부분의 전 영역에 걸쳐 e-business 방식을 적용한 ‘전자정부화’를 추진하고 있다. 행정 및 e-Government 콘텐츠 등 다양한 데이터, 정보, 이미지 등을 생산하는 공공 콘텐츠 생산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공공 콘텐츠 이용자들의 온라인 이용을 활성화시켜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공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영국정부는 이러한 전자정부화의 추진에 맞추어 공공 콘텐츠를 전자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영국정부의 국가정보화정책은 강력한 브로드밴드 확산정책과 맞물려 UN이 발표한 ‘전자정부 준비지수(E-Government Readiness Index)<sup>99)</sup> 순위를 4위에 올려놓는 팔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97) 한국인터넷진흥원, 위의 자료, 355면.

98) 영국 정부는 NGN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의 확보를 위해 2010년부터 이용자들에게 월 50펜스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99) 전자정부 준비지수(E-Government Readiness Index)란, UN 가입국인 세계 192

또한 영국정부는 전자 지역정부 서비스 효율성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디지털 챌린지 프로그램(Digital Challenge Program, 2005)’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우수한 전자정부 공공 서비스 제공, 정보 취약계층의 니즈 분석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보통신기술 이용교육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sup>100)</sup> 이와 같이 영국정부의 전자정부로의 변화에 대응한 인터넷의 적극적인 활용과 활성화 정책의 추진은 브로드밴드의 보편적 서비스 형태로 인프라의 확충과 브로드밴드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계기가 되고 있다.

영국정부의 인터넷 규제정책의 방향은 각각의 영역에서 별개의 규제를 받아온 방송과 통신을 통합된 틀안에서 전송과 콘텐츠라는 계층별로 분리하여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즉, 방송과 통신에서 공공성이 강조되는 부분과 공공성의 강조가 필요가 적거나 없는 부분을 나누어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를 완화시킴으로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영국의 방송통신규제 전담기구인 Ofcom는 규제와 관련해서는 자율규제(Self-regulation)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사업자간 시장경쟁을 통한 자율적 규제를 유도하고, 가급적 규제기관이 간섭하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와 같이 사회 공익적 정책에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는 규제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과<sup>101)</sup> 관련하여서는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

---

개국에 대하여 전자정부지수를 웹수준 지수(Web Measurement Index), 정보통신인프라 지수(Telecom Infra Index), 인적자본 지수(Human Capital Index) 등의 3개의 하위지수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영국의 경우 25위에서 급 상승하여 4위를 기록하고 있다.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a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027](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027)).

100) 이윤경, “영국의 콘텐츠 진흥체계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 39면.

101) 망 중립성은 최종이용자의 인터넷 서비스공급자(ISP)(또는 타 ISP)가 특별한 이유료를 조건으로 콘텐츠 제공자들의 최종이용자에 대한 접근을 전면적 또는

들에게 망중립성 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망중립성의 인정 필요성에 관하여<sup>102)</sup> Ofcom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영국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 불평등 상황이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자간 경쟁이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기관이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 시장경쟁의 원리에 따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103)</sup> 이러한 Ofcom의 망중립성에 관한 입장에 따라 영국의 주요 브로드밴드 서비스 사업자들은 사업자가 정한 공정이용정책(Fair Usage Policy)에 입각하여 네트워크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인터넷TV,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등 콘텐츠에 더 많은 요금을 적용하거나 전송 속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과다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제제를 가하는 등의 자율규제를 취하고 있다.<sup>104)</sup>

예컨대, BT는 과도한 데이터 이용자에 대해서는 주요시간대(오후 5시부터 자정)에 속도를 감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Orange(France Telecom)는 브로드밴드

부분적으로 차단할 경우, 콘텐츠 제공자들의 인터넷 최종이용자에 대한 접근 및 그러한 접근에 있어서의 차별가능성에 관한 매우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된다. 망중립성의 개념에 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다. 그 선구적 개념으로서 미국의 법학자인 Werbach(1999), Lemley, Lessig(2001)에 의해 주장된 “개방적 접근(open access)”의 맥락에서 정의되기도 하였고,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Wu(2003) 교수이다. Christopher T. Marsden, 이희정(역), “방송통신시장에서 망중립성 관련 규제의 쟁점과 해법의 모색 - 망중립성: 영국과 유럽의 대응”, 경제규제와 법 제3권 제1호 Vol.3. No.1 (2010.5), 98면.

102) 망중립성을 인정하는 입장은 누구나 동등하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콘텐츠가 동등하게 접근되어야 한다는 비차별성(no discrimination) 원칙과 상호접속(interconnection), 접근성(accessibility) 원칙을 근간으로 한다.

103) 망중립성의 문제에 관하여 유럽에서는 많은 논자들이 이를 미국이 지역접속네트워크(local access network)에서 광대역을 둘러싼 경쟁(broadband competition)에 대해 가입자선로분리(Local Loop Unbundling) 규제를 포기함으로 인해 초래된 ‘미국적 문제’로 치부해왔다고 한다. Christopher T. Marsden, 이희정(역), 전개 논문, 98면.

104)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별 방송통신 현황 2010”(2010.12), 387면.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전송속도를 감소시키거나 서비스 정지 또는 계정 폐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국 휴대폰 전문 통신업체인 ‘O2’는<sup>105)</sup> 서비스 이용시 다수 또는 대용량의 이메일 송수신과 같이 네트워크의 과도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의 인터넷 서비스제공업체(ISP) ‘TalkTalk’의 경우<sup>106)</sup> 이용자의 사용량이 자사가 예상하는 일반적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초과할 경우에는 접속을 제한하거나 정지하고 있다. Virgin Media의 경우 이용자가 과도하게 네트워크를 사용한 결과 다른 이용자들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불편을 끼친 경우에는 시간대의 변경 요청이나 기타 사용에 대한 제한 등의 적절한 대응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107)</sup>

#### (나) 모바일 브로드밴드 진흥 정책

영국정부의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선 브로드밴드의 커버리지를 보완하고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 중 일부를 자유화하여 모바일 브로드밴드 사용을 가속화하며, 새로운 산업으로서의 촉진을 위한 4G 서비스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sup>108)</sup> 먼저 유선 브로드밴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모바일의 3G 모바일 서비스를 통하여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동 통신사들의 네트워크 투자를 유도하고 커버리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존 3G 사업권의 기한을 없애는 방안을 고려중에 있다. 또한 2011년 3월에 2G 서비스용으로 묶여 있었던 900MHz와 1800MHz 대역의 3G 개방을 통하여 차세대 통신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신기술 및 서비스의 제공기회를 확대하고,

105) <http://www.o2.co.uk/>

106) <http://sales.talktalk.co.uk/>

107) 한국인터넷진흥원, 위의 보고서, 388면.

108) Ofcom은 2007년 9월 영국의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 중 일부를 자유화하여 모바일 브로드밴드 사용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60억 파운드(약 120억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요국 전파관리 제도 및 관련 사례” (2009.3.8.).

시장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혜택의 증대가 예상된다. 또한 모바일 커버리지가 기존 보다 넓은 900MHz 대역의 개방을 통하여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보급 확대가 예상된다.<sup>109)</sup> 이러한 900MHz와 1800MHz 대역의 3G 개방은 모바일 브로드밴드 확대의 효과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모바일 브로드밴드 데이터 서비스의 이용 확대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바일 트래픽 급증현상을 해소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외에 영국 모바일 브로드밴드 산업의 성장 및 모바일 브로드밴드 확산을 위하여 유선 브로드밴드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구현하고 3세대 이동통신의 HSDPA보다 12배 이상 빠른 속도로 통신이 가능하고 다운로드 속도도 최대 173Mbps에 이르는 LTE(Long Term Evolution)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매와 기존의 무선랜보다 커버리지와 속도가 개선된 와이맥스(WiMAX) 서비스 등의 4G 서비스를 2013년에 상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800MHz와 2.6MHz 대의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sup>110)</sup> 이와 같이 영국정부의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진흥방향은 영국 전역의 모바일 서비스 인프라를 확대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영국 이동통신 산업과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사업자들은 이러한 영국정부의 방향에 따라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sup>111)</sup>

#### (다) 콘텐츠 진흥 정책

영국은 콘텐츠 진흥과 관련하여 1997년 창조산업 육성을 통한 ‘Creative Britain’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of Culture, Media &

109) 한국인터넷진흥원, “영국, 차세대 무선 통신 환경으로의 이행준비”, 글로벌 방송 통신 동향리포트 제41호(2011.3.25.).

110) 전자신문, 2011.3.24. (<http://www.etnews.com/201103230107>).

111) 영국 브로드밴드(UK Broadband)는 LTE 네트워크를 2011년 하반기까지 구축할 예정에 있으며, 빠르면 2012년 내에 LTE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영국브로드밴드, 올해 하반기 LTE 구축 계획”, Trand Report(2011.6.21.).

Sports, DCMS)를<sup>112)</sup> 설립하고 정보화 전략 중 하나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콘텐츠 진흥 정책을 펼치고 있다.<sup>113)</sup> 구체적인 콘텐츠 진흥 정책을 살펴보면, 2000년에 콘텐츠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으로써, 영국정부는 영국을 세계 최고 디지털콘텐츠 강국화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2000년 ‘영국 디지털 콘텐츠 육성 추진계획(UK Digital Contents Action Plan for Growth)’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지역경제 발전 차원의 방송통신 콘텐츠 육성에 나서고 있다. 또한 국가 전반에 걸쳐 정보통신기술(ITC)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한‘디지털 전략(Connection the UK: the Digital Strategy, 2005)’을 추진하고 있다.<sup>114)</sup> 이러한 디지털 전략의 당면과제로서 안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 마련과 혁신적인 광대역 콘텐츠 창조 및 광대역 통신망을 통한 디지털 격차해소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광대역 통신망을 이용한 공공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정보 소외계층 및 디지털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 소외계층의 인터넷 접근성 향상과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디지털 불평등 해소를 모색하고 있다.<sup>115)</sup>

콘텐츠 R&D 분야에 있어서는 2005년부터‘Gran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을 마련하여 기술혁신과 연구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콘텐츠 개발의 기술평가와 사업전략 등의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상품화를 위한 시제품 개발에 이르는 다양한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창조적인 제작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인터넷 지불 방식을 혁신하여, 합법적으로

112) <http://www.culture.gov.uk/index.aspx>

113) 1992년 설립된 문화유산부(Department for National Heritage)는 1997년에 문화 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s)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영국의 콘텐츠 산업에 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114) 이윤경, 전개서, 39면.

115) 이윤경, 전개서, 40면.

저작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Ofcom으로 하여금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콘텐츠의 유통을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Ofcom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불법 콘텐츠 공유 경고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상습적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불법 저작물이 온라인을 통하여 공유되는 것을 현재의 70%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Ofcom은 불법 콘텐츠의 유통 및 공유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포트 차단, 대역폭 차단, 데이터 이용량 제한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라) 이용자 보호 정책

영국의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은 이용자의 권익증진(consumer empowerment)과 이용자 보호(consumer protection)라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용자의 권익증진의 경우,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통신사업자와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의무를 통신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이용자 보호의 경우,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 권리확인 및 불만처리에 관한 일반조건 (general conditions)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sup>116)</sup>

Ofcom은 이용자와 통신사업자간 불만처리 및 분쟁의 해결과 관련하여 커뮤니케이션법 Section 52에 따라 통신사업자에게 불만처리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불만실행규약(Complaints Code of Practices; CCop)을 제시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불만처리와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

116) 일반규정(General Condition) 14는 불만 처리 및 분쟁 해결에 대한 제반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일반규정(General Condition) 14.1에 의하면, 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본적인 실행규약(Code of Practice)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그 내용으로 가격 등을 포함한 이용조건(terms and conditions)에 대해 명확하고 가장 최근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사업자의 이용자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평가제도 연구”, 정책연구 09-36(2009.11.), 90면.

있다.<sup>117)</sup> 사업자는 불만실행규약에 따라 불만을 제기한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처리해 주도록 한다. 또한 통신사업자들에게 대안분쟁해결절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를 수행할 수 있도록 Ofcom이<sup>118)</sup> 승인한 분쟁해결 기구에<sup>119)</sup>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Ofcom은 사업자가 불만실행규약을 마련하지 않거나 분쟁해결 기구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법 제96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공식적 경고(formal notification)를 하고 항변의 기회를 제공한 후 동법 제97조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sup>119)</sup> 이외에도 Ofcom은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이용자보호정책평가제도(Consumer Protection Policy Review; CPPR)제도를 2002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Ofcom은 이 제도를 통하여 통신이용료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통신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요금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밖에 사업자간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신산업부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sup>120)</sup> 감독을 받는 독립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청(Office of Fair Trading; OFT)에서 규제하고 있다.

117) 방송위원회, 『영국 커뮤니케이션법(상)』, 방송조사자료(2003.3), 77면.

118) Ofcom에서 인가하고 있는 대안분쟁기구로 CISAS(Communications & Internet Service Adjudication System)와 Otelo(Office of the Telecommunications Ombudsman)가 있다. 한국전파진흥원, “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관련 세부시행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2010.11), 36면.

119) 범칙금은 고지 기간후의 매출액의 약10%까지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커뮤니케이션법 제97조 참조).

120) 통신산업부는 중앙 정부 부처로서 이용자보호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용자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며, 이용자보호 관련 정부기관과 전국 소비자위원회와 같은 정부지원기관 및 소비자협회 등의 민간단체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역할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한국전파진흥원, 위의 보고서, 35면.

#### (마) 사회약자들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

영국정부는 사회약자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인터넷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의 정보접근 보장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sup>121)</sup> 이러한 사회약자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Get Digital' 프로그램의 시행이다. 이 프로그램은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촉진을 위한 것으로 영국내 가정에서 주로 생활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3분의 2이상이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영국정부는 영국 전국의 195개 노인보호시설을 이용하여 81개 농어촌지역 시설의 약 7,800명의 고령자들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고자 2011년 3월말까지 290만 파운드(약 53억 7,900만원)을 투입하고 있다.<sup>122)</sup> 또한 영국정부는 지역 공동체와 연계하여 노인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고령층이 쉽게 인터넷에 접근 할 수 있도록 공동 IT 이용시설을 구축하고, 컴퓨터 리터러시(literacy)를 촉진하기 위해 전문가 강사를 포함한 필요 자원들을 제공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sup>123)</sup> 이러한 영국정부의 고령층의 정보격자 해소 방안은 고령자의 정보격차 해소의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층과 고령자 간의 접촉을 통하여 상호간 신뢰와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세대간 사회통합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효용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영국정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통신 접속기회보장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청각장애인의

121) 'Get Digital' 프로그램은 인터넷 소회계인인 그들에게 인터넷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온라인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디지털시대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http://www.publictechnology.net/content/22341>).

122) 추후 추가적으로 300개 노인보호시설의 총 20,000명의 고령자들에게 인터넷 접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123) 지역 공동체와 연계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정비할 수 있도록 주택조합(Registered Social Landlords, RSLs)을 위한 광범위한 자료 지원을 제공하고 필요한 장비, 무료 교육과 자원, 지역 기관들과의 연계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음성통화 지원을 위한 텍스트 릴레이(Text Relay) 서비스를 개선한 ‘차세대 텍스트 릴레이 서비스(Next Text Relay Service)’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기존 텍스트 릴레이 서비스가 전용 릴레이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는 문제점과 함께 느린 대화속도, 사생활 보호 미흡, 감정전달의 어려움, 전용장치를 통한 접속 등의 문제로 인해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통신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였다. 영국정부는 이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통신 사업자에게 이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비디오 릴레이 서비스(Video Relay Service)’를 통해 광대역 브로드밴드에 이용하여 PC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통신접속기회를 보장하고 있다.<sup>124)</sup>

#### 나. 영국의 인터넷 진흥 관련 전담기구

##### (1)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BIS)

BIS는 통신을 포함한 영국의 경제 및 기업 활동 전반에 걸친 정책과 규제를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정부부처이다.<sup>125)</sup> BIS는 2009년 6월 과학, 연구, 기술의 혁신을 위하여 2007년 6월에 설립된 혁신대학기술부(Department for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 DIUS)와 기업사업규제개혁부(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 Regulatory Reform; BERR)가 병합하여 신설된 부처이다. BIS는 영국이 세계 경제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며, 과학·연구 분야에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BIS는 각 분야 핵심 전문지식을 결합하여 통합적으로 혁신정책을 구현하고자 하는 영국정부의 의지를 반영하여 연구개발 부분의 지원을 통한 산업계 혁신적 정책과 규제를 수행하고 있다.<sup>126)</sup> BIS는 영국의 혁신적 변화를 추구하는 ‘Digital

124) 한국인터넷진흥원, “영국 Ofcom, 장애인을 위한 통신서비스 개선(안) 발표”, 주간동향(8월 1주). <http://netsquare.kisa.or.kr/report/securityTrend/view.jsp?contentSeq=2065&cmd=&contentMasterSeq=1&contentSeq=2065&pageIndex=2&searchType=title&seqrchValue=&userCode=1>

125) <http://bis.gov.uk/>

Britain' 정책을 수립하고 영국의 디지털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BIS가 추진하는 디지털전략은 디지털 네트워크의 개선 및 현대화, 디지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개발, 국내외 투자 유지, 영국 고유의 콘텐츠 개발,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접근성 보장, 온라인 공공서비스 확산을 위한 인프라 및 기술 개발 등의 5대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국민들의 디지털 참여 유도를 위하여 비용지원, 교육지원, 환경마련을 통한 디지털소외계층을 지원하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보편적 서비스로서 브로드밴드 망의 확대와 NGN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개발과 교육 투자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sup>127)</sup>

## (2) 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of Culture, Media & Sports; DMS)

DMS는<sup>128)</sup> 영국의 방송, 예술, 크리에이티브 산업, 광고, 디자인, 영화, 음악, 출판, 인터넷 및 국제 정보통신산업 정책, 라이센스,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복권사업, 언론 자유와 규제, 스포츠, 통신 및 광대역, 관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각종 문화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부처이다. DMS는 영국의 방송을 포함한 영국의 문화 및 스포츠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주로 산업 네트워크 구축지원, 창작산업 대외 수출지원, 예술장르별 창작 및 제작지원, 문화예술기관 및 예술가 지원 등이 대표적인 정책 활동이다. DMS의 지원은 직접적 지원보다는 비부처 공공기관을 통한 간접적 지원 정책(Arm's Length)을 원칙으로 하여 정부보조금과 복권수익금(National Lottery Funds)을 지원하여 자율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sup>129)</sup>

126) 성지은, “영국 기업혁신기술부 개편의 의미와 시사점”, 과학기술 정책지, 과학 기술정책연구원(2009), 36면.

127)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별 방송통신 현황 2010” (2010.12), 351면.

128) 1992년 국가문화유산부로 1997년 미디어 및 스포츠 분야가 추가되어 문화미디어 스포츠부로 개명되었다.

129) 이윤경, 전개서, 70면.

이외에도 유럽 연합(EU), 국제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와 ITC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스팸, 정보공유와 지적재산권, 정보격차, 표현의 자유, 인터넷주소자원관리 등을 논의하는 유엔(UN)의 주관하의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3) 커뮤니케이션(Office of Communication; Ofcom)

Ofcom<sup>130)</sup>은 영국의 커뮤니케이션 산업을 독립적으로 규제하는 단일기구로서 2003년 12월에 출범한 영국의 방송통신규제위원회를 말한다.<sup>131)</sup> Ofcom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의 방송 및 통신분야를 나누어 관리하던 5개 독립기관으로부터<sup>132)</sup> 역할과 권한을 이양 받아 출범하였다. Ofcom은 기존의 5개의 규제기구의 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정보통신산업 및 미디어 정책과 규제정책의 3분할 구조로 되어 있다. Ofcom은 텔레커뮤니케이션의 인프라와 콘텐츠 규제를 담당하며, 규제의 내용으로 경제적 규제, 내용 규제, 주파수 관련 업무까지 모두 포함하는 단일 규제기구로서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기존 규제영역이 통합된 것뿐만 아니라 전문규제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sup>133)</sup> Ofcom은 기존 기구들과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기구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하고 기구간 협의를 통해<sup>134)</sup> 방송통신 부분의 경쟁보호와 증진에 관한 일관성 있는 규제정책을

130) <http://www.ofcom.org.uk/>

131) Ofcom은 역동적이 미디어 시장 형성과, 모든 설비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성 보장, 각 산업의 다양성과 복수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미디어 산업의 질적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132) Ofcom 이전 5개 기관은 방송표준위원회(Broadcasting Standards Commission), 독립텔레비전위원회(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텔레커뮤니케이션청 (Office of Telecommunications), 라디오위원회(Radio Authority), 라디오커뮤니케이션부(Radio Communications Agency)이다.

133) 이윤경, 전개서, 63면.

추진하고 있다.<sup>135)</sup>

영국 정부는 Ofcom의 출범을 위하여 2003년 방송통신융합법인 커뮤니케이션법(Communications Act 2003)을 제정하였으며, 이법을 통하여 통합규제기관으로서 Ofcom의 의무 및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BIS, DMS가 정부 부처임에 반하여 Ofcom은 정부와 독립된 기관으로서 이사회(Board)와 집행국(Executive),<sup>136)</sup> 재정위원회(Finance Committee),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 보상위원회(Remuneration Committee)로 구성되어 있다. Ofcom의 주요임무는 2003년에 제정된 커뮤니케이션법의 규정에 따른 국민의 이익증진, 방송통신 분야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의 이익 증진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규제 및 허가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sup>137)</sup>

134) 방송통신과 관련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제 기구들에게 이를 고지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해당 사안을 담당할 규제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나, 통상적으로 통신과 관련된 사항은 Ofcom이 담당함.

135) 예컨대,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는 방송 산업이 영국, EU 등에서 추구하는 기술표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지만,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Ofcom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통상산업부 장관은 국가안보, 국제협약 및 공공안전 등을 위하여 네트워크 및 주파수 관리정책에 관하여는 Ofcom에 정책권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136) 집행국은 Ofcom의 운영, 업무 등을 담당하는 운영집행부(Operation Executive)와 대외홍보 및 연락을 담당하는 대외교섭부(External Relations Executive), 핵심적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정책집행부(Policy Executive)로 구성되어 있다.

137) 모든 상업텔레비전(BBC 제외)의 면허와 규제 기능을 담당하는 독립텔레비전 위원회 기능과 라디오 방송을 규제하는 라디오위원회 기능, 독립 텔레비전 방송국의 방송규정을 제정하는 방송규제위원회의 일부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존의 전기통신청(OFTEL)이 담당하고 있던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포함한‘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 대한 규제 담당하고, 방송서비스의 허가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적 사항의 규율로서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완화, 통신부분에 있어서 경쟁법 및 기업법 관련 규제집행을 전기통신청(Office of Telecommunications; OFTEL)과 공동으로 관할하고 있다. 이윤경, 전계서, 64면.

#### 다. 영국의 인터넷 관련 법제

##### (1) 커뮤니케이션법(Communications Act 2003)

커뮤니케이션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문제를 영국정부가 규제의 통합과 단일화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영국정부는 방송통신융합과 같은 새로운 환경의 등장과 디지털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의 수행하기 위하여 단일전담 기구의 필요성에 따라 방송통신 전담규제 기구인 Ofcom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인 커뮤니케이션 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방송법(Broadcasting Act 1996), 무선전신법(Wireless Telegraphy Act 1998) 등의 기존의 법령들의 단순한 통합형태가 아니라 기존의 법령들이 규정하고 있지 못하였던 영역의 문제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선한 형태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동법은 Ofcom 역할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전파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서비스의 제공과 전파 스펙트럼(radio spectrum)의 사용에 대한 규제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방송과 텔레비전, 라디오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규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신문과 기타의 미디어 기업이 관계되는 합병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이와 관련된 2002년 기업법의 수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은 제1부에서 Ofcom의 권한과 역할을 규정하고 역할 수행을 위한 일반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네트워크, 서비스, 라디오 스펙트럼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부를 통하여 텔레비전과 라디오 서비스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제4장은 규제조항으로서 규제체계와 공공 서비스로서의 텔레비전 서비스의 규제와 독립 라디오 서비스의 규제 등을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영국의 방송통신 분야에 관한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 (2) 디지털경제법(Digital Economy Act 2010)

디지털경제법은<sup>138)</sup> 지식재산권을 강력히 보호를 위하여 저작물의 불법적인

138) 영국 상원에서 통과(3월 16일)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온라인 저작권을 침해한 사용자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책임을 부과한 디지털경제법안이 4월 8일 하원에서 찬성 189표 반대 47표로 통과됨.

온라인 유통을 억제하고, 온라인 저작권 보호의 강화를 통하여 콘텐츠 유통의 활성화, 미래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온라인상 저작권침해의 문제와 침해자의 처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sup>139)</sup> 동법은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규정과 저작권 침해에 처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실연자의 권리, 인터넷 도메인 등록 및 텔레비전과 라디오 서비스의 등록에 관한 규정 및 전자출판물과 관련된 권리의 규정에 대한 Ofcom의 역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경제법은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터넷 서비스제공자 (Internet Service Provider)에게 가입자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는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sup>140)</sup> 저작권침해의 증거로서 가입자의 IP주소와 접속시간 등의 증거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sup>141)</sup> 모든 인터넷 사용자의 인터넷사용을 의무적 감시, 인터넷 접속서비스 보호를 위한 무단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sup>142)</sup>

이러한 영국정부의 온라인 저작권 보호강화의 정책은 영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반발과 함께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논쟁이 발생되고 있다. 1995년 설립되어 약 200개 이상의 회원사들이 가입되어 있는 영국의 인터넷 서비스제공자 연합(Internet Services Providers' Association; ISPA)은 디지털 경제법(DEA, 2010)상 ISP 법적 책임문제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고 자율규제 및 인터넷 정책 개발에 대한 제언 8개를 수립하는 등 집단적 반발의 움직임을 보인바 있다. 또한 유럽의 인터넷 자유 옹호 단체인 Open Rights Group은 정부에 의한 웹사이트 차단은 자유로운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제음반산업협회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IFPI)와 미국 음반산업협회

139)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0/24>

140) Digital Economy 2010. §124A.

141) Digital Economy 2010. §124A.(3).(c).

142) 사이트차단과 관련하여 최근 영국 정부는 정부가 법원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디지털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웹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경제법에 대한 계획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한다. 데일리시큐, 2011.8.6. ([http://dailysecu.com/news\\_view.php?article\\_id=380](http://dailysecu.com/news_view.php?article_id=380))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RIAA) 등의 콘텐츠 산업계는 찬성하고 있다.<sup>143)</sup>

#### 라. 시사점

##### (1) 영국정부의 인터넷 진흥을 위한 강력한 정책추진

영국의 인터넷 진흥정책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선도적인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방송통신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콘텐츠 육성 등을 통해 미래 디지털 지식경제 국가로의 전환을 핵심적인 정책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정부의 국가 정보화 진흥을 위한 장기적이고 강력한 인터넷 진흥 정책은 사업자간 시장 경쟁을 촉진시켜 영국의 초고속 브로드밴드 인프라 확충 및 시장 활성화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영국정부의 정보격차 해소 노력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접근성에 대한 노력을 통합적 인터넷 진흥정책을 추진하는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영국정부의 인터넷 활성화 정책은 각 방송통신의 융합 환경을 고려하면서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의 규제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시장경쟁을 유도하면서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와 같이 사회 공익적 정책에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영국의 특징적인 진흥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2)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 규정의 실현

영국의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은 이용자의 권익증진과 이용자 보호라는 목표로 설정하고 이용자에게 통신사업자와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과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 권리확인 및 불만 처리에 관한 일반조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점은 이용자보호를 보다 충실히 할

---

143) 한국인터넷진흥원, “영국 ISPA, 8대 인터넷정책 제언”, 인터넷 & 시큐리티 이슈 Vol 2010 No.9 3-Net Trend (2010).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신사업자들에게 ADR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자의 권리가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3) 영국정부의 적극적인 콘텐츠 진흥

영국정부의 콘텐츠 진흥에 대한 노력은 국가차원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이러한 콘텐츠 진흥은 디지털 전략과 함께 공공서비스와 콘텐츠제공이 함께 추진되고 또한 콘텐츠 R&D 분야의 기술혁신과 연구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디지털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보호가 동시에 추진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준다.

### (4) 인터넷 진흥 전담기구간 긴밀한 협조체계와 법제도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출범한 단일규제기관인 Ofcom은 인터넷과 관련한 일관성 있고 강력한 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문제를 극복하고 기존 기구들과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기구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하고 각 기구간 협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영국의 인터넷 진흥 정책은 이와 같이 전담 기구간 긴밀한 협조체계와 이를 명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 5. 프랑스

### 가. 미니텔과 인터넷 도입의 지연

이미 1980년대 개발, 보급된 미니텔 (Minitel)<sup>144)</sup> 덕분에 프랑스는 90년대 초까지만

---

144) 프랑스 텔레콤이 개발, 보급한 대중정보통신망 접속 단말기. 간단한 작동으로 주소 및 전화번호 찾기, 각종 표 예매, 통신 주문판매, 각종 정보, 뉴스 속보 등 다양한 정보를 다룰 수 있었던 덕분에 단시간에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해도 세계적으로 대중정보통신 분야에서 가장 앞선 나라였다. 그러나 미니텔과 인터넷 사이에서 고민하던 프랑스 정부가 미니텔을 고집하면서 인터넷 대중화에 주저해 왔다. PSTN망 (일반전화망)을 이용하는 미니텔은 그 범위가 프랑스 국내로 제한되며 정보의 처리량이나 속도에서 인터넷에 뒤쳐질 뿐 아니라, 이용요금 또한 인터넷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국내요금으로 국제적 정보망에 접속이 가능한 인터넷파의 경쟁에서 미니텔이 뒤쳐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프랑스는 특유의 자존심과 반미 민족주의를 앞세워 인터넷을 매도했으며, 인터넷의 대중화로 미국에 정보종속화 된다는 논리까지도 내세웠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의 진짜 고민은 미니텔을 포기하고 인터넷을 도입할 경우 감수해야 할 엄청난 재정적 부담에 있었다. 프랑스 정부가 그 동안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해 구축한 미니텔 체계가 순식간에 증발할 위기에 처해졌던 것이다. 그 사이 프랑스 국회에서도 좌우파 정쟁과 함께 미니텔파와 인터넷파로 나뉘어 격론이 벌어져 왔으며, 1997년 등장한 사회당 리오넬 조스팽 (Lionel Jospin) 총리의 정부에 이르러서 미국의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을 따라잡기 위한 인터넷 대중화 (popularisation 또는 *démocratisation*) 정책이 본격적으로 입안되기 시작하였다. 본 정보통신정책안은 교육, 문화, 상거래, 기업, 공공서비스 및 입법의 여섯 분야로 나뉘어 발표되었는데, 모든 학교에 멀티미디어를 보급 하는 등 인터넷 교육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공공도서관 및 박물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하며, 모든 신문, 잡지가 인터넷에 올라올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상거래 분야에서 정보 통제를 완화시키고 정보관련 산업의 기업체를 대폭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

프랑스 대부분의 회사, 공공기관은 이 미니텔 체계를 갖추었으며, 미니텔 단말기가 전국적으로 6백만대 이상이 보급된 것만 봐도 프랑스 정보통신체계에서 미니텔의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미니텔은 90년대 초에는 미국과 우리나라에도 수출되었으나 (KT 하이텔), 곧 후발 주자였던 인터넷에 따라 잡히게 되었고, 급기야 프랑스의 전국적인 통신망 미니텔은 인터넷 보급을 저해하는 최대의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

정보통신 관련 법안을 재정비하고, 공공부문의 정보를 인터넷에 개방해 행정이나 민원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령 소득세 등 세무관계 신고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런 야심 찬 계획을 발표하면서 조스팽 총리는 세계적으로 정보부국과 정보빈국간의 격차가 심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정보통신 대중화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뉴딜정책적 논리를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의회차원에서도 인터넷의 열렬한 주창자인 파트리스 마르탱 라랑드 (Patrice Martin Lalande) 의원이 134가지 법제 안을 포함한 인터넷 보고서를 인터넷 대중화에 힘을 보탰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프랑스의 모든 박사 학위논문을 인터넷에 올리고 전체 공무원에게 인터넷 메일주소를 주어야 한다는 등의 당시로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획기적인 제안을 하였는데, 이는 결국 이후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모두 실행에 옮겨졌다.

#### 나. 프랑스의 인터넷 관련 주요 법률 및 기구<sup>145)</sup>

프랑스는 인터넷과 관련된 통일된 법률이 없이 다른 법률들을 모두 감안해야 하는 복잡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sup>146)</sup>. 인터넷 관련 법제는 「텔레커뮤니케이션법」, 「언론법」, 「상법」, 「사법」, 「조세법」 등 복합적으로 내용 및 책임 문제를 규율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인터넷의 발달과 보급의 확대에 따라 「텔레커뮤니케이션법」과 「미디어법」을 중심으로 인터넷 법제 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

145) “해외 주요국 인터넷 규제현황과 시사점” (2008년 12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정책개발팀)을 기초로 수정, 보강 (2009, 2010년 신규사항 포함)

146) 예를 들어 인터넷 콘텐츠와 관련된 규제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법규제보다 현행 법상 불법인 아동포르노나 인종차별 콘텐츠를 차단에 초점을 두고 있다.

&lt;표 3-5&gt; 프랑스 인터넷 관련 주요 법률 및 내용

관련 법률	주요 내용
정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유통의 투명성과 진실성, 책임성, 비밀보장 등</li> </ul>
텔레커뮤니케이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거리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에 대한 규칙과 통제 중심 네트워크, 서비스, 통신장비를 중심으로 적용</li> </ul>
사생활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밀된 정보의 보호</li> <li>통신비밀의 보호</li> <li>개인건강 및 의학적 정보의 보호</li> </ul>
방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터넷 관련조항 신설(2000) 디지털지상파방송, 인터넷사업자 활성화 및 전자상거래 조항 포함</li> </ul>
정보화사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6년 신규 입법 (복고 4페이지 참조)</li> <li>인터넷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li> </ul>
창작과 인터넷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9년 신규 입법 (본고 6페이지 참조)</li> <li>인터넷에서 창작물 배포와 권리 보호</li> <li>불법다운로드 근절</li> </ul>

이러한 법률들을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에서 인터넷과 관련된 여러 기구들이 설립되어 있으며, 정부에서는 법정기구로 전기통신 및 우편 규제기구 (ARCEP), 방송위원회 (CSA), 국가정보자유위원회 (CNIL) 등을 두고 있다. 동시에 문화통신부 (Ministère de la Culture et Communication)와 2010년 경제금융산업부(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 산하에 신설된 산업에너지디지털경제부 (Ministère chargé de l'Industrie, de l'Énergie et de l'Économie numérique)가 인터넷 관련 제반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lt;표 3-6&gt; 프랑스의 인터넷 관련 주요 공적 기관 및 부처

기관 또는 부처	설립 목적	관련법
ARCEP (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s Electroniques et des Postes, 전기통신 및 우편 규제 기구, 통신위원회)	1997년 설치된 전기통신 및 우편 정책 총괄 국가독립위원회	텔레커뮤니케이션법
CSA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방송위원회)	1989년 설립된 방송총괄 국가 위원회. 방송 및 인터넷 콘텐츠 및 관련 소프트웨어 담당	법률 n°86 1067 (방송 관련법)
CNIL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국가 정보화 및 자유 위원회)	1978년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 접근권의 자유를 위해 설립된 독립기구.	정보화,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HADOPI (Haute Autorité pour la Diffusion des Oe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 인터넷에서의 창작물 배포와 권리 보호를 위한 고등기구)	인터넷에서의 창작물 보호와 불법 다운로드 근절을 위해 2009년 설립 (본고 6페이지 참조)	창작과 인터넷 법
DGMIC (Direction Générale des Médias et des Industries Culturelles, 문화통신부 미디어문화산업국)	통신서비스 제반 및 미디어, 광고산업 등의 발전을 위한 정책 결정 및 시행	구, SJTIC (정보통신 관련 법률서비스, n°95 412)
DUI (Délégation aux Usages de l'Internet, 산업에너지디지털경제부 산하 인터넷이용위원회)	2008년 산업에너지디지털경제부 설립과 더불어 설치된 인터넷 이용진흥을 위한 위원회	

프랑스에서 실질적인 인터넷 규제는 민간 자율 중심이며, 이와 관련하여 십여 개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나 그 중 사업자단체(AFA 및 ACSEL)와 일반시민단체(AUJ) 그리고 전문가단체(FDI), 4개의 기관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lt;표 3-7&gt; 프랑스 인터넷 관련 자율기관

기관명	주요 활동
AFA (Association des Fournisseurs d'Accès à Internet, 인터넷접속서비스공급사업자협회)	“핫라인” 운영 및 재정지원
AUI (Association des Utilisateurs d'Internet, 인터넷이용자협회)	인터넷 이용 확산과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1996년 설립된 시민단체
ACSEL (Association pour le Commerce et les Services en Ligne, 전자상거래협회)	1980년 설립. 전자상거래 분야 200여 회원사로 구성된 프랑스 최고의 인터넷 자율 사업자 단체
FDI (Forum des Droits sur l'Internet, 인터넷권리포럼)	인터넷상의 법률문제 논의, 이용자간 화합, 정보제공 등. 전문가 단체
Action Innocence (아동보호기구)	브뤼셀, 제네바, 모나코, 파리에서 아동권익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

다. 정보화사회관련법 제안과 「정보화사회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

(Droit d'Auteur et Droits Voisins dans la Société de l'Information)」

1997년 이후 프랑스 인터넷 대중화 정책 논의에서 무엇보다도 주목할 만한 부분은 프랑스의 정보통신 관련 법안의 재정비 및 신규 입법이다. 이는 리오넬 조스팽 총리가 입각 이후 2000년 초 국회에 제출될 때까지 2년간 총리실의 지휘하에, 경제금융산업부, 법무부, 문화통신부 등 각 부처간의 긴밀한 협의 하에 제안된 정보화사회관련법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본 법안의 기본적인 취지는 인터넷 네트워크 상에서 이용자들간의 신뢰를 증진함으로써 그에 따른 인터넷 이용의 일반화를 도모함에 있다. 그러나 본 법안의 실질적인 목적은 통신의 자유, 전자상 거래 지침 (전자서명 포함), 콘텐츠 및 저작권 보호 등 기존의 프랑스 법을 어떻게 인터넷에 효과적으로 적용시키는 가에 있으며, 또한 인터넷에서의 각종 범죄에 보다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관의 설립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와 목적을 가장 성공적으로 구현시킨 첫 번째 법안이 프랑스 상하원에서의 격렬한 논의와 수정을 거쳐 2006년 6월 통과되고 같은 해 8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정보화사회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 일명 DADVSI 법이다. 이 법안은 또한 2001년 내려진 유럽연합의 지침<sup>147)</sup> 중 일부를 프랑스 국내법에 적용한 것으로 “작가들은 창작물이 개인적,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될 경우 온라인 통신 서비스에 적합하게 만드는 어떤 재가공작업도 금지할 수 없다”라는 내용에 기반을 두고 있다.

프랑스판 DMCA<sup>148)</sup>라 불리는 DADVSI법은 MP3등의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한 네티즌에 대해 최대 40유로 (약 60,000원)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CD, DVD 등의 복제방지장치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를 해킹하거나 해킹을 돋는 소프트웨어(SW)를 제작, 판매한 사람에게 최대 30만유로 (약 4억5,000만원)의 벌금과 최장 6개월의 금고형을 처하도록 했다. 또 해킹 소프트웨어를 소지한 사람은 벌금 750유로 (113,000원), DVD, CD등의 복제방지장치를 해제한 사람은 건당 3,750유로 (5백6십만원)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통과 과정에서 가장 좌우파간 가장 쟁점이 되었던 글로벌 라이선스 (License globale) 조항은 결국 우파성향의 집권당 대중운동연합 (UMP)과 중도 정당의 반대로 삭제되었다. 글로벌 라이선스는 일반 개인사용자에게 매달 8~12유로 (1,200~1,800원) 가량의 정액 수수료를 부과하는 대신 P2P를 무제한 허용하자는 내용으로, 좌파 성향의 야당들이 영화, 음반업계를 보호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안으로 주장했었다. 이는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 파일을 공유하는 것이 적어도 프랑스에서는 불법적인 행동이 아닌 것이 되는 것으로, 2005년 12월 하원까지 통과한 본 조항이 상원까지

147) Copyright Directive (공식적으로는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특별한 경우에는 “Information Society Directive” 또는 “InfoSoc Directive”라고도 불려짐.)

148) 1998년 제정된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으로 온라인저작권을 강화하고 이를 방해하는 기술개발을 불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과되었더라면,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P2P를 합법화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었다. 또한 본 법안은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음악파일 포맷을 동종 업체들과 공유해 소비자들이 어떤 기기에서든 구입한 음악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프랑스 음원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애플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애플을 이 법안에 강력히 반발, 프랑스 헌법위원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 DADVSI법은 이후 HADOPI법 등에 의해 보완, 강화되어 인터넷에서의 창작과 저작권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프랑스 인터넷의 대중화와 진흥을 위한 정보화 사회 관련법의 기본 축을 이루게 된다.

라. 「창작과 인터넷법 (Loi Crédation et Internet)」 또는 「인터넷 상에서 창작물 배포와 권리 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법 (Loi favorisant la diffusion et la protection de la création sur internet)」 또는 「HADOPI법」

본 법률은 인터넷상의 P2P 다운로드가 야기하는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프랑스 국내법으로 2009년 5월 프랑스 상하원을 통과하고 6월 공표되었으며, 그 실행을 위해 같은 해 11월 설립된 ‘독립규제기구 인터넷에서의 창작물 배포와 권리 보호를 위한 고등기구(Haute Autorité pour la Diffusion des Oe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의 약자를 따 「HADOPI법<sup>149)</sup>」이라고도 불린다. HADOPI 기구는 음반업계나 영화업계의 신고를 접수하고 인터넷접속사업자(통신사업자)와 공조해 범인을 색출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법률은 불법 다운로드를 하다 적발되면 먼저 e메일로 서면 경고를 받고, 추가경고가 2회 이상이면 최장 1년간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등 단계적 처벌 (riposte graduée) 골자로 하고 있다.

---

149) 본 법령이 규제하고 있는 방식을 따라 국내 언론에서는 “삼진아웃제”라고도 부른다.

### 「창작과 인터넷법」의 주요 내용

- o 인터넷에서 창작물 배포와 권리 보호를 위한 독립 고등기구의 설립
- o 인터넷접속사업자에게 그 불법다운로드에 대한 감시소홀의 책임을 물어 행정적인 제재 가능<sup>150)</sup>
- o 불법다운로드 이용자에 대한 단계적 방식의 처벌: 1회 적발 시 e메일을 통한 서면 경고 → 2회 적발 시 등기우편을 통한 최종 경고 → 3회 적발 시 인터넷 접속 차단
- o HADOPI의 기능: 불법다운로드를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비의 IP주소 (불법이용자의 신원확인 증거<sup>151)</sup>) 및 인터넷접속사업자를 저작권자에게 제공, 불법다운로드 이용자의 색출 및 인터넷접속 차단 등

그러나 본 법률은 공표 직후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은 인권에 관한 문제"라는 이유로 프랑스 헌법위원회로부터 새 정부기구가 개인의 인터넷 접근을 차단하는 것에 반대함에 따라, 상하원의 재심의를 거쳐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 정부기관 HADOPI가 아닌 판사에게로 옮겨 2009년 9월 새 공표를 맞게 된다.<sup>152)</sup> 이에 따라 HADOPI 기구는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를 추적해 1, 2차 e메일 및 등기우편을 통한 서면경고 후, 3번째 적발되는 이용자를 법원에 제소, 판사가 인터넷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이용자는 최대 30만유로 (약 4억5,000만원)의 벌금형이나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도록 했으며, 또 직무를 게을리해 불법 다운로드가 이루어지도록

150) 본 조항은 이미 2006년 DADVSI법에도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나 별처 조항을 신설하였다.

151) 프랑스소비자연합 (UFC Que Choisir)은 아무나 다른 IP주소의 획득이 간단하기 때문에 불법 이용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증거로 이용되기 불충분함을 지적

152)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2009년 6월의 HADOPI법과 구분하기 위하여 「인터넷 상에서 문학 및 예술 재산에 대한 형사상 보호를 위한 법률 (Loi relative à la protection pénale de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sur internet)」 또는 「HADOPI 2법」이라 불린다.

한 인터넷접속서비스 업체에도 1,500유로 (약 227만원)의 벌금과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접속 중지 기간에는 타 인터넷접속사업자를 통해 재가입할 수도 없도록 했다. 중지 기간은 잠정적으로 1년으로 정했으며, 단 이용자가 재발 방지를 각서를 통해 약속할 경우에는 인터넷 사용 금지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까지 감면 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인터넷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인터넷 사용료는 계속 지불해야 하며, 인터넷 전화, IPTV가 포함된 결합상품에 가입한 경우 IPTV나 인터넷 전화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법률은 "HADOPI 라벨" 창안에 대해서도 권고한다. 이 라벨은 음성영상물 규제기구인 CSA (Comité supérieur de l'audiovisuel)가 정한 규정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합법적인 다운로드 사이트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라벨을 부여 받은 사이트들은 검색엔진 결과에서도 상위에 배치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또한 레스토랑, 까페, 호텔, 도서관, 공원, 대학 등 공공장소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통해 인터넷에 무료로 접속하는 경우를 감안, 본 법률은 상기 공간에서 인터넷 접속 시 불법 다운로드를 방해하는 기술적인 장치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 할 수 있다는 좌파 정당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대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적용에 있어서도 HADOPI법이 실행된 지 2년이 다된 현재까지 3번의 적발로 법원에 제소된 이용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sup>153)</sup>. 반면 2010년 말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법에 의해 감시 받지 않는 스트리밍 서비스나 다운로드 사이트 등 불법 파일공유 서비스 이용률이 법 실행 이전 12.4%에서 오히려 15.8%로 높아져 실질적으로 법 효과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HADOPI법은 저작권법 적용과 관련하여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유럽 차원의 더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갈로 리포트 (Gallo Report)<sup>154)</sup>"의 주요한 골자로

153) HADOPI는 모든 위반자가 아닌 일부 위반 건수가 과다한 저작권 침해자를 대상으로 한 선택적인 추적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추적을 위한 요원 및 모니터링 비용에 있어서도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반영이 돼, 2010년 9월 유럽의회를 통과하기도 하였다.

#### 마. 디지털 프랑스 2012 (France Numérique 2012)

프랑스에서 디지털 경제가 산업적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고찰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니콜라 사르코지 (Nicola Sarkozy) 대통령이 집권하면서부터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경제금융산업부 산하에 산업에너지디지털경제부라 명명한 부처를 신설하고 그 첫 장관으로 나탈리 코스시우스코 모리제 (Nathalie Kosciusko Morizet)를 임명하며, 코스시우스코 모리제 장관은 프랑스 최초의 디지털 경제 개발 계획인 "디지털 프랑스 2012" 입안에 착수, 2008년 산업에너지디지털경제부 2대 장관이 에릭 베숑 (Eric Besson)에 의해 발표된다. 본 계획은 2012년까지 프랑스의 국가적 디지털화를 목표로 154개의 제안을 담고 있으며, 아래 3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4가지 우선적 실행과제를 두고 있다.

##### "디지털 프랑스 2012"의 3가지 목표

- 전 국민의 초고속 인터넷 접속 보장
- 2011년 11월 30일까지 디지털 전환 완료
- 지역별, 세대별, 계층별 정보격차 완화

##### "디지털 프랑스 2012"의 4가지 실행과제<sup>155)</sup>

- 전 국민의 인터넷 접속 및 디지털 콘텐츠 접근성 강화
  - 초고속 인터넷에 누구나 저가로 접속할 수 있는 권리 신설 (월 35유로 이하의 접속 장비 및 접속 서비스 가격, 2010년 1월 1일부)

154) 프랑스 우파여당인 UMP 소속 마리엘 갈로 (Marielle Gallo) 의원에 의해 작성돼 제출

155) France numérique 2012 - Plan de développement de l'économie numérique , 2008년 10월, La Documentation Française - 산업에너지디지털경제부

- 노인 및 중소기업 인터넷 사용법 교육 전담 대사단 조직
- FTTx 개발 및 공용망 보급을 위한 민관합작회사 설립 (지자체 등)
- 2011년 11월 30일까지 아날로그 TV 방송의 지역별 단계적 디지털화 완료 (16개 신규 디지털 무료 채널 신설, 유효 주파수 이용 대가의 노인 및 중소기업 인터넷 교육을 위해 사용 등)
- 2010년까지 아날로그 라디오 방송의 디지털화
  - 제 4 이동통신 사업자용 주파수 할당 등
- o 디지털 콘텐츠 (인터넷 등) 및 서비스 제작 환경 조성
  - 보호대상 디지털 콘텐츠 종류 발간 (영화, 음악 콘텐츠 등)
  - 비디오 게임 및 소프트웨어 R&D 지원 등
- o 기업, 공공기관 및 가정에서의 인터넷 이용 및 서비스의 활성화와 다양화
  - 전자신분증 도입 및 전자서명의 일반화
  - 전국 36,000개의 초등학교에 전용망 구축 및 PC보급 그리고 전국 400 개소 인터넷이용센터 구축
  - 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 등
- o 디지털 경제 관할 민관 기관의 현대화
  - 미상무성 관리하의 ICANN가 담당하고 있는 인터넷주소관리정책의 세계 공유화 요청
  - 프랑스 내 10여 개 민관 인터넷관련 기관을 신규로 설립되는 CNN (Conseil National du Numérique, 국가디지털)으로 통합<sup>156)</sup> 등

현재 디지털 프랑스 2012 5개년 계획의 4번째 년도가 진행 중이며, 이 계획으로 인해 디지털 콘텐츠 및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와 정보격차 완화, 이동통신 주파수의

---

156) “Synthèse du rapport relatif à la création du Conseil national du numérique”, 2011년 2월 25일, Pierre Kosciusko-Morizet가 산업에너지디지털 경제부장관 Eric Besson에게 제출한 보고서

신규 할당으로 스마트폰 판매 활성화 (전체 72MHz), 평판디지털 HDTV로의 대체 가속화, 초등학교용 저가 PC 판매의 폭발적 증가 등 실질적 효과가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sup>157)</sup>.

#### 바. 결론

인터넷 관련 통일된 법률의 부재를 개선하기 위한 각종 프랑스 인터넷 진흥 법률들의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목표는, 미니텔로 인해 1990년대 이후 뒤쳐져진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을 대중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은 물론, 인터넷을 직간접 도구로 하여 프랑스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하기 위함에 있다. 특히 2008년부터 시행된 "디지털 프랑스 2012"는 프랑스 인터넷 진흥법 정신을 구현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범 국가적 계획으로,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 콘텐츠 보호 및 정보격차의 완화는 물론, 경제적 파급 효과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제적인 효과로서 2011년 프랑스 총리실이 의뢰하고 맥킨지가 작성한 보고서<sup>158)</sup>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인터넷이 프랑스 경제성장률에 기여한 바가 2005년까지는 10% 내외에 머물렀던 반면, 2005년 이후 2009년까지는 20% 내외, 2009년과 2010년에 이르러서는 25%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각종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e커머스, 온라인광고 등 인터넷을 통한 직접적인 경제 효과만도 2010년 프랑스 GDP의 3.7%, 약 720억 유로 (약 109조4천억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9년 대비 0.5% 상승: 3.2%, 약 600억 유로 / 91조7천억 원). 그러나 프랑스의 인터넷 진흥법이 갖는 궁극적인 목표가 자국의 주요 산업인 각종 지식 자산의 보호와 육성에 두고 있음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예술과 지성의 나라로 불리는 프랑스의 철저한 저작권 보호 인식에 더해, 가치 있는 많은 지식 자산이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오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합의를 해왔기

---

157) 프랑스 주요 일간지 (Le Monde, Le Figaro, Les Echos, etc.)

158) “Impact d’Internet sur l’économie française”, 2011년 3월, McKinsey & Company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특히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고찰한 DADVSI법과 HADOPI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속 법률들이 200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되는 과정 속에서 인터넷에서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논의 또한 끊임없이 전개되어 왔음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 6. 일본

### 가. 인터넷 진흥정책과 법체계 정비

일본에서의 인터넷 진흥을 위한 정책과 법제도는 통신·방송의 통합법체계와 깊은 관련이 있다. 즉, 일본에는 방송과 통신 서비스가 보다 편하고 쉽게 사용될 수 있는 기술적·사업적 요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되지 못하는 서비스가 있거나 신속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종래의 8개의 법률로 통신과 방송을 분리하여 규제하는 세분화된 법체계가 일본의 정보화사회 촉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강하였다.<sup>159)</sup> 이러한 인식 아래 시작된 통신·방송 통합법체계의 구상은 2000년 중반 자민당의 고이즈미 내각에서부터 시작되어 2009년 말에는 새로운 법체계인 ‘정보통신법(가칭)’으로 일원화하는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논의가 완전히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권이 교체되는 정치적 분위기에 의해 성사되지 못하였다. 2009년 정권을 잡은 민주당 정권은 통합법 체계인 ‘정보통신법’의 내용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법의 승인을 반대하였으며, 결국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종래 통신·방송 관련 8개 법률을 4개로 통합하는 수준에서 법체계 정비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2010년 일본 통신·방송 관련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법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융합서비스의 도입과 촉진이라는 최초의 구상에서는 크게 후퇴한 불충분한 개혁

159) 박민성, “일본 정보통신법(가칭) 무산 원인과 통신·방송 관련법 주요 개정 내용” 정보통신정책 제23권2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1, 4면.

이었지만 종래의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규제하던 관련 법률을 방송과 통신을 중심으로 묶었다는 점, 통신과 방송이 융합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 통신, 방송 관련법에서도 융합 환경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나. 통신·방송 융합 법체계에 대한 논의

일본의 경우 종래 통신 사업 관련법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 사업 관련법으로는 방송법, 유선TV방송법, 유선라디오방송법,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등 모두 8개의 법률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와 같이 통신과 방송을 분리하는 법체계는 정보화사회 촉진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따라서 방송의 개념을 없애고 미디어 서비스라는 보다 큰 개념에 포함시켜 통신과 방송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려는 구상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2000년대 중반 고이즈미 내각에서 정부 주도로 통신방송 융합 환경에 부응한 법체계 구성을 위한 노력이 시작된다. 즉 2005년 12월 일본 총무성에 의해 ‘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법제도와 행정의 위상에 관해 검토하는 지식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통신·방송 융합 법체계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2008년 2월에는 통신방송심의회 산하에 ‘통신·방송의 종합적 법체계에 관한 검토위원회’를 두는 등 활발한 논의과정을 거쳐 그 성과로서 2009년 말에는 새로운 법체계인 ‘정보통신법(가칭)(이하 정보통신법이라 한다)’으로 일원화하는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고, 기존의 방송 관련 4개의 법률을 방송법으로, 통신 관련 2개 법률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각각 통합하며, 전파법과 유선전기통신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통신·방송 관련 8개 법률을 4개로 통합하는 것으로 하여 기존의 TV 중심의 전통적 미디어 체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법체계 정비를 마무리하였다.

일본에서 논의된 방송·통신 융합법 체계인 정보통신법의 의의는 통신과 방송 분야의 기술 혁신의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를 이에 걸맞게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평적 규제체계로<sup>160)</sup>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지향은 미국, 유럽, 일본의 경향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 지향적 법률체계 개편을 위한 방향으로서 시사되고 있는 점이 많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정보통신법은 비록 여러 가지 이유로 성안되지는 못하였으나, 현재의 법체계 개선이 현실에 대응하기 적절치 아니한 미봉적이고 불충분한 것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향후 개선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므로, 이 법안의 내용적 특징과 한계를 살펴보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

#### 다. 정보통신법(안)의 내용적 특징과 한계

##### (1) 종래 방송·통신 관련법의 체계

###### (가) 수직적 통합형 규제의 법체계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방송과 통신은 시장, 법제도, 정책에 있어 엄연한 구분이 있다. 일본의 방송·통신 융합에 있어 관련이 되는 법규는 방송법, 유선라디오 방송법, 유선텔레비전방송법,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등 미디어의 종류와 사업별로 구분된 4개의 방송 관련법과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유선전기통신법, 유선방송전화에 관한 법률,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에 관한 법률(NTT법) 등 5개의 통신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와 같이 사업과 미디어별로 세분화된 다양한 법률이 존재한다. 통신은 전통적으로 네트워크의 설치와 콘텐츠의 제공주체가 다르다고 하는 하드·소프트 분리론을 채택해 왔다. 이것은 타인의 정보를 매개하는 통신행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분리가 필연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종래의 법체계는 하드와 소프트 일체형을 유지하면서 수직적 규제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본의 방송과 통신 관련법들의 내용을 계층별로 구분해 보면, 방송법은

---

160) 수평적 규제체계란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기능을 수평적으로 분리하여 동일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요소·기능을 각기 하나의 계층으로 구분하고, 동일한 계층(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원칙을 적용하고, 서로 다른 계층 간에는 규제 간격을 최소화하는 규제체계를 말한다. 고순주, “EU, 미국, 일본의 방송통신에 관한 수평적 규제 법체계 개편 비교 분석”, 과학기술법연구 제13권 2호, 한남대 과학기술법연구소, 2010, 204면

콘텐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면, 유선텔레비전방송법은 콘텐츠와 서비스에 해당하는 네트워크까지 수직적 통합형 규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전기통신사업법은 콘텐츠와 별개로 서비스 자체의 보급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또한 서비스에 해당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규제는 통신과 방송에 모두 걸쳐 있는 전파법과 유선전기통신법에서 다루고 있다. 흥미롭게도 전기통신사업법은 서비스를 규제하는 사업법인데 비해, 방송법과 유선텔레비전방송법은 서비스법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사업법의 경우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과 사업자를 규제하지만, 서비스법의 경우 행위와 행위자만을 규율하며, 사업성의 유무는 묻지 않게 된다. 이로써 법이 하는 사회적 역할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법의 성격을 달리 규정해 둠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과 정합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sup>161)</sup>

#### (나) 사업자 중심의 법체계

일본의 방송·통신과 관련된 법체계는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사업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통신 분야의 규제 완화가 진행되고 공정 경쟁 환경이 정비되면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신규사업자의 진입과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가격 저하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방송은 다양한 사업자가 자유롭게 정보를 유통시키는 시대가 도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과도한 진입규제를 통한 기존 사업자의 보호 등 단순히 방송사업자의 이해관계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중심적 규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시청자가 사업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형태에서 벗어나 수용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며 정보발신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 중심의 법체계에서 이용자중심의 법체계로 전환하여 이용자의 정보 제공과 콘텐츠 제작, 발신을 상정한 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161) 김경환, “일본의 방송, 통신 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 언론과법 제9권1호, 한국언론법학회, 2010, 101면

#### (다) 수평적 규제 법체계의 요구

통합법 체계는 방송과 통신이라는 사업부문별로 분리되어 운영되어 왔던 법체계를 계층별 법체계로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정보통신사회의 구조변화에의 대응, 자유로운 사업전개가 가능한 환경정비, 포괄적 이용자보호대책, 규제 내용의 기술 중립성 확보,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유로운 비즈니스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개별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평적 규제를 상정한 법체계 제정이 필요하다. 다만 기존의 사업규제 철폐로 인하여 사업규제가 담당하였던 이용자 보호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 권리보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2) 정보통신법(안)의 제정 목적과 기본 이념

일본 정보통신법의 제정배경은 2000년 초반부터 추진해 온 일본 정부의 IT 국가전략인 e-Japan에 따라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인프라 구축과 이를 통한 다양한 콘텐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제공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방송과 통신이라는 이분법에 따라 9개에 달하는 각각의 수직적 규제법을 콘텐츠와 네트워크라는 계층에 따라 수평적 법체계로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이 법으로 방송과 통신의 장벽이 사라짐으로써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경쟁 촉진이 기대되는 반면, 인터넷 상의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며 이러한 우려는 결국 이 법안이 성안되지 못하는 중요한 계기 중의 하나가 된다.

이 법안이 추구하는 이념은 첫째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정보통신기술의 보편적인 향유이고, 둘째 정보통신네트워크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이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헌법상 자유권인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는 방법으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하거나 산업경제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인식에 기초하는 것이다. 또 정보통신기술의 보편적 향유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의 보장을 의미한다. 이것은 지역적 정보격차

해소, 정보통신환경의 이용 장벽 철폐 등 국민생활에 꼭 필요하여 어느 곳에서도 서비스 이용이 보장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말한다. 또한 신뢰성 있는 안전한 환경 하에서의 정보유통도 중요하다. 이와 같은 이념의 구성은 정보사회에서의 기본적 인권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용자의 정보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담보하는 것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가) 주요 내용

종래의 방송·통신법 체계는 방송과 통신을 미디어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규제하는 결과 인위적인 시장의 세분화를 가져오며, 이것은 자유로운 사업전개를 저해하므로, 규제 체계를 전송부문, 플랫폼부문, 콘텐츠부문의 3계층으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 1) 전송 부문

전송부문은 전송설비와 전송서비스와 나누어 규정한다. 전송설비부문은 방송, 통신의 이분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지만 무선설비의 개발 등 기술혁신의 진전에 따라 무선네트워크와 유선네트워크의 융합, 통신네트워크와 방송네트워크의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송 설비 역시 법제의 통합을 요구받는 현실이다. 전송 설비부문은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전송설비에 관한 규정인 유선전기통신설비, 전파, 무선국 면허, 무선국 운영, 무선국 감독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전송서비스부문은 위성방송과 유선텔레비전방송에 대해 동일한 다채널방송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방송법에 기초하여 위·수탁방송제도, 유선텔레비전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적용 법령이 각기 달랐던 것을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제의 방송전송서비스에 관한 규정으로 통합하여 자유로운 사업전개가 가능하도록 공정 경쟁 촉진과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개편하여, 전송서비스의 적정한 운영, 공정 경쟁 촉진 및 네트워크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에 관한 규정, 전송서비스의 개시 및 폐지 규정,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약관, 요금, 서비스

접속, 이용자 보호, 보편적 서비스, 토지의 이용, 분쟁처리 위원회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2) 콘텐츠 부문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는 것을 핵심적 내용으로 미디어 서비스의 정의와 구분, 업무에 관한 규정과 더불어 특별히 공공성이 높은 미디어서비스를 행하는 사업자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는 미디어서비스 및 콘텐츠의 위법, 유해정보대책에 관한 규정을 다룬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한 상황에서 방송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미디어서비스라는 큰 개념을 탄생시켰는데, 콘텐츠를 ‘공연성 유무’에 따라 미디어콘텐츠서비스와 통신서비스로 구분하며, 미디어콘텐츠는 다시 ‘사회적 영향력 유무’에 따라 특별미디어서비스, 일반미디어서비스, 오픈미디어콘텐츠로 구분하였다. 즉 특별미디어서비스란 언론보도기관으로서 건전한 민주주의 발달에 가장 중요한 여론형성기능을 가지며, 지역 주민의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재해 등 비상시에 필요한 정보전달수단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서비스이다. 지상파 TV 콘텐츠가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존의 지상파 TV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된다. 다음으로 일반미디어서비스는 기존의 위성방송과 케이블TV, IPTV가 포함되며 특별미디어서비스보다 완화된 규제를 받는다. 위 두 가지 미디어서비스가 특별한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구분되는데 비해, 오픈미디어콘텐츠의 경우 특별한 사회적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구분된다. 이것은 콘텐츠의 범위가 가장 광범위한 것이 특징이다. 오픈미디어콘텐츠의 개념정의는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불특정 대상이 수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의 특정전기통신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 통신콘텐츠를 제외한 지금까지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던 인터넷 상의 영상(예컨대 블로그 등)이 오픈미디어콘텐츠로 정의된다. 이러한 오픈 미디어콘텐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적용은 법규를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정보와 위법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위협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정보 및 특정한 개인의 권리와 복지 차원에서 유해라고 받아들여지는 유해정보를 구분한다.

### 3) 플랫폼 부문

플랫폼이란 물리적인 전기통신설비와 연계해서 다양한 사업자간이나 사업자와 이용자를 중개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콘텐츠 전송, 상거래 이용,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포털 기능이나 소프트웨어 기능을 말한다. 플랫폼부문은 CS위성방송의 미디어사업자와 이용자를 중개하는 사업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전기통신네트워크는 전송서비스사업자가 공정경쟁촉진, 이용자 보호 등의 관점에서 오픈 엑세스 등의 규제를 적용받아 온 반면, 플랫폼서비스는 범위와 내용이 광범위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시장이 성장해 온 결과 최근 들어 플랫폼의 과점화 경향이 현저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 상대에 대해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거나 새로운 진입장벽을 형성 하여 사업자의 자유롭고 건전한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하는 위험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점에서 플랫폼에 대해 서비스제공에 있어 부당한 차별적 취급 금지,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관한 정보공개 등 공개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 (나) 한계

정보통신법안은 방송과 통신의 미디어별, 사업별로 구분되어 있는 관련법들을 하나의 통합법으로 수렴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법체계로 재정비하는 것이 입법의 목적으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정보통신네트워크의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를 기본이념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개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평적 규제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의하면, 하드와 소프트 일체형으로 유지되어 왔던 방송의 수직적 규제형태를 콘텐츠, 플랫폼,

전송인프라(네트워크)라는 3개의 계층으로 나뉘어 각기 규제되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취하게 된다. 네트워크는 전송설비와 전송서비스로 구분하였으며, 콘텐츠를 ‘공연성 유무’에 따라 미디어콘텐츠서비스와 통신서비스로 구분하며, 미디어콘텐츠는 다시 ‘사회적 영향력 유무’에 따라 특별미디어서비스, 일반미디어서비스, 오픈미디어 콘텐츠로 구분하였고, 플랫폼에는 CS위성방송의 미디어사업자와 이용자를 중개하는 사업자에 국한된 내용만을 포함하였다.

전통적인 방송산업은 프로그램 제작부터 전송까지 수직 통합의 형태로 운영되어 전송주체가 정보내용(콘텐츠)에 대한 책임까지 맡아왔다. 수직적 규제체계의 적용을 받아 온 지상파 방송의 규제체계가 수평적 규제체계로 변화되면, 무선송신설비에 대한 면허를 받고 프로그램제작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면허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되므로 이 점을 설득력 있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수평적 규제 체계에서는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의 3분류 체계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법에서는 네트워크를 전송설비와 전송서비스로 나눔으로써 실질적으로는 4분류 체계가 되고, 또 전송서비스와 플랫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단점도 있다. 유럽이 전송(carriage)과 콘텐츠(contents)의 2분류 체계를 취하고 있는 점을 보면 이러한 4분류 체계는 법체계 통합이 갖는 효과가 반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점에서 콘텐츠(정보), 서비스, 네트워크(전송설비)로 구분하는 3분류 체계가 적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는 정보인 콘텐츠는 표현의 자유, 역무인 서비스는 이용자 보호, 설비인 네트워크는 공평성과 안정성 등 행정목적이 각각 차별화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견해이다.<sup>162)</sup>

---

162) 中村伊知哉, “通信・放送二分法から情報通信法の一體化” IAJapan Review, Vol.7, 2-3頁

## 제 4 장 인터넷 서비스 진흥법(안) 제정기준

### 제 1 절 제정 방향

#### 1. 통합적 진흥 정책

인터넷 서비스의 급속하고도 다양한 발달과 인터넷 서비스의 경쟁력이 특정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무선 기기, 유무선 네트워크, 플랫폼, 개별 서비스, 콘텐츠의 융·복합에서 나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산되어 있는 인터넷 진흥정책의 추진을 통합하여 강력하고 단일한 콘트롤 타워(control tower)를 통하여 일원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 산업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이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고, 기존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약화된 부처 조정기능을 강화·집중하여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재편하거나 또는 새로운 콘트롤 타워에 부처 조정기능을 맡겨서 기존의 진흥정책을 쇄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합적 진흥정책의 추진에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모두 협력하도록 의무화하고, 반면 불필요하게 단순히 정책을 취합하거나, 생색내기 혹은 형식적인 정책 수립의 단순 합산을 지양하기 위해서 핵심 사항 혹은 중점 추진 사항 중심으로 진흥정책을 수립하게 하고, 이를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2. 서비스의 신분류 기준

오늘날 인터넷 서비스는 익명성, 다양성, 국제성, 시공초월성, 그리고 일상생활과의 융합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특정되지 않은 발신자가 시간과 국경에 의해 구분되는 공간을 넘어 실질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송수신하고 있는 공간이 인터넷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는 현실생활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기존에는 인터넷 서비스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활용서비스, 지원서비스, 기반서비스로 나누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분류는 새로이 생성되는 신규서비스들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신규 서비스로서 UCC, SNS 등 사용자 참여형 서비스와 ‘OPEN API’, ‘OPEN CAST’ 등 개개인의 취향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새롭고 다양한 인터넷 기반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이들은 단순히 기존 서비스 체계에 편입되는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법제를 여기에 단순히 적용하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특히, 최근에는 ‘세컨드라이프’ 서비스가 등장하였고 이는 기존 인터넷상 서비스라는 이유로 오프라인 상 서비스에 비해 규율의 정도를 낮게 책정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세컨드라이프’는 인터넷 서비스이기는 하지만 가상공간에서 발생하는 모습이 오프라인상의 생활과 별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간 대화의 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광고 등의 서비스를 발생시키는 등의 복합적인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인터넷상 거래는 오프라인상의 거래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인터넷 서비스로서 규율을 해야 하는 것인지 오프라인상의 문제로 규율을 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인터넷 서비스에 대하여 일반법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법에서 각 유형별 서비스를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 이러한 신규서비스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하여는 확실한 규율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현행법적 체계로서 이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여 진다. 또한 만약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이 부분에 대해 국한된 법제의 입법화를 추진하게 될 경우 법제의 비대화나 법제간의 혼재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등장 가능성이 있는 신규 인터넷 서비스를 고려하여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 규율체계의 정비에 대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가. 서비스 분류 근거 및 기준

현행 인터넷 서비스 분류 방법은 대체로 산업계에 의한 서비스별 구분 방법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지속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이 생성되는 신규 인터넷 서비스들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처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통계청 등에 의한 분류에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서비스뿐 아니라 인터넷의 기반이 되는 전송망 등 물리적 네트워크까지 포함하고 있는바, 인터넷기반 서비스 분류의 기준으로 도입하기에는 타당치 못하다.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의 새로운 분류체계 도입 필요가 절실하다.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를 분류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산업계 분류와 같이 인터넷 서비스 유형에 따른 구분이 아닌 구체적인 인터넷 서비스의 기능을 분류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기능별 분류 시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의 기능을 무작위로 선정할 경우, 이를 규율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공통분모를 선정하여 이를 묶어 내는 것이 인터넷 서비스를 분류함에 있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인터넷 서비스의 효율적인 기능별 분류를 위해 우선 정보의 생성과 이용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이러한 정보의 전달 및 중계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전자의 경우에는 콘텐츠 서비스로, 후자의 경우에는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가능케 해주는 플랫폼 서비스로 대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대분류 내에서 각 서비스의 구체적인 기능과 특성에 따라 세부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언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와 정보의 생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주요 기능이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기 때문에 정보제공서비스로 분류가능하다. 이처럼 서비스별 기능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를 적절하게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서비스 분류 기준은 서비스 규율체계 정비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lt;표 4-1&gt; 기능 중심의 인터넷 서비스 분류(안)

구 분	서비스 분류		서비스 내용(예)	비 고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	인터넷언론	인터넷신문/인터넷정기간행물	
		인터넷게임	MMORPG 서비스	
		종합정보	포털사이트	
		전문정보	금융/경제/가정/생활/의료/법률	
		오락정보	음악/영화/만화/소설	
		교육정보	이러닝서비스 등	
		인터넷광고	배너광고/팝광고	
		인터넷방송	인터넷방송(Smart TV)	
	인터넷 거래서비스	전자상거래(B2C)	인터넷 쇼핑	
		전자상거래(B2B)	기업간거래서비스	
		전자상거래(B2G)	정부조달서비스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인터넷접속 및 관리 서비스	집적정보통신서비스	웹호스팅/서버호스팅/Co-location	
		보안관리서비스	백신서비스/맬웨어방지서비스/ SSL서버서비스	
		도메인관리서비스	도메인등록관리	
		홈페이지제작서비스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거래 지원서비스	문서교환(EDI)서비스	EDI	
		전자지불서비스	전자화폐/온라인신용카드결제	
		전자문서보관서비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인증서비스	전자서명 및 인증	
		기타 온라인정보처리	온라인예약, 정보처리	
	정보제공 중개서비스	포털서비스	포털사이트	
		전자상거래중개	오픈마켓	
	인터넷기반 응용서비스	SaaS, Open API, 클라우드	클라우드서비스	
인터넷 접속 서비스	유선 인터넷 접속서비스	유선인터넷접속서비스		
	무선 인터넷 접속서비스	모바일네트워크서비스	모바일 M2M 서비스	

#### 나. 콘텐츠서비스의 분류

콘텐츠란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를 의미한다. 그리고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란 인터넷신문, 방송, 이러닝,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최종 이용자에게 정보 또는 서비스의 내용물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를 총칭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터넷콘텐츠서비스는 서비스의 기능에 따라 정보제공서비스와 인터넷거래서비스로 세분화될 수 있다. 정보제공서비스는 용어 그대로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생성, 편집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이러한 정보제공 서비스의 유형에는 인터넷 신문, 인터넷 정기간행물 등과 같은 인터넷 언론이 포함되며 MMORPG서비스와 같은 인터넷 게임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종합 정보서비스와 그 외에 금융, 경제, 가정, 의료, 법률 등 분야별 전문정보 제공 서비스가 해당된다.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서비스인 이러닝 서비스가 있으며, 온라인 상 제공되는 음악, 영화, 만화, 소설 등의 오락 정보제공서비스 역시 정보제공서비스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띠 모양으로 만들어 부착하는 배너 광고와 팝 광고와 같은 인터넷 광고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된다. 인터넷 거래 서비스는 인터넷상에서 거래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인터넷쇼핑몰과 같은 기업과 소비자(B2C)간의 거래서비스, 기업과 기업(B2B)간 거래서비스, 정부 조달 서비스와 같은 기업과 국가(B2G)간의 거래서비스를 일컫는다.

#### 다. 플랫폼서비스 분류

인터넷플랫폼 서비스는 웹호스팅, 전자인증서 등 인터넷의 활용 또는 콘텐츠 관련 각종 서비스를 중계·연계·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서비스들을 의미한다. 플랫폼서비스는 다시 그 기능에 따라 인터넷 접속 및 관리 서비스, 인터넷 거래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중개 서비스, 인터넷기반 응용서비스 등으로 세부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인터넷 접속 및 관리 서비스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대신 운영해 주는 웹 호스팅, 서버의 일정부분을 임대해 주는 서버 호스팅 등 타인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서비스가 있다. 그리고 인터넷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백신 서비스, 컴퓨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악성코드를 방지하기 위한 멀웨어(Malware) 방지서비스, SSL(Secure Socker Layer) 서버 서비스와 같은 보안관리 서비스가 있다. 또한 도메인을 등록하고 관리해주는 도메인 관리서비스, 기업, 개인 등의 인터넷 상 홈페이지를 제작, 관리해 주는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도 인터넷 접속 및 관리 서비스에 포함된다. 인터넷 거래지원 서비스에는 서류가 오가지 않고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서비스인 문서교환(EDI) 서비스, 전자상거래에서 결제를 위해 사용되는 전자화폐 서비스가 있다. 그리고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등 전자 지불 서비스와 전자문서 보관서비스가 있다. 또한 인터넷거래 등에서 부인 방지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전자서명 및 인증서비스와 같은 인증 서비스와 그 밖에 온라인 예약, 정보처리 등을 담당하는 온라인정보처리 서비스가 포함된다. 정보제공 중개서비스에는 인터넷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거쳐야 하는 포털서비스와 오픈마켓과 같이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가 포함된다. 그리고 인터넷기반 응용서비스에는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든 인터페이스인 Open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등이 해당된다.

#### 라. 접속서비스 분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되는 인터넷플랫폼서비스와 분리하여 물리적 전송 네트워크인 유무선 인터넷접속서비스는 별도의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다만, 인터넷 기기 및 장비의 제조·제공 등 기반 서비스 분야는 인터넷 서비스 분류체계에서는 제외한다. 그러나 인터넷 기기를 통합적 인터넷 규율체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 3. 기반 환경의 조성

#### 가. ‘기반’이라는 용어의 모호성

인터넷 기반 환경 조성에서 ‘기반’이란 그 내연과 외포가 불분명한 매우 모호한 용어이다. 위키피디아에서는 기반.Infrastructure이란 하나의 완전한 구조(an entire structure)를 지원하는 틀을 제공하는 구조의 요소(structural elements)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20세기 초, 이 용어는 군사기지(military installation)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1980년대 이후 시장에 그대로 두면 필요한 적정수준보다 과소 생산되어 국가의 ‘기반 위기’를 가져온다는 공공정책론에서 사용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그 개념이 모호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도로, 항만, 교량, 대중교통, 용수관리, 에너지공급, 통신 등이 이에 속한다.<sup>163)</sup>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보면, 인터넷 기반 환경 조성에서 ‘기반’이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환경을 지원하는 틀을 제공하는 요소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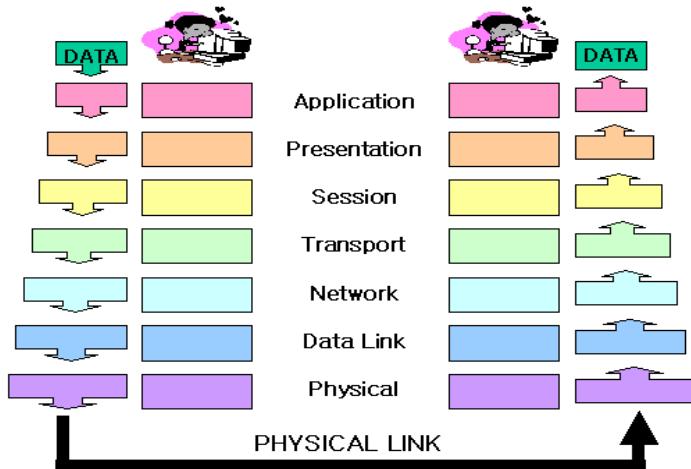
#### 나. 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한 이론의 도입

인터넷 기반을 위와 같이 정의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모호함은 남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호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터넷이라는 구조를 분석하여 이에 근거하여 이를 지원하는 틀을 제공하는 요소를 추출하여 보고자 한다. 인터넷(Internet)이란 “정보의 바다”라 불리는 국제 컴퓨터 통신망으로, 전 세계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 TCP/IP 프로토콜(규약)을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는 공개 컴퓨터 통신망이다. 이 용어는 기술 용어 인터네트워킹(internetworking)의 줄인 말이다.<sup>164)</sup> 인터넷을 이용한 의사소통 시스템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163) <http://en.wikipedia.org/wiki/Infrastructure>

164) 이상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X93333>

<그림 4-1> OSI 7 레이어 모델<sup>165)</sup>

이 구조를 TCP/IP 프로토콜(규약)에 매칭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lt;그림 4-2&gt; OSI 7 레이어 모델과 TCP/IP 프로토콜

OSI 7 계층	TCP/IP 프로토콜	계층별 프로토콜
애플리케이션 계층	애플리케이션 계층	Telnet, FTP, SMTP, DNS, SNMP
프로토콜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	TCP, UDP
세션 계층	인터넷 계층	IP, ICMP, ARP, RARP, IGMP
트랜스포트 계층	네트워크	Ethernet, Token Ring, Frame Relay, ATM
네트워크 계층	인터넷페이스 계층	
데이터링크 계층		
물리적 계층		

OSI 7계층과 TCP/IP 프로토콜

165) OSI(Open System Interconnection)는 1977년 국제 표준화기구(ISO :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에서 통신 분야의 표준화 추진을 위해 만든 개방형 시스템 모델로 위와 같은 7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OSI 7 레이어 모델을 규범적 분석을 위해 단순화시킨 이른바 요차이 벤클러(Yochai Benkler)의 ‘레이어 모델(Layer Model)’에 따르면, 인터넷을 이용한 의사소통 구조는 ‘물리적 레이어(physical layer)’, ‘논리적 레이어(logical layer)’, ‘콘텐츠 레이어(content layer)’로 구분된다.<sup>166)</sup>

여기서 물리적 레이어란 컴퓨터와 컴퓨터들을 연결시켜주는 정보통신망 등이 존재하는 레이어를 말한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은 각각의 소유자가 있고, 따라서 그 소유자들에 의해 통제된다. 그리고 이러한 소유권 귀속과 그 행사의 내용은 국가에 의해 통제된다. 따라서 이러한 물리적 레이어는 현실공간의 재산권을 형성하는 법률인 ‘규범적 코드’에 의해 규율된다. 논리적 레이어란 정보통신망(network)을 움직이게 하는 프로토콜(protocol)이 존재하는 레이어를 말한다. 논리적 레이어는 최초에는 ‘최종사용자에서 최종사용자까지’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자유로웠으나, 일련의 기술적 규율이 추가되면서 점차 통제되고 있다. 레식 교수는 이러한 경향을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기술 발달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초기 인터넷 네트워크는 누구든지 기본 사용료만 지불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사업자들은 투자수익 회수 등을 위한 목적으로 논리적 레이어의 프로토콜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논리적 레이어를 지배하는 코드는 변경 불가능한 주어진 것이 아니다.<sup>167)</sup> 따라서 초기에 개방적이었던 기술적 코드인 프로토콜은 폐쇄적이고 차별적인 규칙들로 변화하면서, 통제되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레이어의 변화는 기술적 코드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규범적 코드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이 영역에서는 규범적 코드와 기술적 코드가 상호 보완하며 규율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종국적으로 가장 중요한 규율요소는 기술적 코드이다.

---

166) Yochai Benkler, From Consumers to Users: Shifting the Deeper Structures of Regulation Toward Sustainable Commons and User Access, *Federal Communications Law Journal* 52, 2000. 참고.

167) 로렌스 레식 저, 정필운·심우민 역, “혁신의 구조”, 『연세법학연구』 제11집 제1권 · 제2호 합병호, 2005, 304면 이하.

콘텐츠 레이어란 주어진 특정 의사소통 시스템 안에서 말해지거나 쓰이는 내용이 존재하는 레이어이다. 콘텐츠 레이어는 자유와 통제가 혼재되어 있다. 이 층위도 역시 규범적 코드와 기술적 코드가 상호 작용한다. 규범적 코드의 예로는 개인정보보호관련법제, 지적재산권법제를 들 수 있고, 기술적 코드로는 암호화(cryptography), 신원인증, 워터마킹(watermarking)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인터넷 기반이란 용어는 모호하여 그 내포와 외연이 매우 불분명 하므로, 개념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개념화를 위하여 필자는 레이어 모델을 차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 시스템은 물리적 레이어, 논리적 레이어, 콘텐츠 레이어로 구성된다. 그 각각의 레이어는 연결되어 있지만, 독자성을 가진다. 그리고 각각의 레이어에 대응하는 기반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정보환경 구성 및 운용을 통한 궁극적인 목적은 정보의 전달과 이를 활용한 아름다운 생활을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에 기반을 둔 의사소통 시스템이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물리적 레이어, 논리적 레이어, 콘텐츠 레이어 각각이 원활하게 구축 및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틀을 제공하는 요소를 인터넷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 다. 기반 환경 조성을 위한 고려 요소

우선 물리적 기반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정보통신망이 원활하게 구축되고 운영되며, 적절한 시기에 고도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의 정보통신망의 구축과 운용은 일차적으로 전기통신 사업자의 과제이다. 그러나 초고속국가망,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 등의 구축 및 운용은 국가의 과제이다(국가정보화기본법 제49조, 제50조 제1항 참고). 한편 국가는 이렇게 구축되어 운용중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품질관리(QoS)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같은 법 제50조 제2항 참고). 한편 논리적 기반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개발도 일차적으로는 하드웨어 제조사,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등 민간사업자의 과제

이다. 그러나 국가는 각종 정보통신기기·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거나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핵심기술을 직접 기술 개발하여 민간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8조 참고). 그 밖에 국가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며 당해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되는 트래픽을 차별할 때, 모든 트래픽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이른바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 보호 조치를 추진하는 것도 이 영역의 활동이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이 영역에서는 규범적 코드와 기술적 코드가 상호 보완하며 규율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종국적으로 가장 중요한 규율요소는 기술적 코드이다.

그리고 콘텐츠 기반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는 양질의 콘텐츠가 원활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한편으로는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지적재산권이 잘 보호되면서도 이용자의 이익이 잘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극적으로는 개인정보 또는 기업비밀이 잘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규범적 코드로는 개인정보보호관련법제, 지적재산권법제 등을 제대로 마련하여야 하고, 기술적 코드로는 암호화(cryptography), 신원인증, 워터마킹(watermarking) 등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무력화되었을 때 일정한 법적 보호를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sup>168)</sup>

---

168) 실제 우리 저작권법은 제104조의2 제1항에서 “누구든지 정당한 권리가 있고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침해의 정지·예방, 손해배상의 담보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인정하고(제104조의4(침해의 정지·예방 청구 등)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04조의2 및 제104조의3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예방, 손해배상의 담보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3조, 제125조, 제126조 및 제129조를 준용한다), 이와는 별도로 벌금형(제136조 제2항)을 규정하고 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

요컨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 시스템은 물리적 레이어, 논리적 레이어, 콘텐츠 레이어로 구성되는데, 정보의 전달과 이를 활용한 아름다운 생활을 구현하기 위하여 정보환경을 구축 및 운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레이어에 대응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인터넷 기반 환경 조성이란 이러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라. 기반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범위

이러한 각 레이어에 있어서 기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요소는 (i) 기반 환경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의 구성(거버넌스 포함), (ii) 계획의 수립(계획의 수립을 위한 실태 및 통계 조사 포함), (iii) 인력의 양성, (iv) 기술개발의 지원, (v) 표준화의 추진, (vi) 국제협력, (vii) 산업지원책 등이 그 주요내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범위를 좀 더 넓히면, (viii)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ix) 이용자 보호 등과 (x) 개인정보 보호, (xi) 정보보안, (xii) 정보격차 해소 등 이른바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대책까지도 이에 포섭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다른 항목에서 서술되므로 여기서 논외로 한다. 한편 열 번째 이하 항목은 이에 대비한 독자적인 법제가 마련되어 있는 분야이므로, 여기서는 일단 제외하기로 한다.

#### 마. 구체적 내용

##### (1) 전문 인력의 양성

###### (가)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

인터넷 활성화 및 진흥을 위한 전문 인력은 기술인력, 법무인력 등 다양한 차원에서 요구된다. 이러한 전문 인력의 양성은 통상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

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 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이러한 전문 인력 양성을 시장에만 전적으로 맡길 경우, 자칫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과소양성 되거나,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만 인력양성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비하여 비효율적인 인력은 인력은 수급이 안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에서는 제한적으로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부에게 인력양성의 과제를 부과하고, 그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콘텐츠 산업진흥법 제14조 참고).

#### (나) 관련 법령 현황 및 입법의 필요성

인터넷 진흥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가의 과제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추진하도록 명시한 현행 법령은 없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6조는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정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16조(전문 인력의 양성)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전문 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설립·지원
3. 전문 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정보통신기술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 인력 수급 지원
5.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교육의 지원
6. 그 밖에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이 법 제2조 제2호는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

(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다.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라.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 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와 관련한 산업, 사.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 (2) 기술개발의 지원

### (가) 기술개발 지원의 독자적 규율의 필요성

인터넷 활성화 및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은 통상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개발을 시장에만 전적으로 맡길 경우, 자칫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기술의 개발에 적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술개발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비하여 비효율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에서는 제한적으로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부에게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와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의 의무를 부과하고, 기술수준의 조사 및 기술의 연구 개발, 개발된 기술의 평가, 기술협력·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의 수행에는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국가가 직접 행하는 것보다,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이를 위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관련 법령 현황 및 독자적 규율의 필요성

인터넷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의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에게 과제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추진하도록 명시한 현행 법령은 없다.

### (3) 표준화의 추진

#### (가) 표준화 추진의 필요성

표준(standards)이란 반복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에 대하여 방법·규격·절차 등을 정해 놓은 것이고, 표준화(Standardization)란 표준을 개발·발굴하여 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행위를 말한다.<sup>169)</sup> 표준화는 상호호환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향상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에서는 “국가표준”이라 함은 국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이라고 규정하며, 그 예로서 측정표준, 참조표준, 성문표준 등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정보통신영역에서 표준화의 추진은 매우 중요하며, 인터넷 활성화 및 진흥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러한 표준이야말로 시장의 기능이 아닌,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업무이다. 따라서 정부에게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와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게 이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나) 관련 법령 현황 및 독자적 규율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표준제도는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sup>170)</sup>에 근거하여 「국가표준기본법」을 기본법으로, 산업표준에 관해서는 「산업표준화법」, 정보통신표준에 관해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도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2조(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

169)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표준화 추진체계 분석서」, 2005.12. 7면

170) 헌법 제127조 제2항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표준화
2. 정보통신제품에 관한 표준화
3.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화
4.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에 관한 표준화
5.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표준화
6. 그 밖에 정보통신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정보통신표준의 제정 및 인증)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정보통신제품,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 등(이하 "정보통신기술등"이라 한다)에 관한 표준(이하 "정보통신표준"이라 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으로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기관 등에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표준의 제정, 정보통신표준에 적합한 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인증 표시의 사용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다.

#### (4) 국제협력

##### (가) 국제협력의 필요성

인터넷이란 수많은 네트워크의 집단을 서로 연결한 거대한 네트워크이다.<sup>171)</sup> 인터넷은 물리적이거나 유형의 실체가 아니다. 수많은 컴퓨터 네트워크의 집단을 서로 연결한 거대한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은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a network of networks)이다.<sup>172)</sup> 따라서 이 공간 안에서의 문제해결은

---

171) ACLU v. Reno, 929 F.Supp. 824 (E.D. Pa. 1996), II-2,

172) ACLU v. Reno, 929 F.Supp. 824 (E.D. Pa. 1996), II-1.

일국적 차원의 해결에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이버공간 문제해결은 초국가적 대응, 국제적 공조 등이 강조된다. 그리고 인터넷 산업의 진흥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에게 이와 같이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하여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국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 (나) 관련 법령 현황 및 독자적 규율의 필요성

현행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7조 및 제25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어,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논증한 것처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 인터넷 진흥의 모든 측면을 아우를 수는 없으므로, 국제협력 관련 규정을 따로 둘 필요가 있다.

**제17조(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및 전문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정보통신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 정보통신기업이 해외시장에 활발히 진출하여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5) 산업지원

인터넷산업의 활성화 및 진흥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세법상 세금감면, 「신용보증기금법」상 신용보증기금

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협동화사업으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지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여러 방법 중 인터넷사업자에게 어떠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지 의견을 청취하여, 그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세금감면과 중소사업자에 대한 특별지원을 해 주는 것이 현 단계에서 가장 절실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그와 같은 내용에 관한 입법이 필요하다.

#### (나) 관련 법령 현황 및 독자적 규율의 필요성

현행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은 제19조에서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의 확충, 유통업체 전문화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세제지원 및 중소사업자에 대한 특별 지원은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을 독자적인 입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제19조(유통구조의 개선 및 보급 촉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의 확충, 유통업체 전문화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를 보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4. 콘텐츠 진흥

#### 가. 인터넷 콘텐츠의 개념 및 관련법령

인터넷 콘텐츠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거나 제공될 수 있는 콘텐츠를 말한다. 이를 콘텐츠라는 법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정의를 차용하여 다시 정의하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거나 제공될 수 있는 부호·문자·도형·색채·

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sup>173)</sup> 이러한 인터넷 콘텐츠는 콘텐츠를 매체별로 분류하여 보았을 때, 출판 콘텐츠, 방송 콘텐츠 등과 더불어 주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lt;표 4-2&gt; 국내 콘텐츠 시장규모 및 GDP 비중

단위 (백억원,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증감율 ('08~'09)	연성장률 ('05~'09)
출판	1,939	1,988	2,160	2,105	2,061	△2.1%	1.5%
만화	44	73	76	72	74	2.2%	14.1%
음악	179	240	236	260	274	5.3%	11.2%
게임	868	745	514	560	658	17.4%	△6.7%
영화	328	362	318	289	331	14.6%	0.2%
애니메이션	23	29	31	40	42	3.4%	15.7%
방송	864	972	1,053	1,169	1,277	9.3%	10.3%
광고	842	912	943	931	919	△1.3%	2.2%
캐릭터	208	455	512	510	536	5.1%	26.8%
지식정보	304	347	430	478	526	10.0%	14.7%
콘텐츠솔루션	128	154	168	187	204	9.1%	12.4%
매출액 합계	5,726	6,277	6,441	6,601	6,900	4.5%	4.8%
GDP대비 비중 (부가가치액)	2.4%	2.6%	2.7%	2.5%	2.7%	-	-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콘텐츠산업통계」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명목 GDP」

이러한 인터넷 콘텐츠 진흥은 원론적으로는 위에서 서술한 콘텐츠 기반 환경 조성의 주요한 한 내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각 레이어에 있어서 기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요소는 (i) 기반 환경 조성을 효율적으로

173)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항 1.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의 구성(거버넌스를 포함), (ii) 계획의 수립(계획의 수립을 위한 실태 및 통계 조사 포함), (iii) 인력의 양성, (iv) 기술개발의 지원, (v) 표준화의 추진, (vi) 국제협력, (vii) 산업 지원책 등이 그 주요내용이 될 것이다. 그 밖에 인터넷 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하면, (viii) 기업의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 지원, (ix) 지적재산권법제의 정비, (x) 인터넷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xi)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xii) 공공 콘텐츠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도 이에 포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모두 새로운 입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볼 때 그 내용을 모두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아 보인다. 이러한 인터넷 콘텐츠의 활성화 및 진흥과 관련하여서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이 주요하게 적용될 수 있는 현행 법령이다. 결국 위의 세부요소 중에서 어떠한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킬지는 이와 같은 현행 법령체계에서 그 필요성 및 적절성이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 나. 구체적 내용

##### (1) 공공 인터넷 콘텐츠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 (가) 공공 인터넷 콘텐츠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

최근 공공 콘텐츠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국내외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 콘텐츠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의 과제를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 진흥법(안)에 담는 것은 고려하여 볼 만하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저작권을 가지는 공공 콘텐츠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입법을 하더라도, 국가기관이 저작권을 보유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 저작권을 보유하도록 하는 입법과는 그 목적이 분명히 다른 것이므로 구체적 입법이 없더라도 헌법이론적 한계가 분명히 설정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그러한 저작권을 관리하는 데 이를 남용하여, 민주주의 원리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보의 이용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와 같은 관리를 하지 않도록 교육·홍보를 하는 한편, 국민은 이를 감시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공공 콘텐츠의 저작권을 국가기관이 보유하는 헌법적 근거와 취지, 한계를 고려하여 현행법상 분명하지 아니한 공공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내용, 한계 등을 명확하게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174)</sup>

#### (나) 관련 법령 현황 및 독자적 규율의 필요성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제11조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콘텐츠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를 콘텐츠 제작 등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세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진흥법(안)에 이러한 내용을 두기 위해서는 이 법령과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콘텐츠 진흥과 관련하여서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이 일반 법이고, 당해 법(안)이 특별법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만약 당해 법령의 규정과 특수한 내용의 공공 인터넷 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있다면, 당해 법(안)에 특별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2) 기업의 인터넷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

#### (가) 기업의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

인터넷 콘텐츠 제작을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몫이다. 그러나 인터넷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환경이 좋지 못하면, 제작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개별기업도 번성하거나 생존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는 보조적으로 이러한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유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

174) 이상 정필운, “국가가 생산한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판단 및 이에 대한 헌법 이론적 평가”, 「공법연구」, 한국공법학회, 2009.3.31 참고.

각종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 (나) 관련 법령 현황 및 독자적 규율의 필요성

이미 설명한 것처럼,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콘텐츠 진흥과 관련하여 일반법 역할을 하므로 「콘텐츠산업 진흥법」이 규율하고 있는 영역은 당해 법(안)이 따로 규율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인터넷 콘텐츠 중 일부는 일반적인 콘텐츠와 차별성이 크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 사용되는 앱이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일반적인 콘텐츠와 크게 다른 인터넷 콘텐츠의 제작 지원은 이를 잘 아는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당해 법(안)에 인터넷 콘텐츠 제작 지원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3) 인터넷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을 위한 정책

#### (가) 인터넷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

인터넷 콘텐츠는 그 범위가 매우 넓어,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도 다양하다. 그 중에서 교육 콘텐츠의 제공과 같이 일회적이 아닌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도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거래하고자 하는 서비스업체가 일정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신하기 힘들기 때문에 선뜻 거래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 이러한 거래비용을 줄여서 유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인터넷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을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일정한 범위의 인터넷 콘텐츠는 활발한 유통을 위하여 이러한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이 필요하다.

## (나) 관련 법령현황 및 독자적 규율의 필요성

그런데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제22조에서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이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기 위해서는 특별규율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터넷 콘텐츠의 제작 지원과는 달리, 제공서비스에 대한 품질인증은 인터넷 콘텐츠와 일반적인 콘텐츠와 크게 다를 것이 없으므로 당해 법(안)에 특별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제22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콘텐츠사업자 등이 이용자가 콘텐츠를 용이하게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콘텐츠제공서비스"라 한다)의 품질을 인증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을 인증하여 주는 기관(이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항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사업의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콘텐츠제공 서비스 품질인증업무를 처리한 때
  4.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의 대상, 기준 및 품질 인증사업의 운영기준 등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공정경쟁과 상생협력

### 가. 인터넷 서비스 신분류 체계에 따른 시장변화

#### (1) 인터넷 서비스의 새로운 분류 체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진화·발전하는 인터넷 서비스는 하나의 분류체계를 따르는 것이 용이한 일이 아니고, 특히 서비스별로 별도의 규제체계를 적용하는 수직적 규제체계에서 벗어나 특정 네트워크·서비스에 관계없이 동일한 계층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수평적 규제체계도 타당성을 인정받는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보면, 산업유형별, 전기통신사업별로 분류하는 방법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분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 융합 환경 하에서 서비스를 플랫폼과 콘텐츠로 구분하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인정하되, 수직적으로 연관됨을 고려하여 수직적 규제체계와 수평적 규제체계가 조화를 이루는 인터넷 서비스로 분류하여 크게 ‘플랫폼서비스’와 ‘콘텐츠서비스’의 분류 하에 각 서비스 별로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세분하는 분류체계를 따르기로 한다.

#### (2)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특성

##### (가) 양면시장이론

기존 시장은 생산자 혹은 판매자와 소비자가 서로의 이해에 따라 거래가 형성되는 반면,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 시장은 이용자 또는 사업자가 상호작용하여 가치가 창출되며, 주로 둘 이상 복수의 당사자를 연결해주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새로운 시장의 분석과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양면시장이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경제학적 규제논리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이 출현하였다. 양면시장은 중개자가 시장의 양측에 각각 거래관계를 가지면서 형성되는 시장으로서 신용카드, PC 운영시스템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방송통신 서비스는 이용자와 이용자 또는 이용자와 콘텐츠제공자 등을 매개하는 서비스로서 양면시장의 특성이 강하며, 양면시장 이론은 향후 기존의 비용기반 규제원칙이나 경쟁 활성화 정책 등과 다른 견해를 제기하고 있다.<sup>175)</sup>

#### (나) 인터넷 서비스 시장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경우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제작자와 이용자를 서로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한편 인터넷 광고 시장이라는 관점에서는 인터넷 플랫폼은 광고주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등 3면 시장 구조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 나.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공진화(共進化, Co-evolution)

#### (1) 공진화

인류학에서 유래된 개념으로 상호의존적 종(種)들이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순환 속에서 진화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sup>176)</sup>으로 1996년 영국 역사학자인 제임스 무어가 생물학의 ‘공진화’ 개념을 기업관계에 적용하여 ‘비즈니스 생태계’ 이론을 정립 하였는데,<sup>177)</sup> 개별 구성요소들이 홀로 창조할 수 없는 가치를 생태계 구성원이 함께 창조하며 진화함을 강조한 것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상황에서 맹목적 경쟁은 사업자간 공멸로 이어진다고 지적하였다.

17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이론에 따른 방송통신 서비스 정책 이슈 연구”(2008.12.).

176) Bateson, 1979

177) 경쟁의 종말

## (2)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새로운 진화방향

인터넷 서비스 시장은 단순한 경쟁이나 협력이 아닌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 모두 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공정경쟁과 상생이라는 키워드 하에서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공진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플랫폼사업자가 여러 구성원과 풍부한 연결 기반으로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중심에 있는 허브기능을 수행하도록 기반 조성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바탕 하에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사업자가 자생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플랫폼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간, 또한 양 사업자 내부에서 합리적으로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다.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및 상생

#### (1) 기본원칙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1조는 방통위가 방송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관하여 노력하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 수립을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둘으로써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도 공정경쟁과 관련한 기본원칙은 이미 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78)</sup><sup>179)</sup>

178)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1조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79)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4조(경쟁상황평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1 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에 대한 평가(이하 "경쟁상황평가"라 한다)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위시장을 획정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서비스의 수요 대체성 및 공급 대체성
2. 방송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지리적 범위
3. 방송통신서비스의 판매와 관련된 거래적 특수성

## (2) 관련 법 규정

### (가) 국내 법 규정 현황

이 밖에도 인터넷 서비스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보통신, 게임 및 콘텐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정경쟁 및 상생을 규정한 법률 규정을 살펴보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2조 공정경쟁의 촉진,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19조 유통구조의 개선 및 보급 촉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유통질서의 확립 등의 규정이 있다.

또한 기업의 규모와 관련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다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0. 12. 7. 시행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 4.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특성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쟁상황평가를 하여야 한다.
  - 1. 시장구조: 방송통신사업자의 수, 진입장벽, 시장점유율 등
  - 2. 이용자의 대응력: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정보접근의 용이성, 방송통신서비스 또는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대체의 용이성 등
  - 3. 시장성과: 방송통신서비스의 요금·품질 수준, 방송통신사업자의 초과이윤 규모 등
  - 4. 방송통신사업자의 행위: 방송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품질 경쟁의 정도와 기술 혁신의 정도 등

&lt;표 4-3&gt;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 및 상생 관련 법률 현황

구분	법률명	조문
공정경쟁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1조(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2조(공정경쟁의 촉진) 제13조(시장점유율 제한 등) 제14조(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제20조(콘텐츠 동등접근)
상생협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9조(유통구조의 개선 및 보급 촉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5조(소프트웨어 유통활성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4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8조(지식·정보의 공유·유통)

## (나) 해외

참고로 미국의 경우 망 중립성 원칙에 입각하여 인터넷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꾸하기 위한 법제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lt;표 4-4&gt; 참고: 미국 인터넷 시장 공정경쟁 관련 법안

H.R.695	브로드밴드 접근 평등 법안(Broadband Access Equality Act of 2009)
S.3304	21세기 통신에 대한 평등 접근 법안(Equal Access to 21st Century Communication Act)
H.R.2902	브로드밴드 인터넷 공정 법안(Broadband Internet Fairness Act)
H.R.5257	인터넷 투자, 혁신 및 경쟁 보호 법안 (Internet Investment, Innovation, and Competition Preservation Act)

## (3) 공정경쟁

공정한 경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쟁을 촉진하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하여 사업자의 행태적인 측면, 시장에서

나타나는 결과적인 측면 및 시장의 구조적인 측면(예를 들면, 신규진입이 용이한 시장 구조인지)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법 기술적으로는 소극적으로 거래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위한 법률 규정과 공정경쟁에 관한 일반법인 공정거래법과의 관계에 대한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 (4) 상생협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2조(정의)에서 상생협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정의하는 상생이란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활동”이고 이는 결국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서로 발전하는 공진화 과정을 거쳐서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시장도 공정한 경쟁으로 경쟁촉진과 함께 시장지배력의 형성 또는 남용을 규제하여 궁극적인 피해자인 중소기업이나 소비자를 보호하여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고, 중소기업들이 처해 있는 불리한 경쟁여건을 개선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6. 이용자의 권익증진

#### 가. 총론

인터넷이 널리 일반적으로 보급되고 인터넷상의 정보유통의 적정화를 향한 대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 「통신의 비밀」이나 「표현의 자유」등을 준수하고, 법적 지식이나 대응상의 리스크에 유의해 나가고 있다. 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사항으로 생각하여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용자 보호에의 대처는 인터넷의 건전한 보급과 발전을 가져다주며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이기도 하다.<sup>180)</sup>

최근 이용자 관련 정책이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눈에 뛰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용자 정책 관점의 확대이다. 그 동안은 이용자 정책이 민원 해결이나 이용자 피해 구제 차원에 머물렀다면, 최근 들어서는 경쟁정책과의 상호 연관성 등을 고려하면서 전반적인 이용자 후생의 증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영국 Ofcom 사례를 보면, 이용자 정책(Consumer Policy)의 거시적 목표로 이용자보호, 경쟁정책과의 통합, 이용자 권익증진 세 가지를 꼽는데 이 가운데 첫 번째인 이용자 보호는 전통적인 이용자 정책과 관련된다면 나머지 둘은 보다 넓은 의미의 이용자 정책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sup>181)</sup> 즉 Ofcom은 첫째, 다양한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둘째, 경쟁 정책이 이용자의 이익과 행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용자 정책과 통합적으로 입안 될 것이며 셋째, 이용자가 시장에서 최상의 거래를 할 수 있는 권리와 조건을 마련하는 이용자 권리 증진에 나설 것임을 밝히고 있다.<sup>182)</sup>

#### 나. 이용자 권익증진의 필요성

2010년 전반 미국 Apple사가 발표한 iPad가 화제가 되었다. 또 iPad이외에도 Goole의 안드로이드나 Microsoft사의 윈도우7을 이용한 태블릿형 단말기를 국내외 여러 제조업체가 잇달아 발표하였다. 이러한 태블릿형 단말기가 주목받는 것은 스마트폰의 존재감이 커져가고 있는 것과 관계있다. 즉 이용자가 스마트폰(애플리

180) 이효경/손형섭, 「일본의 인터넷 관련 법률현황 및 시사점」\_한국정보화진흥원보고서(2009.10), 22면.

181) 임준/정진한/김진성, 「방송통신 이용자관점 정책평가 보고서」\_(2009.11)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7면.

182) 반면, 국내 방송통신 분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러한 최근의 흐름을 이용자 보호 정책에 본격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넓은 의미에서의 이용자정책과 관련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제까지는 주로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단기적이고 개별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임준/정진한/김진성, 앞의 보고서, 15면.

케이션스토어도 포함)으로 다양한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종래 태블릿형 단말기와는 다른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형 단말기를 통한 전자서적(ebook)이 활성화되고, 또 TV가 단순히 방송파를 수신하는 디바이스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단말기 등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이용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몇 가지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하는 디바이스의 변화에 맞추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여기에 대응한 서비스를 재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전기통신서비스는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필요불가결하며 요금과 서비스의 다양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한편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해 그 필요성에 적합한 서비스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등 이용자의 권익증진이 필요하다.

이용자 보호 제도<sup>183)</sup>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고, 규제정책의 중심이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옮겨감에 따라 규제의 불확실성과 이용자 이익 저해 가능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사업자간의 과당경쟁과 이용자의 인식향상 등에 따라 통신민원이 복잡화되고 다양화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방송통신 융합과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피해 유형이 등장하였고, IPTV에서 무료로 제공되던 지상파 콘텐츠가 유료화 되면서

---

183) 이용자보호제도는 이용자를 보호와 후견의 대상으로 보고 이용자의 개별적, 구체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사업자의 행위를 사전적, 사후적으로 규제하고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보상 의무를 부과하는 좁은 의미의 이용자보호제도, 소비자주권의 실현이라는 공통 목적을 추구하는 경쟁법과 소비자법의 보완적 관계를 중시하여 관련 규정과 제도를 포괄할 때 상정할 수 있는 넓은 의미의 이용자보호제도, 그리고 소비자로서의 이용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이용자의 이익까지 보호하기 위한 가장 넓은 의미의 이용자보호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홍대식, “방송·통신융합과 이용자보호제도의 개선”, 행정법연구 제25호(2009), 235-236면.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였고, 하나의 서비스를 사업자의 귀책으로 해지함에도 당초 결합서비스 할인율이 유지되지 않은 결합서비스 해지로 인한 피해사례가 있다.<sup>184)</sup>

#### 다. 인터넷 이용자보호 관련 주요이슈<sup>185)</sup>

<표 4-5> 이용자보호분과 이슈맵<sup>186)</sup>

이슈구분	이슈 쟁점	비고
광고의 공정성	허위·과장광고	o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기만광고	
	부당한 비교광고	
	비방광고	
공정한 정보의 제공	유해정보로 인한 2차 피해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li> <li>o 청소년보호법 제20조(광고선전 제한)</li> <li>o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li> <li>o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전 조문)</li> </ul>
	총포, 화약류 등의 인터넷상 판매 금지	
	총포, 화약류 등의 인터넷상 광고제한(청소년유해매체물)	
	마약류 등 금제품 및 성매매의 인터넷 판매 및 광고 금지	
사업자정보 표시 등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및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li> </ul>

184) 김태오, “통신시장 이용자보호의 쟁점과 과제”, 경제규제와 법 제2권 제1호 (2009. 5), 257면.

185)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2009.11), 35면 이하.

186)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 관련 법제이슈 맵(2009.4).

이슈구분	이슈 쟁점	비고
		대한 정보의 제공) 제1항
거래조건 관련 정보 제공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2항</li> <li>○ 소비자기본법 제19조제3항</li> </ul>
가격비교서비스	가격비교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li> </ul>
계약체결 단계의 의무	<p>약관의 개시 및 설명</p> <p>약관 명시의무, 교부의 무, 설명의무 부담 요약약관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관규제법 제3조 제1항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li> </ul>
	표준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관규제법 제19조의 2 표준약관제도</li> <li>○ 온디콘법 제16조의 3 표준약관 등의 시행 권고</li> </ul>
	이용자의 의사표시의 진정성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관규제법 제12조 의사표시의 의제</li> </ul>
	조작실수 등의 방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기본법 제19조제2항</li> <li>○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7조(조작실수 등의 방지) 및 제14조(청약확인 등)</li> </ul>
계약이행 단계의 의무	<p>재화·용역 의 완전한 이행 의무</p> <p>일반 재화·용역의 불완 전 이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제1항 및 제3항</li> </ul>
	배송사업자의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9조(배송사업자 등의 협력)</li> </ul>
	e-러닝서비스의 콘텐츠 품질	
	지급·결제 의 안전성 확보	<p>금융정보의 보호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li> <li>○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8조 제1항</li> </ul>
	이중결제 등의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8조 제2항</li> </ul>
	결제 관련 사업자 등의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8조 제5항 및 제18조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li> </ul>
	e-MP의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0조</li> </ul>

이슈구분		이슈 쟁점	비고
계약의 해제·해지	Cooling-off	충동구매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
계속계약의 해제·해지			
사업수행 공통 사항	개인정보보호 의무	일반규제 대상	○ 소비자기본법 제19조제4항
		강화된 규제대상(위치정보사업자 등)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보호 의무	일반규제 대상	○ 정보통신망법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강화된 규제대상	○ 정보통신망법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및 제46조의3(정보보호 안전진단))
	저작권보호 의무	일반불법행위	○ 민법 제750조 ○ 저작권법 제136조
		공동불법행위	○ 민법 제760조제1항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제3항)	○ 민법 제760조제3항
	불공정거래 행위의 제한		○ 공정거래법
	피해구제절차의 마련		○ 전자금융거래법 제27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제1항
	분쟁해결의 협조의무	분쟁해결을 위한 협조의무, 입증책임	○ 소비자기본법 제19조제4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제2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2(손해배상) 및 제33조의3(손해배상의 절차 및 재정신청)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3조제3항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개별서비스 유형별 이슈	인터넷게임	등급제 아이템의 거래, 중개, 환전 과몰입방지	○ 게임산업법 제21조(등급분류) ○ 게임산업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8조(게임문화의

이슈구분	이슈 쟁점	비고
	온라인도박 방지 게임 중 욕설, 아이템 절도 등 윤리적 문제점 에 대한 대책	기반조성) o 형법 제246조 및 게임산업진흥법 제28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인터넷광고	광고의 구분표시 - 검색결과와 광고성정보의 구분 등	o 방송법, 신문법, 정간법
	광고분쟁(부정클릭 등)	
인터넷언론 서비스	인터넷신문	o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o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인터넷방송	o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인터넷뉴스매개서비스	o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 청 등),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제 44조의5(계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o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8년 개정)
검색서비스	검색결과 중 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에 관 한 관리 검색서비스의 공공성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청소년보호법
SNS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SNS의 공공적 성격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의무	
저장정보서 비스	저장정보서비스의 안정 적 제공의무	o 전기통신사업법 제14조 및 제27조(사업 의 휴지폐지시의 승인 또는 신고의무)
특수 OSP	저작권 침해 방지 음란물 유통 방지	

이슈구분	이슈 쟁점	비고
전문정보	의료, 법률 등 전문정보 제공 의약품 판매 제한, 광고 제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li> <li>○ 변호사법 제109조(벌칙)</li> <li>○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li> <li>○ 온디콘법 제11조(유통의 촉진)</li> </ul>

## (1) 계약체결전의 이용자 정보제공

(가) 광고표시<sup>187)</sup>

## 1) 인터넷광고 현황

## 가)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광고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광고를 사업자 등이 상품에 관한 사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정기간행물(신문잡지 기타 간행물), 동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 신문, 「방송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2호). 본 법에서는 광고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정보를 고시를 통하여 사업자의 표시 · 광고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는 중요정보공개제도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인 광고주가 행한 광고 중에 사실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소비자에게 공개하여 이용하게 하는 광고 실증제를 규정하고,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인 임시중지명령제를 규정한다.

187)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 이용 관련 법제개선 이슈 연구보고서(가칭)(2010. 10.), 22면 이하.

#### 나) 정보통신망법

누구든지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Opt-out 방식의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제50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때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50조의5).

#### 다) 인터넷 광고 관련 분쟁 현황

2009년 3월 2일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지난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조정 민원접수 건수는 총 3631건으로 2007년의 2668건에 비해 36.1%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이중 서비스부문의 인터넷 광고 분쟁부문은 61건으로 전년대비 13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거래 분쟁조정 민원접수 건수 중 대부분이 전화권유로 인터넷 광고를 유치한 후 거래에 충실하지 못함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요청이므로 현재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부정클릭, 허위·과장광고 등의 부문이 반영된다면 그 수치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포털/SNS가 행태 추적의 온상이 되어 타깃광고에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 최대 검색 포털 구글과 세계 최대 SNS인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의 성향을 분석해 타깃광고에 활용하는 수익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즉, 사용자의 웹 서핑 성향을 분석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관심 기반 광고' 시범 서비스를 개시하고,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더라도 사용자에 따라 다른 광고를 보게 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사용자들은 이 기능을 거부할 수 있으며, 원하는 관심사를 직접 설정할 수 있다. 페이스북은 '인게이지먼트 애드'라는 툴을 이용해 전 세계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관심사를 분석해 광고주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과거 '비콘'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성향에 맞춘 타깃광고를 제공해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인 적도 있다. 온라인 마케팅 업체 유소설은 SNS를 통해 타깃광고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페이스북 프렌드 1천명당 177달러를, 트위터 팔로어 1천명당 87달러를 받고 추가해주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 2)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타깃광고를 스팸과 유사하게 접근하는 것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의 동의를 얻는다 할지라도 상업적 이용에 관한 의사표시의 흡결을 전제로 하는 사안인 까닭에 개인정보 관련 권리침해 문제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충돌되는 법익이 존재하므로 적정규제 차원에서 논의가 이어져 입법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광고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블로그 광고도 규제 대상이 된다. 문제는 블로그 광고의 유형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어느 범위까지 규제의 대상이 되는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또한 광고의 자율규제 방법으로 사전심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대상범위도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또 인터넷 매체를 통한 광고가 매체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강한 전파력과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사전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한편,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광고형식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법률에 의하여 광고 형식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정보가 아닌 한 광고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 3) 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의 명확화

블로그나 SNS를 이용한 광고 중 표시광고법 등 현행법률의 적용을 받는 범위를 명확히 확정해야 한다. 블로그 광고나 SNS 광고 중에서 종래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는 범위를 기아드라인 등을 통하여 명확히 확정하여야 하며, 사전심의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광고의 범위 속에 포함되는 블로그 광고나 SNS 광고의 유형을 명확히 확정해주는 것이 요구된다.

#### 4) 타깃광고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법제의 개선 필요성

타깃광고는 개인의 신원정보, 행태정보 등 다양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결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관련법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결합되고 활용되는지 추적하고 이용 동의가 철회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법을 규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세부적인 절차 별로 개인정보의 활용 통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사업자의 영업에 큰 제한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도 병행되어야 한다.

#### 5) 인터넷 광고에 대한 내용규제의 합리화

법률 개정보다는 자율규제의 촉진을 위한 공동규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전적으로 선정적 광고를 자율심의 및 필터링하는 것을 촉진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 6) 광고형식의 규제

신규 입법보다는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유도하여 자율규제를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정보와 광고의 구분표시에 대하여는 입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광고를 정보로 오인하지 않도록 광고의 구분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소비자 및 이용자의 보호를 꾀하여야 한다.

##### (나) 사업자 정보 표시 등<sup>188)</sup>

인터넷기반서비스는 비대면성을 그 특징으로 하므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이로 인하여 거래안정성을 해하거나 인터넷기반서비스를 이용하는자의 권익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

---

<sup>188)</sup>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2009.11), 46면 이하.

(다) 거래조건 관련 정보 제공<sup>189)</sup>

인터넷기반서비스는 비대면성을 그 특징으로 하므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도 부족하다. 이렇듯 거래조건에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경우 인터넷 이용자의 피해 및 잘못된 거래조건으로 인한 거래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라) 가격비교서비스<sup>190)</sup>

점차 인터넷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이용하는 비중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오프라인에서 구매·이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조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특히, 다수의 인터넷이용자는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를 통하여 가격정보를 수집·조사할 뿐만 아니라, 그 편의성으로 인하여 가격비교서비스에 의존하여 가격정보를 수집·조사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 (2) 계약체결 시 설명

## (가) 약관

##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현황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동법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 및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문자·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189)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2009.11), 47면 이하.

190)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2009.11), 49면 이하.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제2항).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동법 제3항). 의사표시의 의제(동법 제12조)에 관해서는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지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제19조의2에서 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자율적 표준약관제정 ②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표준약관제정요청권 및 공정 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제정권고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직권제정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 등 표준약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19조의2 제1항).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의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제19조의2 제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① 소비자단체 · 한국소비자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②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조사하여 사업자 ·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약관(안)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제19조의2 제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 사업자단체가 권고를 받은 날부터 4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분야의 거래당사자 및 소비자단체 · 한국소비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수 있다(제19조의2 제4항).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 ·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제19조의2 제5항) 표준 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제19조의2 제6항).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콘텐츠거래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제16조의3). 이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이 제정되어 있다.

## 2) 현행 문제점

전자약관의 경우 그 명시 및 설명에 있어서 서면의 형식으로 작성된 약관과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인터넷 약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인터넷상 약관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지 아니하면, 향후 인터넷상 약관을 통한 거래행위의 유무효의 논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모바일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자약관의 특성상 이용자의 클릭만으로는 클릭의 대상이 되는 전자적 내용에 대한 확인이 추정될 뿐이고 해당 항목에 대한 진정한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객의 일정한 작위 내지 부작위를 의사의 표명으로 보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바(동법 제12조), 이런 점에서 이용자가 특정한 표시에 클릭을 하는 방식으로 의사표명을 하고 있는 현행 전자약관의 방식은 의사표시의 유·무효가 문제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의사표시의 진정성 확인을 위한 인터넷상의 특유한 방식의 설정이 필요하다. 인터넷기반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사업자단체나 정부가 거래현실에 부응하는 표준약관을 작성·보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나) 약관의 개시 및 설명

인터넷기반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약관의 교부·설명의무 이행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설명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에게 설명하는 것을 말하는데, 인터넷기반서비스의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개시 이외에

설명의 방법이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상의 설명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약관의 설명에 대한 특별한 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직접 타이핑을 하는 등의 방식 또는 항목별로 체크하는 등의 방식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약관 설명의무 이행에 접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인터넷기반서비스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식(폰트, 색상, 반짝거림 등)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기반서비스 약관상의 교부·게시·설명의무의 특성을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상법」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 부당한 의사표시 의제조항

약관 중에서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이 직접 타이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밑줄을 치는 방식으로 표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특유의 확인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을 정함에 있어서 인터넷 기술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개발될 수 있으므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지양하고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도록 선언적인 규정을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00조(의사표시의 의제) 인터넷사업자는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 (라) 표준약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인터넷기반서비스 관련 사업자단체 등이 인터넷기반서비스의 각 분야별 표준약관을 마련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 (3) 계약체결 후의 대응

Cooling-off 로 우발적 충동구매로 인한 부적절한 계약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

### (4) 분쟁처리·상담체제

#### (가) 현황

현재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언론중재위원회 등 인터넷기반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중재제도는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재판외분쟁해결절차(ADR)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종 분쟁해결제도의 절차를 통합할 수 있는 기본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점에서 일본은 「재판외분쟁해결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ADR법)(2004년), 중재법(2004년)이 마련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 ADR에 관한 연방차원의 입법으로서, The Civil Justice Reform Act of 1990(The Judicial Improvements Act of 1990, Pub. L. 101-650)과 The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0, Pub. L. 101-552.<sup>191)</sup> 그 외에 연방민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이 있다.

분쟁조정기구로는 미국의 경우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미국중재협회(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 미국에서는 전자상거래분쟁을 대상으로 한 「Square Trade」나 5만 달러 미만의 분쟁에 대해서 등록료 50~300달러 및 중재보수 50~300달러로 웹 베이스의 상사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WEBDispute」, 도메인네임 분쟁만을 대상으로 하는 ICANN(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공인의 「DisputeOrg」가

---

191) 前者の 법률은 모든 지방법원에 대하여 ADR의 사용을 권장하거나 요구하도록 하는 한편, 업무부담에 관한 검토 및 이에 대하여辯護士, 法學者, 市民들로 구성된 諮問委員會를 구성하여 1991년 말까지 "Civil Justice Expense and Delay Reduction Plan" ("EDRP")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였다. 後자는 연방정부가 당사자로 된 사건에 있어서 ADR의 사용을 권장하는 立法이다.

(<http://blog.naver.com/sehong73?Redirect=Log&logNo=100014230310>)

있다. 일본의 경우 일본변호사연합회분쟁해결센터, 국제상사중재협회(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JCAA), 인터넷쇼핑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 「ADR Japan」이라는 포털사이트 있다. 이 사이트의 운영주체는 일본상사중재협회, 일본해운집회소, 일본지적재산중재센터 및 일본변호사연합회이며 국내외를 불문하고 널리 재판외분쟁해결을 담당한다. 엄격한 의미에서 ADR은 아니지만 2006년 10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일본사법지원센터(법테라스)가 있다. 우리나라 인터넷기반 서비스 관련 분쟁조정기구는 개인분쟁조정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등 약 9가지 기구가 존재한다.

<표 4-6> 인터넷기반서비스 관련 조정기구의 주요 현황<sup>192)</sup>

기구 이름	근거 법률
개인분쟁조정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10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기본법 제32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 제112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제33조
금융감독원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 (나) 문제점

서비스의 갑작스런 중단,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한 법적인 책임 범위 및 한계에 대하여는 신규 입법이 필요하다. 또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의 효력 강화가 필요하며, 분쟁절차에의 접근 용이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창구의 일원화

192) 인터넷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79면 이하.

및 전문 분쟁 해결 절차로의 사건 분배를 담당할 기구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분쟁조정기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 (다) 제정방향

온라인 ADR 모델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온라인 분쟁해결을 위해서 보다 신속하고 비용절약적인 온라인 ADR(ODR : Onlin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메카니즘을 개발하고 이를 촉진시키는 일은 국경을 초월한 사업전개 및 보다 넓은 시장을 개척하는데 있어서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표 4-7> 면대면 ADR과 온라인 ADR의 특징 비교<sup>193)</sup>

면대면 ADR의 특징	온라인 ADR의 특징
· 동시적인 접촉 - 당사자들은 전 시간 집중하면서 때로는 감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함.	· 비동시적 접촉 - 당사자들은 반응을 보이기 전에 어떤 충고를 찾기 위해 시간을 할애함.
· 주로 구두상의 정보교환 - 소리의 높낮이, 불립강조의 의미 등이 전달됨	· 주로 문서상의 정보교환 - 굵은 선(고딕체)의 형태가 강조를 위해 제공되기도 함
·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풍부 - 의미전달, 신뢰 구축 가능, 연민, 호의적인 행동 등.	· 비언어적 의사소통 미비 - !!!, ???, ☺ 등의 사용.
· 사전교섭에 대한 재구성이 없음 - 당사자들은 서로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하며, 조정인은 후에 재구성하도록 내버려둠.	· 사전교섭에 대한 재구성이 가능 - 당사자들은 언어를 수정해서 협상할 수 있도록 또는 설명을 덧붙이면서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정인을 통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음.
· 일련의 결과적인 협의.	· 동시적인 협의 가능.
· 대체적으로 의사소통이 기록되지 않음 - 참여자들은 대체로 불완전하게 기록을 남기거나 종종 폐기시키기도 함.	· 대체적으로 의사소통이 기록됨 - 그 기록은 합의에 의해 폐기시키거나 또는 합의 상태로 보류시키기도 함.
· 비공개입찰(Blind Bidding)이 드물고 번거러움 - 중재인은 입찰내용을 비밀에 부치고, 당사자들이 합의영역 내에 있는지의 여부를 보고 해줄 수 있음.	· 비공개입찰(Blind Bidding)이 유용하며 효율적임 - 소프트웨어가 많은 입찰영역을 제시하고, 합의영역에 도달하면 그 해결점을 제시함.
· 관계자가 알려져 있음 - 모든 관계자들이 보고들을 수 있으며, 중재인들은 의사결정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통제할 수 있음.	· 관계자가 알려져 있을 필요 없음 - 조정인은 의사결정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통제할 수 없음.

193) 김선팽, 전개논문, 7면.

• 프라이버시 보장(도청을 제외하고).	• 프라이버시 의문 - 이는 시스템의 안정성 (완전무결성)에 의존함.
-----------------------	---

### (5) 관계자의 연계

행정과 사업자와 정보공유 및, 의견교환을 하는 장, 더 나아가 소비자단체나 관계 업계와 관계행정기관이 널리 정보교환하고 연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관계자간에 의한 이용자 보호 시책을 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 7. 자율규제의 지원

### 가. 인터넷 서비스에 있어서의 자율규제의 의의

자율규제라는 용어는 법적 규제 또는 정부규제에 대응한 말로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해당 문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스스로 규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매체 내용규제와 관련하여 널리 쓰이고 있다. 다만 본 인터넷 진흥 법제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인 규제 보다는 “국가에 의하여 규제의 권한을 형식적으로 위임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한다.<sup>194)</sup> 또한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본 법제의 제정취지를 고려하여,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 및 보호와 관련되는 진입규제, 영업규제 등의 모든 영역에서의 규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자율규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인터넷은 다른 매체와 달리 기술적 특성이 두드러지고, 다수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관련성이 크고, 국제적인 문제를 향시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국가를 전제로 하는 전통적인 내용규제 방식인 법적 규제보다는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규제방식이 보다 친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인터넷 매체에 대한 규제방식은 다른 어떤 매체와 비교하더라도 자율규제 방식이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194) 유정석·김용국·고아라(2010.8.31), 인터넷 콘텐츠의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간의 협력모델 개발, 방송통신위원회 연구보고서, 36면

보인다. 이는 인터넷 매체의 개방성과 공유성이라는 매체특성이 규제방식에도 나타난 결과라고 할 것이다.

#### 나. 인터넷 진흥 법제에서 자율규제 내용의 필요성

자율규제는 말 그대로 이해당사자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내용규제의 프로세스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어떤 특정한 법제에서 자율규제를 언급하는 것은 다소 어울리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즉 자율규제의 본원적인 모습은 국가가, 법이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국가공동체가 가지는 권력의 한 형태인 ‘법’의 모습으로 자율규제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인터넷 자율규제는 단순한 무간섭, 무대응, 방임의 단계를 지나서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의 다양한 내용을 구성하고 조직하며 조장하는 행정을 필요로 한다고 볼 때 진흥 법제에서의 자율규제를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책임을 국가에게 부여하고, 더불어 이해당사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천명하는 정도의 입법방식은 자율규제의 실효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겠다.

#### 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서비스의 자율규제 현황

##### (1) 관련 법 규정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자율규제”라는 제목 하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제44조의4)“라고 규정하여, 자율규제의 내용을 일정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문이 규정하고 있는 자율규제의 목적은 “이용자 보호”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안전성과 신뢰성 보장”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자율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해당단체가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을 검토하건대, 인터넷 서비스에 있어서의 자율규제의 목적은 “이용자 보호”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의 보장”으로 잘 설정되어 있고, 다만 자율규제의 핵심

사항인 정부나 기업, 이용자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자율규제의 법적 효력이 강제성을 띠지 않는 본질상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 없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으나, 자율규제의 방향과 지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보다 구체화하면 할수록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도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 제도는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해당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임시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적 강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실무에서도 이를 자율적인 게시글 규제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상 이 제도도 광의의 자율규제의 하나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 외에 인터넷 서비스의 자율규제는 아니지만, 각 개별법에서 자율규제의 방향, 내용을 설정하는 입법례는 다수 존재한다(아래 <표4-8> 참조).

자율규제 관련한 입법 방식은 조문제목을 자율규제로 표현하고 그 내용을 구성하는 방식과 조문의 본문에서 자율규제의 내용을 반영하는 방식, 2가지의 입법방식이 대비되고 있으며,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규제의 선진화”라는 조문 내용을 사용하고 있는 등 점차 다양화 되고 있다.

&lt;표 4-8&gt; 법령 비교

법률명	조문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도입·시행 지원 4.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시행 지원 5.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맹사업거래의	15조(자율규약) ①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

법률명	조문 내용
공정화에 관한 법률	<p>체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다.</p> <p>②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규약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규약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p> <p>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p>제5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li> <li>2.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물등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li> <li>3. 광고주 및 옥외광고업자 등에 의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li> <li>4. 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그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li> <li>5. 옥외광고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li> <li>6. 필요한 예산의 확보,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li> <li>7. 우수 광고물, 모범 옥외광고업자 및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ul> <p>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군·자치구의 광고물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등에게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지도·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p> <p>④ 시장등은 제3항의 지원계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항의 종합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자율관리 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을 지정·운영하며, 광고주·옥외광고업자 등의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⑤ 시장등은 관광진흥,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p>

법률명	조문 내용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併記)하도록 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업무) ①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자율규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12조(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①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그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심의결과 그 결정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이의 확인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를 각 심의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 당해 매체물의 확인을 위한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결정없이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준하는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할 수 있다. ⑤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을 한 매체물을 발견한 때에는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여부의 결정과 확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 시행령> 제8조(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① 법 제12조제1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체물의 창작·제작 및 유통과 관련된 단체·협회 또는 이들로 구성된 협의체

법률명	조문 내용
	<p>2. 기타 매체물의 유해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자체심의기구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p> <p>②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및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이하 "자율규제단체등"이라 한다)가 청소년유해여부의 확인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여부 확인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당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확인한 경우에는 자체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은 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④법 제12조제6항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 날을 말한다. 이 경우 고시의 효력발생시기는 고시일로 한다.</p> <p>제10조(자율규제단체등의 지원)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자율규제단체등의 자율심의를 활성화하고 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규제단체등이 적용할 심의기준 및 심의방법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율규제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국민건강진흥법	<p>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p> <p>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되어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製冊)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제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p>

법률명	조문 내용
	<p>3.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한다)를 후원하는 행위.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4.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안에서 하는 광고</p> <p>② 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광고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한 광고는 제조자등이 한 광고로 본다.</p> <p>③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할 것</li> <li>2. 비흡연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지 아니할 것</li> <li>3. 제9조의2에 따라 표기하는 흡연 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가 아닐 것</li> <li>④ 제조자등은 담배에 관한 광고가 제1항 및 제3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li> <li>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li> </ol>
방송법	<p>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p> <p>②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p> <p>③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p> <p>④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p> <p>제33조(심의규정) ① ② &lt;생략&gt;</p> <p>③ 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등을 감안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중에 표시하여야 한다.</p> <p>④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3항의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기준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p> <p>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사업자가 자율적</p>

법률명	조문 내용
	으로 부여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당해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3조의2(네트워크정책국) 30. 사이버 윤리 관련 민간 자율규제 지원 및 인터넷내용등급 데이터 베이스의 보급 31. 사이버 윤리 관련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규제의 선진화) ① 정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온실가스 또는 오염물질의 발생 원인자가 스스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기업의 규제에 대한 국내외 실태조사 등을 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의 중복을 피하는 등 규제 체계를 선진화하여야 한다.

## (2) 국내 실정

### (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활동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함)는 2009.3. 국내 7개 포털사의 협의로 발족되었다가, 현재는 6개의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다. 동 기구는 인터넷 사업자 공동의 자율규제를 실현하고 동시에 인터넷 사업자 공동의 사회적 책무 및 공공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동 기구는 이사회, 정책위원회,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는데, 회원사 대표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최고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고, 정책위원회는 외부의 전문가와 회원사의 게시물을 관리 책임자 등 총 11인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KISO의 정책방향을 정하고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2010년 7월 현재 정책 결정사항은 25건이고, 그중에서 회원사의 게시판 정책의 규범으로 작용하는 “정책 결정”을 다수 내놓기도 하고 있다. 정책결정 내용은 홈페이지([www.kiso.or.kr](http://www.kiso.or.kr))를 통하여 공개되고 있고, 활동사항은 「KISO 저널」이라는 정기 발간물을 통하여 이용자가 파악할 수 있다. 그 외 회원사의 게시물 중 불법, 불건전 게시물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 인터넷상의 각종 피해에 대한 상담과 신고를 수행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KISO에서는 회원사로 이첩하여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한다.

KISO가 출범하여 아직 채 3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포털사이트가 이 기구를 중심으로 게시판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점은 인터넷 사업자들간의 정책의 혼선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다수의 정책결정에서, 일부 정책 결정 내용에 동의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포털사이트의 게시판 정책의 일옹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실상 최초의 업계 자율규제기구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자율규제의 성패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겠다.

#### (나)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의 활동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KIADO, <http://kiado.kr>)는 인터넷매체를 통하여 집행되는 광고물이 전체 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하는 상황<sup>195)</sup>에서 부정클릭, 불법·유해광고의 유통 등의 역기능이 등장함에 따라 2009년에 설립된 인터넷광고업계의 자율적인 규제기구이다. 동 기구는 인터넷광고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자체 모니터링과 자율심의를 통해 위법·유해, 불건전 광고물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광고 적정성 자문을 통해 광고 집행전에 발생할 수 있는 위법·유해광고물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산하 조직으로는 인터넷광고자율심의위원회, 인터넷광고정책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는데, 인터넷광고자율심의위원회에서는 사전심의를,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인터넷 광고에 대한 분쟁조정을 하고 있다. KIADO도 2009년에 설립된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관련 업계와의 유기적인 관련을 맺으며 인터넷광고의 사전심의와 분쟁조정을

---

195) 2011년도에는 인터넷광고시장이 종이신문시장(1조6312억원)을 추월하는 1조 8168억원을 기록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머니투데이신문, "내년 인터넷광고 시장, 종이신문 추월", 2010.12.15.

통하여 인터넷광고의 정착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다) 관련 인터넷기업의 자율활동

각 포털사이트는 정관과 KISO의 정책방침, 정보통신망법 등 법규에 따라 음란 등 불법정보, 인터넷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정보,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삭제, 접근 조치,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등의 자율적인 정화활동을 하고 있다.

#### (라) 정부의 자율규제의 지원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기존의 매체규제와 달리 자율규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지만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터넷 매체가 우리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 인터넷문화가 성숙된 점에서 보면 이제는 불법정보나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규제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대폭적인 민간으로의 규제 이양을 추진할 시기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 (3) 현행 자율규제의 문제점

가장 주된 문제점은 다른 매체규제와 같이, 인터넷 서비스에 있어서도 자율규제의 역사와 제도가 일천하다는 점이다. 인터넷 매체가 새로운 매체라고는 하지만 결국 규제의 역사와 제도는 기존의 매체의 경험에서 잉태하기 마련인 점을 감안하면 인터넷 매체에 대한 자율규제의 넓이와 깊이가 일천한 점에 대하여 그리 낙담할 일만은 아니다. 현황에서 보았듯이 KISO와 KIADO가 한국의 일천한 환경에서 자율규제의 짙을 틔운 점은 치하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KISO의 한계점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요약하면<sup>196)</sup>, 회원사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점, 행동강령의 부재로 인하여 회원사에 대한 구속력의 한계가 있는 점, 정책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

196) 유정석외, 위 연구보고서, 60-62면

회원사로부터의 독립성 확보의 한계를 들 수 있는 점, 회원사의 편당만으로 운영되는 점, 공적 심의기관 등 정부영역과의 공식적인 협력네트워크 또는 협력모델이 없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 다. 인터넷 서비스 주체별 역할의 분배

인터넷 진흥 기본법에서 자율규제의 지위는 인터넷 서비스 주체간의 자율규제의 진흥과 지원의 방향을 제시함에 있다. 자율규제의 방향은 인터넷 서비스 주체별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바, 국가, 인터넷 서비스사업자, 이용자 등의 3자는 물론이고, 가정에서의 역할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조문의 형태는 “국가는(또는 정부는) …”,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 “이용자는 …”, “가정(또는 학교)에서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와 같이 각 주체별로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자율규제의 주체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단체”로만 한정하고 있다.

#### 라. 진흥과 지원의 구체적 방향 제시

진흥과 지원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지나치게 선언적인 규정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특히 이 법이 진흥법 체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가 자율규제의 활동 및 정착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상정하고, 정부의 지원체계를 구체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 8. 국제협력

#### 가. 국제 규범과의 협력 및 조화의 필요성

인터넷 기반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는 그것이 법적인 쟁점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이슈이든 간에, 해당국가에만 관련을 맺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관련을 맺는 것임 대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한 국가의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도

필요하고, 인터넷기반서비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도 필요하다. 다른 나라의 인터넷사업 관련 규범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는 사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 국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규범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해당 문제의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 및 국제규범과의 협력 및 조화를 항상 고려하는 상태에서 정책 형성 및 입법이 필요하다. 만일 국제규범과 동떨어진 제도를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인터넷정책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성을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된다.

#### 나. 관련 사례

최근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상의 계시판 본인확인제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인바, 우리나라에 진출한 다국적 인터넷기업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해당 제도의 적용을 우회적으로 반대하여 상당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외국 인터넷 기업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논쟁거리를 발생시키고 국내기업에 있어서는 “법적용의 형평성” 시비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계시판 본인확인제가 우리나라의 독특한 계시판 문화를 반영한 특수한 법적 현상이라는 당위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적인 규범과의 조화 측면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라고 할 것이므로, 입법 당시에 국제사회와의 조화를 고려하지 아니한 점은 상당히 아쉽다고 할 것이다. 국제규범과의 협력 및 조화는 바로 이와 같은 인터넷의 국제성이라는 특성에서 보다 두드러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향후 인터넷 관련 입법시에는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제적인 협력, 국제규범과의 조화 등의 관점에서도 입법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제반 요소가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 다. 관련 법률 현황

최근의 입법례에서는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 협력을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이를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필요에서도 국제 협력에 대한 입법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lt;표 4-9&gt; 국제협력 입법례

법률명	조문 내용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7조(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및 전문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콘텐츠의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2. 외국인의 투자 유치 3. 국제시장·전시회·시연회 등 참여 및 국내 유치 4. 콘텐츠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5. 콘텐츠의 해외 현지화 지원 6. 콘텐츠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 7. 국내외 기술협력 및 인적 교류 8. 콘텐츠 관련 국제표준화 9.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법률명	조문 내용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p>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제게임전시회의 국내개최</li> <li>2.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li> <li>3.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li> </ol> <p>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정보통신망법	<p>제8장 국제협력 &lt;신설 2007.12.21&gt;</p> <p>제62조(국제협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때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전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련된 업무</li> <li>2.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li> <li>3.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li> <li>4.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08.6.13]</li> </ol> <p>제63조(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li> <li>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li> <li>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 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li> <li>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li> </ol> <p>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p>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p>제23조(방송통신 국제협력)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의 국제적 공동제작 및 유통, 방송통신 관련 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방송통신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와 관련된 민간부문에서의 국제협력</p>

법률명	조문 내용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닝(전자 학습)산업 발전법	제24조(국제협력 등)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러닝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이러닝의 국제표준화 활동, 국가간 이러닝의 공동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정보화기 본법	제24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국가정보화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4.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평가 5.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6. 정보문화 창달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7.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영상진흥 기본법	제14조(국제 교류 및 협력) 정부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보 교류 및 공동 조사·연구 2. 영상산업에 관한 기술 협력 3. 영상물의 공동 제작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 2 절 제정 기준

### 1. 기본계획 수립 기준

가. 진흥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한 단일 콘트롤 타워(control tower)의 설치

인터넷 진흥정책은 융복합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특징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단일 콘트롤 타워”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인터넷 정책을 통합하고, 기존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약화된 부처 조정기능을 강화·집중하여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강화하거나 조정기능을

새로운 콘트롤 타워에 맡겨서 기존의 진흥정책을 쇄신하여야 한다.

#### 나. 통합적 진흥정책의 방향과 내용

##### (1) 정책 방향

통합적 진흥정책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모두 협력하도록 의무화하고, 단순 정책 취합이나, 형식적인 정책 합산을 지양하기 위해서 핵심 사항 혹은 중점 추진 사항 중심으로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2) 내용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는 사항은 ① 인터넷 산업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 방향, ② 인터넷기술의 혁신에 관한 사항, ③ 인터넷기술의 보급·확산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④ 인터넷 리터러시 및 인터넷 서비스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⑤ 인터넷기업의 창업 및 성장지원, ⑥ 인터넷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의 활성화, ⑦ 인터넷기업의 해외진출지원, ⑧ 지방의 인터넷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⑨ 그밖에 인터넷산업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이다.

## 2. 신분류체계 수립 기준

#### 가. 인터넷 서비스 규율체계의 정비를 위한 선행연구 필요

기존에는 인터넷 서비스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활용서비스, 지원서비스, 기반서비스로 나누어 왔으나 이러한 유형분류는 최근 등장하고 있는 신규 인터넷 기반서비스들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신규 인터넷 기반서비스들을 단순히 기존 서비스체계로 단정 짓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법제에 적용하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 다만 신규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화를 추진하게 될 경우 자칫 법제의 비대화나 법제간의 혼재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제정법에 분류체계 정비 방안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등장 가능성이 있는 신규 인터넷 서비스를 고려하여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 규율체계의 정비에 대한 보다 면밀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나. 서비스 신분류 체계 규율을 위한 입법방향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를 분류는 기존의 산업계 분류와 같이 인터넷 서비스 유형에 따른 구분이 아닌 구체적인 인터넷 서비스의 기능을 분류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기능별 분류 시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의 기능을 무작위로 선정할 경우, 이를 규율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공통분모를 설정하여 이를 묶어 내는 것이 인터넷 서비스를 분류함에 있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분류 기준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검토, 다양한 서비스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제간의 체계적 연구를 심층적으로 추진한 후 서비스에 대한 신분류 체계 기준을 마련한 후에 관련 서비스 진흥을 위한 입법화가 순서라고 판단되어 본 인터넷 서비스 진흥법(안)에는 규율하지는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기반 환경 체계 수립 기준

인터넷 기반환경의 진흥을 위해서는 인터넷 기반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인터넷 기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요소는 (i) 기반 환경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의 구성, (ii) 계획의 수립(계획의 수립을 위한 실태 및 통계 조사 포함), (iii) 인력의 양성, (iv) 기술개발의 지원, (v) 표준화의 추진, (vi) 국제협력, (vii) 산업지원책 등이 그 주요내용이 될 것이다. 물리적 기반 환경 조성과 논리적 기반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국가는 각종 정보통신기기·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거나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핵심기술을 직접 개발하여 민간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모든 트래픽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이른바 망 중립성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4. 콘텐츠 창출 및 활용 지원 체계 수립 기준

인터넷 콘텐츠의 지원과 진흥을 위해서는 첫째, 공공 인터넷 콘텐츠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공공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내용, 한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공공 인터넷 콘텐츠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입법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의 인터넷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유통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셋째, 콘텐츠의 거래비용 감소와 유통환경을 개선을 위하여 방안으로서의 인터넷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 5. 공정경쟁과 상생협력 수립 기준

##### 가.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분석

###### (1) 시장 확정

###### (가) 문제의 소재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경쟁과 시장상생의 지원체계를 수립하기에 앞서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 시장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를 중요한 문제이다. 인터넷 서비스 시장은 양면시장 내지는 다면시장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바, 인터넷 서비스 시장 확정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나의 상품 시장으로 묶어서 확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개별 서비스별로 별개의 시장을 확정해야 하는지 여부이고, 대부분의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므로 시장가격을 무엇으로 해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sup>197)</sup>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는 NHN이 판도라티비 등 동영상 제공업체와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색인 데이터베이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영상내에 광고게재를 금지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와 NHN 자회사에 대해 유리한 조건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부당하게 지원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바 있다. 이 결정에서 인터넷 포털 서비스 시장은 이용자 측면과 광고 측면으로 구분되는 양면시장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위와 같은 행위는 네이버가 인터넷 포털 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기반으로 하여 동영상 콘텐츠 제공업체에 대하여 동영상 내 광고를 금지한 행위로서 온라인 광고 시장 및 동영상 콘텐츠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였으므로 관련 시장은 인터넷포털 서비스 이용자 시장이라고 결정하였다.<sup>198)</sup>

(다) 법원의 판결<sup>199)</sup>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관련 상품시장을 1S-4C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서비스 이용자 시장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나아가 공정위가 이 사건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의 추정 기준을 인터넷 포털사의 전체매출액으로 삼은 것과 시장진입 장벽의 존재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인터넷 포털을 통한 동영상 콘텐츠의 유통을 이용자 측면에서 파악하여 시장을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동영상 콘텐츠의 이용은 1S-4C 서비스 전부를 제공하지 않는 인터넷 사업자의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 서비스의 효용이나 성능,

197) NHN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2008.8.28. 의 결 제2008-251호

198)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이란 검색 서비스, 콘텐츠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커뮤니티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 등 이른바 1S-4C를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사이트로 규정했다.

199) 서울고등법원 2009.10.8. 선고 2008누27102 판결.

소요되는 비용은 1S-4C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과 별다른 차이가 있을 수 없으며, 이용자들도 네이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회비용이나 불편이 가중된다면 별다른 비용이나 노력 없이 바로 다른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으로 이동하여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1S-4C를 제공하지 않는 인터넷 사업자도 네이버와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사업자를 모두 포함하여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 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법령상의 근거 없이 인터넷 포털사의 인터넷 광고시장에서의 매출액을 포함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데, 위 매출액에는 인터넷 광고시장에서의 매출과 관련이 없는 게임, 전자상거래 매출도 포함되므로 이는 부당하고, 인터넷 포털 서비스 시장에서의 광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이 높다고 하여도 시장지배력은 그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다.

## (2) 소결

인터넷 서비스는 포털 서비스를 비롯하여 전자상거래, 검색 및 게임 등 개별 서비스도 이루어지므로 무엇을 기준으로 시장을 획정하여야 하는지는 어려운 문제이고 구체적인 경우 개별적인 분석을 통해 획정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인터넷 진흥 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및 시장상생을 위한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획정은 전체 인터넷 서비스 시장 즉 서비스별로 구분하는 것은 개별 법률의 영역이고 기본법에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시장으로 놓고 이에 대한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나.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특성에 부합한 지원체계

### (1) 규모에 따른 지원체계

매출액, 종업원 수 및 자산규모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류한 후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제혜택, 규제완화 및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는 사전적인 지원방법이 있을 수 있고, 사후적으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재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기존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법이 대부분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인터넷 서비스 진흥 법(안)에 담을 내용이 있을지 의문이다.

#### (2) 서비스 분류에 따른 지원체계

인터넷 서비스를 검색, 전자상거래, 게임 및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으로 분류한 후(위 서비스를 전부 제공할 경우 포털로 분류) 개별적인 특성에 맞게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개별 법률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기본법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난점이 있다.

#### (3) 소결

기존에 존재하는 서비스 영역에 신규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자나 아니면 기존에는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 이른바 유치산업보호의 목적에서 이들이 일정한 정도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정부가 직접 나서 보호, 지원을 통해 육성하는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 시장 내지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은 오히려 공정경쟁을 해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후적으로 불공정성을 감시하는 심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민·관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통해 공정경쟁 및 시장상생을 이를 수 있는 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 등을 마련하고 지원조직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6. 이용자의 권익증진 지원체계 수립 기준

### 가. 광고표시

사업자단체의 대응에 대해서는 일정한 효과가 나오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광고 표시에 관한 문제가 존재하므로,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1) 광고표시자율규제 등의 재검토

장점을 과도하게 강조한 광고형태, 세트판매, 가전용품판매점을 포함한 대리점 등 전기통신사업자 이외의 주체에 의한 광고 행태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2) 사업자단체에 의한 용어집 작성

용어의 통일과 함께 이용자에게 해설해 나가는 노력을 추구해야 한다.

#### (3) 모바일광고 등 인터넷 광고, 인터넷 상의 정보에 대한 자율적 등급제 실시

### 나. 중요사항의 설명

(1)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설명해야 할 사항이 증가하고 이용자 측이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설명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강조하여 설명할 사항, 경우에 따라 설명해야 할 사항, 설명 자료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나누는 등 앞으로 중요한 사항 설명에 관련된 문제(예를 들면, 전기통신 서비스 등을 세트로 계약하는 경우 등)를 필요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2) 또 현재 스마트폰이나 WiFi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는 등 상황이 변화되고 있으므로 최근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의 구체적 서비스 사례를 추가하여 가이드라인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3) 중요사항 설명서는 이용자의 연령, 지식을 고려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중요 사항은 계약자에 의해 천차만별이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 다. 원활한 분쟁처리해결을 위한 대응

- (1) 전기통신서비스의 복잡화, 고도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 대한 분쟁처리와 상담대응체제를 충실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웹페이지에 알기쉬운 곳에 문의할 것을 계재하고, 계약시에 먼저 문의할 리스트를 배포 하는 등 각 관계자가 적절한 상담창구를 이용자에게 알기 쉽게 통지,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 (2) 인터넷접속서비스 등에서 전자메일로 상담접수를 받을 경우 계약시에 이용자에게 그 취지를 주지시키고 전자메일에 의한 상담에 대한 답변까지 얼마의 소요 시간을 걸리는지 명기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 (3) 스마트폰이나 휴대전화에서의 콘텐츠서비스가 있는 경우 자사에 의한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를 명시하여 주의환기를 하는 등 이용자에게 상담창구의 정보 제공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콘텐츠상담을 접수하는 유료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 등도 존재하기 때문).

#### 라. 책임분담

사업자단체에서 콘텐츠서비스 등의 불합리하고 불편한 점에 관한 사례를 정리하고 분석하여 이용자에 대해 정보제공을 하는 등의 체제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콘텐츠서비스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 대응에 있어서는 콘텐츠 제공사업자, 소프트웨어 등 관계된 주체가 많다. 이용자대응에 있어서 협력이나 정보교환을 위한 시스템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 마. 재판외분쟁처리

전기통신분야에 있어서 재판외분쟁처리에 대해서는 내용에 전문성이 높고, 소액 분쟁이 많은 점, 동일한 처리가 가능한 분쟁이 유형적으로 생기는 점 등 분야별로 독자적인 기관에 의한 대응이 익숙하다. 전기통신분야에 특화된 재판외분쟁처리기관에 대해서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공적주체에 의하고 그 밖의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그 주체가 되어 각자 필요한 설립을 향한 자주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기통신사업자마다 분쟁처리와 상담체제를 정비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분야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하고 회원사업자의 분쟁에 대하여 조언이나 지도를 하는 체제가 필요할 것이다.

#### 바. 관계자의 연계방안

행정과 사업자와의 정보공유, 의견교환을 하는 장, 더 나아가 소비자단체나 관계 업계와 관계행정기관이 널리 정보교환하고 연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관계자간에 의한 이용자보호시책을 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 사. 이용자 리터러시(literacy)의 강화방안

계약자는 계약서 설명을 듣고 있으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서 등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스마트폰 보급 등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해 나가야하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통신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며 사업자가 매일 매거진이나 광고(CM) 등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7. 자율규제 지원체계 수립 기준

#### 가. 자율규제 지원체계 수립시의 유의사항

자율규제의 지원체계 수립시에는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에 따라, 자율규제의 목적, 방법, 주체, 내용, 효과를 면밀히 구성하고, 그에 따라 각 체계에 부합하는 국가(정부)의 지원체계가 대응되어야 한다. 첫째, 자율규제의 본질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르는 것인 이상 자칫 지원 및 진흥이라는 이름으로 자율규제를 강요하는 오류를 범하여서는 아니된다. 둘째,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자율규제의 후원자의 지위에 있음을 잊지말고 최소한의 간여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셋째, 자율규제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등 장려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넷째, 가능한 한 다양한 자율규제의 내용을 제시하여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인터넷 자율규제에 있어서의 각 주체별 역할

##### (1) 정부의 역할

정부는 인터넷사업자의 자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정부가 인터넷 정책을 개발할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법정주의 등 제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규제일몰제의 시행 및 규제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상당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인터넷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야 한다. 정기적 또는 상시적인 규제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인터넷 정책수단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이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역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인터넷사업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건전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자율적인 활동에 앞장서고, 그와 관련한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 및 시행을 추진하여야 한다. 결국 인터넷에 있어서의 자율적인 활동의 성공여부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추진의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속적인 활동 및 그에 대한 피드백을 합쳐야 한다.

##### (3) 이용자의 역할

인터넷의 자율적인 활동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용자의 이용의 편리성 및 신뢰성 제고에 있다고 보면, 이용자 또한 자율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용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사업자 등에게 전달될 때에만 사업자 등에 의한 자율적인 활동이 탄력을 받게 된다. 또한 이용자는 스스로 이용자단체 등을 조직

하여 인터넷의 자율적인 활동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 라. 구체적인 자율규제의 내용

##### (1) 교육·홍보

인터넷 자율규제의 목표는 이용자의 건전한 인터넷 이용을 도모함에 있으므로 불법정보나 권리침해정보 및 유해정보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홍보는 자율적인 활동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자 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지원체계, 방법 등에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 (2)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자율적인 활동의 주체는 개인인 이용자를 기초 단위로 하지만, 그 개인이 모인 기관이나 단체가 그 활동의 중심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기 조직된 기관이나 단체는 물론이고 새롭게 등장하는 단체의 경우에도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육성 및 지원책으로는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자율적인 활동을 장려하는 대신 관련 사업이나 과제를 지원하는 방법 등이 있다.

##### (3) 인터넷 서비스 인증마크의 도입 및 시행 지원

인터넷에 있어서 자율적인 활동이 일정 수준에 이른 경우에 인증을 통한 장려책도 도입할 만하다. 인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영업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 (4)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 및 시행의 지원

자율적 활동을 하는 협회나 단체의 경우에 사업자 행동강령이나 자율규약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일반적인 규범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해당 단체에게는 자율적 활동에 대한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이용자에게는 해당 자율적 활동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자율규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5) 세제 지원**

자율규제 관련 업무에 시행하는 인터넷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면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면세제도를 일부 채택하고 있는데, 특히 자율적인 활동을 하는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자율규제 관련 국제적인 협력 지원 등**

인터넷서비스는 다른 매체와 달리 국제적으로 자율규제의 방향이 공통적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자율적인 규율의 경험이 일천한 상태에서 외국의 사례와 경험을 참고하는 것은 자율규제의 정착에 큰 도움이 된다.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연구인력이나 재정상태상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는 않으므로, 정부가 나서서 국제세미나, 국제 자율규제기구간의 협력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7) 표준약관의 제정 지원 및 가이드라인의 제시**

인터넷서비스의 자율규제를 즉각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활동은 이용약관에 규정이 될 때만 이용자를 구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사업자의 자율적인 활동의 내용이 포함된 약관의 제정을 촉구하고 이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자율적인 활동의 표준이 될만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제시하는 것도 자율규제의 조기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8) 면책 조항 내지 자율규제의 법적 효과의 부여 문제**

현행법상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동 사업자의 면책규정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즉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임시조치에 있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뿐 임의적인 임시조치의 경우에는 책임감면제도가 없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하여 인터넷사업자가 스스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인정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법적 효과가 발생되고 있을 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감면제도가 없으며(청소년보호법 제12조(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불법저작물에 대한 Notice and Take제도에 있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저작권의 침해사실을 안 때부터 피해자에 의한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까지는 예외로 하고 있는 것(정보통신망법 제103조)이 그것이다. 이 규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자율규제제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필요적으로 면제하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아니하여 면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주장되고 있다.<sup>200)</sup> 이러한 주장은 미국의 1996년 CDA에서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자의 선의의 자발적 조치로 인하여 음란정보 등을 차단한 경우에는 그 법적 책임을 면제시킨다는 내용이나 DMCA에서 불법 복제물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면책케 하는 내용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터넷사업자의 책임을 면책케 할 것인가 즉 필요적 면제 또는 임의적 면제를 규정하는 문제는 단순히 자율규제의 효율성 제고차원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법의 영역에서 다른 불법행위의 유형과의 비교나 유사한 유형 등을 통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규제 내용이 정부규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규제의 중복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예컨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인터넷심의를 면제토록 하는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관련 이해당사자의

---

200) 유정석외, 위 연구보고서, 70-72면 참조

이익에 부합된다고 본다. 또한 자율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인터넷기업에 대하여는 관련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하는 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를 해볼 만하다.<sup>201)</sup>

## 8. 국제협력 수립 기준

### 가. 해외 협력을 통한 산업진흥의 보장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의 해외 마케팅, 홍보활동 및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전시회 참여를 지원한다. 또한 산업발전의 기본이 되는 기술개발이나 국제표준화 등에 있어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나. 국내외 인적 교류의 지원

국제협력 사업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교류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해외 연구인력에 대한 초빙사업 등은 물론이고, 국내 인력에 대한 국제세미나 등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다. 국내외 인터넷 서비스 관련 정책 및 사례의 연구 등 지원

인터넷 서비스는 다른 분야의 정책보다도 국제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에서 각국의 정책이나 사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세미나의 상시적인 개최와 해외 정책 자료에 대한 연구전담부서의 설립 등이 중요한 국제협력의 예라고 할 것이다.

---

201)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규정을 두어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동법 제22조의2 참조).

## 제 5 장 결론

본 연구는 현행 인터넷 진흥 관련 법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극복하고 방송통신의 융합환경과 같은 인터넷 환경변화와 인터넷 기술 및 서비스의 급속한 등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인터넷 서비스 진흥법(안)의 제정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국내 인터넷 진흥 정책 및 법제도를 분석하였고, 또한 주요국의 인터넷 진흥정책과 법제도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인터넷 서비스 진흥법(안)의 제정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인터넷 이용 활성화 및 진흥법체계화를 위한 결론을 내고자 한다.

### 1. 일원화·집중화된 진흥정책 추진 체계 마련

인터넷은 플랫폼, 기기, 서비스가 융·복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현재의 분산된 규율체계로는 새로운 인터넷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첩적 규제 또는 공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행 인터넷 진흥 관련 정책과 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원화되고 집중화된 인터넷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되어야 한다. 그러한 방안으로는 분산되어 있는 인터넷 진흥정책의 추진체계를 통합하여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하고 단일한 콘트롤 타워를 설치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소관별로 중복된 정책의 추진을 방지함과 동시에 부처별 진흥 정책이 충돌하는 경우 현실적인 조정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상호 협력할 것을 의무화하고,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합리적인 미래예측을 통하여 실현방법과 수단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추진체계를 구축하며, 핵심 사항 혹은 중점 추진 사항 중심으로 진흥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서비스의 통합적 진흥정책 마련을 위한 기본

계획은 ① 인터넷 산업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 방향, ② 인터넷기술의 혁신에 관한 사항, ③ 인터넷기술의 보급·확산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④ 인터넷 리터러시 및 인터넷 서비스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⑤ 인터넷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 ⑥ 인터넷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의 활성화, ⑦ 인터넷기업의 해외진출지원, ⑧ 지방의 인터넷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⑨ 그밖에 인터넷산업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2. 기반환경 조성

인터넷 기반 환경 조성을 위해서 첫째, 인터넷 서비스 관련 전문 인력 양성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또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의 교육기관 및 교육자료 등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예산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인터넷 서비스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 물리적 기반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정보통신망이 원활하게 구축되고 운영되어야 하며, 적절한 시기에 고도화되어야 한다. 논리적 기반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기술개발도 일차적으로는 하드웨어제조사,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등 민간사업자의 과제로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각종 정보통신기기·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거나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핵심기술을 직접 개발하여 민간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모든 트래픽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이른바 망 중립성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콘텐츠 기반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는 양질의 콘텐츠의 원활한 제공,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이용자의 이익 보호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소극적으로는 개인정보 또는 기업비밀의 보호가 필요하다.

인터넷 서비스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기술수준의 조사

및 기술의 연구 개발 사업, 개발된 기술의 평가 사업, 기술협력·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사업,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사업 등의 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외에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단체를 통하여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터넷 서비스의 표준화 추진의 필요성이다. 인터넷 서비스의 실질적인 진흥을 위해서는 서비스를 명확히 하는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정보통신 영역에서의 표준화 사업 추진, 표준화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인터넷 서비스 기반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인터넷 서비스 진흥에 관한 국제적 동향 파악과 국제교류, 공동연구, 국제 규범과의 조화를 위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인터넷 서비스 관련 산업지원이 필요하다.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하여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과 세제 및 금융지원에 관한 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산업지원의 방향은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한 세제 지원과 금융 지원, 중소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특별지원 방안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요약해 보면, 인터넷 서비스 기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요소로 ① 기반 환경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의 구성, ② 계획의 수립 (계획의 수립을 위한 실태 및 통계 조사 포함), ③ 인력의 양성, ④ 기술개발의 지원, ⑤ 표준화의 추진, ⑥ 해외시장 진출과 국제협력, ⑦ 산업지원책 등을 포함하여야 될 것이다.

### 3. 콘텐츠 창출 및 활용 진흥

인터넷 콘텐츠의 창출 및 활용을 촉진하여 위하여 먼저, 공공 인터넷 콘텐츠가 원활하게 이용되기 위하여 공공 콘텐츠의 활용 촉진을 위한 근거와 시행체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망을 통한 공공기관의 공공 콘텐츠 제공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이 공공 콘텐츠 제공체계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민간 인터넷 콘텐츠의 창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인터넷 콘텐츠의 제작지원을 위한 지원정책 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업의 인터넷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지원하고, 기업의 인터넷 콘텐츠의 제작 지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넷 콘텐츠 제작 사업의 창업지원을 위한 지원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인터넷 콘텐츠의 창출 및 활용을 진흥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소로 ① 공공 인터넷 콘텐츠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② 기업의 인터넷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 ③ 인터넷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을 위한 정책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유통환경개선을 위한 보조적인 형태로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콘텐츠의 지원을 위한 특별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의 경우 콘텐츠의 거래비용 감소와 유통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서 인터넷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제도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 4. 공정경쟁과 상생협력 촉진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시장으로 놓고 이에 대한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시장에서의 공정경쟁과 시장상생을 위해서는 기존 시장의 신규 사업자나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사업자의 경우 이른바 유치 산업보호의 목적에서 이들이 일정한 정도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정부가 직접 나서 보호, 지원을 통해 육성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정부가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을 하는 것보다 사후적으로 불공정성을 감시하는 심판의 역할을 원칙으로 하고 민·관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통해 공정경쟁 및 시장상생을 이룰 수 있는 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 등을 마련하고 지원조직을 갖출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인터넷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으며, 각 주체간 상생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먼저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여야 하며,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 행위는 제한되어야 한다.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하고,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의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의 사업자간 상생협력 및 공정한 이익배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인터넷 서비스 진흥법(안)의 마련에 있어서는 공정경쟁을 위한 개별적인 불공정행위 금지나 상생협력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내용은 기존의 개별 법률에 맡기고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 및 시장상생을 위한 기본원칙 규정, 지원조직 체계 확립,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등을 규정하는 것이 법제정 목적에 부합하다고 본다.

## 5. 이용자 권익증진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증진을 위한 시책으로 먼저, 인터넷 광고표시의 문제에 관한 시책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용자의 편의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광고행태 금지, 서비스의 설명에 관한 용어 통일, 모바일 광고의 자율적 등급제 실시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인터넷 서비스 이용상 발생하는 중요사항의 설명에 관한 시책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권리증진을 고려한 서비스의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인터넷 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원활한 분쟁처리해결을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분쟁처리를 위한 상담창구를 제공하는 한편, 분쟁의 접수와 처리에 대한 내용을 신속히 이용자에게 통보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쟁발생과 관련한 책임분담을 위하여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간 책임분담과 관련된 정보제공 체제를

마련하고, 사업자 협력 및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정부, 사업자, 소비자간 이용자보호시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기타 분쟁이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인터넷 서비스에 특화된 재판외분쟁처리 절차를 보완하고 사업자간 분쟁처리를 위한 지원체계와 상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이용자 리터러시(literacy)의 강화를 위해서 인터넷 서비스의 리터러시 교육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6. 자율규제의 촉진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자율규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자율규제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으로서는, 자율규제의 교육·홍보 및 관련 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하며, 자율규제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인증마크의 도입 및 시행의 지원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시행을 지원하고, 그 밖에 인터넷 서비스사업자의 자율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하여 자율규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자율규제의 지원체계는 ① 불법정보나 권리침해정보 및 유해정보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 ②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의 육성 및 지원, ③ 인터넷 서비스 인증마크의 도입 및 시행 지원, ④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 및 시행의 지원, ⑤ 세제 지원, ⑥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복규제의 제거 등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본법을 통한 이러한 자율규제의 지원체계가 지원 및 진흥이라는 이름으로 자율규제를 강요하는 오류를 범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후원자의 지위에서 최소한의 간여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등 장려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다양한 자율규제의 내용을 제시하여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서비스 진흥법(안)의 내용에 구체적인 자율규제 지원체계를 명시하여 즉시 정책을 시행하기에는 아직 전반적인 자율규제 활동을 보장 할 수 있는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은바, 인터넷 서비스 진흥계획의 수립에 먼저 포함시켜 추진하고 이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 7. 국제협력의 추진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적 공조를 위한 기반 마련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관련 국가와의 역외 적용 상호인정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위하여,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외국인의 투자 유치 및 국제시장·전시회·시연회 등의 참여 및 국내 유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터넷 서비스 수출 관련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터넷 서비스 관련 기술협력 및 인적 교류와, 인터넷 서비스 관련 국제표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제협력을 위한 추진체계는 인터넷의 국제적 속성상 문제 해결의 한계를 인식하고 국제적 공조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국가와의 역외 적용 상호인정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을 통하여 글로벌 거버넌스 역량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외에 인터넷 서비스 산업의 발전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 지원 시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국제적인 관련성을 갖는 인터넷 서비스의 특징을 고려하여 해외 협력을 통한 산업진흥의 보장과 국내외 인적 교류의 지원, 해외 정책 자료에 대한 연구전담부서의 설립을 통한 국제세미나의 상시적인 개최, 국내외 인터넷서비스 관련 정책 및 사례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인터넷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요소로

- ①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 등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②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 등을 위한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③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 등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④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 등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⑤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 등과 관련된 국제 규범과의 조화, ⑥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 등을 위한 국제규범의 형성 촉진 및 지원 등을 포함하여야 될 것이다.

인터넷 서비스는 플랫폼, 기기, 서비스가 융·복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을 위해서는 각각의 인터넷 서비스를 모두 포섭하는 통합적 진흥 체계의 마련과 인터넷 서비스 기반 환경의 조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인터넷 서비스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콘텐츠의 신뢰성 제고,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주체들의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의 추진,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들의 권익에 관한 사항 및 인터넷 서비스 자율규제의 촉진과 지원, 인터넷 서비스 관련 국제규범과의 조화 등이 유기적 ·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단행본]

김정언 외 4인,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및 IT 산업분류체계 개선방향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7).

방송위원회, 「영국 커뮤니케이션법(상)」, 방송조사자료(2003.3).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사업자의 이용자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평가제도 연구」, 정책연구 09-36(2009.11).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10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2010.12).

변정욱 외, 「주요국의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제도현황 분석」, KISDI 이슈리포트 (2006).

사법연수원, 「ADR(판결 이외의 분쟁해결제도)」, 사법연수원 (2004).

유정석·김용국·고아라, 「인터넷 콘텐츠의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간의 협력모델 개발」, 방송통신위원회 연구보고서(2010.8.31).

이상우 외 7인, 「통신방송 융합환경하의 수평적 규제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7.12).

이윤경, 「영국의 콘텐츠 진흥체계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

이효경·손형섭, 「일본의 인터넷 관련 법률현황 및 시사점」, 한국정보화진흥원보고서(2009.10).

임 준·정진한·김진성, 「방송통신 이용자관점 정책평가 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9.1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이론에 따른 방송통신 서비스 정책 이슈 연구」(2008.12).

- , 「통신시장분류제도 개선방안연구」(2008).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인터넷백서」, (2010).
- \_\_\_\_\_, 「Trend Report」, (2010.11.12).
- \_\_\_\_\_, 「국가별 방송통신 현황 2010」 (2010.12).
- \_\_\_\_\_, 「영국 ISPA, 8대 인터넷정책 제언」, 인터넷 & 시큐리티 이슈, Vol 2010 No.9 3 Net Trend(2010).
- \_\_\_\_\_, 「영국 Ofcom, 장애인을 위한 통신서비스개선(안)발표」, 주간동향(8월1주).
- \_\_\_\_\_, 「영국 방송통신 품목보고서 - 전파관리시스템」, 방송통신해외정보시스템 (2010.12.1).
- \_\_\_\_\_, 「영국 방송통신 품목보고서 전파관리시스템」, (2010.12.1).
- \_\_\_\_\_, 「영국, 차세대 무선 통신 환경으로의 이행준비」, 글로벌 방송통신 동향리포트 제41호(2011.3.25).
- \_\_\_\_\_, 「영국브로드밴드, 올해 하반기 LTE 구축계획」, TrandReport (2011.6.21).
- \_\_\_\_\_, 「주요국 전파관리 제도 및 관련 사례」 (2009.3.8).
- 한국전파진흥원, 「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관련 세부시행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10.11).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표준화 추진체계 분석서」, (2005.12).
- 한국정보화진흥원, 「영국, 인터넷 이용자의 절반가량 모바일 인터넷 사용」, 글로벌 IT 트렌드 (2011.9.8).
- \_\_\_\_\_, 「인터넷 이용 관련 법제개선 이슈 연구보고서」 (2010. 10).
- \_\_\_\_\_, 「인터넷관련법제이슈맵」 (2009.4).
- \_\_\_\_\_, 「인터넷기반서비스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12).
- \_\_\_\_\_, 「인터넷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9.11).

황호을, 「한국표준산업분류해설」, 조세통람사 (2000).

서울고등법원 2009.10.8. 선고 2008누27102 판결

[학술논문]

Christopher T. Marsden, 이희정(역), “방송통신시장에서 망중립성 관련 규제의 쟁

점과 해법의 모색 - 망중립성: 영국과 유럽의 대응”, 『경제규제와 법』  
제3권 제1호 Vol.3. No.1 (2010.5).

고순주, “EU, 미국, 일본의 방송통신에 관한 수평적 규제 법체계 개편 비교 분석”,

『과학기술법연구』 제13권2호, 한남대 과학기술법연구소 (2010).

김경환, “일본의 방송, 통신 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 『언론과 법』 제9권1호,  
한국언론법학회 (2010).

김용섭, “행정법상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ADR”, 저스티스 제81호 (2004).

김유환, “법원에서의 행정사건에 대한 재판외분쟁해결제도”, 『현대 공법학의 과  
제』, 청담 최송화교수 화갑기념논문집 (2001).

김종진, “기본료 도매상품 도입의 효과평가”, 『정보통신정책』 제16권 21호 통권  
359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11.16).

김준한, 「행정부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한국행정학보 제30권 제4호 (1996).

김태오, 「통신시장 이용자보호의 쟁점과 과제」, 경제규제와 법 제2권 제1호 (2009. 5).

로렌스 레식 저, 정필운 · 심우민 역, 「혁신의 구조」, 『연세법학연구』 제11집 제1권 ·  
제2호 합병호 (2005).

박민성, “일본 정보통신법(가칭) 무산 원인과 통신 · 방송 관련법 주요 개정 내용”  
『정보통신정책』 제23권2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1).

성지은, “영국 기업혁신기술부 개편의 의미와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지』, 과학  
기술정책연구원(2009).

오세덕, “행정부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행정논총』 제12권  
제1호 (1999).

정필운, “국가가 생산한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판단 및 이에 대한 헌법이론적 평가”,

『공법연구』, 한국공법학회 (2009.3.31).

홍대식, “방송·통신융합과 이용자보호제도의 개선”, 『행정법연구』 제25호 (2009).

#### 해외 문헌

U.S. Department of State, State Summary of Global Internet Freedom Task Force  
(20 December 2006).

“Electronic Commerce: Internet Exempt From Customs Duties But Not From VAT,”  
EuropeanReport No.2318, May27, 1998.

Europa 2020 - Eine Strategie für intelligentes, nachhaltiges und integratives  
Wachstum, KOM(2010).

Europe 2020 - A strategy for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COM(2010).

Gesetz zur Regelung von De-Mail-Diensten und zur Änderung weiterer  
Vorschriften, BGBl. 2011.

Guckelberger, Neue Erscheinungen des Petitionsrechts: E-Petitionen und öffentliche  
Petitionen, DÖV 2008.

Guckelberger, Übergang zur elektronischen Gesetzesverkündung?, DVBl 2007.

Lawrence E. Strickling, Assistant Secretary of Commerce for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2010.2.24).

J. Liebermann/J. Henry, Lesson from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ovement,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Vol. 53 (1986).

Obama orders 60-day cybersecurity review,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Internet Access Quarterly Update' (18 May 2011).

S. Goldberg et al. Dispute Resolution, Boston: Little Brown (1985).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Statistics Division,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 Revision 4,

Statistical Papers Series M No. 4/Rev, 2008.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Statistics Division,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 Revision 4, Statistical Papers Series M No. 4/Rev.4, 2008.

U.S. Department of State, State Summary of Global Internet Freedom

Working Party on Indicators for the Information Society, INFORMATION ECONOMY . SECTOR DEFINITIONS BASED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ISIC 4), DSTI/ICCP/IIS(2006)2/FINAL, 2007.3.

Yochai Benkler, From Consumers to Users: Shifting the Deeper Structures of Regulation Toward Sustainable Commons and User Access, Federal Communications Law Journal 52 (2000).

中村伊知哉, “通信・放送二分法から情報通信法の一體化” IAJapan Review, Vol.7.

#### 웹사이트

<http://bis.gov.uk/>

<http://blog.beck.de/>

<http://conex.kisa.or.kr/>

<http://democrats.senate.gov/>

[http://ec.europa.eu/information\\_society/](http://ec.europa.eu/information_society/)

<http://gesetzgebung.beck.de/>

<http://m.itglobal.or.kr/>

<http://netsquare.kisa.or.kr/>

<http://sales.talktalk.co.uk/>

<http://www.america.gov>

<http://www.bbc.co.uk/>

<http://www.btplc.com>

<http://www.culture.gov.uk/>

<http://www.index.go.kr/>

<http://www.itglobal.or.kr/>

<http://www.it-planungsrat.de/>

<http://www.kosis.kr>

<http://www.legislation.gov.uk/>

<http://www.nso.go.kr/>

<http://www.ntia.doc.gov/>

<http://www.nytimes.com/>

<http://www.o2.co.uk/>

<http://www.ofcom.org.uk/>

<http://www.sky.com/>

<http://www.statistics.gov.uk/>

<http://www.virginmedia.com/>

<http://www.whitehouse.gov/>

<https://www.itglobal.or.kr/>

## 인터넷 서비스 진흥법(안)

2011.12.

## I. 인터넷 서비스 진흥법(안) 전문

### 인터넷 서비스 진흥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터넷 서비스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과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진흥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서비스에 관한 통합적 진흥
2. 인터넷 서비스 기반 환경의 조성
3. 인터넷 서비스 콘텐츠의 신뢰성 제고
4.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과 상생협력
5.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
6. 인터넷 서비스 자율규제의 진흥과 지원
7. 인터넷 서비스 관련 국제규범과의 조화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서비스”란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인터넷 콘텐츠”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부호·문자·도형·색채·

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란 인터넷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인터넷 서비스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및 상생 협력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업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터넷 서비스 진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장 인터넷 서비스 진흥 정책의 수립 등

**제6조(인터넷 서비스 진흥 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터넷 서비스 진흥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서비스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터넷 서비스 기반환경 조성
3. 인터넷 서비스 관련 기술의 진흥

4. 인터넷 서비스의 행정, 금융 및 세제 지원
  5. 인터넷 콘텐츠의 창출, 활용 및 보호
  6.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분쟁해결
  7. 인터넷 서비스의 공정경쟁 및 상생
  8. 인터넷 서비스의 표준화
  9. 인터넷 서비스 관련 자율규제의 촉진
  10. 인터넷 서비스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11. 인터넷 서비스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
  12. 그 밖에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인터넷 서비스 진흥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터넷 서비스 진흥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인터넷 서비스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변경
3. 인터넷 서비스 관련 예산배분 방향과 효율적 운영
4.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업무 범위 조정
5. 그 밖에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단체·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이나 다음 각 호의 조사·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

1. 인터넷 서비스 관련 국내외 산업계의 수요와 동향
2. 인터넷 서비스 관련 국내외 활동과 정책동향

3.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 분야
4. 인터넷 서비스 관련 주요 통계와 지표
5. 그 밖에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인터넷 서비스 진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인터넷 서비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터넷 서비스 자율 규제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차보고서)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진흥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

제10조(인터넷 서비스의 진흥 촉진)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2. 국내외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 동향과 관련 기술 및 시장에 대한 조사·분석
3.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서비스 역량 강화
4.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
5. 그 밖에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행정,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 및 인터넷 콘텐츠의 창출·활용 및 보호(이하 “인터넷 서비스 진흥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행정, 금융 및 세제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자의 권리보호) ①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침해 사례 조사
2.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광고·표시의 공정화
3.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보호 지침 제정
4. 그 밖에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신속·공정한 분쟁해결 등) ①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관련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소송 절차의 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관련 분쟁해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소송체계의 정비 및 인력의 전문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 마련 및 활성화) ①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관련 분쟁이 당사자 사이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알선·조정 및 중재 등의 재판 외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쟁해결 기구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 교육의 강화)** ① 정부는 이용자의 올바른 서비스 이용과 건전한 인터넷 윤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습득, 해석, 선별 및 활용 등에 관한 기초소양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 관련한 교재 및 교육 방법의 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장 인터넷 서비스 기반 환경 조성

**제16조(기반 환경 조성)** ①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을 위한 기반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터넷 서비스 기반 환경 조성의 효율적 추진
2. 인터넷 서비스 기반 환경 조성 계획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인터넷 서비스 기반 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4. 인터넷 서비스 기초 기술개발 지원
5. 인터넷 서비스 기반 기술 표준화 추진
6. 그 밖에 인터넷 서비스 기반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③ 제2항에 따른 인터넷 서비스 기반 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 및 재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수준의 조사 및 기술의 연구 개발
2. 개발된 기술의 평가

3. 기술협력·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4.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위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표준화)** ①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진흥등을 위하여 인터넷 서비스 및 콘텐츠의 표준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인터넷 서비스 및 콘텐츠의 표준화 사업을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국제표준 동향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등 표준화 기반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전담기관의 지정,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전문 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진흥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개발 및 연구

2.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기관, 산업체, 학계 등의 협력 강화

3.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4.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전문 인력의 양성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교육설비의 확보, 교재개발과 교육시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촉진) ①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사이의 공정한 경쟁의 촉진과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사이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경제적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 개인 등의 인터넷 서비스 진흥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진흥등에 있어서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경영인증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장애인, 노인 등 인터넷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진흥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진흥등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인터넷 서비스 진흥등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인터넷 서비스 진흥등을 위한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인터넷 서비스 진흥등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4. 인터넷 서비스 진흥등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5. 인터넷 서비스 진흥등과 관련된 국제규범과의 조화
6. 인터넷 서비스 진흥등을 위한 국제규범의 형성 촉진 및 지원
7. 그 밖에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5장 보 칙

**제23조(정보의 수집 · 분석)** 위원회는 인터넷 서비스 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 · 분석 및 공개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서비스 기술 관련 국내외 동향 조사 · 분석
2. 인터넷 서비스 관련 국내외 법제도 조사 · 분석

**제24조(통계의 작성 · 관리)** 위원회는 인터넷 서비스 진흥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인터넷 서비스에 관한 통계를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자료 제출)** 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한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통계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영업비밀의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제26조(지원센터)** ①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진흥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인터넷 서비스 진흥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8조에 따른 인터넷 서비스 표준화 등의 추진
2. 제19조에 따른 인터넷 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3. 제21조에 따른 인터넷 서비스 경영인증
4. 제22조에 따른 인터넷 서비스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5. 제23조에 따른 인터넷 서비스 정보의 수집 · 분석
6. 제24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 · 관리

③ 정부는 지원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 과견·위촉·위탁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II . 인터넷 서비스 진흥법(안) 조문별 해설

### 목 차

제1장 총 칙	284
제1조 목적	284
제2조 기본이념	288
제3조 정의	291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294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96
 제2장 인터넷 서비스 진흥 정책의 수립 등	
제6조 인터넷 서비스 진흥 계획의 수립	297
제7조 인터넷 서비스 진흥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299
제8조 인터넷 서비스 진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02
제9조 연차 보고서	304
 제3장 인터넷 서비스 진흥	
제10조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 촉진	305
제11조 행정,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306
제12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307
제13조 신속·공정한 분쟁해결 등	309
제14조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 마련 및 활성화	310
제15조 이용 교육의 강화	312

제4장 인터넷 서비스 기반 환경 조성	314
제16조 기반 환경 조성	314
제17조 기술개발의 촉진	316
제18조 표준화	318
제19조 전문 인력의 양성	320
제20조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촉진	322
제21조 경제적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324
제22조 국제협력	326
제5장 보착	329
제23조 정보의 수집 · 분석	329
제24조 통계의 작성 · 관리	331
제25조 자료 제출	333
제26조 지원센터	335
제27조 비밀 누설의 금지	337

## 제1장 총 칙

## 제 1 조

## 목적

## 1.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인터넷 서비스 시장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환경 변화와 새로운 인터넷 관련 기술과 서비스의 급속한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 이러한 인터넷 환경 변화에 맞추어 해외 주요국들은 융합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선도적 국가 경쟁력의 위치를 선점하기 위하여 인터넷 진흥을 위한 국가 전략 구축과 인프라 확충 및 콘텐츠 육성을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률과 이용률 및 인프라 구축 등에 있어서 세계적인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인터넷 관련 법제의 경우 정부부처의 기능중복과 담당부처의 다국화로 인하여 정책의 추진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전략적인 인터넷 진흥 정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특히 정책 추진 부처간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효과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신속히 조정해줄 수 있는 법제도가 존재하지 않다는 심각한 문제와 더불어 새롭게 등장하는 인터넷 서비스 분야에 대한 법적 공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외에도 국내법의 역외적용상의 문제와, 자율규제의 육성과 지원 규정 미비의 문제, 인터넷 관련 주체들간 역할분담 형평성의 문제, 인터넷 침해에 대한 국제협력의 문제 등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현행 인터넷 서비스 진흥 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터넷 진흥체계로의 전환을 위하여, 인터넷 서비스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정책과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본 법안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됨.

## 2. 법안 제정 방안

- 본 법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을 통하여 “국가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함.
  - 국가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
    - 인터넷 서비스 시장이 국가의 경제, 사회 및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의 정보통신 매체들 보다 매우 높은 상황임. 이러한 상황 하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인터넷 서비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터넷의 순기능적 영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둠.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을 통하여 의사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정보교류의 확산 및 다양한 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한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둠.
- 본 법안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국내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촉진”과 “인터넷 서비스 기반환경 조성”의 마련.
  - 국내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촉진
    - 국내의 인터넷 사용 인구는 현재(2010.5 기준) 만 3세 이상 인구의 77.8%인 37,010,000명이 사용하고 있는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자의 82.5%는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시간도 주 평균 14.7시간, 1일평균 2.1시간에 이르고 있음. 또한 인터넷 이용자의 절반에 가까운 48.9%가 주 평균 14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의 경우 2001년과 비교하여 6.92배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사이버 쇼핑거래액도 2001년과 비교하면 7.52배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시장 규모의 확대와는 달리, 현재 국내 인터넷 서비스 시장은 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유통되는 서비스와 콘텐츠의 창출 및 활용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방안이 미비한 상황임.

- 따라서 이러한 국내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상황을 개선하고 서비스 발전과 콘텐츠의 창출 및 활용을 촉진하여 본 법안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설정함.
- 인터넷 서비스 기반환경 조성
  - 현재 인터넷 이용환경은 스마트 그리드, 클라우드 컴퓨팅, u-City 등의 새로운 인터넷 관련 기술과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인터넷 이용 환경의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차세대 인터넷은 개인 맞춤형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실감형 · 지능형 서비스가 등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네트워크도 통신 · 방송 · 컴퓨팅 · 센서 망이 융합된 초 광대역 스마트 인프라로 전화가 이루어지는 등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임. 그러나 현재의 인터넷 서비스 기반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가 미흡한 상황임.
  -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진흥을 위하여 기반 환경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인터넷 서비스 및 기술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인터넷 시장에서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법안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설정함.
- 이러한 입법방향을 반영하여 본 법안의 제정 목적을 “인터넷 서비스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과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본 법안의 입법목적을 명확히 하였음.
- 참고 법률로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조(목적),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조(목적), 방송통신발전 진흥법 제1조(목적),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조(목적) 등이 있음.

### 3. 조문(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인터넷 서비스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과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기본이념

## 1. 배경 및 필요성

- 본 법안의 목적인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을 통한 “국가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서비스 환경의 특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인터넷 서비스는 플랫폼, 기기, 서비스가 융·복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을 위해서는 각각의 인터넷 서비스를 모두 포섭하는 통합적 진흥 체계의 마련과 인터넷 서비스 기반 환경의 조성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인터넷 서비스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콘텐츠의 신뢰성 제고,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주체들의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의 추진,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들의 권익에 관한 사항 및 인터넷 서비스 자율규제의 촉진과 지원, 인터넷 서비스 관련 국제규범과의 조화 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본 법안에서는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 법률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정부의 기본정책과 추진체계의 기초가 되는 기본이념을 설정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높음.

## 2. 법안 제정 방안

- 본 법안에서 추구하는 기본이념은 ① 인터넷 서비스에 관한 통합적 진흥, ② 인터넷 서비스 기반 환경의 조성, ③ 인터넷 서비스 콘텐츠의 신뢰성 제고, ④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과 상생협력, ⑤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증진, ⑥ 인터넷 서비스 자율규제의 진흥과 지원, ⑦ 인터넷 서비스 관련 국제규범과의 조화 등임.
- 인터넷 서비스에 관한 통합적 진흥

- 인터넷 서비스의 급속하고도 다양한 발달과 인터넷 서비스의 경쟁력이 특정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무선 기기, 유무선 네트워크, 개별 서비스, 콘텐츠의 융·복합에서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진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인터넷 서비스 기반 환경의 조성
  - 각종 정보통신기기·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거나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핵심기술을 직접 기술 개발하여 민간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환경의 조성이 필요함.
- 인터넷 서비스 콘텐츠의 신뢰성 제고
  - 인터넷 서비스 콘텐츠의 창출 및 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유통환경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콘텐츠의 지원방안과 콘텐츠 거래비용 감소와 유통환경의 개선이 필요함.
-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과 상생협력
  -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의 각 사업자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 주체 간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필요함.
-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증진
  -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인터넷 서비스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인터넷 관련 분쟁처리 및 구제에 관한 시스템 구축 등 이용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의 기준이 필요함.
- 인터넷 서비스 자율규제의 진흥과 지원
  -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사업자의 자율적인 운영환경을 보장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로 하는 자율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기준이 필요함.
- 인터넷 서비스 관련 국제규범과의 조화

- 인터넷의 국제적 속성상 문제 해결의 한계를 인식하고 국제적 공조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관련 국가와의 역외적용 상호인정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을 통하여 글로벌 거버넌스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환경의 조성이 필요함. 이외에 국내 인터넷 서비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함.

○ 참고 법률로서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조(기본이념), 국가정보화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등이 있음.

### 3. 조문(안)

**제2조(기본이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진흥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인터넷 서비스에 관한 통합적 진흥
- 인터넷 서비스 기반 환경의 조성
- 인터넷 서비스 콘텐츠의 신뢰성 제고
-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과 상생협력
-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
- 인터넷 서비스 자율규제의 진흥과 지원
- 인터넷 서비스 관련 국제규범과의 조화

## 제 3 조

## 정의

## 1. 배경 및 필요성

- 본 법안은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을 위한 것으로써, 이 법안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용어에 관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해석상 의문점을 해소하고 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이 법안에서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는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음.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의 특징을 감안하여 현재의 인터넷 서비스와 미래의 인터넷 서비스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용어를 폭넓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함.
- 본 법안에서 사용되는 핵심적인 용어로는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콘텐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이용자 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2. 법안 제정 방안

- 인터넷 서비스
  - 인터넷 서비스는 정보 또는 서비스의 전달·증개 등의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서 ‘플랫폼서비스’와 ‘정보제공서비스(인터넷언론, 인터넷게임, 인터넷광고, 교육·오락 등 정보제공서비스)’와 인터넷거래서비스(B2C, B2G, B2B 등의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는 ‘콘텐츠서비스’로 대분류될 수 있음.
  - 이러한 각각의 서비스들은 기능에 따라 플랫폼서비스는 ‘인터넷접속 및 관리 서비스, 인터넷거래지원서비스, 정보제공증개서비스, 인터넷응용서비스’로 구분되며, ‘콘텐츠서비스’는 정보 서비스 또는 콘텐츠의 생성과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는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현재의

인터넷 서비스 와 미래의 인터넷 서비스를 모두 포괄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서비스”로 용어를 폭넓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함.

#### ○ 인터넷 콘텐츠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는 “콘텐츠란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인터넷 콘텐츠는 이러한 콘텐츠가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음.
- 인터넷 콘텐츠에 관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폭넓게 정의하여야 함. 따라서 인터넷 콘텐츠를 “인터넷 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로 용어를 정의할 필요성이 있음.

#### ○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 인터넷 서비스 관련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 분야로 사업모델이 창출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현재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과 미래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모두 포괄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정의는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 사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를 “인터넷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자”로 폭넓게 용어를 정의할 필요성이 있음.

#### ○ 이용자

-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폭넓은 용어의 정의에 맞추어 현재 제공되는 인터넷 서비스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자를 모두 포괄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를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 폭넓게 정의할 필요성이 있음.

#### ○ 참고 법률로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용어),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용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용어),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용어)

등이 있음.

### 3. 조문(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서비스”란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인터넷 콘텐츠”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란 인터넷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제 4 조

## 국가 등의 책무

## 1. 배경 및 필요성

- 본 법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인터넷 서비스 진흥 관련 주체들의 책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인터넷 서비스 진흥 관련 주체로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등이 있음.
- 인터넷 서비스 관련 주체들은 긴밀한 협조관계의 형성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관련 주체들의 협조관계의 근거로서 각 주체들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 법안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2. 법안 제정 방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서비스 진흥 정책을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므로 인터넷 서비스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시행의 의무를 부여하고 담당부처간의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형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 상호간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인터넷 서비스 진흥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련 재원확보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책무
  -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의 핵심적인 주체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되어야 하는 한편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경쟁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인터넷 서비스 관련 시장에서 사업자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시장진입을 원활히 하여 시장을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음.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의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 참고 법률로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이 있음.

### 3. 조문(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인터넷 서비스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과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업 상호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배경 및 필요성

- 본법안의 목표인 인터넷 서비스 진흥을 위해서는 인터넷 서비스 관련 타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 법안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법과 타 법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총칙규정에서 해당 법률과 다른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적용배제, 우선적용 및 해당 법률의 우선적용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야 함.
- 인터넷 서비스 진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해석·집행상의 모순·저촉을 방지하는 근거로서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 2. 법안 제정 방안

- 본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이 인터넷 서비스 관련 다른 법률에 반영 또는 부합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효적인 인터넷 서비스 진흥 법안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를 통하여 인터넷 서비스 관련 법률들의 해석 및 집행상의 저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참고 법률로서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있음.

## 3. 조문(안)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터넷 서비스 진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장 인터넷 서비스 진흥 정책의 수립 등

### 제 6 조 인터넷 서비스 진흥 계획의 수립

#### 1. 배경 및 필요성

-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을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서 개별적인 시책이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인터넷 서비스의 변화 속도에 맞추기 위하여 중장기 정책 목표를 매년 수립토록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인터넷 서비스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근거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 2. 법안 제정 방안

- 정부가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인터넷 서비스 진흥 계획의 수립 및 추진의 근거를 마련.
- 통합적인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정책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모두 협력하도록 의무화하고, 단순 정책 취합이나, 형식적인 정책 합산을 지양하기 위해서 핵심 사항 혹은 중점 추진 사항 중심으로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 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서비스 진흥계획은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에 필요한 광범위한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인터넷 서비스 기반환경 조성, 인터넷 서비스 관련 기술의 진흥, 인터넷 서비스의 행정, 금융 및 세제 지원, 인터넷 콘텐츠의 창출, 활용 및 보호,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분쟁해결, 인터넷 서비스의 공정경쟁 및 상생, 인터넷

서비스의 표준화, 인터넷 서비스 관련 자율규제의 촉진, 인터넷 서비스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인터넷 서비스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 그 밖에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포함하여 수립되어야 함.

- 참고 법률로서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7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가 있음.

### 3. 조문(안)

**제6조(인터넷 서비스 진흥 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터넷 서비스 진흥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서비스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터넷 서비스 기반환경 조성
  3. 인터넷 서비스 관련 기술의 진흥
  4. 인터넷 서비스의 행정, 금융 및 세제 지원
  5. 인터넷 콘텐츠의 창출, 활용 및 보호
  6.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분쟁해결
  7. 인터넷 서비스의 공정경쟁 및 상생
  8. 인터넷 서비스의 표준화
  9. 인터넷 서비스 관련 자율규제의 촉진
  10. 인터넷 서비스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11. 인터넷 서비스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
  12. 그 밖에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7 조

## 인터넷 서비스 진흥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1. 배경 및 필요성

- 국내 산업 분야에서 인터넷 서비스가 차지하는 중요성 및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부처간 인터넷 서비스 관련 업무의 추진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진흥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
- 인터넷 진흥정책은 융·복합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특징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단일 컨트롤 타워”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인터넷 정책을 통합하고, 기존의 국가 정보화전략위원회의 약화된 부처 조정기능을 강화·집중하여 국가정보화전략 위원회를 강화하거나 조정기능을 새로운 컨트롤 타워에 맡겨서 기존의 진흥 정책을 쇄신하여야 함.

## 2. 법안 제정 방안

- 인터넷 서비스 진흥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 및 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 및 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인터넷 서비스 진흥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
- 인터넷 서비스 진흥 위원회가 심의 및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이 할 필요성 있음.
  -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변경
  - 인터넷 서비스 관련 예산배분 방향과 효율적 운영
  -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업무 범위 조정
  - 그 밖에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인터넷 서비스 진흥 위원회가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 등에게 의견진술이나 자료의 제출, 조사나 연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 단체,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 단체, 전문가에게 인터넷 서비스 관련 국내외 산업계의 수요와 동향, 인터넷 서비스 관련 국내외 활동과 정책동향,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 분야, 인터넷 서비스 관련 주요 통계와 지표, 그 밖에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나 연구를 요청할 수 있음.
- 참고 법률로서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있음.

### 3. 조문(안)

**제7조(인터넷 서비스 진흥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터넷 서비스 진흥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 · 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 · 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인터넷 서비스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1.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변경
3. 인터넷 서비스 관련 예산배분 방향과 효율적 운영
4.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업무 범위 조정
5. 그 밖에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단체·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이나 다음 각 호의 조사·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

1. 인터넷 서비스 관련 국내외 산업계의 수요와 동향
2. 인터넷 서비스 관련 국내외 활동과 정책동향
3.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 분야
4. 인터넷 서비스 관련 주요 통계와 지표
5. 그 밖에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 8 조

## 인터넷 서비스 진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1. 배경 및 필요성

- 본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진흥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2. 법안 제정 방안

-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 위촉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함.
- 위원의 자격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인터넷 서비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위원의 임기
  - 민간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 위원장 및 간사
  -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민간 위촉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 위원회의 간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함.
- 전문위원회의 설치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터넷 서비스 자율규제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둠.

○ 위임사항

-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 참고 법률로서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7조(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등이 있음.

3. 조문(안)

제8조(인터넷 서비스 진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인터넷 서비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터넷 서비스 자율규제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연차 보고서

1. 배경 및 필요성

- 인터넷 서비스 진흥을 위한 진흥계획 대비 성과를 분석·평가하고 향후 진흥 계획의 수립 및 서비스 진흥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매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법안 제정 방안

-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추진사항을 점검 및 평가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진흥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토록 함.
-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 참고 법률로서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15조(연차보고서)가 있음.

3. 조문(안)

제9조(연차보고서)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회계 연도의 진흥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인터넷 서비스 진흥

제 10 조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 촉진

1. 배경 및 필요성

-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을 위한 이 법안의 목적 및 인터넷 진흥의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이행하기 위한 시책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

2. 법안 제정 방안

- 인터넷 서비스를 진흥하기 위한 시책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추진토록 함.
  -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 국내외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 동향과 관련 기술 및 시장에 대한 조사·분석
  -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서비스 역량 강화
  -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
  - 그 밖에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참고 법률로서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16조(지식재산의 창출 촉진)이 있음.

3. 조문(안)

**제10조(인터넷 서비스의 진흥 촉진)**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2. 국내외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 동향과 관련 기술 및 시장에 대한 조사·분석
3.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서비스 역량 강화
4.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
5. 그 밖에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조

## 행정,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 1. 배경 및 필요성

-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 및 인터넷 콘텐츠의 창출, 활용 및 보호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시책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

## 2. 법안 제정 방안

- 정부가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 및 인터넷 콘텐츠의 창출, 활용 및 보호에 필요한 행정, 금융 및 세제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함.

- 세제 지원은 이 법안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더라도 관련 개별 법령의 제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법안에서는 각 부처가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사업자별, 서비스별, 시기별 대응방안이 다양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시책을 추진토록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시책 수립을 통하여 정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참고 법률로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민간기술개발 지원),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 제30조(세제지원 등) 등이 있음.

## 3. 조문(안)

제11조(행정,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 및 인터넷 콘텐츠의 창출·활용 및 보호(이하 “인터넷 서비스 진흥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행정, 금융 및 세제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 12 조

이용자의 권리보호

1. 배경 및 필요성

-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을 위해서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 규제정책의 중심이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옮겨감에 따라 규제의 불확실성과 이용자 이익 저해 가능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 사업자간의 과당경쟁과 이용자의 인식향상 등에 따라 통신민원이 복잡화되고 다양화됨.

2. 법안 제정 방안

- 인터넷 서비스 진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이용자 권리 보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도록 하여야 함.
  -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침해 사례 조사
  -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광고·표시의 공정화
  -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보호 지침 제정
  - 그 밖에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이용자의 권리보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이나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근거 마련.
- 참고 법률로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이용자의 권리보호)가 있음.

### 3. 조문(안)

**제12조(이용자의 권리보호)** ①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침해 사례 조사
  2.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광고·표시의 공정화
  3.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보호 지침 제정
  4. 그 밖에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3 조

신속 · 공정한 분쟁해결 등

1. 배경 및 필요성

-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인터넷 서비스 관련 분쟁의 속성상 기존의 소송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인터넷서비스의 복잡화, 고도화에 따라 인터넷서비스사업자는 이용자에 대한 분쟁처리와 상담대응체제를 충실히 해 나갈 필요가 있음.

2. 법안 제정 방안

- 인터넷 서비스 관련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소송 절차의 개선에 대한 노력의무를 정부에 부여함.
- 정부의 구체적인 의무로서 인터넷 서비스 관련 분쟁해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소송체계의 정비 및 인력의 전문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참고 법률로서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21조(소송 체계의 정비 등)가 있음.

3. 조문(안)

제13조(신속 · 공정한 분쟁해결 등)  
①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관련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소송 절차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관련 분쟁해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소송체계의 정비 및 인력의 전문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 14 조

##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 마련 및 활성화

## 1. 배경 및 필요성

- 인터넷 서비스 관련 분쟁의 특성상 경직된 소송보다는 비교적 간이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인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가 적절한 분쟁해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인터넷 서비스나 콘텐츠 분야에 있어서는 그 분쟁내용에 전문성이 높고, 소액 분쟁이 많은 점, 동일한 처리가 가능한 분쟁이 유형적으로 생기는 점 등 분야별로 독자적인 기관에 의한 대응이 필요함.
  - 인터넷 서비스나 콘텐츠 분야에 특화된 재판외분쟁처리기관에 대해서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공직주체에 의하고 그 밖의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그 주체가 되어 각자 필요한 설립을 향한 자주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자마다 분쟁처리와 상담체제를 정비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분야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하고 회원사업자의 분쟁에 대한 조언이나 지도를 하는 체제가 필요함.

## 2. 법안 제정 방안

-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관련 분쟁이 당사자 사이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알선, 조정 및 중재 등의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함.
- 정부는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쟁해결 기구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참고 법률로서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22조(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 활성화)가 있음.

### 3. 조문(안)

제14조(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 마련 및 활성화) ①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관련 분쟁이 당사자 사이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알선·조정 및 중재 등의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쟁해결 기구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5 조

이용 교육의 강화

1. 배경 및 필요성

- 인터넷 리터러시를 증진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함.
- 계약자는 계약시 설명을 듣고 있으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서 등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스마트폰 보급 등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해 나가야하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한 통신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함.

2. 법안 제정 방안

- 이용자의 올바른 서비스 이용(인터넷 리터러시)과 건전한 인터넷 윤리(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습득, 해석, 선별 및 활용 등에 관한 기초소양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정부는 인터넷 이용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과 관련한 교재 및 교육 방법의 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참고 법률로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가 있음.

### 3. 조문(안)

제15조(이용 교육의 강화) ① 정부는 이용자의 올바른 서비스 이용과 건전한 인터넷 윤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습득, 해석, 선별 및 활용 등에 관한 기초소양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 관련한 교재 및 교육 방법의 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 4 장 인터넷 서비스 기반 환경 조성

### 제 16 조 기반 환경 조성

#### 1. 배경 및 필요성

- 인터넷 서비스 진흥을 위한 기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에게 인터넷 서비스 기반 환경 조성의 효율적 추진 의무를 부여하고 인터넷 서비스 기반 환경 조성 계획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련 법제도 개선과 인터넷 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관련 기초 기술개발 지원 및 인터넷 서비스 기반 기술 표준화가 추진되도록 하여야 함. 또한 기반 환경 조성에 대한 행정 및 재정의 지원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인터넷 서비스 기반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인터넷 기반 환경을 조성을 위한 구체적 시행 목표로서는 (i) 기반 환경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의 구성, (ii) 계획의 수립(계획의 수립을 위한 실태 및 통계 조사 포함), (iii) 인력의 양성, (iv) 기술개발의 지원, (v) 표준화의 추진, (vi) 해외시장 진출과 국제협력, (vii) 산업지원책 등이 있음.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 기반 환경의 조성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조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인터넷 서비스 기반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2. 법안 제정 방안

- 인터넷 서비스 기반 환경 조성
  - 인터넷 서비스 기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도록 하여 법제도적 조화를 추구하며, 법제도간 충돌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인 인터넷 서비스 기반 환경 조성의 추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함.

○ 기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 시책 마련

- 인터넷서비스 기반 환경 조성의 효율적 추진, 실태조사, 관련 법제도 개선, 기초 기술개발 지원, 기반 기술 표준화 추진 등의 구체적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터넷 기반 환경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참고 법률로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인터넷 이용의 확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장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조성,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장 콘텐츠 산업의 기반 조성, 방송통신발전 진흥법 제14조(방송통신기반시설 조성·지원) 등이 있음.

3. 조문(안)

**제16조(기반 환경 조성)** ①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을 위한 기반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터넷 서비스 기반 환경 조성의 효율적 추진
2. 인터넷 서비스 기반 환경 조성 계획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인터넷 서비스 기반 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4. 인터넷 서비스 기초 기술개발 지원
5. 인터넷 서비스 기반 기술 표준화 추진
6. 그 밖에 인터넷 서비스 기반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인터넷 서비스 기반 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 및 재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17 조

## 기술개발의 촉진

## 1. 배경 및 필요성

- 인터넷 서비스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수준의 조사 및 기술의 연구 개발, 개발된 기술의 평가, 기술협력·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등의 세부 추진사업을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기술개발 촉진을 추구할 필요성이 있음.
- 인터넷 서비스 관련 기술과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 기술 개발 사업 추진을 추진하고 다만, 위탁하는 경우를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위탁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2. 법안 제정 방안

- 인터넷 서비스 관련 기술 개발촉진
  - 인터넷 서비스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인터넷 서비스 관련 기술 수준을 조사하게 하고 기술의 연구 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평가, 기술협력·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와 더불어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의 사업위탁
  - 인터넷 서비스 관련 기술 개발 및 평가, 이전, 실용화의 사업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위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함으로써 위탁사업의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참고 법률로서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3조(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제1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0조(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등이 있음.

### 3. 조문(안)

제17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수준의 조사 및 기술의 연구 개발
2. 개발된 기술의 평가
3. 기술협력·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4.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위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18 조

## 표준화

## 1. 배경 및 필요성

-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의 서비스 및 콘텐츠의 활발한 창출 및 활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의 표준 마련을 통한 상호 호환성을 높임으로써, 인터넷 서비스 및 콘텐츠의 창출 및 활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의 관련기술의 유통과 경쟁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음.
- 인터넷 서비스 표준화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인터넷 서비스 및 콘텐츠 창출 및 활용이 국제표준과 일치하도록 정보수집, 분석 및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하여 표준화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2. 법안 제정 방안

- 인터넷 서비스와 콘텐츠의 표준화 시책 마련
  - 인터넷 서비스 등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에게 인터넷 서비스 및 콘텐츠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함.
- 표준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전담기구 지정 및 지원
  - 인터넷 서비스 및 콘텐츠 표준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담기구를 지정하게 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전담기구의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국제표준 동향과 관련 정보의 수집 등을 통한 표준화 기반 구축
  - 인터넷 서비스 및 콘텐츠의 표준화가 국제적 표준과 부합할 수 있도록 국제 표준 동향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분석하게 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인터넷 서비스 및 콘텐츠의 표준화에 대한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참고 법률로서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8조(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30조(산업정보체계 표준화 등의 촉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1조(표준화의 추진)·제26조(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2조(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 제13조(정보통신표준의 제정 및 인증)· 제15조(정보통신 표준의 국제표준화 촉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표준화 추진) 등이 있음.

### 3. 조문(안)

**제18조(표준화)** ①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진흥등을 위하여 인터넷 서비스 및 콘텐츠의 표준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인터넷 서비스 및 콘텐츠의 표준화 사업을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국제표준 동향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등 표준화 기반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전담기관의 지정,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19 조

## 전문 인력의 양성

## 1. 배경 및 필요성

- 인터넷 서비스의 창출·활용을 진흥하기 위한 기술 인력, 법무 인력 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효율적인 인력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서비스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에게 전문 인력 양성의 지침을 제공하는 한편,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설비의 확보, 교재개발과 소요 비용 지원이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음.

## 2. 법안 제정 방안

- 인터넷 서비스 진흥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 인터넷 서비스의 창출·활용을 진흥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 마련을 위하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개발 및 연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기관, 산업체, 학계 등의 협력 강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세부 추진 사업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인터넷 서비스 관련 전문 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함.
- 전문 인력 양성 기관 지원 방안
  - 인터넷 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교육설비의 확보에 관한 시책과 전문 과정에 필요한 교재개발에 관한 근거규정이 필요함. 또한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교육시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참고 법률로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1조(방송통신 전문 인력의 양성 등),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0조(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의 양성),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6조(전문 인력의 양성),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4조(전문 인력의 양성) 등이 있음.

### 3. 조문(안)

**제19조(전문 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진흥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개발 및 연구
2.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기관, 산업체, 학계 등의 협력 강화
3.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4.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전문 인력의 양성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교육 설비의 확보, 교재개발과 교육시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20 조

##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촉진

## 1. 배경 및 필요성

- 방송·통신 융합 환경 하에서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인터넷 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적 활동의 보장 및 지원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기존 시장은 생산자 혹은 판매자와 소비자가 서로의 이해에 따라 거래가 형성되는 반면,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 시장은 이용자 또는 사업자가 상호작용 하여 가치가 창출되며, 주로 둘 이상 복수의 당사자를 연결해주는 형태 가진다는 특징이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특징을 고려하여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 경쟁의 원칙을 천명하고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경쟁 상황 평가 및 이를 분석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한편, 새로운 분야의 신규 사업자가 기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육성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함. 특히 인터넷서비스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

## 2. 법안 제정 방안

-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간 공정경쟁 촉진 및 환경 조성
  - 인터넷 서비스 진흥을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의 촉진과 이와 관련된 기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간 상생협력 촉진
  -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사이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에게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 및 시장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기본원칙 규정, 지원조직 체계 확립, 기본계획 등)의 세부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참고 법률로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영영협력 촉진 등), 방송통신발전 진흥법 제11조(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4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 등이 있음.

### 3. 조문(안)

**제20조(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촉진)** ①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사이의 공정한 경쟁의 촉진과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사이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1 조	경제적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	---------------------

### 1. 배경 및 필요성

-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소기업, 개인 등 경제적 · 사회적 약자가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 원활히 접근하는 시장접근성을 보장하고 우수한 인터넷 서비스 및 콘텐츠를 창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인터넷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영 인증을 시행하는 등의 방안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음.
- 장애인, 노인 등 인터넷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의 인터넷 서비스의 접근을 보호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접근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 2. 법안 제정 방안

-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인터넷 서비스 창출·활용 지원
  - 인터넷 서비스 진흥 시책에 중소기업, 개인 등의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시책으로서 인터넷 서비스 창출·활용을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모범 인터넷 서비스 관련 중소기업의 인터넷 서비스 경영인증 시행
  -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 있어서 모범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창출·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인터넷 서비스 경영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자들에게 신뢰성을 보장하여 이용을 촉진하고 우수한 인터넷 서비스가 창출·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 장애인, 노인 등의 인터넷 서비스 접근성 보장 및 지원
  - 인터넷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 노인 등에게 인터넷 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 소외자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터넷 서비스 시설의 마련과 이용 교육 등의 지원시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 참고 법률로서는 발명진흥법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방송통신발전 진흥법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등)·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등이 있음.

### 3. 조문(안)

제21조(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 개인 등의 인터넷 서비스 진흥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진흥등에 있어서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경영 인증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장애인, 노인 등 인터넷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인터넷 서비스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 22 조

## 국제협력

## 1. 배경 및 필요성

- 인터넷 서비스의 국제적 연계성의 특징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국제협력의 추진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최근의 입법례에서도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의 국제적 연계성은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 협력을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이를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음.
- 특히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필요에서도 국제 협력에 대한 입법요구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인터넷의 국제적 속성상 문제 해결의 한계를 인식하고 국제적 공조를 위한 기반마련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관련 국가와의 역외적용 상호인정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함. 또한 글로벌 인터넷 이용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하여 등 글로벌 거버넌스 역량을 제고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진흥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관련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를 지원하고 국제표준화와 공동 연구개발 사업, 국제협력, 국제규범과의 조화 등의 인터넷 서비스 관련 국제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인터넷 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제규범의 형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2. 법안 제정 방안

- 인터넷 서비스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 인터넷 서비스 진흥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는 등의 정부의 적극적인 국제협력 형성 의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세부업무 마련

- 인터넷 서비스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 등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 등의 세부 지원 사업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국제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필요하며, 또한 그 밖에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 등과 관련된 세부 시책을 마련하여 미래 인터넷 서비스 시장 환경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참고 법률로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국가정보화기본법 제24조(국제협력), 국가표준 기본법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 증진), 방송통신발전 진흥법 제23조(방송통신 국제협력),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6조(국제 협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국제협력),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7조(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이 있음.

3. 조문(안)

**제22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 등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 등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 등을 위한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 등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4.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 등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5.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 등과 관련된 국제규범과의 조화

6.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 등을 위한 국제규범의 형성 촉진 및 지원
7. 그 밖에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 5 장 보칙

## 제 23 조 정보의 수집 · 분석

## 1. 배경 및 필요성

- 인터넷 서비스 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서비스 및 콘텐츠에 관련된 기술 및 정보에 대한 조사·분석이 필요함.
- 국내외 인터넷 서비스 기술 및 콘텐츠의 창출 및 활용에 관련된 동향의 파악을 통하여 인터넷 서비스 진흥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하고,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 된 정보의 조사·분석과 인터넷 서비스 관련 국내외 법제도에 관한 조사·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될 필요가 있음. 또한 수집·분석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인터넷 서비스에 관한 정보 접근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2. 법안 제정 방안

- 인터넷 서비스 관련 정보 수집·분석
  - 인터넷 서비스 진흥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 국내외 인터넷 서비스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수집된 정보에 대한 분석하도록 하고, 조사·분석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공공정보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정보 조사·분석의 범위
  - 국제협력과 차세대 인터넷 서비스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외 인터넷 서비스 기술 관련 국내외 동향에 관한 조사·분석하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 서비스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국내외 법제도 조사·분석을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함.

- 참고 법률로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25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제43조(연차보고 등)·제44조(지표조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6조(통계의 작성)·제7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제22조(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제27조(사업),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5조(기술개발의 촉진)·제16조(표준화의 추진)·제26조(이용자 보호시책 등) 등이 있음.

### 3. 조문(안)

제23조(정보의 수집 · 분석) 위원회는 인터넷 서비스 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 · 분석 및 공개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서비스 기술 관련 국내외 동향 조사 · 분석
2. 인터넷 서비스 관련 국내외 법제도 조사 · 분석

제 24 조

통계의 작성 · 관리

1. 배경 및 필요성

- 인터넷 서비스 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관한 통계, 신규 인터넷 서비스 사업에 관한 통계, 인터넷 서비스 관련 기술에 관한 통계 등 인터넷 서비스 관련 통계가 체계적으로 작성·관리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서비스 관련 통계의 체계적인 관리와 더불어 통계 자료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통계 담당 부처와의 원활한 협조가 가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법안 제정 방안

- 인터넷 서비스 관련 통계 작성·관리
  - 인터넷 서비스 진흥 관련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 서비스 관련 통계를 작성토록 하고 작성된 통계가 축적될 수 있도록 관리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통계 자료의 전문성 확보
  - 인터넷 서비스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함에 있어 인터넷 서비스 관련 통계 자료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계 담당 부처인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관련 통계 작성·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참고 법률로서는 방송통신발전 진흥법 제41조(통계의 작성·관리)·제44조(권한의 위임·위탁), 전기통신사업법 제88조(통계의 보고 등),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6조(통계의 작성)·제22조(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제27조(사업) 등이 있음.

### 3. 조문(안)

제24조(통계의 작성 · 관리) 위원회는 인터넷 서비스 진흥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인터넷 서비스에 관한 통계를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제 25 조

자료 제출

1. 배경 및 필요성

- 각종 인터넷 서비스 진흥 시책의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진흥 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통계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함.
- 통계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통하여 발생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영업비밀 침해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법안 제정 방안

-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자료 제출 요청
  - 효율적인 인터넷 진흥 정책의 추진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통계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영업비밀의 보호와 자료제출 거부
  -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통하여 자신의 영업비밀이 누설될 수 있는 우려가 있거나 기타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참고 법률로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 등), 국가정보화기본법 제45조(자료 제출의 요청), 방송통신발전 진흥법 제42조(자료 제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관리 등)·제24조의3(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등이 있음.

### 3. 조문(안)

제25조(자료 제출) 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한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통계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영업비밀의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제 26 조

지원센터

1. 배경 및 필요성

-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을 위하여 추진되는 시책으로써, 인터넷 서비스 표준화 등의 추진, 전문인력의 양성, 경영인증,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정보의 수집·관리, 통계의 작성·관리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 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서비스에 관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하여 인터넷 서비스 전문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각 사업의 각 사업 추진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2. 법안 제정 방안

- 인터넷 서비스 진흥 지원센터 설치
  - 각종 인터넷 진흥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 및 인터넷 서비스 관련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동안 인터넷 서비스의 지원사업을 수행하였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인터넷 서비스 진흥 지원센터’를 설치·운영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지원센터의 세부 사업과 지원
  - 지원센터의 수행 사업으로는 본 법안이 추진하는 인터넷 서비스 표준화 등의 추진 사업, 인터넷 서비스 전문 인력의 양성사업, 인터넷 서비스 경영인증 사업, 인터넷 서비스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사업, 인터넷 서비스 정보의 수집·분석 사업, 통계의 작성·관리 사업 등을 주요 수행사업으로 함. 또한 지원 센터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참고 법률로서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6조(정보공유·분석센터), 1인 창조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등이 있음.

### 3. 조문(안)

**제26조(지원센터)** ①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진흥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인터넷 서비스 진흥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8조에 따른 인터넷 서비스 표준화 등의 추진
2. 제19조에 따른 인터넷 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3. 제21조에 따른 인터넷 서비스 경영인증
4. 제22조에 따른 인터넷 서비스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5. 제23조에 따른 인터넷 서비스 정보의 수집·분석
6. 제24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③ 정부는 지원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7 조

비밀 누설의 금지

1. 배경 및 필요성

- 인터넷 서비스 진흥을 위한 사업의 수행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의 비밀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본 법안의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 파견·위촉·위탁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에게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관련 자들의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2. 법안 제정 방안

- 비밀 누설 금지
  - 본 법안에서 수립·추진되는 인터넷 서비스 관련 정보 가운데 비밀로서 유지되어야 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의 비밀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음.
- 비밀 누설 금지 의무의 범위
  - 본 법안의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본 법안의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파견·위촉·위탁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에게도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부여하여 비밀 누설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참고 법률로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0조(비밀유지 등),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8조(비밀 엄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비밀유지 등),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7조(비밀유지의무),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6조(비밀 유지) 등이 있음.

### 3. 조문(안)

제27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 과견·위촉·위탁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저 자 소 개 ●

권 현 준

- 고려대 법학과 졸업
- 고려대 일반대학원 석사(상법)
- 미네소타 로스쿨 LLM(JD)
- 현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

황 인 표

- 연세대 철학과 졸업
- 연세대 법학과 석사
- 현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

방송통신정책연구 11-진흥-라-01

인터넷 이용 활성화 및 진흥 법제 체계화 연구

(The Study on Promotion of Internet Utilization  
and Systematization of Legislation for  
Internet Promotion.)

2011년 12월 일 인쇄

2011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TEL: 02-750-1114

E-mail: webmaster@kcc.go.kr

Homepage: www.kcc.go.kr

인 쇄 한올